

발의안 제 51호

California주 헌법 제II조 8항의 조항에 따라 본 제안을 주민에게 제출한다.

본 발의안은 교육법에 새 조항을 추가한다. 따라서 추가될 새 조항은 신설 규정임을 나타내기 위해 *이탤릭체*로 인쇄한다.

제안 법

제1항. 주요 조사 결과 및 공표 사항.

California 주민들은 다음 모든 법안을 조사하여 공표한다.

(a) California 헌법에 따라 공교육은 주의 책임으로 이 책임은 다른 어떤 것 중에서도 공립 학교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으며 평화로운 장소가 되도록 요한다.

(b) California 주는 공교육의 자금 조달에 근본적인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 관심은 K-14 시설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으며 평화로운 조건에서 건설되고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부분까지 확대된다.

(c) 1998년 이후 California 주는 교육법 제1조 제1부 제10편 제12.5장의 제1조항(제17070.10절을 위시)에 포함된 Leroy F. Greene의 1998년 학교 시설법을 통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으며 평화로운 시설을 제공하는 책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d) 주 배분 위원회는 지출 보고서 및 교육구 기록을 감사해 공채 기금이 프로그램 진행의 시의 적절성 여부 및 급여 또는 운영비에 대한 자금 지출 여부 등 프로그램 요구에 맞게 지출되는지 확인할 권한이 있다.

(e) California 주민들은 다음 법안을 조사하여 공표한다.

(1) California는 과거 불경기 시절 여러 주 중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주 가운데 하나로 현재 고용 증가가 일어나고 있지만 경제학자는 주의 경제가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라고 경고한다.

(2) 2016 커뮤니티 칼리지 공교육 시설을 통한 유치원 공채법에 따라 전문 직업 기술 교육 시설을 위해 투자가 이루어져 교육 수료 및 직장 재진입 등 어려움에 직면한 많은 California인과 재향군인에게 직업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3) 투자는 지방 교육구와 협력해 지진 안전에 맞도록 구형 장치 개장, 납 페인트, 석면 및 기타 유독 물질 제거 등 노후 시설을 개편해 현행 건강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4) 연구에 따르면 주 사회 기반 시설에 \$10억의 투자가 이루어질 때마다 13,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한다. 여기에는 주 전역에서 행해지는 건물 및 건설 종사 업무가 포함된다.

(5) 2016 커뮤니티 칼리지 공교육 시설을 통한 유치원 공채법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교육구 및 지방 관리 본부를 위한 것이다.

(6) 개선된 교육 및 강의 시설을 제공하는 21세기형 교육 설비 없이는 학습 목표 달성은 요원한 일이다.

(f) 이에 2016 커뮤니티 칼리지 공교육 시설을 통한 유치원 공채법을 제정하여 포괄적이고 재정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모든 California인이 요구하는 학교 시설 문제에 대처하고자 한다.

제2절. 제17070.41절이 교육법에 추가되었으며 다음을 참조한다.

17070.41. 2016 주 학교 설비 자금 창설.

(a) 이에 국고에 속하는 기금이 창설되었으며 2016 주 학교 설비 기금이라 칭한다. 정부법 제13340절에도 불구하고 출처가 어디든 본 기금에 예치되는 금액을 포함한 기금 내 모든 금액은 회계연도에 상관없이 이 장에 따라 지속적으로 비용을 책정한다.

(b) 위원회는 2015년 1월 1일 작성된 대로 본 장의 목적에 맞게 교육구를 위한 기금을 이전된 기금에서 출처를 막론하고 2016 주 학교 시설 기금으로 배분한다.

(c) 위원회는 2016 주 학교 시설 기금에 예치된 해당 기금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위원회가 승인했지만 재무부에 의해 판매되지 않은 공채 기금에 대해 배분할 수 있다.

(d) 위원회는 2016 주 학교 설비 기금의 모든 자금 배분에 따라 지출할 수 있으며 이는 지출 당시 2016 주 학교 설비 기금 내 금액이 사전에 이루어진 모든 배분에 지불을 허용할 만큼 충분한지 아닌지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법이 일반 기금으로 이전하도록 요한 자금은 지출할 수 없다.

제3절. 제70편(제101110절을 위시)이 교육법 제3조 제14부에 추가되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0편. 2016 커뮤니티 칼리지 공교육 시설을 통한 유치원 공채법

제1장. 일반

101110. 본 편은 2016 커뮤니티 칼리지 공교육 시설을 통한 유치원 공채법으로 알려져야 하며 인용될 수 있다.

101112. 총 금액 구십억 달러(\$9,000,000,000) 내 채권은 제101140 및 101149절에 따라 발행된 모든 상환채의 금액 또는 그 중 필요한 만큼의 상당 액수를 포함하지 않으며 제101130 및 101144절에 설명된 목적에 따라 발행하고 판매할 수 있다. 공채는 판매될 때 California 주의 유효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채무여야 하며, 이로써 California 주의 충분한 신뢰와 신용이 원리금의 지급 기일이 될 때 공채의 원금과 이자를 기한대로 지불할 것임을 보증한다.

제2장. 12학년을 통한 유치원

제1조항. 12학년 학교 시설 프로그램을 통한 유치원 조항

101120. 본 장에 따라 발행되고 판매된 채권 수입은 제17070.41절에 의거하여 주 재무국에 설립된 2016 주

학교 시설 기금에 예치되어야 하며 본 장에 따라 주 배분 위원회에 의해 배분되어야 한다.

101121. 본 장의 목적을 위해 2016 주 학교 설비 기금에 예치된 모든 금액은 제101122절에 설명된 바와 같이 2015년 1월 1일에 작성된 대로 Leroy F. Greene 1998 학교 설비법(제1조 제1부 제10편 제12.5장(제17070.10절을 위시))에 따라 교육구, 카운티 학교 교육감 및 주 카운티 교육 위원회 지원에 제공되며, 입법부의 모든 법에 따라 2016 주 학교 설비 기금에 선납 또는 대출된 모든 금액 및 해당 법에 따라 제공된 이자를 상환하는 데 제공되고 정부법 제16724.5절에 의거 일반 공채 비용 회전 자금을 변제하는 데 제공된다.

101122. (a) 본 장의 목적을 위해 발행 및 판매된 채권 판매 수입은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배분된다.

(1) 제1조 제1부 제10편 제12.5절(제17070.10항 위시)에 의거 지원 교육구의 새로운 학교 설비 건설에 일금 삼십억 달러(\$3,000,000,000).

(2) 제1조 제1부 제10편 제12.5장 제12조항(제17078.52절 위시)에 의거 차터 스쿨 학교 설비에 일금 오천억 달러(\$500,000,000).

(3) 제1조 제1부 제10편 제12.5장(제17070.10절 위시)에 의거 학교 시설 현대화에 일금 삼십억 달러(\$3,000,000,000).

(4) 제1조 제1부 제10편 제12.5장 제13조항(제17078.70절 위시)에 의거 전문 직업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설비에 일금 오천억 달러(\$500,000,000).

(b) 교육구는 제1조 제1부 제10편 제12.5장(제17070.10절 위시)에 의거 다음 한 개 이상의 목적에 한해 세부 항목 (a) 단락 (3)에 따라 할당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1) 에어컨 장비 및 설치 재료 구매 및 설치 및 이와 관련된 비용.

(2) 학교 안전 또는 운동장 안전 증진을 위한 프로젝트 구축 또는 이를 위한 가구 또는 장비 구매.

(3) 학교 시설 내 유독 석면 물질 파악, 평가 또는 경감.

(4) 최우선 순위인 지붕 교체 프로젝트를 위한 프로젝트 기금 마련.

(5) 제1조 제1부 제10편 제12.5장(제17070.10절 위시)에 의거 기타 모든 설비 현대화.

(c) 세부 항목 (a) 단락 (1)에 따라 분배된 기금은 중증 장애 학생을 위한 기금 마련 교실 또는 카운티 커뮤니티 학교 학생을 위한 기금 마련 교실을 위해 제1조 제1부 제10편 제12.5장(제17070.10절 위시)에 의거 신청 자격이 있는 카운티 교육 위원회에 새로운 건설 보조금을 제공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d) 정부법 제7조 제1부 제4.9장(제65995절 위시)은 2015년 1월 1일에 규정된 조항 그대로, 세부 항목 (a) 단락 (1)에 따라 새로운 학교 설비 구축을 위해 승인된 전체 채권 금액이 사용될 때까지 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두 날짜 중 빠른 날짜까지 유효하다. 이후에는 정부법 제7조 제1부 제4.9장(제65995절 위시)이 법에 따라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제2조항. 12학년 학교 시설 회계를 통한 유치원 조항

101130. (a) 제1장(제101110절 위시)에 따라 발행 및 판매가 승인된 총 채권 금액 중 칠십억 달러 (\$7,000,000,000) 금액 내 채권은 제101140절에 따라 발행된 그 어떤 상환채 또는 그 중 필요한 만큼의 상당 액수를 포함하지 않으며, 본 장에 표시되어 있는 목적을 수행하는 데 사용될 기금을 제공하고 정부법 제16724.5절에 따라 일반 공채 비용 회전 자금을 변제하기 위해 발행 및 판매될 수 있다.

(b) 이 절에 따라 재무장관은 제15909절에 의거, 분배 시 요구된 서비스 지출에 필요한 때면 언제든지 주 학교 건물 재무 위원회가 승인한 채권을 판매할 수 있다.

101131. 제15909절에 따라 설립되고 주지사가 구성한 주 학교 건물 재무 위원회, 회계감사관, 재무장관, 재무국장 및 교육감 또는 이들의 지정된 대표는 모두 이에 대해 보상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들 중 대다수로 구성된 정족수는 본 장의 목적을 위해 지속된다. 재무장관이 위원회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상원 위원회가 규칙에 따라 임명한 상원 의원 두 명 및 하원 의장이 임명한 주의회 하원 의원 두 명은 서로 만나 입법부 의원으로서 각자의 위치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자문을 제공하며 참여한다. 본 장의 목적을 위해 입법부 의원은 본 장의 주제에 대한 임시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며, 이 위원회로서 상원 및 주의회 하원 공동 규칙에 의해 해당 위원회에 대한 권한과 임무를 가지게 된다. 재무국장은 위원회가 요구할 시 지원을 제공한다. 주 검찰총장은 위원회의 법률 고문이다.

101132. (a) 본 장에 의해 승인된 공채는 주 일반공채법 (정부법 제2조 제4부 제3편(제4장 제16720절을 위시))에 규정된 바와 같이 준비, 작성, 발행, 판매, 지불 및 상환될 것이며, 수정될 수 있으며 보충될 수 있는 모든 법은 이 장에 완전히 설명되어 있는 바와 같이 본 장에 통합되며 정부법 제16727절의 세부 조항 (a)와 (b)를 제외하고 이 장에서 승인한 공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 주 일반공채법의 목적을 위해 주 분배 위원회를 2016 주 학교 시설 기금을 관리하는 "위원회"로 지정한다.

101133. (a) 주 분배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주 학교 건물 재무 위원회는 본 장에 의거해 해당 분배에 기금을 제공하기 위해 승인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바람직한지 결정하고, 그렇다고 결정한 경우 발행 및 판매될 채권 금액을 정한다. 해당 분배에 기금을 제공하도록 공채의 연속 발행이 승인되어 판매될 수 있으며, 발행 승인을 받은 모든 공채가 어느 한 시점에 판매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b) 세부 조항 (a)에 따라 주 분배 위원회의 요청은 제 101121 및 101122절에 설명된 목적을 위해 이루어지고 이루어질 분배 성명서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101134. 주의 정규 세입에 더하여, 해마다 공채의 원리금을 지불하는 데 필요한 액수를 모두 합한 금액을, 매년 동일한 방식으로 주의 다른 세입을 징수할 때 함께 징수해야 한다. 그러한 추가적인 합계 금액을 징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이행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세입 징수에 관한 직무를 맡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의 의무이다.

101135. 정부법 제13340절에도 불구하고, 본 장의 목적을 위해 이로서 국고에 있는 일반 기금으로부터 전용되는 금액은 다음의 합계와 동일할 것이다:

(a) 본 장에 따라 발행 및 판매되는 공채들의 원금과 이자의 지급 기일이 되어 지불해야 할 때 이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는 데 연간 필요한 총액.

(b) 회계 연도를 고려하지 않고 총당된 것으로, 제101138절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총액

101136. 주 배분 위원회는 본 장 이행을 목적으로 정부법 제16312절에 따라 공동 자금 투자 계정으로부터 또는 인가된 형태의 중간 금융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공동 자금 투자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요청 금액은 위원회가 결의안을 통해 본 장 이행을 목적으로 판매를 승인했으나 팔리지 않은 공채(상환채 제외)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주 배분 위원회는 대출을 받고 상환하기 위해 공동 자금 투자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대출받은 모든 금액은 기금에 예치되어야 하며, 본 장에 따라 주 배분 위원회에서 배분한다.

101137. 본 장 또는 주 일반공채법의 기타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재무장관이 이 장에 따라 공채 이자를 연방세 목적으로 총 수익에서 제하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의 공채 법무관 의견이 포함된 공채를 판매하는 경우, 재무장관은 공채 수익금 투자 및 이러한 수익금의 투자 수입을 위해 별도의 계좌를 보유할 수 있다. 재무장관은 리베이트, 벌금 또는 그 밖에 연방법 하에 요구되는 지불금을 지급하거나, 연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의 면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거나 바람직한 그러한 공채 수익금의 투자 및 사용과 관련하여 또 다른 조치를 취하거나, 혹은 California 주의 기금을 위해 연방법 하에서 다른 이익을 얻기 위해, 수익금 또는 수입을 사용하거나 사용을 지시할 수 있다.

101138. 본 장을 이행하기 위해, 재무국장은 본 장의 이행을 목적으로, 주 학교 건물 재무 위원회로부터 판매 승인을 받았으나 팔리지 않은 공채(상환채 제외)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일반 기금으로부터의 인출을 인가할 수 있다. 인출된 모든 금액은 본 장에 따라 2016 주 학교 설비 기금에 예치된다. 본 절에 따라 이용 가능한 모든 금액 및 이 금액으로 공동 자금 투자 계정에서, 본 장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 공채를 판매해 얻은 수익금으로부터 얻은 이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일반 기금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101139. 2016 주 학교 설비 기금에 예치된, 판매 공채에 대한 프리미엄 및 미수 이자로부터 파생된 모든 자금은 기금에 유보되어야 하고 공채 이자를 지불하기 위해 신용으로 일반 기금에 이체될 수 있다. 단 프리미엄에서

파생된 자금은 일반 기금으로 이체되기 전에 공채 발행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유보되거나 사용될 수 있다.

101140. 본 장에 따라 발행 및 판매되는 공채들은 주 일반공채법의 일부인 정부법 제2조 제4부 제3편 제4장의 제6조항(제16780절 위시)에 따라 환불될 수 있다. 본 장에 기술된 공채의 발행에 대해 주의 유권자들이 승인하는 것에는 원래 본 조에 의해 발행된 공채를 상환하기 위해 발행된 공채 또는 이전에 발행된 상환채에 대한 발행 승인도 포함된다. 본 절에서 승인한 대로 상환채 수익금과 함께 상환된 모든 공채는 결의안에서 정한 대로 및 결의안에서 정한 정도까지, 이따금 수정되는 대로 법에서 허용하는 만큼 합법적으로 파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반환 공채를 인가한다.

101141. 본 장에 의해 승인된 공채 판매로 얻은 수익금의 경우, 그 용어가 California 주 헌법 XIII B조에 사용되는 것과 같은 "조세 수익금"이 아니므로, 이러한 수익금의 지출은 해당 조에서 부과한 제한 사항의 영향을 받지 않음을 밝힌다.

제3장. CALIFORNIA 커뮤니티 칼리지 시설

제1조항. 일반

101142. (a) 2016 California 커뮤니티 칼리지 자본 지출 공채 기금을 이로서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발행 및 판매한 공채 수익금에서 얻은 기금 예치를 위해 주 재무국에 설립한다.

(b) 제67353절에 따라 설립된 고등 교육 설비 재무 위원회가 본 장에 따라 California 커뮤니티 칼리지 지원 자금 제공을 목적으로 California 주의 부채, 법적 책임을 형성하도록 인가한다.

제2조항. California 커뮤니티 칼리지 프로그램 조항

101143. (a) 제3조항(제101144절 위시)에 따라 발행 및 판매된 공채 수익금에서 나온 총액 이십억 달러 (\$2,000,000,000)는 본 조의 목적을 위해 2016 California 커뮤니티 칼리지 자본 지출 공채 기금에 예치된다. 이 기금은 적절한 경우 본 조의 목적에 맞게 지출할 수 있다.

(b) 본 조의 목적에는 California 커뮤니티 칼리지의 자금 지출에 드는 자금 조달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이 포함된다.

(c) 본 조의 목적을 위해 발행 및 판매된 공채 판매에서 얻은 수익은 건물 건축 및 이와 관련된 고정 세간의 취득, 한 부문 이상의 공공 고등 교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구축(교차 부문), 설비 보수 및 재구축, 부지 취득, 새롭고 혁신적이거나 재구축된 설비, 특히 평균 10년 정도 유용한 상태에서 사용 가능한 설비 장착 등 기존 캠퍼스 건축에 필요한 자금 제공 및 California 커뮤니티 칼리지 시설을 위한 예비 계획 및 작업 도안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 사전 구축 비용 지급을 위한 자금 제공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항. California 커뮤니티 칼리지 회계 조항

101144. (a) 제1장(제101110절 위시)에 따라 발행 및 판매가 승인된 총 채권 금액 중 이십억 달러 (\$2,000,000,000) 금액 내 채권은 제101149절에 따라 발행된 그 어떤 상환채 또는 그 중 필요한 만큼의 상당 액수를 포함하지 않으며, 본 장에 표시되어 있는 목적을 수행하는 데 사용될 기금을 제공하고 정부법 제16724.5 절에 따라 일반 공채 비용 회전 자금을 변제하기 위해 발행 및 판매될 수 있다.

(b) 이 절에 따라 재무장관은 제67353절에 의거, 분배 시 요구된 서비스 지출에 필요한 때면 언제든지 고등 교육 설비 재무 위원회가 승인한 채권을 판매할 수 있다.

101144.5. (a) 본 장에 의해 승인된 공채는 주 일반공채법(정부법 제2조 제4부 제3편(제4장 제16720 절을 위시)에 규정된 바와 같이 준비, 작성, 발행, 판매, 지불 및 상환될 것이며, 수정될 수 있으며 보충될 수 있는 모든 법은 이 장에 완전히 설명되어 있는 바와 같이 본 장에 통합되며 정부법 제16727절의 세부 조항 (a)와 (b)를 제외하고 이 장에서 승인한 공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 주 일반공채법의 목적을 위해 2016 커뮤니티 칼리지 자금 지출 공채 기금 책정을 관리하는 모든 주 당국을 본 장에 따라 기금을 지원한 프로젝트를 위한 "위원회"로 지정한다.

(c)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발행 및 판매된 채권의 수익금은 California 커뮤니티 칼리지의 기존 또는 신규 캠퍼스 및 캠퍼스 외부 센터 건설 및 본 장에서 설명한 공동 사용 및 교차 부문 설비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101145. 제67353절에 따라 설립된 고등 교육 설비 재무 위원회는 본 장에 의거, 입법부가 연간 예산법에서 명확히 승인한, 본 장에도 설명되어 있는 목적을 위해 관련 자금 분배 시 필요한 정도로만 공채 발행을 승인한다. 입법적 지침에 따라 명시된 조치들을 수행하기 위해 본 조에 따라 승인된 공채를 발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바람직한 것인지 결정해야 하며, 만약 그렇다면, 발행 및 판매할 공채 금액도 결정해야 한다. 계속 그러한 조치들을 수행하도록 공채의 연속 발행이 승인되어 판매될 수 있으며, 발행 승인을 받은 모든 공채가 어느 한 시점에 판매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101145.5. 주의 정규 세입에 더하여, 해마다 공채의 원리금을 지불하는 데 필요한 액수를 모두 합한 금액을, 매년 동일한 방식으로 주의 다른 세입을 징수할 때 함께 징수해야 한다. 그러한 추가적인 합계 금액을 징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이행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세입 징수에 관한 직무를 맡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의 의무이다.

101146. 정부법 제13340절에도 불구하고, 본 장의 목적을 위해 이로써 국고에 있는 일반 기금으로부터 전용되는 금액은 다음의 합계와 동일할 것이다:

(a) 본 장에 따라 발행 및 판매되는 공채들의 원금과 이자의 지급 기일이 되어 지불해야 할 때 이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는 데 연간 필요한 총액.

(b) 회계 연도를 고려하지 않고 총당된 것으로, 제 101147.5절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총액

101146.5. 위원회는 제101144.5절 세부 항목 (b)에 정의된 대로, 본 장 이행을 목적으로 정부법 제16312 절에 따라 공동 자금 투자 계정으로부터 또는 인가된 형태의 중간 금융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공동 자금 투자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요청 금액은 고등 교육 설비 재무 위원회가 결의안을 통해 본 장 이행을 목적으로 판매를 승인했으나 팔리지 않은 공채(상환채 제외)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위원회는 제101144.5절 세부 항목 (b)에 정의된 대로 대출을 받고 상환하기 위해 공동자금 투자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대출받은 모든 금액은 기금에 예치되어야 하며, 본 장에 따라 이사회에서 배분한다.

101147. 본 장 또는 주 일반공채법의 기타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재무장관이 이 장에 따라 공채 이자를 연방세 목적으로 총 수익에서 제하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의 공채 법무관 의견이 포함된 공채를 판매하는 경우, 재무장관은 공채 수익금 투자 및 이러한 수익금의 투자 수입을 위해 별도의 계좌를 보유할 수 있다. 재무장관은 리베이트, 벌금 또는 그 밖에 연방법 하에 요구되는 지불금을 지급하거나, 연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의 면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거나 바람직한 그러한 공채 수익금의 투자 및 사용과 관련하여 또 다른 조치를 취하거나, 혹은 California 주의 기금을 위해 연방법 하에서 다른 이익을 얻기 위해, 수익금 또는 수입을 사용하거나 사용을 지시할 수 있다.

101147.5. (a) 본 장을 이행하기 위해, 재무국장은 본 장의 이행을 목적으로, 고등 교육 설비 재무 위원회로부터 판매 승인을 받았으나 팔리지 않은 공채(상환채 제외)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일반 기금으로부터의 인출을 인가할 수 있다. 인출된 모든 금액은 본 장에 따라 2016 California 커뮤니티 칼리지 자본 지출 공채 기금에 예치된다. 본 절에 따라 이용 가능한 모든 금액 및 이 금액으로 공동 자금 투자 계정에서, 본 장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 공채를 판매해 얻은 수익금으로부터 얻은 이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일반 기금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b) 본 장에서 설명한 목적을 위해 California 커뮤니티 칼리지에 지출하기 위한 공채 발행으로부터 나온 기금에 대해 입법부 및 재부무에 요청을 전달하는 모든 경우, 커뮤니티 칼리지 시스템 요구 사항 및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주 전체 상황에 기반해 우선순위를 설정한 오개년 자본 지출 계획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특정 칼리지의 판단에 따라 칼리지가 최우선으로 파악한 건물 내 지진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이는 데 필요한 지진 관련 개선 사항을 우선순위에 둔 일정을 요청에 포함해야 한다.

101148. 2016 California 커뮤니티 칼리지 자본 지출 공채 기금에 예치된, 판매 공채에 대한 프리미엄 및 미수 이자로부터 파생된 모든 자금은 기금에 유보되어야 하고 공채 이자를 지불하기 위해 신용으로 일반 기금에 이체될 수 있다. 단 프리미엄에서 파생된 자금은 일반 기금으로

이제되기 전에 공채 발행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유보되거나 사용될 수 있다.

101149. 본 장에 따라 발행 및 판매되는 공채들은 주 일반공채법의 일부인 정부법 제2조 제4부 제3편 제4장의 제6조항(제16780절 위시)에 따라 환불될 수 있다. 본 장에 기술된 공채의 발행에 대해 주의 유권자들이 승인하는 것에는 원래 본 조에 의해 발행된 공채를 상환하기 위해 발행된 공채 또는 이전에 발행된 상환채에 대한 발행 승인도 포함된다. 본 절에서 승인한 대로 상환채 수익금과 함께 상환된 모든 공채는 결의안에서 정한 대로 및 결의안에서 정한 정도까지, 이따금 수정되는 대로 법에서 허용하는 만큼 합법적으로 파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반환 공채를 인가한다.

101149.5. 본 장에 의해 승인된 공채 판매로 얻은 수익금의 경우, 그 용어가 California 주 헌법 XIII B조에 사용되는 것과 같은 "조세 수익금"이 아니므로, 이러한 수익금의 지출은 해당 조에서 부과한 제한 사항의 영향을 받지 않음을 밝힌다.

제4절. 일반 조항

(a) 본 법안의 조항 또는 그 일부가 어떠한 이유로든 무효 또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결이 날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은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며 이를 위해 본 법안의 조항을 분리할 수 있다.

(b) 이 법은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동일한 주제를 다루는 본 법 또는 법안이 동일한 주 전역 선거 투표지에 수록될 경우 다른 법안(들)의 조항은 본 법과 상충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본 법이 더 많은 찬성표를 얻을 경우 본 법의 전체 조항이 우선권을 가지며 다른 법안의 조항들은 무효가 된다.

발의안 제 52호

California주 헌법 제II조 8항의 조항에 따라 본 발의안을 주민에게 제출한다.

본 발의안은 California 주 헌법에 조항을 추가하고, 복지기관법의 조항을 수정하므로, 삭제할 것이 제안된 기존 조항은 취소선 유형으로 인쇄되고 추가하기로 제안된 새로운 조항은 이탤릭체로 인쇄된다.

제안된 법

제1항. 결과 설명

A. 연방 정부는 노년층, 장애인 및 어린이를 포함하여 저소득층 부모들에게 제공되는 건강 관리 서비스 비용 지불을 돕기 위해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창설하였다. California 주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Medi-Cal라 한다. 모든 주가 연방 메디케이드 기금을 받도록 하기 위해 주에서는 자체적인 상응하는 금액을 기부해야 한다.

B. 2009년, 새로운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California 주의 병원들이 수수료를 지불하기 시작하여 California 납세자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가용한 연방 메디케이드 기금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건강 관리 비용 지불에 도움을 주었으며 그 결과 California 병원들이 추가적인 연방 기금에 있어 매년 약 20억 달러를 받게 되어 병원들이 Medi-Cal 환자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제2항. 목적 설명

가용한 연방 상응 기금을 최대화할 목적으로 병원들이 주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그러한 취지의 목적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주민들은 본 문서를 통해 헌법을 수정하여 병원 수수료 프로그램에 대한 변경을 유권자에게 승인하도록 요구하여 주에서 Medi-Cal 환자들에게 대한 병원 치료를 지원하려는 취지의 목적을 위해 이들 기금을 사용하여 저소득 어린이들을 위한 건강 관리 비용 지불을 돕도록 한다.

제3항. 헌법 수정

제3.1항. California 헌법 제XVI조에 추가될 제 3.5항은 다음과 같다.

제3.5항. (a) 각 하원에서 일지에 기입된 점호식 표결에 의해, 참석한 구성원의 3분의 2에 의해 통과되어 입법부가 해당 법의 목적을 심화하는 조항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II조 10항의 하부조항 (c)에 따라 발의안 법령을 법령에서 수정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선거인들이 승인하지 않는 한, 2013년 Medi-Cal 병원 변제법 조항에 수정되거나 추가되는 법령 없음

(b) 본 항의 목적에 따라:

(1) "법"이란 2013년 Medi-Cal 병원 변제법을 의미한다. 2013-14 의회 정기 회기의 상원 법안 239에 의해 입법되고, 의회의 동일한 세션에서 차후 법안에 의해 입법된 법에 대한 비실질적인 수정에 의해 입안됨)

(2) "비실질적인 수정"이란 사소하거나 기술적이거나 문법적이거나 명료화하는 수정만을 의미한다.

(3) "법의 목적을 심화하는 조항"이란 다음의 의미만을 가진다.

(A) 법에 따라 병원에 부과된 수수료 및 병원에 지불된 관련 질적 보장 지불금을 포함하여, 법의 이행에 대한 연방 승인을 획득하거나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정

(B) 법에 의거하여 병원에 지불된 질적 보장 지불금 및 수수료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방법론에 대한 수정 또는 추가

(c) 유사한 법령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의회가 이 법을 폐기하고 세금, 수수료 또는 평가액을 부과하는 유사 법령으로 대체하도록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각 하원에서 일지에 입력된 점호식 투표에 의해, 참석한 자의 삼분의 2에 의해 통과된 법령에 의해 의회가 이 법을 전체적으로 폐기하는 일을 금지하지 않는다.

(1) 법의 목적을 심화하는 조항이란 여기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2) II조 제10항의 하부조항 (c)에 의거하여 발의안 법령을 수정하는 법령과 동일한 방식으로 선거인들이 승인한 조항

(d) 이 법에서 부과하는 수수료의 수익금 및 해당 수익금에 대해 발생하는 모든 이자는 XIII조 B의 목적이나 이 조항의 8 및 8.5항의 목적에 따라, 수익, 일반 기금 수익, 일반 기금 세금 수익금 또는 할당된 지역 세금 수익금으로 간주하지 않아야 한다. Medi-Cal 수익자 또는 기타 모든 유사 연방 프로그램 내 기타 수익자를 위한 법에서 언급되는 신탁 기금 내 수익금의 할당은 본 법 제 3항이나 5항 내의 금지 또는 제약의 대상이 아니다.

제4항. 2013년 Medi-Cal Hospital Reimbursement Improvement Act 수정

제4.1항. 복지기관법의 제 14169.72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4169.72. 다음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본 조항은 효력이 없어진다.

(a) 항소 사법부 또는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또는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들에 의한 최종 결정에 의한 최종 사법부의 결정 유효일에 이 조항 또는 제 14169.54항 또는 14169.55항에 의거하여 설정된 질적 조항이 이행될 수 없는 경우 이 하부 조항이 주 외에 위치한 병원들이 제기한 사건에서 항소 사법부 법원에 의해 결정된 최종 사법적 결정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

(b)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들이 제 14169.52항, 제14169.53항, 14169.54항, 및 14169.55항의 이행을 프로그램 기간 마지막 날 이전까지 승인 거부하거나 승인하지 않는 경우, 및 부서에서 제14169.52항, 14169.53항, 14169.54항, 또는 14169.55항을 제 14169.53항 하부조항 (d)에 의거하여 수정하지 못하여 연방 승인 획득이나 연방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c) 의회가 연간 예산 법의 기금 내 적절한 금액을 할당하지 못하거나, 연간 예산 법의 제정 후 30일 이내에 입법된 별도의 법안 내 해당 금액을 할당하지 못하는 경우 기금에서 부과된 본 조항에 의거하여 징구된 수익에 대한 California 대법원 또는 California 항소 법원의 최종 사법적 결정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California 헌법의 제 XVI조 제8항 하부조항 (b)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California 헌법의 제XIII B조에 의거하여 할당된 세금의 일반 기금 수익금"

(2) California 헌법의 제XVI조의 제8항 하부조항 (b)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할당된 지역 세금 수익금"

(d) 부서가 연방 재정 참여가 도모되는 본 조항에 의해 요구되는 보조금 및 기타 비용에 대한 연방 재정 참여를 도모하였으나 받지 않은 경우

(e) 이 조항에 관련된 법적 소송이 주에 대하여 제기되거나 주 및 예비 가처분 또는 기타 명령이 발령되어 그 결과가 주에 재정적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경우 본 하부조항의

목적에 따라, "주에 대한 재정적 불이익"이란 다음 중 하나의 의미를 가진다.

(1) 연방 재정 참여의 상실

(2) 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반 기금 비용에 대한 순 비용 즉 가장 최근의 연간 예산 법에서 권한을 부여한 일반 기금 지출금의 1%의 사분의 일 이상인 순 비용.

(f) 수수료의 수익금 및 입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금이 기금에 입금되지 않거나 제14169.53항에 명시된 대로 사용되지 않음.

(g) 수수료의 수익금, 연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상응 금액, 및 기금 내 입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금이 제 14169.68항에 기재된 대로 사용되지 않음.

제4.2항. 복지기관법의 제 14169.75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4169.75. 제14167.35항의 하부조항 (k), 및 제 14167.35항의 하부조항 (a), (i) 및 (j)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설정하는 것은 폐지되지 않으며, 본 조항의 효력이 유지되는 한 효력이 유지된다. 제14169.72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은 2018년 1월 1일까지 효력이 발생한다. 본 조항의 효력이 있는 기간 동안 수수료 지불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한, 해당 날짜 이후에는 병원이나 수수료를 지불할 의무가 없으며, 본 조항의 효력이 있는 동안 지불금을 지불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제 14169.53항에 의거하여 권한이 부여된 지불금에 대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제5항. 일반 조항

(a) 본 법안의 조항 또는 그 일부가 어떠한 이유로든 무효 또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결이 날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은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며 이를 위해 본 법안의 조항을 분리할 수 있다.

(b) 본 법안은 포괄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법안과 동일한 주제를 다루는 다른 법안(들)이 동일한 주 전역 선거 투표지에 수록될 경우 다른 법안(들)과 본 법안이 상충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본 법안이 더 많은 찬성표를 얻을 경우 본 법안의 전체 조항이 우선권을 가지며 다른 법안의 조항들은 무효가 된다.

발의안 제 53호

California주 헌법 제II조 8항의 조항에 따라 본 발의안을 주민에게 제출한다.

본 발의안은 보험법에 새 조항을 추가한다. 따라서 추가될 새 조항은 신설 규정임을 나타내기 위해 이탤릭체로 인쇄한다.

div>

제안된 법

제1항. 제목.

이 법은 No Blank Checks 발의안으로서 알려져 있고 인용할 수 있다.

법안 전문 | 123

52

53

제2항. 주요 조사 결과 및 공표 사항.

California 주민들은 다음 법안을 조사하여 공표한다.

(a) Sacramento의 정치인들은 납세자, 어린이 및 미래 세대들이 수 십년에 걸쳐 갚아야 하는 장기 공채 채무와 우리의 미래를 맞바꾸었습니다.

(b) 현행 규정 하에서, 주 발행 채권은 주의 일반 수입에서 상환되는 경우에만 유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정치인들은 세금, 수수료, 요금, 통행료 또는 집세와 같은 California 사람들에게 직접 부과되는 부과금이나 특정한 수익 흐름을 가지고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유권자들의 승인조차 받지 않고 추가적으로 수 십억 달러의 채권을 판매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California 사람들이 갚아야하는 채무를 이용하여 정치인들이 백지 수표를 발행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 그 돈을 지불하는 당사자가 유권자들이므로, 모든 주요 채권 판매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 승인은 유권자가 부여해야 합니다.

(c) California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입법 분석기관에서 발표한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California 주의 공적 채무는 34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입법 분석기관, "California 주의 주요 채무 문제 해결" 2014년 3월 7일) 공공 안전, 학교 및 기타 중요한 주의 문제들을 위해 가용한 현금을 줄이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지출해 나간다면, 우리의 장기 채무 부채에 대해 발생하는 원금과 이자 지불금은 우리 주를 불구로 만들고 말 것입니다.

(d) 또한, 그러한 채권 기금 조성된 프로젝트들의 비용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초고속 열차 비용이 90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추산된 비용은 거의 700억 달러로 풍선처럼 부풀었습니다. (Los Angeles Times, "California의 초고속 열차의 흐린 미래" 2014년 1월 14일)

(e) 이 법안은 세금, 요금, 수수료, 통행세 또는 집세 같이 California 주민들에게 직접 부과되는 부과금이나 특정한 수익 흐름을 통해 상환해야만 하는 모든 주요 주 발행 공채 제안들에 있어 유권자에게 목소리를 부여하여 우리 주의 공채 채무 위험에 제동을 걸게 될 것입니다.

제3항. 목적 설명

이 법안의 목적은 California 주민들, 그들의 자녀들 및 미래 세대로부터 징구되는 높은 세금, 요금, 수수료, 통행세나 집세, 특정한 수익 흐름을 통해 상환할 모든 주 발행 주요 공채 기금 프로젝트들에 있어 유권자들에게 목소리를 부여하여 우리 주의 공적 채권 채무 위기를 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4항. CALIFORNIA 헌법 제XVI조에 추가되는 제 1.6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6항. (a) 다른 법률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주에서 재정을 조달하거나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모든 단일한 프로젝트에 대해 단일 또는 총계 기준 이십억 달러 (\$2,000,000,000)를 초과하여 주에서 발행하거나 판매하는 모든 수익 채권은 주 전체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란 California 주, 그에 속하는 모든 기관 또는 부서, 및 주가 만들거나 주가 구성원으로 있는 모든 공동 기관 또는 유사 조직을 의미한다. 이 문서에서 사용되는 "주"라는 용어에는 시, 카운티, 시와 카운티, 학교 지구, 지역사회 대학 지구 또는 특수 지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조항의 목적에 비추어 "특수 지구"는 제한된 경계 안에서 지역 정부 기능의 수행을 위해 형성된 공적 기관들만을 의미한다.

이십억 달러(\$2,000,000,000)를 초과하여야는 금액으로 주 발행 수익 채권이 발행되거나 판매되는 단일한 프로젝트는 본 조항 내 들어 있는 유권자 승인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여러 별도 프로젝트로 분할되거나 그러하게 간주할 수 없다. 이 조항의 목적에 따라, 여러 알려진 별도 프로젝트들은 단일한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에에는 다음의 상황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하지 않는다.

(1) 알려진 별도 프로젝트들이 서로 물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근접하는 경우 또는

(2) 알려진 별도 프로젝트들이 서로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연결된 경우 또는

(3) 다른 알려진 별도 프로젝트의 완료 없이는 하나의 알려진 별도 프로젝트가 그 명시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c) 본 조항에 들어 있는 t이십억 달러(\$2,000,000,000) 한도는 United States 노동통계국이 발표하는 전체 도시 소비자를 위한 소비자 물가 지수(CPI-U)에 의해 측정된 인플레이션 등락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해야 한다. 재무부는 본 하부조항에 의해 요구된 조정사항을 계산하고 발표해야 한다.

제5항. 자율적 수립.

본 법안은 목적의 이행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제6항. 이해의 충돌 조항

(a) 본 법안과 주의회 의원의 재임 가능 횟수 또는 연한을 변경하는 다른 법안(들)이 동일한 주선거 투표용지에 수록될 경우 다른 법안(들)과 본 법안이 상충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본 법안이 더 많은 찬성표를 얻을 경우 본 법안의 전체 조항이 우선권을 가지며 다른 법안의 조항들은 무효가 된다.

(b) 본 법안이 유권자에 의해 승인되었지만 법에 따라 동일 선거 투표에서 유권자의 승인을 받은 다른 상충 법안으로 대체되었고 향후 그 상충 투표 법안이 무효화될 경우, 본 법안이 즉시 시행되며 완전한 효력을 발휘한다.

제7항. 분리 가능 조항.

본 법의 조항은 분리가 가능하다. 만일 본 조례의 절, 항, 부조항, 문장, 구절, 문구, 단어 또는 일부가, 어떠한 이유로든지, 유효 관할 법원의 판정에 의해 무효 또는 위헌으로 선언되어도, 동 판정은 본 조례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California 의 주민들은 이 법이나 그에 속한 청원의 어느 부분이 나중에 무효

선언되더라도 관계없이, 무효 또는 헌법 위배 선언되지 않은 이 법 및 그 모든 일부, 조항, 하부조항, 단락, 조, 문장, 문구, 단어를 채택하기로 선언한다.

제8항. 법적 방어.

이 법이 California 유권자들의 승인을 받고 이후 연방법을 위배했는 법적 도전의 대상이 되고, 주지사와 검찰총장 둘 다 이 법을 거부하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정부법 제목 2의 제3부 파트2의 또는 기타 다른 법의 제6장 (제12500항으로 시작)에 포함된 내용에 반하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은 California를 대표하여 이 법을 충실하고 격렬하게 방어할 독립적 변호인을 임명해야 한다.

(b) 검찰총장은 독립적 변호사를 임명하거나 이후 대체하기에 앞서, 독립적 변호인의 자질을 결정하는 데 있어 타당한 실사를 행사하고 이 법을 충실하고 격렬하게 방어할 독립적 변호인으로부터 서면 선서문을 득해야 한다. 서면 선서문은 요청 즉시 공공이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c) California를 대표하여 이 법을 충실하고 격렬하게 방어할 독립적 변호인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금액으로, 회계년도에 관계없이, 일반 기금에서 재정 회계사에게 계속적인 할당을 한다.

발의안 제 54호

California 주 헌법 제II조 8항의 규정에 따라 본 발의법안을 주민에게 제출한다.

본 발의법안은 California 주 헌법의 조항을 수정하며 정부법을 수정하고 조항을 정부법에 추가한다. 따라서, 삭제하도록 제안된 기존 조항은 취소선 으로 인쇄되었고, 새로 추가되는 조항은 기울임체로 인쇄되어 새로운 조항임을 명시하였다.

제안 법

제1항. 제목.

본 법은 California 주의회 투명성 법으로 하며 그렇게 인용할 수 있다.

제2항. 결과 및 선언.

California 주민은 이로써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a) 공공 사업을 공개적이고 공적인 방식으로 실행하는 것은 민주 사회의 유지에 중요하며,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모든 법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선출된 대표들에게 법안의 장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기회가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b) 그러나, 논평 또는 사전 통지 없이 정치적 특혜를 관철시키고자 마지막 순간에 법안을 개정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c) 더욱이, 의회의 의원들이 복잡한 법안들을 검토하거나 논의할 실질적 기회를 갖기 전에 복잡한 법안들이 종종 통과되어 부적절한 입법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d) 또한, 우리 주 헌법은 현재 각원과 그 위원회의 의사진행이 공개적이고 공공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입법상의 의사진행에 개인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은 거의 없으며, 많은 입법상의 의사진행이 대중과 언론의 감시 없이 진행되고 발언 내용에 대한 기록이 남지 않는 경우도 많다.

(e) 그러나, 현대적 기록 기술과 인터넷의 등장으로, 시민이 공공의 입법상의 의사진행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야 할 이유가 사라졌다.

(f) 따라서, 우리 주 헌법은 입법 과정에서 공개, 심의, 논의 및 절차를 확보하고, 시민에게 내용을 충분히 공개하며, 입법상의 의사진행이 공정하고 공개적으로 수행되도록 언론인을 포함해 누구나 자유롭게 입법상의 의사진행을 기록하고 그것을 방송하거나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g) 입법상의 의사진행을 기록하는 이 권리를 보완하기 위해, 의회 자체도 모든 공공의 의사진행에 대한 시청각 기록물을 제작하여 인터넷에 게재하고 이런 기록물의 보관소를 운영해야 한다. 이 보관소는 앞으로 오랫동안 대중, 언론 및 학계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h) California는 또한 다른 주들의 전례를 따라 법안이 인쇄되어 대중에게 제공되는 시간과 표결에 부쳐지는 시간 사이에 72시간의 사전 통지 기간을 두고, 자연 재해와 같이 긴급한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

(i) 대중, 언론 및 입법자들이 법안을 정연하고 자세히 검토하게 되면 더 나은 법안이 만들어지고 동시에 정치적인 정실과 권력 찬탈이 봉쇄된다.

(j) 이러한 수단들은 납세자에게 매우 적은 비용을 부담하게 하면서도 입법상의 의사진행에 더 높은 투명성을 촉진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다.

제3항. 목적 설명.

본 법안의 제정에서 California 주민이 의도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a) 주민이 의회의 공개 의사진행에서 일어나고 있고 일어난 일을 주민이 낱알이 인터넷을 통해 지켜봄으로써 정치적 과정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주민이 뽑은 의원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한다.

(b) 주민이 입법상 의사진행을 기록하고 이를 게시 또는 전송함으로써 입법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의원들의 신중한 의사결정, 책임감을 촉진한다.

(c) 법률 최종안이 의회에 제출되는 시점과 투표에 부쳐지는 시점 사이에 72시간의 공람 기간을 두어 투표 전에 주민과 의원들이 법률 최종안의 강점과 약점을 면밀하게 평가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제공한다. 다만 주지사가 긴급으로 공표한 사안은 예외로 한다.

제4항. California 주 헌법 제IV조의 개정안.

제4.1항. California주 헌법 제IV조 7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항. (a) 각 원은 각 원의 사무관들을 선택하고 원의 의사진행을 위한 규칙을 채택해야 한다.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정족수가 되지만 참석 의원이 더 적다면 다른 날로 휴회하고 결석 의원들의 참석을 강제할 수 있다.

(b) 각 원은 원의 의사진행 의사록을 유지하고 공표해야 한다. 사안에 대한 의원들의 호명 표결은 참석 의원 3인의 요청으로 채택하여 의사록에 기재해야 한다.

(c) (1) (3)목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원과 각 원의 위원회의 의사진행은 공개적이고 공적이어야 한다. 공개적이고 공적인 의사진행에 참석할 권리에는 누구나 오디오 또는 비디오 기기로 의사진행을 낱말이 기록하고 그것을 방송하거나 다르게 전송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단, 의회는 의사진행의 방해 최소화하는 목적에 한해 의사진행을 녹화하거나 방송하는 장비의 설치 및 사용을 규제하는 합리적 규칙을 (5)목에 따라 채택할 수 있다.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선언 및 금지 명령적 구제를 구하는 소송을 통해 상기 규칙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의회는 해당 규칙이 정당하고 입증할 의무를 진다.

(2) 의회는 또한 본 목의 채택 후 두번째 역년의 1월 1일부터 (1)목의 적용을 받은 모든 의사진행 전체를 음성 녹음하고, 의사진행이 휴회되거나 정회된 후 24시간 이내에 인터넷을 통해 해당 기록물을 공개해야 하고, 법률에 의해 명시된 대로 최장 20년 동안 인터넷을 통해 공중이 이용할 수 있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그 기록물을 보관해야 한다.

(3) (1)목과 (2)목에도 불구하고, 마감된 회기는 다음 목적에 한해 개최할 수 있다.

(A) 공무원이나 직원의 임명, 고용, 실적 평가 또는 해고의 심의, 의회 의원 또는 다른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해 제기되는 고소나 기소의 심의 또는 청문, 또는 의회 직원의 등급 분류 및 보상 결정.

(B) 의회의 의원이나 그 직원의 안전과 보안 또는 의회가 사용하는 일체의 건물과 지면의 안전과 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의 심의.

(C) 공개 회의에서 논의하면 계쟁 중이거나 임박한 소송과 관련하여 해당 원이나 위원회의 이해를 보호해 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때, 해당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 카운슬러와 협의하거나 그로부터 자문 청취.

(2)(4) 동일한 정당의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상원 의원, 주의회 하원 의원, 또는 양원 의원의 의원 총회는 회기가 마감되어도 회의를 할 수 있다.

(3)(5) 의회는 각 원의 의원 중 3분의 2가 동의하는, 의사록에 입력된 호명 표결에 의해, 또는 법령에 의해 채택된 동일 결의안으로 이 호를 실행해야 하고, (1), (3) 목에 따라 개최된 비공개 회의의 경우, 비공개 회의와 비공개 회의의 목적에 대해 대중에게 적절히 통지할 것을 규정해야 한다. 동일 결의안과 법령 간에 충돌이 있을 때, 마지막으로 채택되거나 제정된 것이 우선한다.

(d) 다른 원의 동의가 없이는 어느 원도 10일을 초과하여 또는 다른 장소로 휴회할 수 없다.

제4.2항. California 주 헌법 제IV조 8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항. (a) 재적 의원의 4분의 3의 동의로 의사록에 기재된 호명 표결을 통해 해당 원이 이런 요건을 면제하지 않는 한, 정기 회기에서는 예산 법안 외의 어떤 법안에 대해서도 법안이 소개된 후 31일차까지는 위원회나 양원 중 하나가 청문을 실시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다.

(b) (1) 의회는 법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법률도 만들 수 없으며 법안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법령도 제정할 수 없다. 해당 원이 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사록에 입력된 호명 표결에 의해 본 요건을 면제하지 않는 한, 각 원에서 3일에 제목을 공표하지 않으면 어떤 법안도 통과될 수 없다.

(2) 개정안과 함께 법안이 최종 형태로 표결 72시간 전까지 인쇄되고, 의원들에게 배포되고, 인터넷에 발표되지 않으면, 어떤 법안도 통과되거나 법령이 될 수 없다. 단, 주지사가 기 선포된 제XIII B 조 3항 (c)호의 (2)목에 명시된 비상 사태의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서면 설명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해당 법안을 심의하는 원이 그 법안에 대한 표결 전에 별도 호명 표결에 부쳐 의원 2/3의 찬성을 얻을 경우 위 통지 기간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3) 호명 표결로 의사록에 입력함으로써 각 원의 의원 과반수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떤 법안도 통과될 수 없다.

(c) (1) 본 호의 (2)목 및 (3)목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정기 회기에서 제정된 법령은 해당 법령의 제정일로부터 90일의 기간 다음 1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특별 회기에 제정된 법령은 해당 법안이 통과된 특별 회기의 정회 후 91일차에 효력이 발생한다.

(2) 입법구, 의회구 또는 다른 선거구의 경계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법령을 제외하고, 의회가 2년간의 의회 회기의 두 번째 역년에 다시 소집하도록 공동 휴회를 위해 정회하는 날까지 의회에서 통과돼 그 이후로 주지사가 보관하고 있는 법령은, 해당 법령에 영향을 미치는 국민투표 청원서가 1월 1일 전에 제II조 10항의 (d)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제출(그런 경우에 청원이 제II조 9항의 (b)호에 따라 주무장관에게 제출되지 않았으면, 제정일 후 91일차에 발효된다)되지 않으면 해당 법령의 제정일 직후 1월 1일에 발효된다.

(3) 선거를 요하는 법령들, 주의 통상적인 현재 경비를 위해 세금 징수 또는 지출을 규정하는 법령들, 긴급 법령들은 제정 즉시 발효되어야 한다.

(d) 긴급 법령들은 공안, 공공 건강 또는 안전의 즉각적인 보존을 위해 필요한 법령들이다.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실들에 대한 설명이 법안의 한 항에 제시되어야 한다. 각 원에서 해당 항과 해당 법안은 별도로, 의원 3분의 2가 동의하고 의사록에 호명 표결을 입력함으로써 각각 통과되어야 한다. 긴급 법령으로는 어떤 공직도 만들거나 폐지할 수 없으며, 어떤 공직의 급여, 임기, 또는 의무도 변경할 수 없고, 어떤 특허 또는 특권도 부여할 수 없으며, 어떤 부여된 권리나 이해도 만들 수 없다.

제5항. 정부법 개정안.

제5.1. 정부법 9026.5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9026.5. 공공적 의사진행에 대한 텔레비전 중계 기록물 또는 다른 시청각 기록물.

(a) 의회의 각원과 각원위원회의 공적 의사진행에 관한 텔레비전 중계 기록물 또는 기타 시청각 기록물은 어떤 합법적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주 또는 주의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에게 어떠한 요금도 납입하지 하거나 만드는 어떤 텔레비전 신호도 선출적 공직 또는 선거인들에게 제출된 무기명 투표 법률개정안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일체의 유세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일체의 정치적 또는 상업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지 못한다.

이 항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상업적 목적"은 다음 둘 중 어떤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

(1) 하원이 제작하는 텔레비전 신호를 인가 받은 뉴스 기관 또는 기타 비영리 기관에서 교육 또는 공공성 프로그램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하원에 의해 승인된 바와 같이, 하원이 만드는 텔레비전 신호에 대한 무편집 동영상물을 유료 가입자에게 제삼자가 전송하는 행위.

(b) California 주 헌법 제IV조 7항 (c)호 (2)목과 8항 (b) 호 (2)목을 준수하는 의회의 비용은 California 주 헌법 IV 조 7.5항에 따라서 허용되는 총 경비의 일부로 포함되어야 한다. 이 항을 위반하는 모든 사람이나 조직은 경범죄의 벌에 처한다.

제5.2항. 정부법 10248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0248. 공공 컴퓨터 네트워크, 필요한 입법상의 정보.

(a) 입법 자문단은 규칙 하원 위원회 및 규칙 상원 위원회의 조언에 따라 전자적인 형식으로 다음 정보 모두를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 입법상의 일정, 입법 위원회 청문 일정, 의회의 양원의 회의장에서 논의 중인 문제들의 목록, 및 의회 위원회들과 그 위원들의 목록.

(2) 각 법안의 수정, 등록 및 편제된 형식을 포함한, 각각의 현재 의회 회기에 소개된 각 법안의 텍스트.

(3) 각각의 현재 입법 회기에서 소개되고 수정된 각 법안의 연혁.

(4) 각각의 현재 입법 회기에서 소개되고 수정된 각 법안의 상태.

(5) 각각의 현재 입법 회기에서 각 법안과 관련하여 입법 위원회에 의해 준비된 모든 법안 분석.

(6) California 주 헌법 제IV조 7항 (c) 하위 조항 (2)목에 따라 의회가 제작하도록 한, 입법 의사진행에 대한 모든 시청각 기록물. 각 기록물은 기록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안전한 형식으로 보관되어야 할 날 이후로 최소 20년간 인터넷을 통해 공중이 이용할 수 있고 다운로드할 수 있게 유지되어야 한다.

(6)(7) 각각의 현재 입법 회기에서 각 법안에 관련된 모든 표결 정보.

(7)(8) 각각의 현재 입법 회기에서 어떤 법안에 관련된 모든 표결 정보.

(8)(9) California 법전.

(9)(10) California 주 헌법.

(10)(11) 1993년 1월 1일 이후로 제정된 모든 법령.

(b) (a)호에서 정의된 정보를 최근 비전용의 비영리적 협조적 공공 컴퓨터 네트워크 방식의 접속을 통해 공중에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해당 정보는 이 주의 일반 대중이 최대한 많이 접속할 수 있도록 하나 이상의 형식과 하나 이상의 수단으로 제공해야 한다. 해당 정보에 접속하는 자는 누구나 정보에 제약 없이 접속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그 정보에 대한 공공의 이용을 촉진하는 다른 접속 수단으로도 제공할 수 있다. 입법 자문단이 운영하고 유지하는 입법 정보 시스템에서 유지되는 정보는 정보 시스템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 후 가능한 가장 이른 시간에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정보 시스템에서 유지되지 않는 정보는 입법 자문단이 이용할 수 있게 된 후 가능한 가장 이른 시간에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c) (a)호에서 확인되는 정보의 전자 디지털 형식을 설명하며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문서는 (b)호에 명시된 컴퓨터 네트워크 방식의 접속을 통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

(d) 정보에 접속하는 사람에 대한 개인적 정보는 그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만 유지될 수 있다.

(e) 어떤 비용이나 다른 부과금도 (b)호에 명시된 컴퓨터 네트워크로 접속할 수 있는 정보에 접속하는 조건으로 입법 자문단에 의해 부과될 수 없다.

(f) (b)호에 명시된 컴퓨터 네트워크로 제공되는 전자적 공공 접속은 그 정보에 대한 다른 전자적 배포 또는 인쇄물 배포에 추가되어야 한다.

(g) 이 항에 따라 취한 어떤 소송도 이 항에 따라 이용할 수 있게 된 정보 중 어떤 것과 관련된 California 주의 모든 저작권이나 다른 재산권적 이해나 권리를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6항. 발의법안의 방어

제6.1항. 12511.7항을 정부법에 추가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511.7. California 주의회 투명성 법의 번호

California 주의회 투명성 법의 유효성에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다음이 적용되어야 한다.

(a) 의회는 항소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위헌적이라고 선언되지 않는 한 이 법을 계속 준수해야 한다.

(b) (c)호에서 제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검찰총장은 이 법의 유효성에 대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모든 소송에 대해 변호해야 하고, 이 법의 유효성을 다루는 모든 소송에 개입할 무조건적 권리를 갖는다.

(c) 검찰총장이 어떤 소송에서 법의 유효성을 변호하기를 거절하는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은 주의 법이 적절히 실행되는지 보기 위해 검찰총장의 헌법적 의무에 따라 법률을 방어하는 원고(원고) 적격성을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적절하다면, 그 법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판결하는 어떤 법원의 판결로부터의 항소를 제출해야 하거나 그 판결의 검토를 구해야 한다.

(d) 법의 공식 제안자들은 이 법의 유효성이나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소송에서 이해의 개입자들로서 또는 실질적 당사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를 갖는다. 주지사와 검찰총장이 법안의 유효성을 변호하기를 거절하는 경우, 공식 제안자들도 모든 해당 소송에서 그 법의 유효성에 대한 주의 이해를 주장하는 데에서 주를 대신해서 행동하고 그 법을 무효화하는 모든 판결로부터 항소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e) 이 항의 어떤 것도 다른 공무원이 본 법의 유효성에 대한 주의 이해를 주장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제7항. 예비 선거에서 제안된 상충 법령의 폐지.

의회가 다수결 표결에 의해 승인된 2016년 6월 예비 선거를 위한 무기명 투표에 대해 법안을 제출하는 경우, 이 발의법안에 의해 채택된 목적이나 조항에(을) 불일치하거나 방해하는 그 법안의 어떤 규정도 무효이고 법률적 효력이 없어져야 한다.

제8항. 분리 가능 조항.

본 법의 조항은 분리가 가능하다. 본 법의 어떤 조항이나 그 적용이 무효라고 간주되는 경우, 그 무효성은 무효인 조항이나 적용이 없는 경우에 효력이 주어질 수 있는 다른 조항이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어떤 형식으로든 전술한 내용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않고, 유권자들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California 주 헌법 제IV조 7항 개정안은 California 주 헌법 제IV조 8항 개정안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고, (2) 입법적 의사진행의 시청각적 기록물을 제작하고 공개하고 유지하게 하는 의회의 의무는 California 주 헌법 IV조 7항 개정안에 따라 의사진행을 기록하고 해당 기록물들을 방송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전송할 개인의 권리에서 분리될 수 있고, (3) 의사진행을 기록하는 권리는 기록물들을 방송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전송하는 권리에서 분리될 수 있고, (4) 본 발의법안의 법령적 개정안은 헌법 개정안에서 분리될 수 있다.

제9항. 개정안.

본 법의 성문법적 조항은 유권자들의 승인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정되지 않는다. 단, 의회는 각 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와 의사록에 입력되는 호명 표결로써 법령을 제정해 기록물을 인터넷을 통해 대중에게 제공하고 다운로드하는 시간이 연장되도록 정부법 10248조 (a)호 (6)목을 수정할 수 있다.

제10항. 상충하는 무기명 투표 법률개정안들.

(a) 본 발의법안과, 여기에서 다루어지는 문제들 중 어떤 것에서 입법 과정의 투명성과 관련되는 어떤 다른 법안 또는 법안들이 동일한 선거에서 유권자 과반수에 의해 승인되고, 본 발의법안이 어떤 다른 해당 법안이나 법안들보다 더 많은 수의 찬성 투표를 받는 경우, 본 발의법안은 전체적으로 우선 적용될 것이고 다른 법안이나 법안들은 무효이고 법률적 효력이 없게 된다.

(b) 본 발의법안과 의회가 무기명 투표에 부친 법령안이 동일한 선거에서 유권자 과반수에 의해 승인되는 경우, 본 발의법안의 합헌적 개정안은 법령안이 본 발의법안의 목적, 의도 또는 규정과(을) 상충하거나 불일치하거나 방해하는 정도까지 의회에 의해 무기명 투표에 부쳐진 모든 법령보다 우선한다.

(c) 본 발의법안이 유권자들에 의해 승인되지만 동일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에 의해 승인되고 더 많은 수의 찬성 투표를 받는 모든 다른 상충 법안에 의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대체되고, 상충 법안이나 그 상충법안의 대체 규정들이 후속적으로 무효라고 간주되는 경우, 전에 대체된 본 발의법안 규정들은 후속적으로 무효화된 상충 법안의 규정에 의해 대체되는 정도까지 자동 발효되며 완전한 법률적 효력이 주어진다.

발의안 제 55호

California주 헌법 제II조 8항의 조항에 따라 본 발의안을 주민에게 제출한다.

본 발의안은 California주 헌법의 조항을 수정한다. 삭제하도록 제안된 기존 조항은 취소선으로 인쇄되었고, 새로 추가된 조항은 기울임체로 인쇄되어 새로운 조항임을 명시하였다.

제안 법

California 아동교육보건법 2016

제1항. 제목.

이 법안은 "California 아동교육보건법 2016"이라 부르고 지칭한다.

제2항. 결론.

(a) California주는 최근 불경기 중 교육, 보건, 기타 주/지방 필수 서비스에서 560억 달러 이상을 삭감하였다. 삭감 결과 교사 수천 명이 해고되고, 학교 학급규모가 증가하고, 칼리지 등록금이 상승하고, 필수 서비스가 감소하였다. 2012년 California 유권자들이 통과시킨 임시 증세로 손실 재원의 일부가 부분적으로 상쇄되는 효과가 있었으나, 2016년 말 해당 세금의 만료가 다가오기 시작함에 따라 적자 폭이 늘고 학교 삭감액이 늘어날 것이다.

(b) 당장 California 주민들 최고 부유층을 대상으로 현 소득세율의 임시 확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연간 수십 억 달러의 세입 손실로 조만간 공립학교 예산이 또 다시 엄청나게 삭감될 것이다. 공립학교 재원은 불경기 중에 최대한 줄인 바 있다. 학교와 칼리지의 회복이 막

시작된 지금 다시 한 번 삭감을 하기보다는 교육 재원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하는 가정을 돕기 위해 판매세 임시 증가의 만료를 내버려둘 수는 있으나 지금은 California 최고 부유층에게 필요도 없고 학교가 감당할 수도 없는 세금 삭감을 허용할 때가 아니다.

(c) California의 미래는 구백만 아이들의 성공에 달려 있다. California의 모든 어린이는 성공한 성인이 되도록 공정한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 그러나 성공한 성인이 되려는 어린이는 양질의 교육과 보건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d) 어린이에게 교육과 보건은 뗄 수 없으며 상호 의존적인 요소이다. California 어린이에게 양질의 교육 이용권은 성공의 기본 요소이다. 학교 수가 충분하다 해도 어린이가 질병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면 교육을 받을 수 없다. 보건 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한 커뮤니티에서 성장하는 어린이는 질병에 걸리거나 만성 질환에 시달리느라 정기적으로 학교에 출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e) 보건 프로그램의 재원이 부족하면 California에도 재정적으로 해를 끼친다. 어린이와 그 가족의 보건에 신규 주 재원이 들어갈 때마다 연방 자금과 자동으로 연결된다. 즉 현재 California는 어린이와 그 가족의 보건 이용에 사용할 수도 있을 연방 상응 보조금 수십억 달러를 놓치고 있다는 의미이다.

(f) 연구에 따르면 양질의 교육 및 보건을 조기부터 이용하는 것이 어린이의 학업 성적과 성공적 인생에 도움이 된다. California는 주의 어린이가 번성하고 최고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교육과 보건 서비스를 받도록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g) 예를 들어 California 공립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미국에서 가장 많다. 학급규모가 미국 평균보다 80 퍼센트나 크다. 학급규모가 커지면서 지난 5년간 미래 교사 양성 교육을 받는 California 주민들 주민의 수가 50 퍼센트 줄었다.

(h) 마찬가지로 California 커뮤니티 칼리지 예산이 불경기 동안 대폭 삭감되면서 직업 교육과 알맞은 필수 대학 교육을 받기에 California 어린이, 특히 저소득층 자녀의 기량이 약화되었다.

(i) California주의 보건 서비스 재원은 만성적으로 부족하다. California주는 보건비 지출 명목에서 50개 주 가운데 48위로 어린이와 그 가족, 노인, 장애인 등이 보건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어렵다. 어린이 보건 자원 부족은 노인 질병을 증가와 장기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진다. 보건 서비스 상환 능력이 개선되면 어린이가 의사와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만성적인 자원 부족 현상으로 병원이나 의원이 폐업하면 커뮤니티 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j) California 아동교육보건법 2016은 California주의 모든 어린이가 건강을 지키고 양질의 공립학교를 다니며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형편이 나은 부부 연소득 오십만 달러인 가정의 소득세율을 일시적으로 확대한다.

(k) 이 법안은 소득 250,000달러 미만인 자의 세율을 올리지 않는다. 이 법안은 2012년 유권자가 승인했던 판매세 임시 증가를 연장하지 않는다.

(l) 소득세입은 지방 교육구와 커뮤니티 칼리지로 바로 전달되며 저소득층 어린이와 그 가족의 의료비 지출을 지원하도록 California주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해당 예산은 자유로운 주 재원 조달을 통해 균형을 맞추어 노인, 저소득층 어린이, 일하는 가정, 소규모 사업주를 위한 서비스가 이 이상 대폭 삭감되지 않도록 방지한다. 모두가 혜택을 본다.

(m) 이러한 자금이 유권자가 의도한 곳으로 모두 확실히 이동하도록 입법부가 다른 목적으로 전환할 수 없는 특별 자금으로 지정한다. 이러한 세입은 주 관료 체계나 관리비에 단 한 푼도 지출할 수 없다.

(n) 이러한 자금은 매년 독립적인 감사를 통해 이 법안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지출했는지 확인한다. 자금이 오용될 경우 선출공무원을 기소하여 형사처벌에 처한다.

(o) California주는 지난 15년간 닷컴 붐과 불경기를 지나오며 적자 폭이 깊어지고 대폭 삭감을 통해 예산이 크게 변동하였다. 주의 경기불황대비 자금을 유지하면 예산이 안정되고 과거 벼락 경기와 불경기의 교체 주기를 피할 수 있으며 향후 경기가 안 좋을 때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주민의 교육 및 보건비가 삭감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제3항. 목적과 취지.

(a) 이 법안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유권자의 주된 목적과 취지는 California 지방 공립학교의 교육과 가르침의 질을 낮출 수 있는 위험한 삭감을 방지하고, 어린이 및 California의 법적 거주자인 가족 구성원을 위한 필수 보건 서비스에 적절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b) 이 법안의 취지는 소득 오십만 달러 이상 부부 또는 이십오만 달러 이상 개인에 과도한 세금 우대 조치를 제공하는 대신 부유한 California 주민들 주민의 현 소득세율을 임시로 확대하여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부유층에 혜택을 돌려주는 대신 모든 California 어린이에게 양질의 공교육을 제공하고, 학교에 다니며 학습하는 데 필요한 양질의 보건 서비스 제공에만 지출하는 특별 계정으로 자금을 보낸다.

(c) 이 법안의 취지는 만성적인 예산 부족과 예산 삭감의 나날로 돌아가지 않도록 예방하면서 California의 현 균형예산을 유지하고 학교, 커뮤니티 칼리지, 의료 등에 안정적으로 지출하는 것이다.

(d) 이 법안은 학교에 사용하기 위해 조달한 세입을 교육구와 커뮤니티 칼리지로 곧장 보내 관리비가 아닌 교실 비용으로 지출하도록 주 헌법에 보장된다. 이러한 학교 자금은 주 예산이 어떠한 중단되거나 보류되지 않는다.

(e) 이 법안은 보건비에 사용하기 위해 조달한 세입을 연방 자금에 상응하는 기존의 주 의료비 보충에 사용하도록 주 헌법에 보장된다.

(f) 이 법안의 모든 세입은 매년 지방 감사의 대상이며, 독립 회계감사관의 감사 하에 이 법안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했는지 확인한다.

제4항. California주 헌법 제XIII조 36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6항. (a) 본 항의 목적상,

(1) "공공 안전 서비스"의 포함 사항은 다음과 같다.

(A) 법집행 인원, 범죄 기소에 배정된 검사, 법원 보안 직원 등을 포함한 공공 안전 담당자의 채용과 교육.

(B) 지방 교도소 운영, 청소년 및 성인 범죄자의 구금과 처분과 서비스 제공 및 감시.

(C) 아동 학대나 방임이나 착취 방지, 학대당하거나 방임되거나 착취당하거나 학대, 방임, 착취당할 위험에 놓인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해당 아동의 가족에 서비스 제공, 입양 서비스 제공, 성인 보호 서비스 제공.

(D) 학교 낙제, 자신 또는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행위, 노숙, 막을 수 있는 투옥 또는 시설 감금 등을 줄이기 위하여 어린이와 성인에게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

(E) 상당한 학대의 경우 회복 서비스 제공과 치료 및 예방.

(2) "2011 재조정법"이란 2012년 9월 30일 또는 이전에 2011 재조정법이라 명명한 주 예산 계획 실행을 위하여 제정된 법이라는 의미로, 관련 신고 의무를 포함한 공공 안전 서비스 책임을 지방 기관에 배정한다. 이 제정법은 지방 기관이 연방법과 해당 법에서 정한 자원 요건에 따라 최대한의 유연성을 가지고 공공 안전 서비스의 설계, 관리, 제공을 통제하도록 한다. 단, 2011 재조정법은 사전 정기검사, 진단, 치료(EPSDT) 프로그램과 정신 건강 관리 의료를 제외하고 2012년 1월 1일 이후 지방 기관에 할당된 신규 프로그램을 포함하지 않는다.

(b) (1) 하위 조항 (d) 2011-12 회계연도에 시작하여 이후 계속에 나온 내용을 제외하고, 다음 금액은 다음 정부법 30025항에 따라 지방세입기금 2011로 예치한다.

(A) 2011년 7월 1일에 적힌 수익 및 과세법 6051.15항과 6201.15항에 기술된 세금에서 파생된 환급 제외 모든 세입.

(B) 2011년 7월 1일에 적힌 수익 및 과세법 11005항에 기술된 자동차 면허 수수료에서 파생된 환급 제외 모든 세입.

(2) 2011년 7월 1일부로 (1)항에 따라 예치한 세입은 California주 헌법 제XVI조 8항 목적의 세금 수입 또는 일반 자금 세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c) (1) 지방세입자금 2011에 예치된 자금은 지방 기관에 의한 공공 안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금으로만 계속 전용한다. 2011 재조정법 전면 실행까지는 지방 기관을 대신해서 공공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느라 발생한 주의 프로그램 비용 상환에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자금 배정 방법은 2011 재조정법에 명시한다.

(2) 카운티 재무장관, 시와 카운티 재무장관, 기타 해당 직무 담당자는 각 카운티 또는 시와 카운티의 재무부 내에서 지방세입자금 2011을 조성한다. 각 카운티 지방세입자금 2011의 자금은 2011 재조정법에 명시한 지방 기관에 의한 공공 안전 서비스 제공에만 사용한다.

(3) 제XIII B조 6항 또는 다른 헌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2011 재조정법 또는 다른 법 도입 또는 여타 행정 명령 또는 해당 법 실행을 위해 발표한 행정 지침에 의한 신규 프로그램 명령이나 지방 기관에 대한 상위 서비스는 해당 항의 의미 안에서 주에 의한 기금 보조금 제공 강제를 구성하지 않는다. 공공 안전 서비스 책임이나 기타 사안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정부법 5권 2부 1편 9장 (54950항으로 시작)을 준수하는 지방 기관의 모든 요건은 제XIII B조 6항 이하의 배상 명령이 될 수 없다.

(4) (A) 2012년 9월 30일 이후에 제정되어 2011 재조정법에 의한 프로그램 의무 또는 서비스 수준으로 이미 지방 기관이 짚어진 비용 증대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은 매년 주에서 비용 증가분에 자금을 제공하는 정도까지만 지방 기관에 적용한다. 지역 기관은 본 하위 조항에 기술되어 법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수준을 기금이 제공하는 수준 이상으로 제공할 의무는 없다.

(B) 2011년 10월 9일 이후에 시행되어 2011 재조정법 시행이 의무적이지 않으나 2011 재조정법에 의한 프로그램 의무 또는 서비스 수준으로 이미 지방 기관이 짚어진 비용 증대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제, 행정 명령, 행정 지침은 매년 주에서 비용 증가분에 자금을 제공하는 정도까지만 지방 기관에 적용한다. 지역 기관은 본 하위 조항에 기술된 새 규제, 행정 명령, 행정 지침에 따라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수준을 기금이 제공하는 수준 이상으로 제공할 의무는 없다.

(C) 하위 조항 (A)와 (B)에 기술된 대로 제공받은 자금 수준 이상의 지방 기관 제공 상위 서비스나 신규 프로그램은 주에 기금 보조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제XIII B조 6항에 달리 해당되지도 않는다. 본 조항은 2011년 1월 2일 작성된 제XIII B조 6항 이하 (a) 단락 (2) 보조금에서 현재 제외된 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D) 주는 2011 재조정법에 의한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수준으로 인해 지방 기관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 상승에 전체적 효과를 미치는 계획이나 면제에 대하여, 연방법에서 요구하는 정도까지의 계획이나 면제나 수정 혹은 주에서 매년 비용 상승분에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여타의 계획이나 면제나 수정을 연방 정부에 제출하지 않는다.

(E) 이 항목에 따라 주는 지방 기관의 요청으로 주에서 부과한 명령에 대하여 또는 연방법 준수를 위하여 기금 보조금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 이 항목에서 요구한 주 자금의 출처는 하위 조항 (b)와 (d)에 기술한 내용, 증가 재산세, 지방세입자금 판매세 계정의 사회복지 하위 계정 이외여야 한다.

(5) (A) 하위 조항 (a) 단락 (1)을 포함한 하위절 (C)~(E)에 기술되고 2011 재조정법에 포함된 프로그램에 대하여, 2011 재조정법에 기술된 연방 상응 보조금 조건을 변경하는 연방 법령 또는 규정 변동이 있고 지방 기관의 비용 증가에 전체적 영향이 있을 경우, 주에서는 해당 비용에서 비연방 몫의 50퍼센트 이상을 매년 주에서 정한 대로 제공한다.

(B) 하위 조항 (a) 단락 (1)을 포함한 하위절 (C)~(E)에 기술되고 2011 재조정법에 포함된 프로그램 한 개 이상에 관련하여 주가 연방 사법 또는 행정 소송 고발 대상이 되어 벌금 형태로 비용을 부과받거나, 2011 재조정법에 의해 강제된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수준으로 인해 지방 기관이 이미 짊어진 비용의 상승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합의 또는 사법 및 행정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주는 해당 비용에서 비연방 몫의 50퍼센트 이상을 매년 주에서 정한 대로 제공한다. 해당 합의나 명령이 내각 의무 수행에 실패하거나, 선의의 법적 의무 수행에 실패하거나, 방치 또는 무모한 방식으로 행동한 지방 기관 한 곳 이상에 관계되었다고 주에서 판단하는 경우 주는 지불할 필요가 없다.

(C) 이 항목에 나온 주 자금의 출처는 하위 조항 (b)와 (d)에 기술한 내용, 증가 재산세, 지방세입자금 판매세 계정의 사회복지 하위 계정 이외여야 한다.

(6) 만일 주 또는 지역 기관이 본 조항 또는 2011 재조정법에 따른 의무나 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적절한 당사자는 사법적 구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들은 다른 모든 민사적 사안들에 우선합니다.

(7) 2011년 카운티 지방 수익 기금으로 입금된 기금은 연방 상응 보조금에 대한 주의 적격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방식 및 주의 공공 안전 서비스 조항을 관할하는 적용 가능한 연방 기준을 주가 준수하는 방식으로 지출해야 합니다.

(8) 지역 기관은 공공 안전 서비스를 다른 기금으로 대체하기 위해 2011년 카운티 지방 수익 기금에 입금된 기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d) 만일 하부조항 (b)에 설명된 세금이 감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되는 경우, 주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면 하부조항 (b)에서 설명된 세금에 의해 제공되었을 총액 이상의 금액으로 2011년 지역 수익 기금에 금액을 매년 제공해야 합니다. 2011 재조정법에 설명되는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 및 2011 재조정법에 의해 총당된 공공 안전 서비스 책임을 수행할 것이 지방 기관들에 요구되는 한 해당 금액을 주에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일 주에서 해당 금액을 매년 총당하는 경우, 회계 감사관은 비례적 월간 몫으로 일반 기금에서 2011년 지역 수익 기금으로 금액을 송금해야 합니다. 이후, 회계 감사관은 2011 재조정법에 의해 지시된 방식으로 지역 기관들에 이러한 금액을 배분해야 합니다. 이 하부조항에 의거한 주의 채무는 일반 기금 돈에 대한 요구권 우선순위가 제XVI조 제8항에 따라 자금을 따로 적립하도록 하는 일차적 우선순위 및 제 XVI조 제1항에 설명된 유권자 승인된 빚과 채무를 지불해야 하는 일차적 우선순위보다 낮습니다.

(e) (1) 지역 공공 안전 서비스에 중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공 교육이 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부조항 (f)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본 조항에 의해 부과된 점증하는 세금에서 파생된 수익을 받고 배분하기 위해 본 문서에 의해 일반 기금 내에 교육 보호 계정이 생성됩니다.

(2) (A) 2013년 6월 30일 이전에, 그리고 2014년부터 2018 2030년까지 매년 6월 30일 전에, 재무 담당 이사는 추가 수익 총 금액에서 다음 회계연도 동안 교육 보호 계정으로 송금을 위해 가용하게 될 하부조항 (f)에서 정해진 정증적으로 증가하는 세율로부터 파생될 환급을 차감한 금액을 추산해야 합니다. 재무 담당 이사는 추가적 수익에서 2012-13 회계연도 말까지 받게 될 환급을 차감하여 2013년 1월 10일까지 동일한 추산을 해야 합니다.

(B) 2013-14년부터 2018-19 2030-31년까지 각 회계연도의 첫 세 분기 각각의 마지막 10일 동안, 회계 감사관은 해당 회계연도에 대해 하부조항 (A)에 따라 추산된 총 금액의 사분의 일을 교육 보호 계정에 송금해야 하며, 단, 이러한 금액이 하부단락 (D)에 따라 수정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C) 2012-13년부터 2020-21 2032-33년까지 각 회계연도에서, 담당 재무 이사는 적용 가능한 경우 다음의 금액들을 함께 추가하여 하부단락 (D)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교육 보호 계정에 대한 조정을 계산해야 합니다.

(i) 2012-13년부터 2018-19 2030-31년까지 각 회계연도의 마지막 분기에서, 담당 재무 이사는 하부단락 (A)에 의거하여 회계연도에 대한 추산을 다시 계산해야 하며, 이러한 업데이트된 추산액에서 해당 회계연도에 교육 보호 계정으로 이전에 송금된 금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ii) 2015년 6월 및 2016년부터 2021 2033년 매 6월에, 담당 재무 이사는 추가적 수익에서 이전에 이 년이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대한 하부조항 (f)의 점증하는 세율에서 파생된 환급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전 이 년으로 끝나는 회계연도에 대해 (i)항에서 계산된 업데이트된 추산 금액은 이러한 최종 결정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D) 만일 하부단락 (C)에 의해 결정된 합계가 양수인 경우, 회계 감사관은 회계연도 말 10일 전 이내에 해당 합계에 상응하는 금액을 교육 보호 계정에 송금해야 합니다. 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 회계 감사관은 총 감소액이 본 문서에 설명된 음수와 동일해질 때까지 교육 보호 계정으로의 뒤이은 분기별 송금을 정지하거나 줄여야 합니다. 하부단락 (C)의 (i)항에 따른 모든 계산의 취지를 위해, 분기별 송금 금액은 본 하부단락에 따른 감소나 정지를 반영하도록 수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E) 2018년 6월 30일 이전 및 2019년에서 2030년까지 6월 30일 전에, 담당 재무 이사는 다른 모든 가용한 일반 기금 수익과 결합하였을 때, 다음을 충족하도록 요구될 하부조항 (f)에서 이루어진 증분적 세율 증가로부터 다음 해 회계 연도에서 파생하는 환급을 추가적 수익 금액에서 차감하여 추정해야 합니다.

(i) 해당하는 다음 회계연도에 대해 제XVI조 제8항의 최소 자금조성 보증 및

(ii) (i)항 전체를 이미 설명하는 모든 프로그램 지출을 제외하고, 해당하는 다음의 회계연도에 대한 업무부하 예산. 본 항의 취지에 따라, "업무부하 예산"은 정부법 제 13308.05항에 명시된 의미를 가지며, 해당 조항에 쓰여 있고 2016년 1월 1일 재무부에 의해 해석된 대로의 의미를 가지되, 단, "현재 승인된 서비스"는 2016년 1월 1일자 정부법 제13308.05항에 의거하여 "현재 승인된 서비스"로 간주되었어야 하는 해당 서비스만을 의미한다.

(F) California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과 그들의 학부모들이 정기적으로 질 높은 건강 관리를 받도록 하여 이를 통해 건강 관련 문제로 인한 학교 결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담당 재무 이사는 다음 회계년도 동안 교육 보호 계정으로 송금 가능한 금액이 해당하는 다음 회계연도에 대해 하부단락 (E)에 의거하여 해당 계정에 대해 요구되는 금액을 초과할 때 추산할 때마다, 담당 재무 이사는 나머지 금액을 파악 정의해야 합니다. 단일한 회계연도마다 최대 이십 억 달러까지 해당 나머지의 오 퍼센트가 교육 보호 계정에서 California 주 건강 관리 서비스 부서로 분기별 기준으로 회계 감사관에 할당되어, 복지기관법 제9부 파트 3을 포함하여 제7장 (제 14000항으로 시작)에서 제8.9장 (제 14700항)에서 설명된 기존 건강 치료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기금을 늘려야 합니다. 본 조항에 따른 건강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California 주 건강 관리 서비스 부서와 계약을 맺은 Medi-Cal 수익자들을 위한 건강 관리 제공을 관리하는 다른 주체나 건강 계획 및 보건안전법 제 1250항 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료 전문가들과 의료 보건 시설들에 의해 어린이 및 그 가족에 제공되는 중대하고 긴급의 급성의 예방적 건강 치료 시스템을 위해서만 이 기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G) 하부단락 (F)에 기재된 할당은 비상 예산이 선언된 회계연도 동안 법령에 의해 정지될 수 있으나, 단, 해당 할당액은 해당 연도에 총 일반 기금 지출에 있어 비례적 감소 이상으로 감소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 조항의 취지에 따라, "비상 예산"이란 제XVI조 제22항 하부조항 (b)의 하부단락 (2)에 있는 대로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H) 하부단락 (F)은 기존 주의 일반 기금을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비연방 지불금 몫으로 대체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되며, 연방법과 일관성 있으며 연방 상응 메디케이드 보조금을 획득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3) 교육 보호 계정의 모든 자금은 본 하부단락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학교 지구, 카운티 교육 사무소, 차터 스쿨 및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지원을 위해서, 및 단락 (2)의 하부단락 (F)에 명시된 바와 같이 건강 관리를 위해 계속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A) 본 단락에 따라 교육 목적으로 충당된 금액 중 십일 퍼센트는 California 커뮤니티 칼리지의 California 주지사 위원회에 의해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 매 분기마다 할당되어야 하며, 이의 목적은 교육법 제 84750.5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에 비례하여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 기금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해당 법은 본 조항의 유권자

승인을 받는 즉시 2012년 11월 6일자 내용과 같습니다. 이 하부단락에 따라 계산된 할당액은 교육법 제 84751항의 하부조항 (a), (c) 및 (d)에 명시된 금액에 의해 상계되어야 하며, 해당 조항은 본 조항의 유권자 승인을 받는 즉시 2012년 11월 6일자 내용과 같으며, 교육법 제 84750.5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초과하며, 해당 조항은 본 조항의 유권자 승인을 받는 즉시 2012년 11월 6일자 내용과 같되, 어떤 커뮤니티 칼리지도 전일제에 상응하는 학생 한 명당 백 달러(\$100) 미만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B) 본 단락에 따라 교육 목적으로 충당되는 금액의 팔십 구 퍼센트는 공교육 교육감에 의해, 카운티 교육사무소, 학교 지구, 차터 스쿨 각각에 대해 교육법 제47633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 및 교육법 제2558항 및 42238항에 따라 계산된 수익 한도에 비례하여 학교 지구, 카운티 교육 사무소 및 주의 일반적 목적 기금을 차트 스쿨에 매 분기마다 할당해야 하며, 해당 조항은 본 조항의 유권자 승인을 받는 즉시 2012년 11월 6일자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하게 계산된 금액은 카운티 교육 사무소, 학교 지구 및 차터 스쿨 각각에 대한 교육법 제47635항 및 제42238항의 하부조항 (h) 단락 (1)에서 (7)의 제2558항 하부조항 (c)에 명시된 금액에 의해 상계되어야 하며, 해당 조항은 본 조항의 유권자 승인을 받는 즉시 2012년 11월 6일자 내용과 같으며, 카운티 교육 사무소, 학교 지구 및 각각에 대한 교육법 제2558항, 제42238항, 및 제47633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초과하며, 해당 조항은 본 조항의 유권자 승인을 받는 즉시 2012년 11월 6일자의 내용과 같으며, 단, 어떠한 학교 지구, 카운티 교육 사무소, 또는 차터 스쿨도 평균 일일 출석 단위당 이백 달러(\$200) 미만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4) 이 하부조항은 자가 집행적 성격을 가지며 입법 조치의 효력 발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California 커뮤니티 칼리지의 주지사 위원회 및 공교육 교육감에 의한 교육 보호 계정 내 자금 배분은 제IV조의 제12항에 의거하거나, 제XVI조의 제8항의 단락 하부조항 (h) 적용에 의해서나, 기타 조치에 의해서나, 의회 또는 주지사에 의한 조치 실패에 의해 의회 및 정부가 연간 예산 법안을 입법 실패에 의해 지연되거나 달리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5) 다른 기타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위한 교육 보호 계정 내 입금된 자금을 의회, 주지사 또는 주 정부 기관에 의해 발생한 어떠한 비용이든 지불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6)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카운티 교육 사무실, 학교 지구 또는 차터 스쿨은 교육 보호 계정에서 받은 자금을 자신의 관할권 내에 있는 학교나 학교들에서 어떻게 지출될지를 결정하는 단독적인 권한이 있으나, 단, 적절한 관할 위원회 또는 단체는 관할 위원회 또는 단체의 공개 회의의 개방 세션에서 이러한 지출 결정을 해야 하며, 행정 관리자의 급여나 복지 또는 기타 모든 행정 관리 비용을 위해 교육 보호 계정으로부터 어떠한 기금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각각의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카운티 교육 사무실, 학교 지구 및 차터 스쿨은 교육 보호 계정으로부터 자금을 얼마나 받았는지에 대한 설명 및 해당 자금이 어떻게

지출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매년 인터넷 웹 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7)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카운티 교육 사무실, 학교 지구 및 차터 스쿨에게 요구되는 연간 독립 재무 준수 감사는 다른 모든 법률 요건 이외에도, 교육 보호 계정으로부터 제공된 기금이 본 조항의 요구대로 적절하게 배분되고 지출되었는지 확인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본 조항의 추가적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해당 주체들에 의해 발생한 비용은 교육 보호 계정으로부터 온 기금으로 지불할 수 있으며, 본 조항의 목적에 따라 관리 행정 비용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8) 본 조항에 따라 교육 보호 계정 내 입금에 대한 하부조항 (f)에 따라 파생된 환급을 차감한 수익은 제XVI조의 제8항의 목적에 따라 "일반 기금 수익" "일반 기금 세금 수익금" 및 "학교 지구 및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지원을 위해 주에서 적용할 자금"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f) (1) (A) 유형의 개인적 재산을 소매로 판매하는 특권을 위해 수익 및 과세법 제2부의 파트 1 (제 6001항으로 시작)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 외에도, 2013년 1월 1일 후에서 2017년 1월 1일 전에 이 주에서 소매로 판매된 모든 유형의 개인적 재산의 판매로부터 소매업자의 총 수령액 중 1/4 퍼센트의 비율로 모든 소매업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B) 수익 및 과세법 제2부의 파트 1(제 6001항으로 시작)에 의해 부과된 세금 외에도, 재산의 판매가의 1/4 비율로 이 주에서 보관, 사용 또는 기타 소비에 대하여 2013년 1월 1일자부터 2017년 1월 1일 전에 모든 소매업자로부터 구매한 유형의 개인적 재산의 이 주 안에서의 보관, 사용, 또는 기타 소비에 대해 물품세가 부과됩니다.

(C) 본 조항의 효력일자 이후 입법된 모든 수정사항을 포함하여, 판매 및 사용 세법은 본 단락에 의거하여 과세된 세금에 적용해야 합니다.

(D) 본 단락은 2017년 1월 1일에 효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2) 2012년 1월 1일자 시작하여 이후부터 2019 2031년 1월 1일 이전까지의 모든 과세 연도에 대하여, 수익 및 과세법 제17041항에 의거하여 과세되는 세금과 관련하여, 하부조항 (a) of 수익 및 과세법 제17041항의 하부조항 (a)의 단락 (1)에 기재된 9.3 퍼센트의 비율 및 소득세 구간을 다음 각각에 의해 수정해야 합니다.

(A) (i) 이십 오만 달러(\$250,000)를 초과하나 삼십만 달러(\$300,000)를 초과하지 않는 과세 가능한 소득의 해당 부분의 경우, 세율은 이십 오만 달러(\$250,000)를 초과한 여분의 10.3 퍼센트입니다.

(ii) 삼십만 달러(\$300,000)를 초과하나 오십만 달러(\$500,000)를 초과하지 않는 과세 가능한 소득의 해당 부분의 경우, 세율은 삼십만 달러(\$300,000)를 초과한 여분의 11.3 퍼센트입니다.

(iii) 오십만 달러(\$500,000)를 초과하는 과세 가능한 소득의 해당 부분의 경우, 세율은 오십만 달러(\$500,000)를 초과한 여분의 12.3 퍼센트입니다.

(B) 하부단락 (A)의 (i), (ii) 및 (iii) 조항에 명시된 소득세 구간들은 수익 및 과세법 제17041항의 하부조항 (h)에서 달리 설명된 바와 같이 다시 계산해야 하며, 이는 2013년 1월 1일자부터 시작하는 과세연도에만 해당됩니다.

(C) (i) 수익 및 과세법 제19136항의 하부조항 (g)의 취지에 따라, 본 단락은 효력이 발생한 날짜 2012년 11월 6일에 법 조항에 들어간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ii) 수익 및 과세법 제2부 파트 10 (제17001항으로 시작), 및 파트 10.2(제18401항으로 시작) 목적으로, 본 단락에 의해 설정되고 부과되는 수정된 세금 구간 및 세율은 수익 및 과세법 제17041항에 따라 설정되고 부과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D) 본 단락은 2019 2031년 12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3) 2012년 1월 1일자 이후부터 시작하여 2019 2031년 1월 1일 전에, 과세 가능한 연도에 대해, 수익 및 과세법 제17041항에 의거하여 부과된 세금과 관련하여, 수익 및 과세법 제17041항 하부조항 (c)의 단락 (1)에 명시된 9.3 퍼센트 세율 및 소득세 구간을 다음 각각에 의해 수정해야 합니다.

(A) (i) 삼십 사만 달러(\$340,000)를 초과하나 사십만 팔천 달러(\$408,000)를 초과하지 않는 과세 가능한 소득의 해당 부분의 경우, 세율은 삼십 사만 달러(\$340,000)를 초과한 여분의 10.3 퍼센트입니다.

(ii) 사십만 팔천 달러(\$408,000)를 초과하나 육십 팔만 달러(\$680,000)를 초과하지 않는 과세 가능한 소득의 해당 부분의 경우, 세율은 사십만 팔천 달러(\$408,000)를 초과한 여분의 11.3 퍼센트입니다.

(iii) 육십 팔만 달러(\$680,000)를 초과하는 과세 가능한 소득의 해당 부분의 경우, 세율은 육십 팔만 달러(\$680,000)를 초과한 여분의 12.3 퍼센트입니다.

(B) 하부단락 (A)의 (i), (ii) 및 (iii) 조항에 명시된 소득세 구간들은 수익 및 과세법 제17041항의 하부조항 (h)에서 달리 설명된 바와 같이 다시 계산해야 하며, 이는 2013년 1월 1일자부터 시작하는 과세연도에만 해당됩니다.

(C) (i) 수익 및 과세법 제19136항의 하부조항 (g)의 취지에 따라, 본 단락은 효력이 발생한 날짜 2012년 11월 6일에 법 조항에 들어간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ii) 수익 및 과세법 제2부 파트 10 (제17001항으로 시작), 및 파트 10.2(제18401항으로 시작) 목적으로, 본 단락에 의해 설정되고 부과되는 수정된 세금 구간 및 세율은 수익 및 과세법 제17041항에 따라 설정되고 부과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D) 본 단락은 2019 2031년 12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g) (1) 회계 감사관은 자신의 법적 권한에 따라, 2011년 지역 수익 기금 및 모든 2011년 카운티 지역 수익 기금으로부터의 지출 감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기금이 본 조항과 일관성 있는 방식으로 이용되고 계정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 교육 보호 계정을 감사해야 합니다.

(2) 검찰총장 또는 지역 지구 검사는 교육 보호 계정 또는 2011년 카운티 지역 수익 기금으로부터 모든 자금 유용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해야 하며, 그에 대한 민사적이거나 형사적 처벌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제5항. 충돌하는 법안

개인적 소득에 대한 세율에 영향을 미치는 본 법안 및 다른 법안이 동일한 주 전역 투표지에 수록되어야 하는 경우, 다른 법안(들)과 본 법안이 상충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상충하다고 간주되는 법안보다 본 법안이 더 많은 찬성표를 얻을 경우 본 법안의 전체 조항이 우선권을 가지며 다른 법안의 조항들은 무효가 된다.

제6항. 분리 가능 조항.

본 법안의 조항 또는 그 일부가 어떠한 이유로든 무효 또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결이 날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은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며 이를 위해 본 법안의 조항을 분리할 수 있다.

제7항. 지지자 지위

기타 모든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만일 주, 정부 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들이 본 법안의 합헌성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유권자 승인 후 다른 모든 정부 고용자, 지지자 또는 그의 부재 시에는 이 주의 시민은 그러한 소송이 재판 법정에서든 항소에서든 California 대법원 또는 United States 대법원에 의한 재량적 검토 여부와 무관하게, 헌법성을 지킬 목적으로 본 법안의 합헌성에 도전장을 제기하는 법원 소송에 개입할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소송 방어 수수료 및 비용은 검찰총장에 충당된 기금에 대한 금액이어야 하며, 이는 신속하게 충족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8항. 유효일자

이 법안은 통과 즉시 효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발의안 제 56호

California 주 헌법 제II조 8항의 조항에 따라 본 발의안을 주민에게 제출한다.

본 발의법안은 California 주 헌법에 조항을 추가하고 수익 및 과세법에 조항을 수정 및 추가하므로, 삭제하도록 제안된 기존 조항은 취소선 유형으로 인쇄되었고, 새로 추가된 조항은 기울임체로 인쇄되어 새로운 조항임을 명시하였다.

제안 법

2016년 California 의료, 연구 및 담배 방지 세금 법

제1항. 주요 조사 결과 및 공표 사항.

(a) 담배 이용은 California에서 가장 예방 가능한 사망 및 질병 원인이 되며 매년 40,0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 매년 수천 명의 California 주민들은 담배 사용으로 인해 의료 및 치아 치료를 필요로 하고 있다.

(b) 모든 유형의 암, 심장 및 폐 질환, 구강 질환, 및 담배 관련 질병의 의학적 치료는 California의 과도한 의료 시스템에 계속 큰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다. 담배 사용은 California 주민들에게 매년 의료 지출에서 132억9천만 달러의 비용을 부담시키며 그 중 35억 달러는 납세자들이 California 주민의 의료, 치료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의료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통해 지불하고 있다. 담배 사용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에 따른 비용은 California에서 흡연 및 담배 사용에 따른 연간 경제적 여파에 별도로 103억5천만 달러의 (추정) 비용을 더하고 있다.

(c) 담배세 인상은 담배 사용을 낮추고 의학적 치료 비용을 최소화하며 가족과 아이들의 의료 서비스 이용과 고급 의료를 위해 제공하는 기존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적절한 방법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생명을 구하고 주와 지방 정부의 돈을 절약하게 된다.

(d) 모든 유형의 암, 심장 및 폐 질환, 구강 질환, 및 담배 관련 질병과 상태를 치료하는 기존의 의료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위한 재정지원의 증가로 그러한 질병과 상태에 있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 제공업체의 수가 확장될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지출되는 자금은 연방 자금과 매칭되어 사용되며 이때 연방 정부에서는 이 자금에서 지출되는 1달러 당 최대 9달러를 지출한다.

(e) 대부분의 전자 담배는 니코틴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담배에서 얻은 것으로 매우 중독성이 높은 약물이다. 전자 담배는 현재 어떤 담배 과세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특히 젊은이들에게 더 저렴하고 더 매력적일 가능성이 있다.

(f) 현재 470개 이상의 전자 담배 브랜드가 판매 중이며 7,700가지 이상의 맛이 제공되는데 Captain Crunch, 젤리 곰, 솜사탕, Atomic Fireball, 및 후루트 링(fruit loops) 등 캔디 맛을 포함하여 젊은이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전자 담배에 대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연령 범위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이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이 그룹 중에 전자 담배 사용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세 배 증가했다.

(g) 원인 조사, 조기 감지, 및 효과적인 치료, 관리, 예방, 그리고 모든 유형의 암, 심장 및 폐 질환, 구강 질환, 및 담배 관련 질환의 치료 가능성은 궁극적으로 생명을 구하고 향후 주 및 지방 정부의 자금을 절약하게 된다.

(h) California에서는 모든 타입의 암, 심장 및 폐 질환, 구강 질환 및 담배 관련 질환에 대한 새로운 치료와 효과적 치료에 대한 연구를 시급히 진행해야 한다. 그러한 연구는 과학적 발견을 임상 적용으로 변환하여 그러한 질병과 상태의 발생과 사망률을 낮춘다.

(i) 건강 교육 및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 특히 젊은이들이 흡연과 기타 담배 제품을 배우지 않도록 설계된 예방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여 생명을 구하고 향후 주와 지방 정부의 자금을 절약하게 된다.

(j) 활기찬 담배 통제 프로그램은 목표로 한 공중 보건 노력을 통해 담배 산업의 인종 그룹에 대한 약탈적 마케팅과

싸움으로써 흡연율을 낮추고 궁극적으로 이 California 커뮤니티에서 암, 심장 및 폐 질환, 구강 질환 및 담배 관련 질환을 줄일 수 있다.

(k) 미성년자 대상 담배 제품의 불법 판매, 담배 밀수, 및 담배세 탈세를 줄이기 위한 법집행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실행 및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생명을 구하고 향후에 주와 지방 정부의 자금을 절약하게 된다.

(l) California는 거주자의 의료 필요성 증가에 비해 의사 및 치과 의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1차 및 구강 의료 이용, 담배 관련 질병 치료, 정기 검진 및 기타 긴급한 의료 필요성이 원활히 충족되지 않을 것이다. California 납세자들은 매년 수천 명의 의학 및 치과 학생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지만 거주 프로그램의 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많은 의사와 치과의사들은 어쩔 수 없이 주 밖으로 나가서 교육을 계속함에 따라 California의 환자들은 이들이 제공하는 의료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California에서 수백 명 이상의 의사들이 매년 California 주민들의 건강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될 실행 및 관리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면 생명을 구하고 향후에 주와 지방 정부의 자금을 절약하게 된다.

(m) 의학적 연구 결과 흡연과 기타 담배 제품의 사용은 잇몸 질환 및 골소실, 입과 목의 암, 심한 치아 마모 등 치과 질환을 야기함으로써 구강 의료에 영향을 미친다. 흡연은 잇몸 질환 사례의 절반에 대한 원인이 되어 치아 손실을 야기한다. 흡연자에 대한 경구암 위험은 비흡연자에 비해 6배 이상 높으며 미국에서 모든 경구암의 75%는 담배 사용과 관련된 것이다. 무연 담배의 경구암 위험은 비흡연자보다 50배 더 높다. 임신 중 모체 흡연과 태아의 구순구개열 발달 간에는 연관성이 있다. 금연은 구강 및 식도암의 위험을 50%까지 줄여준다. 담배 사용으로 인한 것 등 치과 질환을 교육, 예방 및 치료하는 자금 지원 프로그램은 California 주민의 삶을 개선하며 향후 주와 지방 정부의 자금을 절약하게 된다.

(n) 담배와 담배 제품 비용 상승은 California 전체에 걸쳐 특히 젊은이들의 흡연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2000년 미국 외과의사 보고서인 담배 이용 감소(Reducing Tobacco Use)에 따르면 담배 제품 가격 인상이 특히 어린이들과 청장년층 사이에서 만연한 담배 사용을 낮추며 담배세 인상으로 "장기적으로 건강상 엄청난 개선"을 가져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존 연구의 검토에서 이 보고서는 담배세 인상이 가장 효과적인 담배 예방 및 통제 전략 중 하나라는 결론을 내렸다. 흡연을 낮추면 앞으로 생명을 구하고 주와 지방 정부의 돈을 절약하게 된다.

(o) 담배세 인상은 흡연과 다른 담배 제품의 사용을 줄이게 되므로 기존 담배세 지원 프로그램의 세수 감소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p) California는 현재 담배 1갑 당 불과 0.87달러의 세금을 부과하고 담배세율에서 35위를 차지하여 미국에서 담배세가 가장 낮은 주 중의 하나임을 반영하고 있다. 2016년 1월 현재, 전국 평균은 1갑 당 1.60달러가 된다. 32개 주에서는 담배 1갑 당 담배 세율 1달러 이상을

부과하고 있으며, California는 다른 주들보다 훨씬 낮다 (Washington: 3.025달러; Oregon: 1.31달러; Nevada: 1.80달러; and Arizona: 2달러). California는 1998년에 마지막으로 담배세를 인상했다.

제2항. 목적 설명.

본 법령의 목적은 담배와 전자 담배 등 기타 담배 제품에 대한 세금을 높임으로써 다음을 이행하는 것이다.

(a) 모든 California 주민,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흡연 및 담배 사용을 줄임으로써 앞으로 California 주민의 생명을 구하고 주와 지방 정부의 자금을 절약한다.

(b) 모든 유형의 암, 심장 및 폐 질환, 구강 질환, 및 담배 관련 질병을 치료하는 기존의 의료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위한 재정지원을 높이도록 자금을 제공하여 의료 제공업체의 수를 확대하고 이러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위한 연방 재정지원을 최대화한다.

(c) 모든 유형의 암, 심장 및 폐 질환, 구강 질환, 및 담배 관련 질병에 대한 원인과 치료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고 그러한 과학적 발견을 임상에 적용하여 질병과 상태의 발병률과 사망률을 낮추도록 자금을 지원한다.

(d) 개인들이 담배와 전자 담배 등 기타 담배 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 예방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한다.

(e) 담배 밀수, 담배세 회피,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 제품의 불법 판매를 줄이고, 담배 사용으로 인한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새로운 의사의 의료 교육에 자금을 지원하고, 담배 사용으로 인한 치과 질환 등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한다.

(f) 현재 California 주민들의 의료 비용 수백만 달러를 절약하고 있는 담배세로 재정이 지원되는 기존 프로그램을 보호한다.

(g) 새로운 관료주의를 만들어내지 않고 이러한 법의 목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모든 자금이 지출되는 방법에 대한 충분한 회계를 제공한다.

제3항. 담배 제품의 정의.

제3.1항. 수익 및 과세법의 제30121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30121. 본 조항의 목적상:

(a) "담배"는 제30003항에 명시(1988년 1월 1일 독회)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b) "담배 제품"은 50% 이상의 담배로 만들거나 이를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시가, 담배, 씹는 담배, 코담배 및 기타 모든 상품이나 제품 흡연, 가열, 씹기, 흡수, 용해, 흡입, 코로 들이마심 또는 다른 어떤 수단으로든 섭취하는 인간의 소비를 위해 담배 또는 니코틴을 포함하거나, 이것으로 만들거나 여기에서 파생된 제품이며 시가, 작은 시가, 씹는 담배, 파이프 담배 또는 코담배 등을 포함하되 여기에 국한되지는 않지만, 궤련은 제외된다. 담배 제품은 전자 담배도 포함해야 한다. 담배 제품은

미국식품의약관리국에서 금연 제품으로 판매하도록 승인하거나 제품이 그러한 승인된 용도로만 표시 및 판매되는 다른 치료 용도인 어떤 제품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담배 제품은 어떤 식품도 포함하지 않는데 그러한 용어는 제6359항에 따라 정의되어 있기 때문이다.

(c) "전자 담배"는 에어로졸 또는 증기 형태로 사람에게 니코틴을 전달할 수 있는 니코틴과 결합하여 판매하는 모든 기기 또는 전달 시스템을 의미하며 전자 담배, 전자 시가, 전자 파이프, 베이프 펜(vape pen) 또는 전자 물담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전자 담배는 니코틴을 포함한 모든 액체 또는 물질과 결합하여 판매되며 기기의 작동 중 사용되는 기기의 모든 구성품, 부품 또는 액세서리를 포함한다. 전자 담배는 에어로졸 또는 증기 형태로 사람에게 니코틴을 전달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모든 기기와 결합하여 판매하든 별도로 판매하든 니코틴을 포함하는 모든 액체 또는 물질도 포함한다. 전자 담배는 니코틴을 포함하는 어떠한 액체나 물질과도 결합하여 판매되지 않는 기기, 또는 별도로 판매되는 경우 기기의 작동에 사용되지 않는 모든 배터리, 배터리 충전기, 휴대용 케이스 또는 기타 부속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전자 담배는 United State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서 금연 제품으로 판매하도록 승인하거나 제품이 그러한 승인된 용도로만 표시 및 판매되는 다른 치료 용도인 어떠한 제품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하위 분할에서 사용되는 것처럼 니코틴은 어떤 식품도 포함하지 않는데 그러한 용어는 제6359항에 따라 정의되어 있기 때문이다.

(e) (d) "기금"은 제30122항에서 구성한 궤련 및 담배 제품 부가세 기금을 의미한다.

제3.2항. 수익 및 과세법 제30131.1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30131.1. 다음의 정의는 본 조항의 목적에 따라 적용된다.

(a) "담배"는 제30003항에 명시(1997년 1월 1일 독회)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b) "담배 제품"은 50% 이상의 담배로 만들거나 이를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시가, 담배, 씹는 담배, 코담배 및 다른 모든 상품이나 제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지만 궤련은 제외되며 2016년 California 의료, 연구 및 담배 방지 세금 법에서 수정한 대로 제 30121항의 하위 조항 (b)와 같은 의미를 가져야 한다.

제4항. 2016년 California 의료, 연구 및 담배 방지 세금 법

제4.1항. 조세법 제2부 13편2장에 제2.5조(제30130.50항부터 시작)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제2.5조. 2016년 California 의료,

연구 및 담배 방지 세금 법

30130.50. 용어정의.

본 조항에서:

(a) "담배는" 제30003항에 명시(2015년 1월 1일 목요일 조회)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b) "담배 제품"은 이 법에서 수정한 대로 제30121항의 하위 조항(b)에서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30130.51. 2016년 California 의료, 연구 및 담배 방지 세금 법 담배 분배세.

(a) 본 편(part)에 의거한 담배 분배 시 부과되는 다른 세금 이외에 본 항의 발효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된 첫 번째 사분기의 첫날부터 공급되는 담배 1개당 100밀(0.100달러)을 별도의 물품세로 모든 담배 공급자에게 부과한다.

(b) 위원회는 전자 담배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세금의 이행을 위해 제공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하며 이 조항은 (c) 제30121항의 하위 조항 (c) 및 세금 징수 방법에 정의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규정은 에어로졸 또는 증기 니코틴을 기기로 흡입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기기에 별도로 또는 패키지 판매 시; 기기 작동 중에 사용되는 해당 기기의 모든 구성품, 부품 또는 부속품에 별도로 또는 해당 기기와의 패키지로 판매 시; 및 니코틴을 포함하는 모든 액체 또는 물질에 별도로 또는 흡입하게 하는 기기와의 패키지로 판매 시 동등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한 규정은 누가 제30011항에 따라 전자 담배의 배급업자인지 그리고 그러한 사람의 면허 요건을 정의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 이 부분의 다른 모든 조항에도 불구하고 하위조항 (a)에서 부과하는 세금에 따른 모든 수익과 전자 담배 등 제 30123항의 하위 조항 (b)에서 부과하는 전자 담배 등 담배 제품에 대한 동등한 세금 인상으로 인한 모든 수익은 제 30130.53항에 구성된 2016년 California 의료, 연구 및 담배 방지 세금 법에 귀속된다.

30130.52. 2016년 California 의료, 연구 및 담배 방지 세금 법 담배 재고세.

(a) (1) 판매, 이용 또는 소비용 담배를 보유 및 저장할 권한을 갖는 모든 대리점 및 도매상은 본 항의 발효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된 첫 번째 사분기의 첫날 오전 12:01부터 자신이 California주 내에서 소유 또는 통제하는 담배에 대하여 본 편에 의거한 각종 과세 외에 1개당 100밀(0.100달러)의 재고세를 납부해야 한다.

(2) 모든 대리점 및 도매상은 본 항의 발효일로부터 180일 이상 경과된 첫 번째 사분기의 첫날 이전에 위원회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본 항의 발효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된 첫 번째 사분기의 첫날 오전 12:01 당시 자신이 소유 또는 통제하는 담배의 숫자를 명시한 위원회 지정 양식이어야 한다. 보고서에는 과세액을 계산 및 표기해야 한다.

(b) (1) 담배를 유통하고 판매, 사용 또는 소비를 위해 담배를 보유 또는 보관할 권한이 있는 면허를 받은 모든 담배 배급업자는 본 항의 발효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된 첫 번째 사분기의 첫날 오전 12:01 당시 자신이 소유 또는 통제하는 모든 담배 패키지에 붙인 각 California 담배세 스탬프 및 붙이지 않은 각 California 담배세 스탬프에 대하여 담배 증인 조정세를 다음의 비율로 납부해야 한다.

- (A) 지정 "25"를 포함하는 각 스탬프에 대하여 2.5달러.
- (B) 지정 "20"을 포함하는 각 스탬프에 대하여 2달러.
- (C) 지정 "10"을 포함하는 각 스탬프에 대하여 1달러.

(2) 면허를 받은 모든 담배 배급업자는 본 법령의 발효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첫날 이후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1)항의 하위 항 (A), (B), 및 (C)에 설명한 대로 스탬프의 수를 명시한 위원회 지정 양식이어야 한다. 보고서에는 과세액을 계산 및 표기해야 한다.

(c) 이 조항에서 지불해야 할 세금은 본 법령의 발효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첫날 이후 위원회에 납부 가능하다. 지불은 위원회에 지불해야 할 송금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불 시 이 조항에서 제출하는데 필요할 양식과 보고서가 동반되어야 한다.

(d) 본 조항에서 지불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시의 적절하게 지불하지 않으면 제30202항에 따라 본 법령의 발효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첫날 이후부터 지불될 때까지 이자가 누적되며 결정 및 재결정과 결정 및 재결정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모든 벌금이 적용된다.

30130.53. 2016년 California 의료, 연구 및 담배 방지 세금 법 자금.

(a) 2016년 California 의료, 연구 및 담배 방지 세금 법 자금은 주 재무국에서 확립한 것이다.

(b) 본 조항에 부과된 세금에 따라 거둔 모든 수익은 1조(6장의 제30361항에서 시작)에 따라 약간 반환되고 2016년 California 의료, 연구 및 담배 방지 세금 법 자금에 귀속된다.

(c) 다른 모든 법에도 불구하고 2016년 California 의료, 연구 및 담배 방지 세금 법 자금은 이러한 법령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서만 설립된 신탁 자금이며 2016년 California 의료, 연구 및 담배 방지 세금 법 자금에 보관된 모든 수익은 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와 함께 회계연도에 관계 없이 이 법령의 목적에 따라 계속 전용되고 이 법령의 조항과 그 목적에 따라서만 확장되어야 한다.

(d) 다른 모든 법에도 불구하고 2016년 California 의료, 연구 및 담배 방지 세금 법 자금과 여기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는 본 법령에서 설명한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이 법령에서 명시한 목적으로만 전용 및 확장되어야 하며 의회, 주지사, 재무 책임자, 또는 회계감사관이 본 법령에 명시된 목적 이외에 전용, 귀속 또는 전달할 수 없고 그러한 수익이 주의 다른 자금 또는 모든 지방 정부 자금에 대출로 제공될 수 없다.

30130.54. 2016년 California 의료, 연구 및 담배 방지 세금 법 담배 소비 및 세수의 영향.

(a) 위원회는 본 법안의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매년 본 조항에 따른 추가 과세 그리고 이로 인하여 제30123항의 하위조항 (b)에 규정된 담배 제품 부과 세금의 증가가 California 주의 담배 및 담배 제품 소비에 미친 영향을 파악해야 한다. 위원회가 본 조항에

의거한 추가 과세 또는 제30123항의 하위조항 (b)에서 정한 담배 제품 과세 증가의 직접적 결과로 소비가 감소했다고 판단하는 한, 위원회는 소비 감소가 제30122항(1988년 11월 8일 주 총선거에서 유권자가 승인한 발의안 제99호)에 담배 인삼 제품 부가세 기금, 제30461.6항에 근거한 유방암 기금, 제30131항(1998년 11월 3일 주 총선거에서 유권자가 승인한 발의안 제10호)에 근거한 California 주 아동 및 가정 제일신탁기금 그리고 제30101항에 근거한 일반기금 배분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을 파악해야 한다.

(b) 회계감사관은 2016년 California 의료, 연구 및 담배 방지 세금 법에서 하위조항 (a)에 설명한 해당 기금에 이러한 조항에 의한 추가 세금의 부과에 따른 직접적인 세수 감소를 상쇄하는데 필요한 양만큼 전달해야 한다.

(c) 위원회는 본 법안의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매년 본 조항에 따른 추가 과세 그리고 이로 인하여 제30123항의 하위조항 (b)에 규정된 담배 제품 부과 세금의 증가가 담배 및 담배 제품의 불법 판매 등 California주의 담배 및 담배 제품 소비에 미친 영향을 파악해야 한다. 주 또는 지방 정부 판매 및 사용세 수익에 손실이 있는 만큼 그러한 손실이 위원회에서 이 조항에 의해 담배에 부과되는 별도 세금의 직접적인 결과로 판별하는 경우, 그리고 담배와 담배 제품의 불법 판매 등 제30123항의 하위 조항 (b)에서 요구하는 담배 제품에 대한 결과적 세금 인상의 경우, 위원회는 주와 지방 정부 판매에 대한 재정적 영향을 판별하고 세수를 사용해야 한다.

(d) 회계감사관은 2016년 California 의료, 연구 및 담배 방지 세금 법 자금을 하위 조항 (c)에 설명한 주와 해당 지방 정부의 일반 기금으로 담배와 담배 제품의 불법 판매 등 이 조항의 추가 세금 부과로 인한 직접적인 주와 지방 판매 및 이용세 수익을 상쇄하는데 필요한 금액만큼 전달해야 한다.

(e) 이 조항에서의 전달은 회계감사관이 이 조항의 의도를 심화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해야 한다.

30130.55. 2016년 California 의료, 연구 및 담배 방지 세금 법 수익 분배.

제30130.54항과 제30130.57항의 하위 조항 (a), (b), (c), (d), 및 (e)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공제 및 전달한 후에 회계감사관은 다음과 같이 2016년 California 의료, 연구 및 담배 방지 세금 법 자금에서 남은 자금을 매년 배분 및 전달해야 한다.

(a) 팔십이 퍼센트는 건강관리기금으로 이전된다. 이 기금은 이로써 만들어지고 기존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위한 기금 증액을 위해 주 건강관리서비스부가 사용한다. 이러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제7장제14000절부터 시작) 내지제8.9장제14700절부터 시작), 복지시설법 제9부 제3편에 기술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담배 관련 질환 및 상태에 대해 California 주민을 위한 건강관리, 치료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포함되며 제7장 (제14000절부터 시작) 내지 제8.9장(제14700절부터 시작), 복지시설법 제9부 제3편에 기술된 모든 건강관리, 치료 및

서비스를 위한 지급금을 개선함으로써 제공한다. 이 조에 의거한 기금의 가능한 한도를 고려해 건강관리, 서비스 및 치료를 위한 비연방 분담금의 지불 및 지원은 이러한 기금이 기존에 이와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의 일반 기금을 대체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연간 주 예산 편성의 일환으로 개발되고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기준에 따라 높여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적시 이용 보장, 특정 지역의 서비스 부족 제한 또는 양질의 케어 보장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연방법에 따라 기금은 연방 기금의 삭감에 사용되지 않는다. 본 기금은 보건안전법 제1250절에 따라 면허를 받은 건강관리 전문가, 진료소, 보건 시설이 제공하는 케어와 주 건강관리 서비스부와 계약한 건강보험에서 이 절에 따른 보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만 사용된다. 본 기금은 해당되는 경우 관영단체가 비연방 분담금을 지불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건강관리 서비스부는 필요한 경우 이 절의 이행을 위해 연방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십삼 퍼센트는 이 기금이 기존에 이와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 또는 지방의 기금을 대체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포괄적 담배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기금에 사용한다. 이 기금은 다음과 같이 배분한다.

(1) 팔십오 퍼센트는 주 공중보건부 담배관리 프로그램에 배분하여 보건안전법 제104375절부터 기술된 담배관리 프로그램에 사용한다. 주 공중보건부는 담배 및 니코틴 사용, 담배 관련 발병률, 담배 관련 건강 불균형을 모니터링, 평가하여 줄이고 효과적인 예방 프로그램의 강력한 증거 기반을 개발하기 위해 기금을 주 및 지방 정부 기관, 부족, 대학, 커뮤니티 기반 조직 및 기타 유사적 기관에 지급하여 증거 기반의 건강 증진 및 건강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이행, 평가 및 보급한다. 이때 건강 증진, 건강 커뮤니케이션 활동은 적어도 15퍼센트이며 평가 및 담배 사용 감시 기금은 담배 관련 불균형을 없앨 목적으로 담배 관련 불균형 감소 속도를 가속화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지급된다.

(2) 십오 퍼센트는 보건안전법 제104420절에 기술된 바와 같이 주 교육부에서 젊은이들의 담배 및 니코틴 제품 사용 예방 및 감소를 위한 학교 프로그램에 사용하며 이 기금 중 적어도 15퍼센트는 담배 관련 불균형을 없앨 목적으로 담배 관련 불균형 감소 속도를 가속화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지급된다.

(c) 오 퍼센트는 보건안전법 제103부 제3편 제1장 제2조(제104500절부터 시작)에 의거 담배 및 담배 제품 부가세의 의학적 연구 프로그램을 보완하고자 이 기금이 다음 조건에서 사용되는 경우 암, 심장 및 폐의 담배 관련 질환 연구를 위해 California 대학에 배분한다.

(1) 기금은 California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암, 심혈관 및 폐질환, 구강질환 및 담배 관련 질환의 예방, 조기 발견, 치료, 보완적 치료 및 잠재적 케어에 대한 기본, 응용, 중개 의학 연구의 보조금 및 계약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법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California 대학은 담배 관련 질환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이 조항에 규정된 목적을 위해 이 법에 따라 받은 기금을 소비할 권한이 있다.

(2) 부여된 모든 보조금 및 계약은 기존 의학 연구 프로그램 인프라를 이용해 객관성, 일관성 및 높은 품질을 보장하는 개방적, 경쟁적 동료 리뷰 과정에 의해 결정되는 과학적 가치에 근거하여 부여된다.

(3) 이 조항에 따라 보조금 및 계약을 받은 개인 또는 실체는 완전히 California 내에 거주하거나 위치해야 한다.

(4) 연구는 전적으로 California 내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5) 이 기금은 기존에 이와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 또는 지방의 기금을 대체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

30130.56. 독립적인 감사 및 공개.

California 건강관리, 연구 및 담배 예방세법(2016)에 따라 거둔 기금의 이용에 관해 완전한 공적 책임을 규정하고 California 건강관리, 연구 및 담배 예방세법(2016)을 전면적으로 준수하도록 다음과 같이 한다.

(a) 객관적인 California 주 감사가 California 건강관리, 연구 및 담배 예방세법(2016)에 따라 기금을 받는 주 및 지방 기관의 독립 회계감사를 적어도 격년으로 수행한다. 이 절에 의거해 실시하는 감사는 기금을 관리하는 주 기관이 소비한 관리비의 검토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b) 객관적인 California 주 감사는 독립적인 감사에 기초하여 자세한 검토 결과와 개선에 대한 권고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준비한다. 보고서는 공개 가능해야 한다.

(c) 이 법에 따라 기금을 받는 주 기관과 부서는 각각 매년 자체 인터넷 웹 사이트에 California 건강관리, 연구 및 담배 예방세법(2016) 기금에서 받은 금액과 사용 방식을 기재한 회계 내역을 게시한다. 또한 연간 회계는 주 기관 또는 부서가 적절하다고 여기는 소셜미디어 수단에 게시한다.

(d) 제30130.55절의(a)에 의거 주 건강관리 서비스부로부터 받은 기금의 이용 시 기존 법으로 정한 감사, 사기 방지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동일한 제한을 적용한다.

(e) 주 공중보건부, 주 교육부 및 California 대학이 수령한 기금의 사용은 제30130.55절 (b) 내지 (c)에 따라 보건안전법 제104365절 내지 제104370절의 담배 교육 및 연구 감독 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30130.57. 이행 및 관리비.

(a) California 건강관리, 연구 및 담배 예방세법(2016) 기금의 자금은 이 조항에 따라 부과된 세금의 관리, 계산, 징수에서 발생한 비용과 기금의 계산 및 배분, 이 법에 의거 요구되는 규정의 공포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위원회에 정산하는 데 사용한다. 그러나 제30130.54절 (b)에 의거해 필요한 자금을 공제한 후 California 건강관리, 연구 및 담배 예방세법(2016) 기금에 남아 있는 기금 중 연간 5 퍼센트 미만은 상기 관리비로 사용한다.

(b) California 건강관리, 연구 및 담배 예방세법(2016) 기금의 자금 중 이 조항에 의해 발생한 수익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건강관리, 흡연 예방 및 연구에 사용됨을 확인할 목적으로 제30130.56절에서 요구되는 각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발생한 실비에 대해 연간 사십만 달러(\$400,000)까지 독립적, 객관적인 California 주 감사에게 정산하는 데 사용한다.

(c) California 건강관리, 연구 및 담배 예방세법(2016) 기금의 자금은 중 연간 사천만 달러(\$40,000,000)까지 California에서 수련하는 일차 진료 및 응급 의사 수를 늘리려는 목적과 목표를 위한 기금을 California 대학에 제공하기 위해 사용한다. 이 목표는 입증된 인력 수요와 우선 순위에 따라 California 주의 일차 진료 및 응급 의사 수를 늘리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련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유지 및 확장하고자 California 대학에 기금을 제공함으로써 달성한다.

(1) 이 조항의 목적에 따라, "일차 진료"란 내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및 소아과를 의미한다.

(2) 기금은 의료 소외 지역과 계층을 위한 직접적인 수련의 교육 비용에 우선 사용한다.

(3) 이 조항의 목적에 따라 California에 위치하고 연방 정부가 인정하는 공인 기관의 인증을 받은 모든 대중요법 및 접골요법 레지던트 프로그램은 California 레지던트 교육 지원을 위한 기금을 신청할 자격이 있다.

(4) California 대학은 주 전체 및 지역별로 전공별 의사 부족 여부를 매년 검토한다. 이 검토 결과에 따라 일차 진료의 외 의사가 주 또는 지역별로 부족한 것이 입증되면 해당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수련의 교육을 확대할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d) California 건강관리, 연구 및 담배 예방세법(2016) 기금의 자금 중 연간 삼천만 달러(\$30,000,000)까지 담배 및 기타 담배 제품 사용으로 발생한 치과 질환을 포함해 치과 질환의 교육, 예방 및 치료 목적과 목표를 위해 주 공중보건부 주 구강 프로그램의 기금으로 제공하는 데 사용한다. 이 목표는 소외 지역과 계층을 우선 순위로 하여 입증된 구강 보건 수요에 따라 주 구강 계획을 지원하는 활동에 기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달성한다. 기금을 지원받는 프로그램 활동에는 교육, 질환 예방, 질환 치료, 감시 및 사례 관리가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해당 부서는 이 조항의 목적을 완벽하게 이행하고 실현할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며 여기에는 소외된 지역 사회의 결정, 프로그램 프로토콜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된 주 후원 서비스를 정산할 권한, 프로그램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개인 또는 대중 또는 민간 기업과 계약할 권한이 포함된다.

(e) California 건강관리, 연구 및 담배 예방세법(2016) 기금의 자금 중 연간 사천 팔백만 달러(\$48,000,000) 까지 이 기금이 기존에 이와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 또는 지방의 기금을 대체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담배 제품의 불법 판매, 특히 미성년자에게 불법으로 판매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담배 밀수, 담배세 탈세, 면허 없이 담배 제품 판매, 모조 담배 제품 판매를 줄이기 위해, 담배 관련 법, 법적 판결 및 처분 강화를 위해 그리고 담배 관련 법령의 법 집행 교육 및 기술적 지원

활동 수행을 위한 사법 활동에 기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사용한다. 이 기금은 다음과 같이 배분한다.

(1) 연간 삼천만 달러(\$30,000,000)는 California 사법부/법무장관에게 배분하여 지역 사법 기관이 미성년자에 대한 불법 담배 판매 및 마케팅과 관련한 주 및 지방법 집행, 미성년자와 청소년에 대한 담배 제품 불법 판매를 줄이기 위한 조사 활동 및 법규 준수 점검 강화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위해 일선에서 법을 집행하는 치안관을 지원하고 고용할 목적으로 사용한다.

(2) 연간 육백만 달러(\$6,000,000)는 위원회에 배분하여 담배 및 담배 제품 밀수, 위조, 비과세 담배 및 기타 담배 제품 판매, 적절한 허가 없이 담배 및 기타 담배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 등 담배와 기타 담배 제품의 유통 및 소매 판매를 규제하는 법을 집행하기 위해 사용한다.

(3) 연간 육백만 달러(\$6,000,000)는 California 공중보건부에 배분하여 지역 사법 기관이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 불법 판매 관련 주 및 지방법을 집행하기 위한 교육 및 기금 제공을 위한 보조금과 계약 제공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는 프로그램 지원, 조사 활동 강화, 법규 준수 점검 및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22952항에 따른 아동 담배이용 금지 강화(Stop Tobacco Access to Kids Enforcement, STAKE)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는 기타 미성년자에 대한 불법 담배 제품 판매 감소를 위한 기타 적절한 활동 지원에 사용한다.

(4) 연간 육백만 달러(\$6,000,000)는 California 법무장관에게 배분하여 담배 밀수, 위조, 비과세 담배 판매, 적절한 허가를 받지 않은 담배 판매,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 판매 등 담배 및 각종 담배 제품의 유통과 판매를 규제하는 법규 강화 그리고 담배 관련 법, 법적 판결 및 처분 강화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는 활동에 사용한다.

(f) 이 조에 의거해 받은 기금 중 5퍼센트 미만은 상기 기금을 받는 주 또는 지방 기관 또는 부서가 관리비로 사용한다.

(g) California 주 감사는 이 조의 목적을 위한 관리비를 정의하기 위해 정부법 제2권 제3부 제1편 행정절차법(제 3.5장(제11340절) 부터 시작)의 규칙 제정 조항에 따라 규정을 공포한다. 상기 규정은 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부서의 다양한 특징을 고려한다.

(h) 위원회는 이 법의 발효일자로부터 이 년 후부터 이후 매년, 이 법의 발효일자로부터 일 년 후 이 조항에 의해 담배에 부과된 추가 세금으로 인한 담배 및 담배 제품 소비 감소와 제30123절 (b)에서 요구하는 담배 및 담배 제품에 대한 세금 인상분 결과에 따라 세입 축소를 결정한다. 위원회가 세입 축소를 결정하면 (c), (d) 및 (e)에 의거해 할당되는 기금의 금액도 비례하여 감소한다.

30130.58. 법률 참조.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본 법안 내의 모든 참조는 2016 년 1월 1일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다.

제5절. 관련된 수익 및 과세법 관련 개정안.

제5.1절. 수익 및 과세법 제30014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30014. (a) "수송인"이란 다음과 같은 상태로 이 주에 수송하는 사람을 말한다.

(1) California 담배세 인지가 부착되지 않거나 미터 자국이 없는 포장에 담긴 담배.

(2) 제2장 제2조(제30121절부터 시작), 제2.5조(제30130.50절부터 시작), 제3조(제30131절부터 시작)에 의해 부과되는 담배 제품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은 담배 제품.

(b) "수송인"은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다.

(1) 허가받은 배급업자.

(2) 일반 운수업자.

(3) 연방 내국세 수입 채권에 따라 담배 및 담배 제품을 수송하는 자 또는 수정 내국세법 제52장(1954)에 의거한 비납세 세관 검사장.

제5.2절. 수익 및 과세법 제30104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30104. 이 부분에서 부과되는 세금은 배급업자가 담배나 담배 제품을 주 간 또는 외국 승객 서비스에 종사하는 일반 운수업자나 이러한 운수업자의 시설에서 담배나 담배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사람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배급업자가 담배나 담배 제품을 주 간 또는 외국 승객 서비스에 종사하는 일반 운수업자가 해당 운수업자의 시설에서 사용하거나 판매하도록 또는 이러한 시설에서 담배나 담배 제품을 팔 수 있는 사람에게 판매할 때마다 30101, 30123, 30131.2절에 따라 이 부분에서 부과되는 세금은 배급업자의 담배 또는 담배 제품 판매에 대해 부과되지 않고 운수업자 또는 운수업자의 시설에서 담배나 담배 제품을 팔 수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이 경우 이 부분에서 설정한 것과 같은 세금으로 California에서 판매한 특권에 대해서 30101, 30123, 30131.2절에 따라 부과하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한 일반 운수업자 및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30186절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 절에 의해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고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5.3절. 수익 및 과세법 제30108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30108. (a) 이 주에서 상업에 종사하며 30101, 30123, 30131.2절에 따라 이 부분의 세금 부과와 관련한 판매에 해당되지 않는 담배 또는 담배 제품을 판매하거나 주문을 받는 모든 배급업자는 판매 또는 주문 접수 당시 또는 구매자가 담배 또는 담배 제품의 유통과 관련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때인 경우, 구매자에게 의무가 부과되었을 때 구매자에게 세금을 징수하고 구매자가 허가받은 배급업자가 아닌 경우 구매자에게 위원회가 정한 방식과 양식의 영수증을 대신 제공한다.

(b) 이 주에서 상업에 종사하며 30101, 30123, 30131.2절에 따라 이 부분의 세금 부과에 해당되지 않는 비과세

담배 또는 담배 제품을 샘플로 선물하는 모든 자는 선물할 당시 또는 증여받는 자가 담배 또는 담배 제품 유통과 관련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으면 증여받는 자에게 의무가 부과되었을 때 증여받는 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고 증여받는 자가 허가받은 배급업자가 아닌 경우 위원회가 정한 방식과 양식의 영수증을 대신 제공한다. 이 절은 30105.5절에 의거해 세금이 면제되는 담배 또는 담배 제품의 유통에 적용되지 않는다.

(c) "이 주에서 상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다음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1) 사무실, 유통 장소, 판매 또는 샘플실 또는 장소, 창고 또는 보관 장소 또는 기타 영업소를 영구적 또는 임시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또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자회사, 대리점 등을 통해 유지, 점유 또는 사용함.

(2) 담배 또는 담배 제품을 판매, 제공 또는 주문을 접수할 목적으로 배급업자 또는 그 자회사의 권한으로 이 주에서 영업하는 담당자, 대리점, 영업 사원, 외판원 또는 상품 판촉원을 둠.

(d) 이 절에서 징수해야 하는 세금은 배급업자 가진 부채로 여겨지며 징수하지 않을 경우 다른 사람이 주를 위해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

제5.4절. 수익 및 과세법 제30166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30166. 인지 및 미터 등록 설정은 0.85퍼센트 이하 할인된 액면가로 면허를 받은 배급업자에게 판매되는데 면허를 받은 배급업자에게 처음에는 액면가 일 달러(\$1.00) 한도이다. 인지 또는 미터 등록 설정에 대한 지불은 구매 시 이루어지며 허가받은 배급업자인 경우 이 조항의 조건 및 조항에 따라 그에 대한 지불을 연기할 수 있다.

제5.5절. 수익 및 과세법 제30181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30181. (a) 2장의 ~~제1조(30101절부터 시작), 제2조(30121절부터 시작), 제3조(30131절부터 시작)~~ 이 부분에 의거해 담배에 부과된 세금은 인지 또는 미터 자국을 이용해 납부하지 않으며 담배 유통이 발생한 역월 다음 달 25일 이전에 매월 납부하거나 일반 운수업자의 시설에서 담배를 판매하여 제30104절에 의거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운수업자의 시설에서 담배 판매가 발생한 역월의 다음 달 25일 이전에 매월 납부한다.

(b) 각 담배 제품 배급업자는 위원회가 정한 양식의 신고서를 제출하며 여기에는 전월 담배 제품의 유통과 도매 가격에 관한 전자 매체, 이 부분을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가 요구하는 기타 정보를 포함하되 그에 한정하지 않을 수 있다. 신고서는 해당 기간에 제2장 제2조 (제30121절부터 시작) 또는 제3조(제30131절부터 시작)에 의거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달하는 위원회에 납부할 송금액이 있다면 이와 함께 관련된 월의 기간이 끝나는 다음 역월의 25일 전에 위원회에 제출한다.

(c) 이 부분의 행정상 편의를 위해 위원회는 한 달 이상의 기간 동안 신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d) 신고서는 위원회가 정한 양식이나 방법으로 진본임을 증명한다.

(e) 이 절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절. 주 헌법과의 일치.

제6.1절. 제23항이 California 헌법 제XVI조에 다음과 같이 추가된다.

제23항. California 건강관리, 연구 및 담배 예방세법(2016)에 의거해 부과되는 세금과 그로부터 파생된 세입은 투자 이익을 포함해 제8절 및 그 이행을 위한 법령의 목적을 위한 일반 기금 수익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제8절(a), (b) 및 그 이행을 위한 법령의 목적을 위한 "일반 기금 수익", "주 수익" 또는 "일반 기금 세금의 세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6.2절. 제14항이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XIII조 B에 다음과 같이 추가된다.

제14항. 각 관영단체의 "세출 한도"는 California 건강관리, 연구 및 담배 예방세법(2016)에 의해 만들어진 California 건강관리, 연구 및 담배 예방세법(2016) 기금에서 얻은 수익의 지출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관영단체의 세출 한도 무조정이 제3절에 의거해 California 건강관리, 연구 및 담배 예방세법(2016) 기금에서 예치된 수익 또는 충당한 세출의 결과로 필요하다.

제7절. 분리 가능 조항.

본 법안의 조항 또는 그 일부가 어떠한 이유로든 무효 또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결이 날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은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며 이를 위해 본 법안의 조항을 분리할 수 있다.

제8절. 상충하는 조치.

(a) 유권자 취지에 따라 본 법안과 다른 담배 과세 관련 법안이 동일한 주 선거용지에 수록될 경우 다른 법안(들)의 조항이 본 법안과 상충되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유권자가 본 법안을 승인할 경우, 다른 담배 과세 관련 법안이 유권자 다수의 찬성으로 승인되었더라도 본 법안은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

(b) 본 법안이 유권자에 의해 승인되었지만 법에 따라 동일 선거 표결을 통해 유권자의 승인을 받은 다른 상충 법안으로 대체되었고 향후 그 상충 법안이 무효화될 경우, 본 법안이 즉시 시행되며 완전한 법적 효력을 발휘한다.

제9절. 개정안.

(a)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본 법안은 California 헌법 제II조 10항 (c)가 규정하는 방식으로 유권자에 의해서만 수정이 가능하다.

(b) 의회는 California 건강관리, 연구 및 담배 예방세법(2016)의 목적을 발전시키고자 호명 투표에서 의원 삼분의 이가 찬성하여 양원에서 법령을 통과시킬 경우 수익 및 과세법 제30130.55절 및 제30130.57절 (a) 및 (c)를 개정할 수 있다.

(c) 의회는 California 건강관리, 연구 및 담배 예방세법(2016)의 목적을 발전시키고자 호명 투표에서 의원 오분의

사가 찬성하여 양원에서 법령을 통과시킬 경우 수익 및 과세법 제30130.55절 (b)를 개정할 수 있다.

제10절. 발효일자.

이 법은 California 헌법 제II조 10항 (a)가 규정하는 방식으로 발효되나 수익 및 과세법 제30121절의 개정은 2017년 4월 1일자로 유효하다.

발의안 제 57호

California 헌법 제II조 8항의 조항에 따라 본 발의안을 주민에게 제출한다.

본 제안은 California 헌법에 새 조항을 추가하고, 복지기관법 새 조항을 수정한다. 따라서, 삭제될 기존 조항은 취소선 유형으로 인쇄되고 추가될 새 조항은 신설 규정임을 나타내기 위해 *이탤릭체*로 인쇄된다.

법안

2016 공공 안전 및 재활 법안

제1항. 제목.

본 조치는 "2016 공공 안전 및 재활법"으로 알려져야 하며 인용될 수 있다.

제2항. 목적과 취지.

본 법안의 제정 시, California 주민의 목적과 취지는 다음과 같다.

1. 공공 안전의 보호 및 향상.
2. 교도소에서 낭비되는 지출을 줄여 비용을 절약.
3. 연방 법정이 수감자들을 분별 없이 석방하는 것을 방지.
4. 특히 청소년의 경우 재활을 강조함으로써 다시 범죄의 길에 들어서는 것을 방지.
5. 청소년을 성인 법정에서 재판할지 여부를 검찰이 아닌 판사가 결정하도록 요구.

제3항. 제32항이 California 헌법 제I조에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추가된다.

제32항. (a) 다음 조항은 본 조 또는 다른 법률 조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공공 안전을 향상시키고 재활을 개선하며 연방 법정 명령에 따라 수감자를 석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1) *가석방 고려: 비폭력적 중범죄를 저지르고 주 교도소에 투옥된 사람은 주요 범죄에 대한 기간을 마친 후 가석방 고려 대상이 된다.*

(A) *본 항만의 목적을 위해 주요 범죄의 전체 기간은 모든 범죄에 대해 법정에서 선고한 투옥 기간 중 가장 긴 기간을 의미한다. 여기서 향상, 연속 선고 또는 대체 선고의 시행은 제외된다.*

(2) *크레딧 확보: 재활 교정부는 근신 및 승인된 재활이나 교육 성취의 경우 크레딧을 제공할 권한이 있다.*

56

57

(b) 교정 재활부는 이러한 조항의 발전에서 규정을 채택하고 교정 재활부 장관은 이러한 규정이 공공 안전을 보호하고 향상시킨다는 것을 승인한다.

제4항. 사법 이전 프로세스.

제4.1항. 보건안전법의 602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602. (a) 707항 (b)조에서 제공하는 것을 제외하고, 연령만을 기준으로 통행 금지를 규정하는 법령 이외에 범죄를 정의하는 이 주나 미국의 법률 또는 이 주의 도시나 카운티 법령을 위반할 때 18세 미만인 자는 청소년 법정에서 관할하며 이런 사람은 법정 구금하도록 판결할 수 있다.

(b) 14세 이상일 때 다음 범죄 중 하나를 저질렀다는 혐의가 있는 사람은 형사재판관할권의 법정에서 일반 법률에 따라 기소해야 한다.

(1) 형법 187항에서 설명하는 대로 형법 190.2항 (a)조에 열거된 환경 중 하나를 검찰이 주장하고 검찰이 미성년자가 개인적으로 희생자를 살해했다고 혐의를 제기하는 경우의 살인.

(2) 검찰이 미성년자가 개인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검찰이 윈스트라이크 법률, 형법 667.61항 (d) 또는 (e)조에 열거된 환경 중 하나를 주장하는 경우 다음 성범죄가 적용된다:

(A) 형법 261항 (a)조 (2)절에서 설명하는 강간.

(B) 형법 262항 (a)조 (1)절에서 설명하는 배우자 강간.

(C) 형법 264.1항에서 설명하는 다른 사람들과 협력한 강제적인 성범죄.

(D) 형법 288항 (b)조에서 설명하는 14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로 외설적이고 음란한 행위.

(E) 형법 289항 (a)조에서 설명하는 강제적인 성행위.

(F) 형법 286 또는 288a항을 위반하여 강제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협박하거나, 위협하거나, 희생자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 불법적인 신체 손상을 가하거나 가하겠다고 겁을 주는 방법으로 하는 남색 행위 또는 구강 성교.

(G) 형법 1203.066항 (d)조에서 피고가 보호관찰 대상이 아닌 경우 288항 (a)조에 정의된 14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외설적이고 음란한 행위.

제4.2항. 보건안전법의 707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707. (a) (1) 미성년자가 폭력으로 602항의 (a)조에 설명된 사람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16세 이상일 때 중범죄 법령, 또는 (b)조에 나열된 법령을 제외한 법령, 또는 14 또는 15세일 때 (b)조에 나열된 범죄 행위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지방 검사 또는 기타 검찰 공무원은 미성년자를 청소년 법정에서 범죄 관할 법정으로 미성년자를 이관하도록 제안할 수 있다. 위험 부착 전에 탄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런 동의 하에 청소년 법정은 보호 관찰 담당자에게 미성년자의 행동 패턴과 사회적 기록의 보고서를 조사하고 제출하도록 명령을 내려야 한다. 부적합 판결을 고려 중. 보고서는 656.2

항에 따라 희생자가 제공하는 서면 또는 구두 진술서를 포함해야 한다.

(2) 신청인 또는 미성년자가 보고서 및 기타 관련 증거를 제출하고 고려한 후 청소년 법정은 미성년자를 범죄 관할지 법정으로 이전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결정을 내릴 때 법정은 (A) ~ (E)절에 지정된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법정에서 관할지 이전을 명령하는 경우 법정은 회의록에 입력한 명령의 결정에 대한 기준을 인용해야 한다. 공판이 본 항에 따라 공지된 경우 법정은 이전 공판의 결론이 날 때까지 탄원서를 요청하는 것을 연기해야 하며 이미 접수되었을 수 있는 요청은 공판의 증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미성년자가 다음을 포함한 (A) ~ (E)조의 조항 (i)에 지정된 기준의 평가에 따라 청소년 법정 시설을 통해 제공되는 치료, 진료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대로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청소년 법정 법률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음:

(A) (i) 미성년자가 보여준 범죄의 성숙도.

(ii) 조항 (i)에 지정된 기준을 평가할 때 청소년 법정은 혐의가 있는 범죄를 저지른 당시 미성년자의 나이, 성숙도, 지적 능력 및 신체적, 물리적, 정신적, 정서적 상태, 미성년자의 충동성이나 범죄 행위의 위험성과 결과를 이해하지 못함, 미성년자의 행동에 대한 가족, 성인 또는 동년배의 압력의 영향 및 미성년자 범죄 성숙도에 대한 미성년자 가족과 지역 사회 환경 및 어린 시절의 정신적 외상의 영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관련 요소에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B) (i) 미성년자가 청소년 법정의 관할권이 만료되기 전에 재할할 수 있는지 여부.

(ii) 조항 (i)에 지정된 기준을 평가할 때 청소년 법정은 미성년자의 성장과 성숙 가능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관련 요소에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C) (i) 미성년자의 이전 범죄 기록.

(ii) 조항 (i)에 지정된 기준을 평가할 때 청소년 법정은 미성년자의 이전 범죄 기록의 심각도 및 미성년자의 이전 범죄 행위에 대한 미성년자의 가족과 지역 사회 환경 및 어린 시절의 정신적 외상의 영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관련 요소에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D) (i) 청소년 법정이 미성년자를 재할하려는 이전 시도의 성공.

(ii) 조항 (i)에 지정된 기준을 평가할 때 청소년 법정은 미성년자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이전에 제공한 서비스의 타당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관련 요소에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E) (i) 탄원서에서 미성년자가 저질렀다는 혐의가 있는 범죄의 환경 및 심각성.

(ii) 조항 (i)에 지정된 기준을 평가할 때 청소년 법정은 그 사람의 실제 행위, 그 사람의 정신 상태, 그 사람의 범죄 개입 정도, 그 사람이 실제로 초래한 위해의 수준 및 그 사람의 정신적이고 정서적 발달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관련 요소에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청소년 법정에서 다루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결정은 (A) ~ (E)조의 조항 (i)에서 설명하는 요소 중 하나 또는 조합을 기준으로 할 수 있으며, 부적합 명령에 따라 다시 인용해야 한다. 공판이 본 항에 따라 공지된 경우 법정은 적합성 공판의 결론이 날 때까지 탄원서를 요청하는 것을 연기해야 하며 이미 접수되었을 수 있는 요청은 공판의 증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A) 본 단락은 미성년자가 16세가 되었을 때 폭력 또는 미성년자가 다음 둘 모두가 적용되는 경우 하나 이상의 사전 경우에 대해 602항에 따른 법정 구금하도록 선고되었을 때 중범죄를 저질러 602항에서 설명하는 사람이라는 혐의를 받은 미성년자에 적용해야 한다.

(i) 미성년자가 이전에 두 건 이상의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ii) 이전 탄원서 또는 탄원서의 내용이 되는 범죄를 미성년자가 14세가 되었을 때 저지른 경우.

(B) 위험 부착 이전에 탄원자의 동의 하에 법정은 보호 관찰 담당자가 부적합 결정으로 간주되는 미성년자의 행동 패턴과 사회적 기록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보고서 및 탄원자 또는 미성년자가 제출할 수 있는 관련 증거를 제출하고 고려한 후 미성년자는 증거가 정상 참작이나 완화 상황이 될 수 있는 증거에 따라 청소년 법정이 조항 (i) ~ (v)의 하위 조항 (i)(포함)에 지정된 기준 평가에 따라 미성년자가 청소년 법정의 시설을 통해 제공되는 치료, 진료 및 교육 프로그램을 따를 수 있는지 결정하지 않는 한 청소년 법정 법률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가정해야 한다.

(i) (I) 미성년자가 보여준 범죄의 성숙도.

(II) 하위 조항 (I)에 지정된 기준을 평가할 때 청소년 법정은 혐의가 있는 범죄를 저지를 당시 미성년자의 나이, 성숙도, 지적 능력 및 신체적, 물리적, 정신적, 정서적 상태, 미성년자의 충동성이나 범죄 행위의 위험성과 결과를 이해하지 못함, 미성년자의 행동에 대한 가족, 성인 또는 동년배의 압력의 영향 및 미성년자 범죄 성숙도에 대한 미성년자 가족과 지역 사회 환경 및 어린 시절의 정신적 외상의 영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관련 요소에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ii) (I) 미성년자가 청소년 법정의 관찰권이 만료되기 전에 재활할 수 있는지 여부.

(II) 하위 조항 (I)에 지정된 기준을 평가할 때 청소년 법정은 미성년자의 성장과 성숙 가능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관련 요소에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iii) (I) 미성년자의 이전 범죄 기록.

(II) 하위 조항 (I)에 지정된 기준을 평가할 때 청소년 법정은 미성년자의 이전 범죄 기록의 심각도 및 미성년자의 이전 범죄 행위에 대한 미성년자의 가족과 지역 사회 환경 및 어린 시절의 정신적 외상의 영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관련 요소에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iv) (I) 청소년 법정이 미성년자를 재활하려는 이전 시도의 성공.

(II) 하위 조항 (I)에 지정된 기준을 평가할 때 청소년 법정은 미성년자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이전에 제공한 서비스의 타당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관련 요소에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v) (I) 탄원서에서 미성년자가 저질렀다는 혐의가 있는 범죄의 환경 및 심각성.

(II) 하위 조항 (I)에 지정된 기준을 평가할 때 청소년 법정은 그 사람의 실제 행위, 그 사람의 정신 상태, 그 사람의 범죄 개입 정도, 그 사람이 실제로 초래한 위해의 수준 및 그 사람의 정신적이고 정서적 발달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관련 요소에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청소년 법정에서 처리하기에 적합하다는 판결은 조항 (i) ~ (v)의 하위 조항 (I)(포함)에서 설정한 기준을 고려한 후 순응에 대한 평결 및 미성년자가 이러한 모든 기준과 각 기준에 적합하다는 각 기준에 대한 명령에 인용된 평결을 근거로 해야 한다. 적합성을 평결할 때 법정은 이러한 각 기준을 평가함에 있어 정상 참작과 완화 환경을 고려할 수 있다. 공판이 본 항에 따라 공지된 경우 법정은 적합성 공판의 결론이 날 때까지 탄원서를 요청하는 것을 연기해야 하며 이미 접수되었을 수 있는 요청은 공판의 증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미성년자가 이 하위 조항에 따라 청소년 법정 법률에 의거하여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730항에 따른 소년원, 목장 캠프, 산림 캠프, 소년원 또는 보호관찰 소년원 또는 재활 교정부, 청소년 시설국에서 운영하는 모든 기관에 배치하도록 판결해야 한다.

(3) 본 하위 조항에 따라 미성년자가 청소년 법정 처리가 적당하지 않고 범죄 관할지 법정에서 재판하며 사실 인정자에 의해 유죄가 인정된 경우 판사는 1732.6항에 지정된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한 미성년자를 주 교도소에 수감하도록 선고하는 대신 미성년자를 교정 재활부, 청소년 시설국에 수감하도록 판결할 수 있다.

(b) 하위 조항 (c) (a)는 미성년자가 14 또는 15세일 때 다음 범죄 중 하나를 위반하여 602항에서 설명하는 사람으로 혐의를 받은 경우 적용해야 한다.

(1) 살인.

(2) 방화, 형법 451항 (a) 또는 (b)조에서 제시.

(3) 강도.

(4) 강간, 폭력 또는 신체에 큰 위해를 가하겠다는 위협.

(5) 강제 납색 행위, 폭력, 협박, 위협 또는 신체에 큰 위해를 가하겠다는 위협.

(6) 형법 288항 (b)조에 제시된 외설적이고 음란한 행위.

(7) 강제 구강 성교, 폭력, 협박, 위협 또는 신체에 큰 위해를 가하겠다는 위협.

(8) 형법 289항 (a)조에 지정된 범죄.

(9) 몸값을 요구하는 납치.

(10) 강도 목적의 납치.

- (11) 납치와 함께 육체적 위해.
- (12) 살인 미수.
- (13) 총기 또는 파괴적 장치로 공격.
- (14) 큰 신체적 위해를 줄 수 있는 물리력을 이용한 공격.
- (15) 주거 지역 또는 사람들이 입주해 있는 건물에 총기 발사.
- (16) 형법 1203.09항에서 설명하는 범죄 행위.
- (17) 형법 12022.5항 또는 12022.53항에서 설명하는 범죄 행위.
- (18) 미성년자가 형법 16590항에 나열된 모든 조항에서 설명하는 무기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중범죄.
- (19) 형법 136.1항 또는 137항에서 설명하는 중범죄.
- (20) 보건안전법 11055항 (e)조에 지정된 규제 약물 이분의 일 온스 이상의 소금이나 용액을 제조, 합성 또는 판매.
- (21) 형법 667.5항 (c)조에 정의되고 형법 186.22항 (b) 조의 중범죄 위반을 구성하는 폭력적인 중범죄.
- (22) 탈출하는 동안 청소년 시설 직원에게 큰 신체적 부상을 의도적으로 초래하는 경우 871항 (b)조를 위반하여 카운티 소년원, 보호소, 목장, 캠프 또는 산림 캠프로부터 물리력이나 폭력을 사용한 탈출.
- (23) 형법 206 및 206.1항에서 설명하는 고문.
- (24) 형법 205항에서 설명하는 가중 처벌 대상 난동.
- (25) 위험하거나 치명적인 무기로 무장한 상태에서 형법 215항에서 설명하는 차량 탈취.
- (26) 형법 209항 (b)조에서 처벌 가능한 성폭력을 목적으로 한 납치.
- (27) 형법 209.5항에서 처벌 가능한 납치.
- (28) 형법 26100항 (c)조에서 설명하는 범죄.
- (29) 형법 18745항에서 설명하는 범죄 행위.
- (30) 형법 192항 (a)조에서 설명하는 자발적인 살인.

(e) 미성년자가 14세 이상일 때 (b)조에 나열된 범죄 행위를 위반하여 602항에서 설명하는 사람으로 혐의를 받은 경우 위험 부착 이전에 탄원자의 동의 하에 법정은 보호 관찰 담당자가 부적합 결정으로 간주되는 미성년자의 행동 패턴과 사회적 기록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보고서 및 탄원자 또는 미성년자가 제출할 수 있는 관련 증거를 제출하고 고려한 후 미성년자는 증거가 정상 참작이나 완화 상황이 될 수 있는 증거에 따라 청소년 법정이 (1) ~ (5)절(포함)의 (A)호에 지정된 기준 평가에 따라 미성년자가 청소년 법정의 시설을 통해 제공되는 치료, 진료 및 교육 프로그램을 따를 수 있는지 결정하지 않는 한 청소년 법정 법률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가정해야 한다.

(1) (A) 미성년자가 보여준 범죄의 성숙도.

(B) (A)호에 지정된 기준을 평가할 때 청소년 법정은 혐의가 있는 범죄를 저지를 당시 미성년자의 나이, 성숙도, 지적 능력 및 신체적, 물리적, 정신적, 정서적 상태, 미성년자의 충동성이나 범죄 행위의 위험성과 결과를 이해하지 못한, 미성년자의 행동에 대한 가족, 성인 또는 동년배의 압력의 영향 및 미성년자 범죄 성숙도도에 대한 미성년자 가족과 지역 사회 환경 및 어린 시절의 정신적 외상의 영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관련 요소에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2) (A) 미성년자가 청소년 법정의 관할권이 만료되기 전에 재활할 수 있는지 여부.

(B) (A)호에 지정된 기준을 평가할 때 청소년 법정은 미성년자의 성장과 성숙 가능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관련 요소에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3) (A) 미성년자의 이전 범죄 기록.

(B) (A)호에 지정된 기준을 평가할 때 청소년 법정은 미성년자의 이전 범죄 기록의 심각도 및 미성년자의 이전 범죄 행위에 대한 미성년자의 가족과 지역 사회 환경 및 어린 시절의 정신적 외상의 영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관련 요소에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4) (A) 청소년 법정이 미성년자를 재활하려는 이전 시도의 성공.

(B) (A)호에 지정된 기준을 평가할 때 청소년 법정은 미성년자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이전에 제공한 서비스의 타당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관련 요소에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5) (A) 탄원서에서 미성년자가 저질렀다는 혐의가 있는 범죄의 환경 및 심각성.

(B) (A)호에 지정된 기준을 평가할 때 청소년 법정은 그 사람의 실제 행위, 그 사람의 정신 상태, 그 사람의 범죄 개입 정도, 그 사람이 실제로 초래한 위해의 수준 및 그 사람의 정신적이고 정서적 발달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관련 요소에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청소년 법정에서 처리하기에 적합하다는 판결은 (1) ~ (5)절 (A)호(포함)에서 설정한 기준을 고려한 후 순응에 대한 평결 및 미성년자가 이러한 모든 기준과 각 기준에 적합하다는 각 기준에 대한 명령에 인용된 평결을 근거로 해야 한다. 적합성을 평결할 때 법정은 이러한 각 기준을 평가함에 있어 정상 참작 또는 완화 환경을 고려할 수 있다. 공판이 본 항에 따라 공지된 경우 법정은 적합성 공판의 결론이 날 때까지 탄원서를 요청하는 것을 연기해야 하며 이미 접수되었을 수 있는 요청은 공판의 증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본 하위 조항에 따라 미성년자가 청소년 법정 처리가 적당하지 않고 범죄 관할지 법정에서 재판하며 사실 인정자에 의해 유죄가 인정된 경우 판사는 1732.6항에 지정된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한 미성년자를 주 교도소에 수감하도록 선고하는 대신 미성년자를 교정 재활부, 청소년 시설국에 수감하도록 판결할 수 있다.

(d) (1) 602항 (b)조에서 제공하는 것을 제외하고 지방 검사 또는 기타 적합한 검찰 공무원은 (b)조에 열거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기소된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해 범죄 관할지 법정에 반박하는 기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2) 602항 (b)조에 제공된 것을 제외하고 지방 검사 또는 기타 적합한 검찰 공무원은 다음 상황 중 하나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해 반박하는 기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A) 미성년자가 성인이 저질렀다면 주 교도소에 사형 또는 종신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가 있는 경우.

(B) 미성년자가 형법 12022.5 또는 12022.53항에서 설명하는 범죄 행위 동안 또는 중범죄를 시도하는 동안 개인적으로 총기를 사용했다는 혐의가 있는 경우.

(C) 미성년자가 다음 상황 중 하나 이상이 적용되는 (b)조에 나열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가 있는 경우:

(i) 미성년자가 (b)조에 나열된 범죄 행위를 저질러 602항에서 설명하는 사람으로 이전에 밝혀진 경우.

(ii) 갇힌 범죄 행위를 촉진하거나, 발전시키거나, 지원하려는 구체적인 의도를 가지고 형법 186.22항 (f)조에 설명된 범죄 거리 갇힌의 이익을 위해, 명령에 따라 또는 연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iii) 형법 1부 제11.6(422.55항에서 시작)에서 설명하는 다른 사람의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 국적, 장애, 성별 또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또는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이 이러한 특성 중 하나 이상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주 헌법이나 법률 또는 미국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주어지는 자유롭게 즐길 권리를 위협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우.

(iv) 범죄 행위의 희생자가 65세 이상이거나,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 사지마비 환자, 양측 하지 마비 환자, 발육 장애인 또는 휠체어를 탄 사람이고 범죄를 저지른 당시에 미성년자가 그 장애를 알게 되었거나 알고 있었던 경우.

(3) 602항 (b)조에서 제공하는 것을 제외하고 지방 검사 또는 기타 적합한 검찰 공무원은 미성년자가 14세 이상일 때 중범죄를 위반하여 602항에서 설명하는 사람으로 이전에 밝혀졌던 경우 다음 범죄 중 하나 이상을 저지른 것으로 기소된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해 범죄 관할지 법정에 반박하는 기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A) 범죄 행위의 희생자가 65세 이상이거나,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 사지마비 환자, 양측 하지 마비 환자, 발육 장애인 또는 휠체어를 탄 사람이고 범죄를 저지른 당시에 미성년자가 그 장애를 알게 되었거나 알고 있었다는 혐의가 있는 중범죄.

(B) 형법 1부 제11.6 (422.55항에서 시작)에서 설명하는 다른 사람의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 국적, 장애, 성별 또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또는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이 이러한 특성 중 하나 이상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주 헌법이나 법률 또는 미국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주어지는 자유롭게 즐길 권리를 위협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저지른 중범죄.

(C) 형법 186.22항에서 금지하는 범죄 거리 갇힌의 이익을 위해, 명령에 따라 또는 연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4) 지방 검사 또는 기타 적합한 검찰 공무원이 본 조에 따라 범죄 관할지 법정에서 미성년자를 반박하는 기소장을 제출한 경우 형사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형법 738항에서 제공하는 예심과 함께 치안 판사는 미성년자가 본 조 내에 포함된다고 믿는 합리적인 원인이 있다고 판결해야 한다. 합리적인 원인을 규정하지 않을 경우 형사 법정은 이 재판을 해당 사안을 관할하고 있는 청소년 법정에서 이전해야 한다.

(5) 검찰이 본 조에 따라 형사 관할 법정에 반박하는 기소장을 제출하지만 대신 청소년 법정에서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선택하는 범죄의 경우 미성년자가 추후에 602항의 (a)조에서 설명하는 사람으로 밝혀지면 미성년자는 730항에 따른 소년원, 목장 캠프, 산림 캠프, 소년원 또는 보호관찰 소년원 또는 재활 교정부, 청소년 시설국에서 운영하는 모든 기관에 배치하도록 판결해야 한다.

(6) 본 하위 조항에 따라 미성년자가 청소년 법정 처리가 적당하지 않고 범죄 관할지 법정에서 재판하며 사실 인정자에 의해 유죄가 인정된 경우 판사는 1732.6항에 지정된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한 미성년자를 주 교도소에 수감하도록 선고하는 대신 미성년자를 교정 재활부, 청소년 시설국에 수감하도록 판결할 수 있다.

(e) 부적합 판정을 고려 중인 미성년자의 행동 패턴과 사회적 기록에 관해 본 항에 따라 보호 관찰관이 제출한 보고서는 656.2항 (b)조에서 승인하는 대로 희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희생자 부모나 보호자 또는 희생자가 사망한 경우 가장 가까운 친척이 제공하는 서면 또는 구두 진술서를 포함해야 한다. 법정의 부적합성 판결과 관련이 있는 경우 희생자의 진술서를 법정에서 고려해야 한다.

제5항. 개정안.

본 법안은 목적의 이행을 위하여 넓게 해석되어야 한다. 본 법안의 4.1 및 4.2항의 조항은 이런 수정안이 각 상/하원 의원의 다수결에 의해 통과되고 주지사가 서명한 법령에 의해 이 법안의 의도와 일치하는 한 수정될 수 있다.

제6항. 분리 가능 조항.

본 법안의 조항 또는 본 법안의 일부, 또는 조항이나 일부를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적용 시 어떠한 사유로 무효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 나머지 조항, 또는 조항의 적용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완전한 효력을 유지하고 이를 위하여 본 법안의 조항을 분할할 수 있다.

제7항. 상충 발의안.

(a) 주 수감자에 대한 크레딧과 가석방 자격 요건 또는 청소년 피고에 대한 성인 법정 기소에 관한 본 법안과 다른 법안이 동일한 주 투표에 상정되는 경우 다른 법안의 조항이 본 법안과 상충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본 법안이 상충한다고 간주되는 법안보다 더 많은 찬성 득표를 받는 경우 본 법안의 조항이 전적으로 우세하며 다른 법안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

(b) 본 법안이 유권자에 의해 승인되었지만 법에 따라 동일 선거 투표에서 유권자의 승인을 받은 다른 상충 법안으로 대체되었고 향후 그 상충 투표 법안이 무효화될 경우, 본 법안이 즉시 시행되며 완전한 효력을 발휘한다.

제8항. 지지자의 입장.

법률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주, 정부 기관 또는 공무원이 본 법안의 합헌성을 방어하지 못하는 경우 투표자, 다른 정부 기관, 지지자 또는 없는 경우 이 주의 시민의 승인을 받은 후 이런 소송이 사실심 법정에서 있거나, 항소이거나 California 대법원 또는 미국 대법원의 재량권 검토인지 관계 없이 합헌성을 방어할 목적으로 이 법안의 합헌성에 관한 법정 소송에 개입할 권한이 있다. 소송을 방어하는데 소요되는 합리적인 수수료와 비용은 사법부에 할당된 기금으로 충당하며, 즉시 제공해야 한다.

제9항. 자율적 수립.

본 법안은 목적의 이행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발의안 제 58호

2013-2014 정기국회 (753장, 2014년 법령)의 상원 법안 1174에 의해 제안된 본 법은 California 헌법 제 II조 10항에 따라 주민들에게 제출된다.

본 법안은 교육 법령의 조항을 수정하고 폐기한다. 삭제하도록 제안된 조항은 취소선으로 인쇄되었고, 새로 추가된 조항은 기울임체로 인쇄되어 새로운 조항임을 명시하였다.

제안 법

제1항. 이 조치는 "California Ed.G.E. 발의안" 또는 "글로벌 경제를 향한 California 교육 발의안"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에 따라 인용할 수 있다.

제2항. 교육 법령의 300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300. California 주민 주민은 다음과 같이 조사하여 공표한다.

(a) 영어는 미국과 California주의 국가 공식 언어이고, California 대다수 주민이 구사하며, 또한 과학, 기술 및 국제 비즈니스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 주요 세계언어이므로 중요한 경제 관련 언어이기도 하다.

(b) 이민자 모든 부모는 자녀가 우수한 영어 능력을 확보하여 영어를 마스터하고 고품질의 교육을 받아서 경제적, 사회적 아메리칸 드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열망한다.

(c) California는 전 세계 동료들과 매일 의사소통해야 하는 수많은 다국적 사업의 본고장이다.

(d) 공공 및 민간의 모든 분야에 종사하는 California 고용주들은 고객, 클라이언트 및 사업 파트너와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자 다국어를 구사하는 종업원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e) 다국어 구사 능력은 국가 안보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외교와 국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f) California는 주의 경제적 거래와 외교적 노력에 있어서 중요사항인 영어, 표준 중국어 및 스페인어를 비롯한 세계에서 가장 큰 언어의 보고이다.

(g) California에서는 모든 부모가 자녀에게 영어와 하나 이상의 외국어를 높은 수준으로 교육시킬 수 있어서, 학생이 고등 교육과 경력을 높일 수 있게 해준다.

(e) (h) 정부 및 California 공립 학교는 인증이나 출신국과 상관없이 모든 California 아동에게 생산적인 사회 구성원이 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능력을 제공해야 하는 도덕적, 헌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 이러한 능력 중에서 영어 구사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d) (i) California 공립 학교는 현재 수많은 이민 자녀들의 높은 탈락율과 낮은 수준의 영어 구사 능력을 통해 지난 20년 간 실패한 것으로 입증된 값비싼 실험적 언어 프로그램에 재정 자원을 낭비하면서 이민 자녀 교육에 실패하고 있다. California 법률은 공공 교육 편당을 보다 공정하게 구조조정하고, 영어 학습을 개선하는데 자원을 더 많이 쓰도록 지시하며, 현지 관리 편당 방식과 현지 관리 책임 플랜을 통해 편당을 사용하는 방식에 관해 교육구, 교육 사무국 및 학교에게 현지 관리를 제공해주는 과거 학교 편당 개혁을 승인하였으며, 주지사가 이에 서명했다.

(j) 학부모는 현재 다국어 학습과 같은 21세기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학생에게 더 많이 제공해 줄 혁신적인 새 프로그램을 수립하는데 참여할 수 있다.

(k) 모든 학부모는 자녀가 글로벌 경제에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대학과 경력을 더욱 잘 준비하게 해 줄 언어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비롯하여 자녀에게 최상인 교육을 요구할 수 있다.

(l) 기존 법률은 교사와 학교에게 제약을 가하고 있어서 다국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학생의 능력을 제약하고 있다.

(e) (m) 젊은 이민 자녀들은 교실에서 초기에 영어와 같은 새 언어에 심하게 노출되는 경우 그 언어의 완벽한 구사능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 다국어 능력과 다양한 리터러시의 인지적, 경제적, 장기 학문적 이익은 한 대규모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f) (n) 이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California 공립학교 내 모든 아동이 최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영어를 교육 받을 수 있도록 2016년 11월 주 차원의 총선에서 본 장의 특정 규정에 대한 수정과 폐기는 유권자의 목표를 진전시켰다. 최고 품질의 교육을 받고, 영어를 마스터하며, California Ed.G.E. (글로벌 경제를 향한 California 교육)를 제공하는 고품질의 혁신적인 연구 기반 언어 프로그램에 접근한다.

제3항. 교육 법령의 305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305. (a) (1) 3조에 명시된 예외사항의 적용을 받으면서 4.5조에 따른 현지 관리와 책임 플랜 개발에 요구되는 학부모와 공동체 참여 프로세스의 일환으로서 (310항과

함께 시작함), California 공립학교 내 모든 아동은 영어 교육을 통해 영어를 교육 받아야 한다. 특히, 모든 아동이 영어 교육을 받을 것을 요구해야 한다. 영어 학습자인 아동은 보통 1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된 임시 전환 기간 동안 전문 영어 몰입을 통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 현지 학교는 연령이 다르지만 영어 구사능력은 유사한 영어 학습자를 동일한 학급에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현지 학교는 모국어와 다르지만 영어 구사능력이 동일한 수준인 영어 학습자를 동일한 학급에 섞어도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영어 학습자가 우수한 영어 지식을 습득한 경우 이들을 영어 위주 학급으로 이전시켜야 한다. 하기의 8조 하에서 가능한 수정의 적용을 받으면서(335항과 함께 시작함), 영어 학습자를 위한 현재의 보조 펀딩은 최대한 많이 유지되어야 한다. 52060) 제2 디비전 4의 28부 6.1장, 교육구와 교육 사무국은 306항에 규정되어 있듯이 언어 획득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것 등을 비롯하여 효과적이고 적합한 지도 방법을 추구하여 학생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요구사항은 영어 학습자와 영어가 모국어인 자를 비롯하여 모든 학생이 영어 개발 표준과 같은 핵심 학문 콘텐츠 표준에 접근할 수 있고, 52060항과 52066항의 하위디비전 (d) 단락 (2)에 명시된 주 우선순위에 따라 영어에 능숙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교육구와 교육 사무국은 최소한 306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체계적인 영어 몰입 프로그램을 영어 학습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 목적은 영어 학습자가 영어 개발 표준과 같은 핵심 학문 콘텐츠 표준에 접근할 수 있고, 52060항과 52066항의 하위 디비전 (d) 단락 (2)에 명시된 주 우선순위에 따라 영어에 능숙해지도록 하는 것이다.

(b) 교육구나 교육 사무국은 이 항에 따라 언어 획득 프로그램을 수립할 때 적합한 권한과 경력을 갖춘 관리자와 인증된 교사 등을 비롯하여 적합한 교직원과 상의해야 한다.

(c) 또한 교육구와 교육 사무국은 영어를 모국어로 구사하는 학생에게 제2외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가르칠 수 있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영어 이외 언어는 학교 공동체의 언어적, 재정적 자원과 그 외 현지 사정에 따라 학부모, 공동체 및 학교의 재량에 속한다.

(d) 이 항에 따라 수립된 언어 획득 프로그램은 310항의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제4항. 교육 법령의 306항은 다음을 명시하도록 수정된다.

306. 본 조와 3 1조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310) 300항과 함께 시작함)는 다음과 같다.

(a) "영어 학습자"라 함은 영어를 말하지 못하며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고 현재 정상적인 영어 수업을 수행할 수 없는 아동(제한적인 영어 구사 즉, LEP 아동이라고도 함)을 의미한다. 2001(20 U.S.C. 7801(25))의 연방 낙제학생방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한적인 영어 능력"을 지닌 학생을 의미한다.

(b) "영어 수업"이라 함은 교직원이 사용하는 수업 언어가 주로 영어이고 그러한 교직원이 우수한 영어 지식을

갖추고 있는 학급을 의미한다. "영어 모국어 구사자"라 함은 유아기부터 자택에서 영어를 학습 받아 사용해 왔고 영어가 개념 형성과 의사소통의 주 수단이었던 학생을 의미한다.

(c) "영어 위주 학급"이라 함은 학생이 영어 모국어 구사자이거나 이미 합당한 영어 능력을 갖춘 학급을 의미한다. "영어 획득 프로그램"이라 함은 가능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영어를 획득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영어 개발 표준을 비롯한 주에서 채택된 학문적 콘텐츠 표준에 관해 학생에게 지도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학생에게 제공되는 영어 획득 프로그램은 연구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서 영어와 제2 외국어에 대한 학년 수준 능숙도와 학문적 성취도를 이끌 수 있어야 한다. 언어 획득 프로그램은 다음 사항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1) 높은 학문적 성취, 1차 및 2차 언어 능숙도 그리고 교차 문화적 이해를 목표로 하여 영어 모국어 구사자와 다른 언어 모국어 구사자에게 통합형 언어 학습과 학문 지도를 하는 이중 언어 몰입 프로그램.

(2) 리터러시와 학문적 교육을 위해 영어와 학생의 모국어를 활용하여 학생을 지도하고, 영어 학습자가 주에서 채택된 학문적 콘텐츠 표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영어 능숙도뿐만 아니라 주제 콘텐츠와 고차원 능력을 마스터할 수 있게 해주는 영어 학습자용 과도기적 또는 개발적 프로그램.

(d) (3) "전문 영어 몰입" 또는 "체계적 영어 몰입"이라 함은 아동용 영어 획득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거의 모든 학급 지도가 영어로 이루어지지만 영어를 배우고 있는 학생용으로 설계된 커리큘럼과 프레젠테이션이 있는 영어 학습자용 체계적 영어 몰입 프로그램.

(e) "이중 언어 교육/모국어 지도"라 함은 대부분 또는 모든 지도, 교과서 및 교육 자료가 아동의 모국어로 되어 있는 학생용 언어 획득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제5항. 교육 법령의 310항은 다음을 명시하도록 수정된다.

310. (a) 305항의 요구사항은 아동 학부모의 사전 서면 고지 동의(매년 제공됨)를 받아서 포기할 수 있다. 아니면, 학교에 등록된 학생의 법률 후견인이 이 항에 따라 자신의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언어 획득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도 있다. 311항과 아래에 명시된 여건 하에서 학부모나 법률 후견인이 지정한 학교. 그러한 고지 동의는 학교당 30명 이상 학생의 전술한 후견인 또는 학부모나 법률 후견인이 직접 학교에 방문하여 포기를 신청하고, 다른 교육 프로그램 선택 시 사용할 교육 자료와 아동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교육 관련 기회에 대해 완벽한 설명을 들을 것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한 학부모 포기 조건에 따라, 아동은 영어를 배우고 이중 언어 교육 기법이나 법률에서 허용하는 그 외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교육 방법론을 통해 다른 주제를 학습하는 학급으로 이전할 수 있다. 특정 학년 20명 이상 학생의 후견인이 포기를 신청한 개별 학교가 언어를 지도하도록 설계된 언어 획득 프로그램을 요청하는 경우, 그러한 수업을 제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학교는 그러한 수업을 제공하는 공립학교로 학생을 전학시킬 수 있어야 한다. 305항의 요구사항을 근거로 한 가능한 범위까지의 프로그램.

(b) 교육구는 이 항에 따라 언어 획득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2가지 사항을 모두 실시해야 한다.

(1) 42238.02항에 명시된 유치원과 1 ~ 3학년 학급 규모 요구사항을 준수한다.

(2) 48980항에 따라 또는 등록 시 요구되는 연간 학부모 고지의 일환으로서, 각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등을 비롯하여 교육구에 등록된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언어 프로그램 유형에 관한 내용을 저학년 학생의 학부모나 법률 후견인에게 제공한다.

제6항. 교육 법령의 311항은 폐지된다.

311. 310항에 의거하여 학부모의 예외 포기가 허용될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a) 영어를 이미 알고 있는 아동: 이 아동은 영어 어휘 이해, 읽기 및 쓰기에 관한 표준 시험을 통해 측정했을 때 우수한 영어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시험에서 아동은 자신의 학년에 대한 주 평균 이상 또는 5학년 평균 이상(둘 중 더 낮은 것)으로 점수를 낸다. 또는

(b) 고령 아동: 이 아동은 10세 이상이고, 교장과 교직원이나 아동의 신속한 기본 영어 능력 습득을 위해 대체 교육과정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c) 특수한 요구가 있는 아동: 이 아동은 이미 해당 학년의 영어 수업을 30일 이상 받았고, 이후 교장과 교직원이나 아동의 전반적인 교육 개발을 위해 아동에게 대체 교육과정이 더 적합한 특수한 신체적, 정서적, 생리적, 교육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현지 교육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주 교육위원회의 최종 검토를 받아서 수립된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이러한 특수 필요성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 현지 교육감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서 그러한 결정을 한다. 그러한 특수 필요성이 있더라도 포기의 발행을 강제하지 못하며, 학부모는 포기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완벽하게 고지 받아야 한다.

제7항. 교육 법령의 320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320. California 헌법의 조 IX조 5항뿐만 아니라 2조(305항과 함께 시작함) 및 3조(310항과 함께 시작함)에 자세히 나와 있듯이, 모든 California 학생은 영어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California 학생이 공립학교에서 영어 지도 커리큘럼 옵션을 거부 당한 경우 그 아동의 학부모나 법률 후견인은 이 규정의 집행을 위해 소송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지며, 승소하는 경우 징벌적, 결과적 손해배상이 아니라 정상적, 관행적 변호사 수수료와 실제 손실을 보상 받아야 한다. 가용할 수 있는 공립학교에서 California 학생에게 그러나 무료 공교육과 영어 교육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본 법규의 조건을 시행하는 것을 고의적으로 반복해서 거부하는 학교위원회 위원이나 그 외 선출직 공무원 또는 공립학교 교사나 관리자는 아동의 학부모나 법률 후견인이 입은 수수료와 실제 손해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도 있다. 공교육.

제8항. 교육 법령의 335항은 다음을 명시하도록 수정된다.

335. 이 법령의 규정은 유권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 또는 각 의회의 2/3 과반수 투표를 통과하여 주지사의 서명을 받은 법규의 목적을 촉진하기 위한 법규를 통해 승인된 경우 효력을 지니는 법규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제9항. 본 법령의 2 ~ 8항은 2017년 7월 1일에 발효된다.

발의안 제 59호

다음과 같은 자문 관련 질의는 2015-16 정기국회(20장, 2016년 법령)의 상원 법안 254의 4항에 따라 주민에게 제출된다.

자문 관련 질의: Citizens United v. Federal Election Commission (2010) 558 U.S. 310 및 기타 관련 법률적 선례를 번복하고, 캠페인 기부 및 지출에 대한 완전한 규제나 제한을 허용하며, 부의 정도와 상관없이 모든 시민이 서로에게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게 보장하고, 기업이 사람과 동일한 헌법상 권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California의 선출된 공무원들이, 미국 헌법 개정안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을 제안하고 비준하는 것을 포함하나 그것들에 한정되지 않는 헌법이 부여한 그들의 모든 권한을 사용해야 합니까?"

발의안 제 60호

California주 헌법 제II조 8항의 규정에 따라 본 발의안을 주민에게 제출한다.

본 발의안은 노동법에 새 조항을 추가한다. 따라서 추가될 새 조항은 신설 규정임을 나타내기 위해 *이탤릭체*로 인쇄한다.

제안 법

California 성인영화산업 내의 안전 섹스법

California 주민은 다음과 같이 법률을 제정한다:

제1절. 제목.

본 법의 명칭은 "California 성인영화산업 내의 안전 섹스법" (이하, "법")이라 하고, 인용시 이 명칭을 사용한다.

제2절. 주요 조사 결과 및 공표 사항.

California 주민의 조사 및 공표 사항은 다음과 같다:

(a) 성인 영화 제작과 관련된 California 내의 광범위한 성병 확산은 한 개 이상의 카운티 공중 보건부에 의해 문서화되었다. 성인 영화 산업의 모든 종사자들은 근로 중에 질병에 걸리지 않아야 한다. 성인 영화 산업 내에서 HIV/AIDS와 기타 성병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성인 영화 제작에 있어서 안전 섹스 관행이 중요하며, 특히 연기자들은 콘돔을 사용해야 한다. 대중의 우려는 성인 영화 연기자들 사이의 감염 위험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HIV/AIDS 및 기타 성병이 성인 영화 연기자들로부터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전파될 위험을 포함한다.

(b) 성인 영화 산업은 근로자의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하며, 안전한 섹스를 위한 필수 도구들의 사용을 가로막고 있다. HIV/AIDS 및 기타 성병과 관련한 예방 접종, 검사, 의료 감시 비용을 현재 성인 영화 연기자들이 부담하고 있으며 성인 영화 제작자들은 이러한 비용과 책임 부담을 회피하고 있는데, 이는 불공평한 일이다 이 법은 이러한 대중의 우려를 해결하는데 필요하고 적절하다.

제3절. 목적 및 취지

California주의 주민은 본 법 제정의 목적 및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a) 성인 영화 산업에서 일하는 연기자들을 보호하고, California 내에서 성인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성병이 확산되는 것을 최소화하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California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b) 무엇보다도 연기자들이 콘돔을 사용해 성병으로부터 보호받도록 성인 영화 제작자들이 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c) California 직업안전·보건과 및 California 직업안전·보건표준위원회에게 법 시행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요구한다.

(d) HIV/AIDS 및 기타 성병과 관련한 예방 접종, 검사, 의료 감시 비용을 성인 영화 제작자들이 지불하도록 하고, 영화 제작자들이 본 법의 보건·안전 요건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또는 개인적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적 소권을 성인 영화 연기자들에게 부여한다.

(e) 본 법에 반하는 성인 영화를 제작·유통에 재정적 이익을 가지는 모든 개인 및 법인에게 책임을 부과한다.

(f) 성인 영화 제작사들이 촬영을 통지하고, 촬영과 관련된 일정한 기록을 보존하며, 특정 장면에서 콘돔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고 통지하고, 추가적인 보건 요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한다.

(g) 성인 영화 제작자가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이 법의 위반을 막고 준법을 촉진한다.

(h) California주가 이 법의 위반자들을 소추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한다.

(i) 주가 소추하지 않는 경우 내부고발자 및 사인으로서의 시민이 본 법 위반자를 소추할 수 있도록 한다.

(j) 배우 에이전트들이 성인 영화 제작에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성인 영화 연기자들을 해당 영화에 출연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k) 본 법이 채택된 후 법정에서 이의가 제기되는 때, 본 법의 적절한 합법적 방어 수단을 규정한다.

제4절. California 성인영화산업 내의 안전 섹스법을 노동법에 제6720절에서 제6720.8절까지를 추가하여 성문화한다.

제4.1절. 노동법에 다음과 같이 제6720절을 추가한다:

6720. 보건 및 고용 요건 성인 영화 산업

(a) 성인 영화 제작자는 성인 영화 연기자가 혈액 및 기타 성병을 옮길 수 있는 잠재적인 매개 물질("OPIM-STI")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기술 통제 및 작업 관행 통제를 유지해야 한다. 기술 통제 및 작업 관행 통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1) 성인 영화를 촬영하는 동안 콘돔 제공 및 콘돔의 필수적 사용.

(2) 콘돔 사용이 용이하도록, 콘돔에 해를 입히지 않는 물 또는 실리콘 계열의 윤활제 제공.

(3) 행정 입법 과정을 거쳐 위원회가 채택한 규정이 요구하는 기타 합리적인 성병(STI) 예방 기술 통제 및 작업 관행 통제로서 제6720절에서 제6720.8절까지 포함된 목적 및 취지와 합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

(b) 성인 영화 연기자가 되는데 필요한 성병 예방 접종, 검사, 의료 후속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성인 영화 제작자가 부담하며, 성인 영화 연기자는 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c) 성인 영화 제작자는 일체의 방법을 통해 취득한 성인 영화 연기자의 모든 건강 정보를 법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엄격하게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d) 성인 영화 출연자가 되는데 필요한 성병 예방 접종, 성병 검사, 또는 의료 검사에 성인 영화 출연자가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인 영화 제작자가 이를 제안, 제공하지 않거나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성인 영화 제작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며, 성인 영화 제작자는 자신이 제안, 제공하지 않거나 성인 영화 출연자를 대신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각각의 성병 예방 접종, 성병 검사, 의료 검사 비용과 동일한 금액을 California주에 납부해야 한다.

(e) 법이 허용하는 기타 모든 구제 수단 및 손해 배상에 추가하여, 재판관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경우 성인 영화 출연자는 매년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에 따라 최고 오만달러(\$50,000)까지 민사상 손해 배상 판결을 받을 수 있다: (1) 성인 영화 제작자가 (a), (b), (c)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성인 영화 출연자가 경제적 손해 또는 신체적 상해를 입고; (2) 성인 영화 제작자의 법규 위반이 과실, 부주의, 고의에 의한 것이며; (3) 판정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때. 법원은 본 항 또는 (f)항에 따라 제기한 소송의 소송 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승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해야 한다. 원고의 소제기가 선의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은 승소한 피고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성인 영화 출연자의 경제적 손해 또는 신체 상해로 인한 손해가 성인 영화 제작자의 근로자 산재 보험으로 충당되는 경우, 본 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f) (e)항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성인 영화 출연자는 법원의 집단 인증을 전제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 모든 성인 영화 출연자를 대리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g) 위원회는 행정절차법의 행정입법규정(행정부 제2편 제3부 파트1 제3.5장 (제11340절 이하))에 따라 제6720절에서 제6720.8절까지의 규정 및 취지를 시행.

발효시키기 위한 규정을 2018년 1월 1일까지 채택해야 한다.

(h) 본 절은 최종적인 성인 영화 작품에서 콘돔, 차단 수단, 기타 개인 보호 장비가 눈에 띄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California주 내에서 일체의 방법을 통해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성인 영화에 콘돔이 보이지 않는 경우 본 절을 위반해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반증이 허용된다.

(i) 제6720절에서 제6720.8절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임은 성인 영화 출연자, 선의의 직원, 독립 계약을 한 개인, 성인 영화 제작자의 지시에 따라 일반적인 업무 범위내에서 연기하는 성인 영화 제작자의 제작 자원봉사자에 대해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이러한 개인들은 성인 영화에 재정적 이해관계를 갖지 않아야 하며, 또한 성인 영화 제작자가 아니어야 한다. 이러한 개인들은 제6720절에서 제6720.8절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성인 영화 제작자의 에이전트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j) 해당 규정이 작업장 안전 보호 및 성인 영화 출연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제6720절에서 제6720.8절까지의 규정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아닌 한, 어떠한 경우에도 제6720절에서 제6720.8절까지의 규정으로 인해 해당 부서나 위원회 등의 주 기관이 성인 영화의 제작, 생산, 자금 조달, 유통에 적용되는 규정을 공포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k) 제6720절에서 제6720.8절까지의 규정에 명시된 벌금액을 법원이 무효라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행정 입법 절차에 따라, 벌금이 무효라고 판단된 규정의 요건 위반을 막고 그 준수를 촉진하기에 충분한 합당한 금액의 벌금을 정할 권한 및 의무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채택할 권한 및 의무를 갖는다.

제4.2. 노동법에 다음과 같이 제6720.1절을 추가한다:

6720.1. 고지 및 공개

(a) 성인 영화 제작자는 촬영이 시작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게 사실이 아닌 경우 위증의 죄로 처벌받기로 서명한 서면으로 다음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1) 촬영지의 주소. 촬영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때로부터 72시간 이내에 해당 부서에 이를 알려야 한다.

(2) 촬영 날짜. 촬영 날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때로부터 72시간 이내에 해당 부서에 이를 알려야 한다.

(3) 성인 영화 제작자의 이름 및 연락처 정보.

(4) (h)항에 따라 지정된 기록 보관인의 이름 및 연락처 정보.

(5) 해당 성인 영화 제작자에게 성인 영화 연기자를 파견한 배우 에이전시의 이름 및 연락처 정보.

(6)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사실이 아닌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기로 서명한 성인 영화 제작자의 증명서:

(A) 질내 성교 또는 항문 성교 행위를 촬영하는 동안 언제나 콘돔을 사용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용하겠다는 사실;

(B) 성인 영화 연기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성병 검사, 성병 예방 접종, 의료 검사를 촬영을 개시하기 전에 출연자에게 제안 하였으며 출연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았다는 사실;

(C) 모든 성병 검사, 성병 예방 접종, 의료 검사 시행 비용은 성인 영화 제작자가 지불하였다는 사실.

(7) 제6720절에서 제6720.8절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부서나 위원회가 요구하는 일체의 문서 또는 사실.

(b) 본 절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출하는 즉시 성인 영화 제작자는 본 절에 따라 제출된 모든 정보의 접수, 처리, 유지와 관련된 데이터 보안, 데이터 보관, 기타 관리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으로 해당 부서 또는 위원회가 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해당 부서 또는 위원회가 수수료를 정할 때까지는 수수료를 백달러(\$100)로 한다. 본 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는 제6720절에서 제6720.8절까지의 규정을 집행하는 비용에 충당해서는 안 된다.

(c) 성인 영화에 이인 이상의 성인 영화 제작자가 존재하는 경우, (a)항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정보는 모든 성인 영화 제작자를 대신해 1인의 제작자가 제출할 수 있다.

(d) 성인 영화 제작자가 본 항이 요구하는 정보를 시기에 맞게 해당 부서에 공개하지 않은 경우, (f)항의 훈련 프로그램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g)항의 표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h)항의 기록 보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 집행 절차 또는 민사 소송의 결정에 따라 위반 행위 일건 당 천달러(\$1,000) 이상 칠천달러(\$7,00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반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행정 집행 절차 또는 민사 소송의 결정에 따라 각각의 반복 위반 행위에 대해 칠천달러(\$7,000) 이상 만 오천달러(\$15,00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항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각각의 정보마다 독립하여 위반 행위가 성립된다.

(e) (a) 항을 이행함에 있어서 고의적으로 허위의 진술이나 선언을 하거나 허위의 증명서를 제출한 성인 영화 제작자는 행정 집행 절차 또는 민사 소송의 결정에 따라 칠만달러(\$70,000)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f) 성인 영화 제작자는 모든 성인 영화 출연자 및 직원에게 위원회가 행정 입법 절차에 따라 채택한 규정 상의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g) 성인 영화를 촬영하는 장소에서는 언제나 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판을 48 포인트 이상의 통용되는 활자체 폰트를 이용해 게시해야 하며, 표지판에는 상기 성인 영화의 모든 성인 영화 연기자가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상태로 다음 경고문이 포함되어야 한다:

성병 및 성적 질환으로부터 연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California주는 성인 영화를 제작하는 동안

행해지는 모든 질내 성교 또는 항문 성교 행위에 콘돔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인 영화를 제작하는 동안의 모든 행위와 관련한 공중 보건에 관한 우려는 이곳으로 제출하십시오:

해당 부서 또는 위원회는 본 항이 요구하는 표지판의 상기 빈 칸에 직접 삽입할 문구를 결정하고 이를 대중 및 모든 성인 영화 제작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모든 성인 영화 제작자는 표지판의 상기 빈 칸에 해당 문구를 직접 삽입함으로써 이러한 결정을 준수해야 한다.

(h) 성인 영화 제작자는 제6720절에서 제6720.8절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록 보관인을 지정해야 한다. 기록 보관인은 다음 기록을 사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1) 성인 영화 제작자가 제작, 생산, 자금 조달, 감독한 성인 영화의 원본 및 미편집본.

(2) (a)항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정보.

(3) (f)항에 따라 성인 영화 제작자가 성인 영화 연기자 및 직원에게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했다는 증거.

(4) (f)항에 따라 성인 영화가 촬영되는 장소에 식별 가능한 표지판을 게시했다는 증거.

(i) 2018년 1월 1일까지, 해당 부서 또는 위원회는 행정절차법의 행정입법규정(행정부 제2편 제3부 파트1 제3.5장(제11340절이하))에 따라 본 항 및 제6720.2절 규정을 시행·발효시키기 위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제4.3절. 노동법에 다음과 같이 제6720.2절을 추가한다:
6720.2. 성인 영화 제작자: 면허.

(a) 성인 영화의 촬영을 개시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성인 영화 제작자는 소정의 신청 수수료를 지불하고 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면허를 획득해야 한다. 성인 영화 촬영을 개시할 때 이미 유효한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성인 영화 제작자는 새로운 면허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신청 수수료는 해당 부서가 행정 입법을 통해 본 항의 집행 비용에 충분한 금액으로 정한다. 해당 부서가 수수료를 정할 때까지 수수료는 백달러(\$100)로 한다. 본 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는 제6720절에서 제6720.8절까지의 규정을 집행하는 비용에 충당해서는 안 된다.

(b) 촬영이 시작된 후 10일 이내에 신청서와 수수료를 해당 부서에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가 이를 접수한 때로부터 즉시 면허의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면허의 효력은 10일 이전 또는 촬영 개시일 중 앞선 시점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c) 면허의 발급은 장관의 업무로 하며, 해당 부서가 이를 수행한다. 면허가 제6720절 (a)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성인 영화 제작자의 기재 사항에 의해 드러나는 경우 또는 해당 부서가 청문을 수행하도록 선임한 감독관 앞에서 행정 집행 절차 또는 민사 소송을 통해 적절히 증명된 경우에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d) 성인 영화 제작사가 개인이 아닌 경우, 해당 성인 영화 제작사의 소유자 전원 또는 그 운영 대리인이 면허를 취득하지 않는 한 면허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e) 해당 부서가 면허를 정지하지 않는 한 면허는 이년 동안 유효하다. 정지 기간의 최종일의 다음 날, 해당 부서는 면허가 정지된 자에게 면허의 회복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f) 면허 요건:

(1) 면허 신청자 및 면허 소지자는 해당 부서에 신청을 제출한 날에 앞선 12개월 또는 성인 영화 제작자의 정지 기간 중 짧은 기간 동안 제6720절 (a)항의 요건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행정 집행 절차 또는 법원에 의해 확인된 자여서는 안 된다. 제6720절에서 제6720.8절까지의 규정의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모든 사람은 해당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g) 면허소지자가 제6720절 (a)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해당 부서가 판단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면허소지자에게 서면 통지를 발부해야 한다. 통지에는 발견된 결격사유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면허소지자가 제6720절 (a)항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시정 조치를 기재해야 한다. 또한 면허소지자에게 벌금이 부과되거나 면허가 정지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h) 통지를 받은 면허소지자는 충분한 사유가 증명되는 경우 법규 준수를 요구하는 통지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행정 기관의 재검토를 요청하거나, 그 연기를 신청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재검토 또는 연기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i) 부서는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고 행정적 리뷰 또는 포기가 있는 후 10일 이내에,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부과된 벌금을 명시한 의사결정 서면 통지서를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정지되어 있는 면허의 경우, 의사결정 통지서에는 제6720항에서 제6720.8항까지 위반한 것으로 알려진 활동 또는 누락을 명시해야 하며, 정지된 면허의 경우에는 정지 기간 및 범위를 명시해야 합니다. 의사결정 통지서에는 면허가 복귀되거나 재발급되는 조건이 있으면 이에 대해서도 명시해야 합니다.

(j) 만일 부서 의사결정자가 정지를 촉발한 조건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제6720항에서 제6720.8항까지의 조항에 의거하여 부과된 모든 벌금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720항에서 제6720.8항까지의 조항에 의거하여 발급된 면허는 복권될 수 있습니다. 본 조항은 어떤 경우에도, 면허를 받은 사람의 직무 집행 영장을 추구할 권리 또는 불리한 면허 의사결정에 항소할 권리를 제한하는 조건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k) 면허 없이 성인 영화 제작자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그 결과, 제6720항의 하부조항 (a)를 이전에 위반한 것이 발견된 모든 성인 영화 제작자에게 일일당 최대 오십 달러(\$50)까지 부과합니다. 성인 영화 제작자의 자격을 충족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성인 영화 제작자로서 등록하지 못한 성인 영화 제작자는 면허 없이 성인 영화 제작자의 기능을 수행한 데 대해 일일당 최대 이십 오 달러(\$25)의 벌금을 지불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제4.4항. 노동법에 추가된 제6720.3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6720.3. 공소시효

(a) 제6317항에도 불구하고, 제6720항에서 제6720.8항까지, 또는 현재 시점 이후 채택되는 모든 성인 영화 규정의 알려진 위반자들을 기소하기 위한 소송에서, 소송 개시 시점은 다음 중 늦은 날로 해야 합니다.

(1) 위반 날짜로부터 일 년

(2) 타당한 실사 적용을 통해 위반이 발견되었어야 하거나, 위반이 발견된 날로부터 일 년

제4.5항. 노동법에 추가된 제6720.4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6720.4. 채무 및 벌금

(a) 제6423항에서 제6436항 내의 반하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라도 수행한 모든 성인 영화 제작자 또는 성인 영화 제작자와 대행사 관계에 있는 모든 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하부조항 (b)에 정의된 바와 같이 벌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1) 제6720의 하부조항 (a), (b), 또는 (c) 조항을 어느 하나라도 태만하게 위반한 자

(2) 제6720의 하부조항 (a), (b), 또는 (c) 조항을 어느 하나라도 반복적으로 위반한 자

(3) 경감 기간의 통지 및 만료 후, 제6720의 하부조항 (a), (b), 또는 (c) 조항을 어느 하나라도 준수하지 못하거나 준수를 거부한 자, 또는

(4) 하부조항 (a)의 단락 (1), (2), 또는 (3)에 있는 어느 행동이라도 저지르도록 다른 이를 방조한 자

(b) 하부조항 (a) 단락 (1)의 모든 위반은 일천 달러(\$1,000) 이상 오천 달러(\$5,000) 이하의 벌금에 의해 처벌 가능하며, 하부조항 (a) 단락 (2) 또는 (3)의 모든 위반은 오천 달러(\$5,000) 이상 칠만 달러(\$70,000) 이하의 벌금에 의해 처벌 가능하며, 하부조항 (a) 단락 (4)의 모든 위반은 일천 달러(\$1,000) 이상 삼만 오천 달러(\$35,000) 이하의 벌금에 의해 처벌 가능합니다.

(c) 제6423항에서 제6436항까지의 조항에 있는 모든 반대 조항에도 불구하고, 성인 영화 제작자에게 사망 또는 영구적이거나 연장된 신체 손상을 유발하는 위반인 제6720항의 하부조항 (a)를 고의로 위반하는 모든 성인 영화 제작자는 행정적 법 집행 절차 또는 민사 소송을 통하여 십만 달러(\$100,000) 이하의 벌금에 의해 처벌 가능합니다. 만일 성인 영화 제작자가 유한 책임 회사이거나 법인인 경우, 벌금은 백 오십만 달러(\$1,500,0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4.6항. 노동법에 추가된 제6720.5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6720.5. 통제 에이전트, 방조, 다중 위반

(a) 상업적 대가를 위한 구매를 통해 제6720항의 하부조항 (a)를 위반하여 California 주 내에서 촬영한 하나 이상의 성인 영화에 권리를 가지고 있고, 배포의 의도를 가지고 제6720항의 하부조항 (a)를 위반하여 California 주 내에서 촬영된 하나 이상의 성인 영화를 판매나 배포를 위해 California 주 안으로 또는 그 안에서 고의로 또는 무모하게 보내거나 보내도록 유발하거나 또는 가져오거나 가져오도록 유발하거나 배포를 제공하거나 배포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해당 상업적 목적의 영화의 경우 다음 중 큰 금액의 벌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1) 성인 영화에 대한 권리와 교환된 상업적 대가 총액의 이분의 일 배 이상인면서 일과 이분의 일 배 이하

(2) 성인 영화 제작 총 비용의 이분의 일 배 이상인면서 일과 이분의 일 배 이하

(b) 다른 사람을 방조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하부조항 (a)를 위반한 자는 하부조항 (a)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밝혀져야 합니다.

(c) 하부조항 (a)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이전에 밝혀진 하부조항 (a) 위반 책임이 있는 모든 자에게는 다음 중 더 큰 금액의 벌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1) 성인 영화에 대한 권리와 교환된 상업적 대가 금액의 두 배 이상인면서 세 배 이하

(2) 성인 영화 제작 총 비용의 두 배 이상인면서 세 배 이하

(d) 하부조항 (a) 위반에 대해 두 배 이상 채무가 있는 하부조항 (a) 위반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모든 자에게는 다음 중 더 큰 금액의 벌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1) 성인 영화에 대한 권리와 교환된 상업적 대가 금액의 세 배 이상인면서 네 배 이하

(2) 성인 영화 제작 총 비용의 세 배 이상인면서 네 배 이하

(e) 해당 필름이 성인 필름이 아닌 한, 제6720항에서 제6720.8항까지의 조항은 합리법적인 의학적, 교육적 및 과학적 활동, 성인 영화를 전송하거나 배포하는 정보통신 회사, 형사 범죄의 조사 및 기소에 있어 대행사를 기소하거나 형법 집행, 및 America 영화협회에서 등급을 판정하는 모든 필름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4.7항. 노동법에 추가된 제6720.6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6720.6. 집행, 내부고발자, 개인 소송권

(a) 제6720항에서 제6720.8항까지의 조항을 어느 하나라도 위반한 자는 행정상의 법 집행을 통해, 또는 부서나 그 피지정자, 민사 소송 검사, 제6720항 위반에 의해 괴롭힘을 받은 성인 영화 제작자 또는 California 주 내 거주하는 개인에 의해 제기된 민사 소송을 통해 지불 의무가 발생해야 합니다. 성인 영화 제작자 또는 개인은 본 하부조항에 의거한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부서가 행정상의 집행 절차를 통해서나 민사 소송 개시를 통해서 알려진 위반자를 추궁하도록 요청하는 서면 요청서를 부서에 접수해야 합니다. 이 요청서에는 제6720항에서 제6720.8항까지 위반되었다고 생각하는 근거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서는 그러한 개인에게 서면으로 응답하여, 행정적이거나 민사적 소송을 추구할 것인지 소송을 취하지 않을 것인지 자신의 의사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만일 부서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행정적 집행 절차 또는 민사적 소송을 통해 알려진 위반자를 추구할 것이라고 응답하고,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법 집행 절차를 개시하거나 민사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부서의 소송이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폐기되거나 해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소송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일 부처가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부정적인 응답을 하거나 응답하지 못한 경우, 소송을 요청한 자는 해당 민사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b) 민사 소송이 개시되는 시기는 부서가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민사 소송이 권리에 대한 침해 없이 해제되거나 행정상의 집행 조치가 폐기된 날 중 늦은 날까지로 산정하되, 단 요청서를 접수한 개인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 대해서만 그러합니다.

(c) 부서가 제6720항에서 제6720.8항까지의 조항에 일관적인 명령서를 발부했거나, 동일한 위반에 대해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벌금을 징수한 후에는, 제6720항에서 제6720.8항까지의 위반에 대해 어떤 사람과 관련하여서도 본 조항에 의거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6720항에서 제6720.8항까지의 조항이 아무런 형사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형사 검사가 동일한 거래 또는 발생에 관련한 해당 자에 대해 형사 소송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본 조항에 의거하여 제6720항에서 제6720.8항의 위반을 주장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없습니다. 제6720항에서 제6720.8항의 특정한 위반과 관련하여 본안에 대한 하나의 판결을 넘어 본 조항에 의거하여 획득할 수 없습니다. 원고가 부지런하게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거나 신의성실을 지키지 못한 경우, 법원은 다른 소송에 대한 권리 침해 없이 계류 중인 소송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d) 만일 본 조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한 명 이상의 피고에 대하여 판결에 들어간 경우, 원고에 의해 회복된 벌금은 다음과 같이 배분되어야 합니다. California 주에 75% 및 원고에 25%. 법원은 타당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 비용을 본 조항에 의거하여 제기되고 6720항에서 제6720.8항에 의해 승인된 모든 소송에서 우선순위인 정부기관이 아닌 원고 또는 피고에게 판결해야 합니다. 단, 피고가 원고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회복하기 위하여, 법원은 원고의 소송 추구가 말도 안 되는 혐의의 성급한 것인지 또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먼저 알아보아야 합니다.

제4.8항. 노동법에 추가된 제6720.7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6720.7. 탤런트 대행사 책임

(a) 제1700.4항의 하부조항 (a)에 용어가 정의된 바와 같이, 어떤 탤런트 대행사든 제6720항 의 하부조항 (a)을 준수하지 않는 성인 영화의 캐스팅 디렉터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하지 않는 제작자 또는 제작자의 대행사에게 성인

영화 연기자를 금전적 대가를 받고 알고도 추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본 하부조항을 위반하여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모든 탤런트 대행사는 본 하부조항 위반에 대한 책임에 대해 탤런트 대행사에 성공적으로 책임을 묻는 일과 관련된 타당한 변호사 비용 및 본 조항을 위반하면서 이루어진 추천의 결과로서 탤런트 대행사가 받은 금전적 대가 금액에 대하여 지불할 책임이 성인 영화 연기자에게 있습니다.

(b) 위증죄 벌금 하에 성인 영화 제작자가 서명하고, 성인 영화 제작자가 제6720항의 하부조항 (a)의 모든 요건을 준수하고 있으며 계속하여 준수할 것이라는 내용의 서면 확인서를 영화 촬영 시작 전에 득하는 모든 탤런트 대행사는 본 조항을 위반한 데에 따른 지불 의무가 없습니다.

(c) 본 조항의 위반은 위반자의 탤런트 대행사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직업안전보건과 및 노동기준집행과는 본 조항의 집행에 대한 현재 관할권을 유지해야 합니다.

(d) 제6720항의 하부조항 (a)의 위반에 대한 지불 의무의 결과가 나오는 즉시, 해당 부서는 제6720.1항 하부조항 (a)의 단락 (5)에 있는 정보를 산업관련국, 노동기준집행과, 또는 승계 대행사에 전송해야 합니다.

제4.9항. 노동법에 추가된 제6720.8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6720.8. 용어정의

제6720항에서 제6720.8항까지 조항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용어정의를 적용합니다.

(a) "성인 영화"란 연기가 실제로 페니스에 의한 질 또는 항문 성교와 실제로 관련되는 성적 삽입 장면의 모든 영화, 동영상, 멀티미디어 또는 기타 그러한 표현물의 녹화되거나 스트리밍되거나 실시간의 방송을 의미합니다.

(b) "성인 영화 연기자"란 영화 촬영 중에 자신의 페니스가 질이나 항문에 삽입되는 개인이나, 영화 촬영 중에 자신의 질이나 항문이 페니스에 의해 삽입되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c) "성인 영화 제작자"란 California 내에서 성인 영화 한 편 이상을 만들거나, 제작하거나, 재정을 대거나 감독하고 해당 성인 영화를 상업적 대가와 교환하여 판매하거나 판매 제안을 하거나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d) "성인 영화 규정"이란 제6720항에서 제6720.8항까지의 목적과 의도와 타당하게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행정절차법(정부법 제목 2, 제3부, 파트 1의 제1장 3.5 (제11340항으로 시작))의 규칙 제정 조항에 따라 위원회가 채택한 모든 규정을 의미합니다.

(e) "방조됨" 또는 "방조함"이란 알고도 또는 무모하게 어떤 사람에게 상당한 도움을 줌을 의미합니다.

(f) "영화 촬영 시작"이란 성인 영화가 녹화되거나 스트리밍되거나 실시간 방송되는 것이 시작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 (g) "위원회"란 직업 안전 보건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 (h) "상업적 대가"란 현실이나 디지털 화폐, 또는 현재나 미래 수익에 있어 우발적 권리 또는 기득권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하지 않는 모든 가치를 의미합니다.
- (i) "상업적 목적"이란 상업적 대가와 교환하여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하거나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유발함을 의미합니다.
- (j) "배포" 또는 "배포됨"이란 상업적 대가와 교환하여 소유물을 이전함을 의미합니다.
- (k) "부서"란 직업안전보건과를 의미합니다.
- (l) "영화 촬영됨 및 "영화 촬영"이란 성인 영화의 녹화, 스트리밍 또는 실시간 방송을 의미합니다.
- (m) "면허"란 성인 영화 제작자 보건 면허를 의미합니다.
- (n) "면허를 받은 사람"이란 유효한 성인 영화 제작자 보건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 (o) "기타 잠재적 감염성 물질-성적으로 옮겨지는 감염" 또는 "OPIM-STI"란 성적으로 옮겨지는 병원균이 들어 있어 옮을 수 있는 체액 및 기타 물질을 의미합니다.
- (p) "사람"이란 모든 개인, 파트너십, 회사, 협회, 기업, 유한 책임 회사 또는 기타 법적 주체를 의미합니다.
- (q) "성적으로 옮겨지는 감염" 또는 "STI"란 성적 삽입에 의해 퍼지는 모든 감염 또는 질병을 의미하며, 이는 HIV/AIDS, 임질, 매독, 클라미디아, 간염, 질 트리코모나스증, 생식기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HPV), 생식기 포진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제5항. 자율적 수립

본 법률은 California 주민들의 건강, 안전 및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그들의 공적 권한 행사이며, 자율적으로 수립되어 그 목적과 취지를 발효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6항. 상충 법안

본 법률은 포괄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법률 및 동일한 주제와 관련된 하나 이상의 법안이 동일한 주 전역 선거 투표지에 표시될 경우에는 다른 법안(들)과 본 법안이 상충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하며, 이것이 California 주민들의 의사입니다. 본 법률이 더 많은 찬성표를 얻을 경우 본 법률의 전체 조항이 우선권을 가지며 다른 법안의 조항들은 무효가 됩니다.

제7항. 지지자 책임성

California 주민들은 본 법률이 헌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허용 불가함을 이유로 법원에서 전체 또는 일부가 통과 후 폐기 결정되는 경우에는 본 법률의 지지자에게 민사적으로 책임이 있음을 본 문서를 통해 선언합니다. 그러한 헌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허용 불가한 법안은 납세자 기금 및 선거 자원을 남용하는 것이므로, 본 법률의 발의자는 본 법률의 초안자로서, 그러한 일이 발생한 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본 법률이 통과 후 법원에서 전체 또는 일부가 위헌 또는 법률적으로 무효로 폐기 결정되고, 법원 결정에 항소하거나 이를 뒤집을 수단이 소진된 경우, 발의자는 전체가 헌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허용 가능한 법안을 작성하지 못한 데 대하여 California 주의 일반 기금에 민사적 벌금 \$10,000를 지불해야 합니다. 어떠한 당사자나 주체도 이러한 민사적 벌금을 회피하거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제8항. 수정 및 폐지

본 법률은 의회의 삼분의 이(2/3) 찬성 투표에 의해 통과되고 주지사가 서명하여 법규에 의해 그 목표를 심화하기 위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9항. 분리 가능성

본 법률의 조항 또는 그 일부, 또는 조항이나 일부를 특정 사람이나 상황에 적용 시 어떠한 사유로든 무효나 위헌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 나머지 조항 또는 그 일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완전한 효력을 유지하고 이를 위하여 본 법률의 조항 및 일부를 분리할 수 있다. 유권자들은 본 법률 및 각 부분 및 일부가 하나 이상의 조항 또는 일부가 무효나 위헌이 되는지에 관계없이 채택되었음을 본 문서에서 선언합니다.

제10항. 법적 방어

California 주민들은 본 법률이 유권자에 의해 승인되고 이후 법원에서 문제 제기되는 경우 California 주에 의해 방어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California 주민들은 본 법률을 입안함으로써, 본 법률의 발의자가 헌법적이거나 법률적 문제제기에서부터 본 법률의 유효성에 이르기까지 본 법률을 방어하는 데 있어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몫을 가지고 있음을 선언합니다. 변호사가 본 법률을 방어하지 못하거나, 검찰총장이 법원에서 본 법률의 전체 또는 일부의 합헌성 또는 법률적 허용 가능성에 대항하여 불리한 판결에 항소하지 못하는 경우, 본 법률의 발의자는 어떤 법원에서든 본 법률의 유효성을 방어함으로써 자신의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몫을 주장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본 법률을 통해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California 주민들의 대리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을 시민들에 의해 부여받아야 합니다. (1) 발의자는 California 주의 "임의" 직원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나, 의회는 California 판례법에 의해 정의된 용어인 그렇게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의회 각 부의 과반수 의결에 의해 발의자를 그의 대행사 역할로부터 제거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 (2) 발의자는 California 주의 직원으로서, California 주 헌법 제XX조의 제3항에 따른 취임 선서를 하여야 함 (3) 발의자는 법률에 규정된 모든 신탁적, 윤리적 및 법적 의무의 적용을 받으며 (4) 발의자는 문제가 제기된 법률의 효력을 방어함에 있어, 대리인으로서 발의자에 의해 발생한 타당한 비용 및 기타 손실에 대해서만 California 주에 의해 배상받아야 함 배상 요율은 주가 스스로 방어를 수행하는 데 들었을 비용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제11항. 유효일자

본 문서에서 달리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법률은 유권자들이 승인한 날 효력이 발생합니다.

발의안 제 61호

California 주 헌법 제II조 8절의 조항에 따라 본 발의안을 주민에게 제출한다.

본 발의안은 복지기관법에 새 조항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새롭게 추가될 제안된 조항들은 신설 규정임을 나타내기 위해 *이탤릭체*로 인쇄한다.

제안된 법안

California 의약품 가격 경감법

California 주민들은 이에 다음과 같이 조례를 정한다.

제1절. 제목.

본 법의 명칭은 "California 의약품 가격 경감법"(이하, "법")이라 하고, 인용 시 이 명칭을 사용한다.

제2절. 조사 결과 및 공표 사항.

California 주민들은 이에 다음의 모든 내용을 조사하여 공표하였다.

(a) 처방약제비는 지금까지 California 의료 비용 상승의 주된 원인이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b) 전국적으로, 처방약제비는 1990년과 2013년 사이에 800퍼센트 이상 증가하여,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의료 부문 중 하나가 되었다.

(c) HIV/AIDS, C형 간염, 암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전문 약제에 대한 지출은 다른 유형의 약제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14년에만, 전문 약제에 대한 총 지출이 23퍼센트 이상 증가하였다.

(d) 의약품 가격을 부풀리는 제약 산업의 관행에 따른 결과로, 제약 회사의 이윤은 석유 및 투자 은행 산업계 기업의 이윤을 능가하고 있다.

(e) 부풀린 의약품 가격은 제약 회사들이 임원들에게 낭비에 가까운 과도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했다.

(f) 과도한 가격이 책정된 의약품은 지속적으로 California 납세자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줄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그 결과, 어려운 처지의 주민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 및 의료 기관에 대한 예산이 삭감될 것이다.

(g) California가 리베이트를 통해 의약품 처방 비용을 낮추려고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약품 제조회사들은 동일 약제에 대해 다른 정부 지급 기관보다 더 높은 금액을 California 주에 청구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엄청난 불균형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h) 만약 California 주가 처방 의약품에 대해 미국 재향군인 업무부가 지불하는 것과 동일한 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면, 그 결과 California 주와 납세자들은 상당한 금액을 아낄 수 있을 것이다. 본 법은 이러한 공적관심사를 해결에 필요하며 또한 적절하다.

제3절. 목적 및 취지.

California 주민들은 본 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a) California 주가 처방 의약품에 대해 미국 재향군인 업무부가 지불하는 금액과 동일한 가격을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정부 지급 기관 간의 불균형을 교정하기 위함이다.

(b) California 주 및 납세자들의 처방약제비를 상당량 절감하고, 이로써 California 주의 의료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c) 본 법이 채택된 후 법원에서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에 대비해 적절한 법적 방어 수단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제 4절. California 의약품 가격 경감법 입법을 위해 복지기관법에 제14105.32절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14105.32. 의약품 가격 책정.

(a) 일체의 다른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연방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현금 할인, 무료 제품, 수량 할인, 리베이트, 기타 할인 및 신용을 포함해 주 의료서비스부가 판단하는 의약품의 순비용이 동일한 의약품에 대해 재향군인 업무부가 지불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가 아니면 California 주 및 주 의료서비스부를 포함한 (이에 국한하지 않음) 주 행정 기관이나 주 기구는 모두 의약품 제조 업체와 처방 의약품 구매를 위한 어떠한 계약도 체결할 수 없다.

(b) (a)항에서 규정한 가격 상한은 California 주, 주 행정 기관 또는 기타 주 기구가 직접 의약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약품에 대해 최종적인 지불 주체가 되는 모든 프로그램에 적용된다. 여기에는 California의 Medi-Cal 진료비 외래 환자 의약품 프로그램 및 California AIDS 의약품 지원 프로그램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하지 않는다. 본 프로그램을 위해 이미 시행 중인 현금 할인 약정, 무료 제품, 수량 할인, 리베이트, 기타 할인이나 신용에 추가하여, 책임을 맡은 주 기관은 주 보건서비스부가 판단하는 의약품 순 비용이 미국 재향군인 업무부가 동일한 의약품에 대해 지불하는 최저 가격 이하가 되도록 추가 가격 할인을 위해 의약품 제조사와 추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본 항의 요구 사항은 Medi-Cal이 관리하는 치료 프로그램에 따라 구매, 조달하거나 요율이 정해진 의약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c) 한 개 이상의 의약품 제조사와 처방 의약품을 구매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California 주, 모든 주 기관 및 기타 주 기구는 본 항을 시기 적절하게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California 주, 해당 모든 주 기관 및 기타 주 기구는 2017년 7월 1일까지 이 법을 시행하고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California 주민들의 의도이다.

(d) California 주, 주 행정 기관 또는 기타 주 기구는 본 항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할 수 있으며, 본 항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연방법률, 규칙, 규정의 포기를 모색할 수 있다.

제5절. 자유로운 해석.

본 법은 California 주민들의 건강, 안전, 복지를 위해 California 주민들의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며,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자유롭게 해석해야 한다.

제6절. 법안의 충돌.

본 법은 포괄성을 갖는다. 동일한 주제와 관련된 다른 법안이 본 법안과 동일한 주 투표용지에 표시되는 경우, 그 다른 법안의 규정은 본 법안과 충돌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California 주민들의 의도이다. 본 법안이 더 많은 찬성표를 얻을 경우, 본 법안의 전체 조항이 우선되며 다른 법안의 모든 조항 또는 다른 법안은 무효가 된다.

제7절. 제안자의 책임.

California 주민들은 본 법이 통과된 후 법원이 헌법상 또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교착 상태에 빠지는 경우, 본 법의 제안자가 민사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선언한다. 헌법상 또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해당 발의안은 납세자 기금 및 선거 자원의 남용이며,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 본 법의 초안을 작성한 제안자가 책임 부담한다.

본 법이 통과된 후 법원이 헌법상 또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교착 상태에 빠지고, 항소 수단을 모두 사용한 경우, 제안자는 헌법상 또는 법률상 완전히 허용되는 법률안의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후원하지 못한다에 대해 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California 주 일반 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본 법과 관련해 어떠한 자연인 또는 법인도 이 이외의 책임은 지지 아니한다. 어떠한 정당이나 법인도 본 민사 벌금을 면제받을 수 없다.

제8절. 개정 및 폐지

본 법은 그 목적 달성을 촉진하기 위해 개정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의회에서 의원의 삼분의 이 이상이 투표하여 통과시키고 주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절. 분리 가능성.

본 법안의 조항 또는 본 법안의 일부, 또는 조항이나 일부를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적용 시 어떠한 사유로 무효 또는 위헌이 되는 경우, 나머지 조항은 그 영향을 받지 않으며 완전한 효력을 유지한다. 이를 위해 본 법안의 일부 또는 조항을 분리할 수 있다. 유권자는 이에 한 개 이상의 규정이나 일부의 무효 또는 위헌 여부와 상관 없이 본 법 또는 그 일부를 채택하였을 것이라고 선언한다.

제10절. 법의 방어.

California 주민들은 본 법을 유권자들이 승인하였으나 후에 법원에서 이의가 제기되는 때에는 California 주가 이를 방어해 주기를 희망한다. California 주민들은 본 법을 제정함으로써 본 법의 제안자는 헌법상 또는 법률상 본 법의 효력에 대한 이의 제기로부터 본 법을 방어하는데 직접적, 개인적 이해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선언한다. 검찰총장이 본 법을 방어하지 않거나 본 법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헌성 또는 법적 허용성에 불리한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는 경우, 본 법의 제안자는 일체의 법원에서 본 법의 효력을 방어하는데 직접적,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주장할 권리가 있으며, 본 법에 의해 다음 조건에 따라 California 주민의 대리인으로 행동할 권리를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1) 제안자는 California 주의 임의 고용 직원으로 보지 않지만, 의회는 California 판례법에서 정한 "충분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각 원의 다수결에 의해 제안자를 대리인 지위에서 해임할 수 있다. (2) 제안자는 California 헌법 XX조, 3절에 따라 California 주의 직원으로서 취임 선서를 해야 한다. (3) 제안자는 충실 의무, 도의적 의무,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4) 제안자는 대리인으로서 이의가 제기된 법의 효력을 방어하는데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 및 기타 손실에 한하여 California 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 금액은 California 주가 스스로 방어를 수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절. 발효일자.

본문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본 법은 유권자가 승인한 날의 익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발의안 제 62호

California 주 헌법 제2조 8항의 규정에 따라 본 발의안을 주민에게 제출한다.

본 발의안은 형법 조항을 수정, 폐지한다. 이에 따라, 기존 조항은 취소선으로 인쇄하고, 새롭게 추가될 제안된 조항들은 *이탤릭체*로 인쇄하여 신설 규정임을 나타내도록 한다.

제안된 법안

2016 년 살아있는 정의 법

제1절. 제목.

본 발의안의 명칭은 "2016년 살아있는 정의 법"이라 하고, 인용 시 이 명칭을 사용한다.

제2절. 조사 결과 및 공표 사항.

California 주민들은 이에 다음의 모든 내용을 조사하여 공표하였다.

- 1급 살인으로 기소된 폭력적 살인자는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한다.
- 현행법 하에서 California는 1급 살인을 저지른 많은 범죄자에게 사형을 선고하지만 이를 집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 대신, 주에서는 납세자가 낸 수백만 달러를 지출해서 사형수들에게 변호사를 제공해서 사형 집행을 선고받은 살인자들이 교도소에서 늙어 죽어가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 1978년 이래, California는 거의 1천명의 범죄자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나 겨우 13명에게만 사형을 집행한 사형 시스템에 4십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 현재 700명 이상의 사형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California는 거의 11년 동안 아무에게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4. California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폭력적인 살인자들은 결코 가석방을 받을 수 없다. 그들은 남은 인생을 교도소 안에서 보내다가 죽게 된다.

5. 사형수 가운데 1% 미만만이 노동을 통한 임금으로 희생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살인자들은 교도소 내에서 노동을 해야 하며, 그 임금으로 자신의 범죄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

6.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모든 살인자들은 교도소에 있는 동안 법률상 의무적으로 노동을 해야 하며, 그 임금의 60%를 그들이 피해를 입힌 희생자들에게 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7.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평생 동안 수감하는 것보다 비용이 낮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실제로 사형 제도에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든다. 전직 사형 기소 검사이자 사형 선고 판사였던 Arthur Alarcon와 법학 교수인 Paula Mitchell의 연구에 따르면, 사형 제도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최고형으로 하는 제도에 비해 매년 1억 달러 이상을 더 지출하게 한다. 사형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한다면 California의 납세자들은 매년 1억 달러를 충분히 상회하는 금액을 절약하게 될 것이다.

8. 사형은 실패한 정부 프로그램이며 납세자의 돈을 허비하고 치명적인 실수를 발생시킨다. 미국에서 150명 이상의 무고한 사람들이 사형 선고를 받았고, 그 무고한 사람들 중 일부에게는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었다. 잘못된 유죄 판결은 무고한 사람으로부터 수십 년의 살아갈 날을 앗아가며, 세금을 낭비하고, 희생자의 가족에게 또 다시 상처를 준다. 그러는 동안 진짜 살인자는 자유롭게 지내다가 다시 살인을 저지른다.

9. 본 법을 소급 적용한다면 많은 비용이 들면서 효과는 없는 관행을 즉시 중단시키고 California가 무고한 사람에게 형을 집행하는 것을 막도록 할 수 있다.

10. California의 사형은 지키지 않을 약속이다. 사형 사건들은 수십년을 끌고 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는 슬픔에 빠져있는 가족들에게 신속하고 확실하게 정의를 실현해준다.

11.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최악의 범죄자들을 교도소에 영원히 가두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해준다. 사형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한다면, California 주는 단 한 명의 죄수도 석방하지 않으면서 5년간 10억 달러를 절약하게 될 것이며, 이 10억 달러를 범죄 예방 계획, 희생자 돌보기, 교육, 공동체와 가족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에 투자할 수 있다.

제3절. 목적 및 취지.

California 주민들은 본 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많은 비용이 들면서 효과는 없는 California의 사형 제도를 폐지하고, 특별 경우에 1급 살인으로 기소된 사람들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여 이들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고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상식적인 방법으로 이를 대체하기 위함이다.

2. 1급 살인으로 기소되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모든 사람들이 교도소에 있는 동안 노동에 종사하도록 하고, 희생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의 비율을 임금의 60%로 인상하기 위함이다.

3. 무고한 사람한 사람에게 사형을 집행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4. 슬픔에 잠긴 가족들이 수많은 변론에 출석하며 계속해서 상실의 고통을 고백해야 하는, 수십 년이 걸리는 항소 절차를 폐지하기 위함이다.

5. 본 법을 소급 적용함으로써 사형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하여, 형 선고의 공정성과 확실성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제4절. 형법제190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90. (a) 1급 살인을 범한 모든 사람을 사형, 가석방 없는 종신형 또는 25년 이상의 유기 징역이나 종신형에 처하도록 한다. 적용되는 형벌은 제190.1, 190.2, 190.3, 190.4, 190.5절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b), (c), (d)항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2급 살인을 범한 자는 15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종신형에 처하도록 한다.

(b) (c)항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830.1절의 (a) 항, 제830.2절의 (a), (b) 또는 (c)항, 제830.33절의 (a)항, 또는 제830.5절에서 정의한 바에 따라 살해당한 사람이 직무 수행 중인 경찰관이었으며, 피고가 희생자가 직무 수행 중인 경찰관이었음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이를 알았어야 하는 경우 해당 2급 살인을 저지른 모든 사람을 25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종신형에 처하도록 한다.

(c) 제830.1절의 (a)항, 제830.2절(a), (b) 또는 (c)항, 제830.33절의 (a)항, 또는 제830.5절에서 정의한 바에 따라 살해당한 사람이 직무 수행 중인 경찰관이었으며, 피고가 희생자가 직무 수행 중인 경찰관이었음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이를 알았어야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공소 사실 중 어느 하나라도 사실로 드러난 경우 해당 2급 살인을 저지른 모든 사람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처하도록 한다.

(1) 피고가 특히 경찰관을 살해하려는 의도를 가졌던 경우.

(2) 피고가 특히 경찰관에게 제12022.7절에서 정한 중상해를 가하려고 시도했던 경우.

(3) 피고가 공격 행위를 함에 있어서 제12022절의 (b) 항에 위반하여 위험하거나 치명적인 무기를 직접 사용한 경우.

(4) 피고가 공격 행위를 함에 있어서 제12022.5절에 위반하여 직접 총기를 사용한 경우.

(d) 고의적으로 차량 외부의 사람에게 중대한 신체 상해를 입힐 목적으로 차량에서 총기를 발사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2급 살인을 범한 모든 사람을 20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종신형에 처하도록 한다.

(e) 제3부 제1편 제7장 제2.5조(제2930절 이하)는 본 절에 따라 선고되는 최소 형기를 감경하는데 적용되지 아니한다. 본 절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자는 본 절에서 정한 최소 구금 기간을 복역하기 전에는 가석방할 수 없다.

(f) 제2700절에 따라, 살인을 범하여 본 절에 따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 또는 재선고받은 자는 엄중 경비 교도소 내에서 복역 기간 동안 매일 교정갱생부의 규칙 및 규정이 정하는 시간만큼 성실하게 노동에 종사해야 한다. 재소자가 배상 벌금을 납부해야 하거나 배상 명령을 받은 경우, 제2085.5절 및 제2717.8절에 따라 교정갱생부 장관은 임금 및 신탁 계좌로부터 금액을 공제하여 이를 교정갱생부 규칙 및 규정에서 정한 California 희생자 보상 및 정부 청구 위원회에 송금해야 한다.

제5절. 형법 제190.1절을 폐지한다.

190.1. ~~본 장에 따라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의 심리는 다음과 같은 별도의 단계를 따른다.~~

(a) ~~피고의 유죄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사실심 법원이 피고를 1급 살인죄의 유죄라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동시에 제190.2절 (a)항 (2)문에 따라 피고가 이전의 소송에서 1급 살인 또는 2급 살인으로 유죄가 선고되었다고 주장하는 특별한 정황을 제외하고, 제190.2절에 나열한 모든 특별 경우에 대한 기소의 사실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b) ~~만약 피고가 1급 살인에 대해 유죄로 판단되고, 제190.2절 (a)항 (2)문에 따라 피고의 이전의 소송에서 1급 또는 2급 살인으로 유죄가 선고되었다는 특별 경우 중 하나에 대해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특별 경우의 진실 여부에 대한 추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c) ~~만약 피고가 1급 살인에 대해 유죄로 판단되고, 제190.2절에 나열된 특별 경우 중 하나 이상에 대해 기소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사실임이 드러나는 경우, 제1026절에 따른 심신 상실을 주장하는 무죄 항변을 제190.4절의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만약 정신 상태가 정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선고할 형벌에 대한 추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해당 절차는 제190.3절 및 제190.4절의 규정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제6절. 형법제190.2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90.2. (a) 1급 살인에 대해 유죄로 판단되는 피고의 처벌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특별 경우가 제190.4절에 따라 사실임이 드러난 경우 사형 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한다.

(1) 살인이 고의적이며 재정적 이득을 얻기 위해 행해진 경우.

(2) 피고가 이전에 1급 또는 2급 살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경우. 본 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른 관할 구역에서 행해진 공격행위 중 만약 California에서 행해졌다면 1급 또는 2급 살인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급 또는 2급 살인으로 간주한다.

(3) 본 절차의 피고가 둘 이상의 1급 또는 2급 살인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4) 살인이 파괴 장치, 폭탄, 폭발물을 일체의 장소, 구역, 주거, 건물, 구조물에 심거나, 숨기거나, 은닉하여 행해지고, 자신의 행위가 타인을 죽음에 이르게 할 위험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피고가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알았어야 하는 경우.

(5) 살인이 합법적인 체포를 피하거나 저지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 또는 합법적인 구금으로부터 탈출하거나 탈출을 시도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

(6) 파괴 장치, 폭탄, 폭발물을 피고가 송부 또는 전달하거나, 또는 송부·전달을 기도하거나, 또는 이를 타인에게 교사함으로써 살인 행위가 행해지고, 자신의 행위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위험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피고가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알았어야 하는 경우.

(7) 피해자가 제830.1절, 830.2, 830.3, 830.31, 830.32, 830.33, 830.34, 830.35, 830.36, 830.37, 830.4, 830.5, 830.6, 830.10, 830.11, 830.12에서 정의한 바에 따라 경찰관으로, 직무 수행 중에 고의적으로 살해되었고, 피해자가 직무 수행 중인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피고가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이를 알았어야 하는 경우. 또는 피해자가 위에 나열한 규정 상의 현직 또는 전직 경찰관으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살해당한 경우.

(8) 피해자가 연방법 집행관 또는 대리인으로, 자신의 직무 수행 중에 고의적으로 살해되고, 피해자가 직무 수행 중인 연방법 집행관 또는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피고가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이를 알았어야 하는 경우. 피해자가 연방법 집행관 또는 대리인으로 자신의 공식적인 직무 수행과 관련해 고의적으로 살해당한 경우.

(9) 피해자가 제245.1절에서 정의한 바에 따라 소방관으로, 직무 수행 중에 고의적으로 살해되고, 피해자가 직무 수행 중인 소방관이라는 사실을 피고가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이를 알았어야 하는 경우.

(10) 피해자가 범죄의 증인으로, 형사 소송 또는 소년범 소송에서의 증언을 막기 위해 고의적으로 살해되고, 살해 행위가 피해자가 증인인 범죄의 실행 중 또는 실행 기도와 별개로 행해진 경우. 또는 피해자가 범죄의 증인으로 형사 소송 또는 소년범 소송에서의 증언과 관련해 고의적으로 살해당한 경우. 본 항에서 사용한 "소년범 소송"이란 복지기관법 제602절 또는 707절에 따라 제기된 소송을 의미한다.

(11) 피해자가 California 주나 기타 주의 지방 검찰청, 주 검찰청 또는 연방 검찰청의 현직 또는 전직 검사, 검사보로서, 그 공식적인 직무 수행과 관련해 또는 이를 막기 위해 고의적으로 살해된 경우.

(12) 피해자가 지방, 주, 연방 기록 법원의 현직 또는 전직 판사로서, 그 공식적인 직무 수행과 관련해 또는 이를 막기 위해 고의적으로 살해된 경우.

(13) 피해자가 California 주나 기타 주의 지방 정부, 주 정부 또는 연방 정부의 선출직 또는 임명직의 현직 또는

전직 관리로서, 그 공식적인 직무 수행과 관련해 또는 이를 막기 위해 고의적으로 살해된 경우.

(14) 살해 행위가 특히 악랄하거나, 끔찍하거나, 잔인하고, 자명하게 도가 지나친 악행임이 드러나는 경우. 본 절에서 사용한, "특히 악랄하거나, 끔찍하거나, 잔인하고, 자명하게 도가 지나친 악행임이 드러나는 경우"라 함은 희생자에게 불필요하게 고통을 가하는 파렴치한 또는 냉혹한 범죄를 의미한다.

(15) 피고가 잠복해 있다가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16) 피해자가 인종, 피부색, 종교, 국적, 출생국을 이유로 고의적으로 살해당한 경우.

(17) 피고가 다음 중범죄 실행에 관여했거나 공범인 경우, 이를 실행 또는 실행 기도하였거나 실행 후 즉시 도주하던 중에 살인이 행해진 경우.

(A) 제211절 또는 212.5절을 위반한 강도.

(B) 제207절, 209절, 또는 209.5절을 위반한 납치.

(C) 제261절을 위반한 강간.

(D) 제286절을 위반한 납색행위.

(E) 제288절을 위반해 14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외설 또는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F) 제288절 a을 위반한 구강 성교.

(G) 제460절을 위반한 1급 또는 2급 절도.

(H) 제451절 (b)항을 위반한 방화.

(I) 제219절을 위반한 열차 탈선.

(J) 제203절을 위반한 상해.

(K) 제289절을 위반해 도구를 사용한 강간.

(L) 제215절에 규정된 차량 탈취.

(M) 구체적인 살해 의도가 있는 경우 (B)항의 납치 또는 (H)항의 방화의 특별 경우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중죄의 구성 요소의 증명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비록 납치죄 또는 방화죄가 살해를 주요 목적 또는 유일한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라 할지라도, 위의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이 두 가지 특별 경우임이 입증되는 것이다.

(18) 살해가 고의적이며 고문과 관련되는 경우.

(19) 피고가 독약을 투여하여 희생자를 고의적으로 살해한 경우.

(20) 희생자가 California주 또는 다른 주의 지방, 주, 연방 기록 법원의 배심원으로, 희생자의 공식적인 직무 수행에 대한 보복으로 또는 직무 수행을 막기 위해 고의적으로 살해한 경우

(21) 살해 행위가 고의적이며, 차량 외부에 있는 사람을 사망하게 할 목적으로 차량으로부터 총기를 발사해 행해진 경우. 본 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법 제415절에서 정의한 바에 따라 차량을 의미한다.

(22) 제186.22절의 (f)항에서 정의한 바에 따라 거리 폭력단에 능동적인 참여자였으며 희생자를 의도적으로 살해한 경우로서, 살해가 거리 폭력단의 활동을 촉진할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b) (a)항에 나열된 특별 경우와 관련해 동 항이 살해 의도를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한, 제190.4절의 특별 경우임이 사실로 드러난 실제 살해자는 사형 또는 가석방 없는 종신 수감을 위해 특별 경우의 기초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당시에 살해 의도를 가졌을 필요는 없다.

(c) 제190.4절에 따라, 실제 살해자가 아닌 자로서 살해의 의도를 가지고 1급 살인을 저지르는 행위자를 원조, 교사, 조언, 명령, 유도, 권유, 요청, 지원하는 자는 (a)항에 나열된 한 개 이상의 특수 경우가 사실로 입증되는 경우 사형 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처한다.

(d) 제190.4절에 따라, (c)항에도 불구하고 실제 살해자가 아닌 자로서 사람의 생명에 대한 부주의한 무관심으로 주요 행위자의 입장에서 (a)항 17문에 나열된 중죄의 실행을 원조, 교사, 조언, 명령, 유도, 권유, 요청, 지원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하고, 이로 인해 일급 살인죄가 성립하는 자는 (a)항 17문에 열거한 특수 정황이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 사형 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처한다.

처벌은 본 항 및 제190.1, 190.3절 190.4절, 190.5절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제7절. 형법 제190.3절을 폐지한다.

190.3. ~~피고가 1급 살인에 대해 유죄인 것으로 판단되고, 특별 경우로 기소되어 사실로 증명되는 경우, 또는 피고가 군사 및 재향군인법제1672절 (a)항 또는 본 법 제37절, 128절, 219절, 4500절에 위반하여 유죄로 판단되어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경우, 사실심 법원은 사형에 처할 것인지 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처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형벌 문제에 관한 절차에서, 현재의 범죄의 실질 및 정황, 폭력 범죄에 관한 것인지와 상관 없이 힘 또는 폭력의 사용 또는 사용 기도와 관련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중죄에 해당하는 피고의 범죄 행위 유무, 피고의 인격, 환경, 경력, 정신 상태, 신체 상태를 포함해(이에 국한하지 않음) 가중, 감경, 형의 선고와 관련한 모든 문제에 대해 일반인과 피고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힘 또는 폭력의 사용 또는 사용 기도 및 힘 또는 폭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명시적·묵시적 위협과 관계가 없는 피고의 다른 범죄 행위와 관련된 증거는 채택할 수 없다. 본 항에서 말하는 범죄 행위는 유죄 판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가 기소된 후 무죄 판결을 받은 공격 행위에 관한 이전 범죄 행위의 증거는 채택할 수 없다. 증거 사용에 대한 본 제한은 본 항에 따른 소송 절차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이러한 증거를 다른 소송 절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성문법이나 판례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를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 행위 또는 특별 경우를 증명하는 증거를 제외하고, 제출할 증거를 심리에 앞서~~

법원이 결정한 합리적인 기간 내에 피고에게 게시하지 않은 경우 검찰측은 형을 가중하는 어떠한 증거도 제출할 수 없다. 형을 감경하기 위해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를 채택하기 위한 증거는 이러한 게시가 없는 경우에도 제출할 수 있다.

사실심 법원에 대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선고 이후 California 주지사에 의해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으로 감형 또는 수정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형벌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실심 법원은 다음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a) 현재의 소송 절차를 통해 기소된 피고의 범죄 상황 및 제190.1절에 따라 사실로 판단된 특별 경우의 존재.

(b) 힘이나 폭력의 사용 또는 사용 기도, 또는 힘이나 폭력을 사용하겠다는 명시적·묵시적 협박과 관련된 피고의 범죄 행위의 유무.

(c) 중죄에 관한 이전의 유죄 판결 유무.

(d) 피고가 극심한 정신적 또는 감정적 장애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 범죄를 수행했는지의 여부.

(e) 희생자가 피고의 살인 행위에 가담하거나 살인 행위에 동의한 사람이었는지의 여부.

(f) 자신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정당하거나 정상 참작 대상이라고 합리적으로 믿는 상황에서 범죄를 실행했는지의 여부.

(g) 피고가 극단적인 협박 또는 실질적으로 타인의 지배를 받는 상황에서 행동했는지의 여부.

(h) 피고가 범죄 행위 당시 정신 질환이나 정신적 결함, 음주의 영향으로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 또는 법을 준수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였는지의 여부.

(i) 범죄 행위 당시 피고의 연령.

(j) 피고가 해당 범죄 행위의 공범이었는지, 그리고 범죄 행위에 대한 참여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했는지의 여부.

(k) 해당 범죄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아닐지라도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정상 참작을 할 수 있는 기타 상황.

진술 및 증거 제출이 끝난 후, 그리고 변호사의 변론을 청취하고 이를 고려한 후, 사실심 법원은 본 항에서 언급한 가중·감경 사유를 고려해야 하며, 가중 사유가 감경 사유를 능가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 사실심 법원은 감경 사유가 가중 사유를 능가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해야 한다.

제8항. 형법의 190.4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90.4. (a) 190.2항에 열거된 대로 특수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고 사실 심리관이 피고에게 제 1급 살인의 죄가 있다고 판단할 때마다 사실 심리관은 각각의 주장한 특수 사정의 진실에 대해서도 특별 판결을 내린다. 모든 특수 사정의 진실에 대한 결정은 심리 또는 190.1항의 하위조항

(b)에 따라 개최된 공판예제시된 증거에 대해 사실 심리관에 의해 이뤄진다.

특수 사정이 진실인지 여부에 관해 타당한 혐의가 있을 경우, 피고는 진실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도록 되어 있다. 사실 심리관은 기소된 각 특수 사정의 사실 여부에 대해 특별 판결을 내린다. 특수 사정에 범죄 행위나 시도된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할 때마다, 이러한 범죄는 기소되고 범죄의 심리와 유죄판결에 적용되는 일반 법에 따라 입증된다.

피고가 배심원 없이 개정된 법정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사실 심리관은 피고나 사람들에 의해 배심원이 포기되지 않았을 경우 배심원이 되어야 하고 그러한 경우 사실 심리관은 해당 법정이다. 피고가 유죄 인정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사실 심리관은 배심원이 피고와 사람들에 의해 포기되지 않았을 경우 배심원이 된다.

사실 심리관이 190.2항에 열거된 특수 사정들이 기소된 대로 진실이라고 판결할 경우, 별도의 처벌 공판이 있어야 하고, 피고는 가석방 가능성 없이 평생 주 교도소에 감금되어 처벌을 받는다. 그리고 기소된 다른 특수 사정이 진실이 아니라고 판결되었거나 사실 심리관이 배심원일 경우가 아니라면, 기소된 다른 특수 사정의 진실 또는 거짓의 발표에 동의할 배심원의 무능이 별도의 처벌 공판 개정을 금지한다.

피고가 배심원에 의해 유죄라고 판결을 받고 배심원은 기소된 특수 사정들이 진실이라고 만장일치의 평결을 내리지 못하고 또 모든 특수 사정이 진실이 아니라고 만장일치의 평결을 내리지 못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원은 이 배심원을 해임하고 사안을 심리하기 위해 새롭게 선정된 배심원에게 주문해야 하지만, 유죄의 안건을 그러한 배심원이 심리해서는 안되고 이 배심원은 이전 배심원이 거짓이라고 만장일치로 평결된 특수 사정들의 진실 사안을 다시 심리한다. 이 새로운 배심원이 심리하고 있는 특수 사정들이 진실이라고 만장일치 평결을 내리지 못할 경우, 법원은 이 배심원을 해임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이전 배심원이 만장일치에 도달하지 못했던 안건을 심리하기 위해 선정된 새 배심원에게 주문하거나 25년 기간 동안 주 교도소에 감금 처벌을 집행한다.

(b) 피고가 배심원 없이 개정된 법정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사실 심리관은 처벌 공판에서 피고나 사람들에 의해 배심원이 포기되지 않았을 경우 배심원이 되어야 하고 그러한 경우 사실 심리관은 해당 법정이다. 피고가 유죄 인정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사실 심리관은 배심원이 피고와 사람들에 의해 포기되지 않았을 경우 배심원이 된다.

사실 심리관이 배심원이 되고 유죄라는 사실에 관해 만장일치 평결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법원은 유죄에 관한 사안을 심리하기 위해 새로 선정된 배심원 주문한다. 이 새로운 배심원이 유죄라는 사실에 관해 만장일치 평결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법원은 재량에 따라 새 배심원에게 주문하거나 가석방 없이 평생 동안 주 교도소에 감금 처벌을 집행한다.

(e) ~~(b) 가석방 없이 평생 주 교도소에 감금되는 판결과 사형 유죄판결을 피고에게 내린 사실 심리관이 배심원일 경우, 동일한 배심원은 1026항에 따라 정신이상의 이유에 의해 무죄 인정 그리고 주장한 모든 특수 사정의 진실성을 고려해야 하고, 제기된 정당한 이유 때문에 법원이 이 배심원을 해임하지 않았을 경우(해임했을 경우 새 배심원을 위촉해야 함) 해당된 처벌을 고려한다. 법원은 기록에 의거하여 타당한 사유 발견을 뒷받침하는 사실들을 명시하고 재판 기록에 포함시킨다.~~

(d) ~~사전 단계의 사실 심리관이 후속 단계의 동일한 사실 심리관일 경우, 피고가 사형을 받게 되는 사건에서 1026항에 의거하여 정신이상의 이유에 의해 무죄 인정에 따른 소송 절차를 포함하여 심리 사전 단계에 제시된 증거를 후속적 심리 단계에서 고려한다.~~

(e) ~~사실 심리관이 사형을 부과하는 평결이나 판결을 내리는 경우, 피고는 11항 7조에 의거하여 이러한 평결이나 판결을 수정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청구에 대한 규율에서 재판관은 증거를 검토하고, 고려하고, 190.3항에 언급된 참작할 여지가 없는 사정과 정상 참작이 가능한 사정들을 참고하고, 참작할 여지가 없는 사정이 정상 참작 사정을 넘어선다는 배심원의 판결이나 평결이 법이나 제시된 증거에 반하는지 여부에 관해 판결한다. 재판관은 이 판결에 대한 이유를 기록에 명시한다.~~

~~재판관은 청구에 대한 자신의 판결 이유를 제시해야 하고 이것들은 서기 기록에 입력한다. 1181항 (7)조에 따라 사형 평결 수정의 거부는 1239항 (b)조에 따라 피고의 자동 청구서에서 검토한다. 청구의 부여는 (6)절에 따른 청구권에서 검토한다.~~

제9항. 형법의 2085.5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2085.5. (a) (1) 재소자가 1994년 9월 29일 이전에 발효된 정부 법 13967항의 (a)조, 복지 기관 법의 730.6항의 (b)조, 또는 1202.4항의 (b)조에 따라 부과된 벌금형을 받은 경우, 교정당국 총무는 연방 법에서 달리 금지되어 있지 않는 경우 재소자의 임금과 신탁 계정 예금의 최대 50%까지 그 벌금의 최소 20%나 잔액 중 더 적은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국고의 배상 기금의 예금을 위해 California 보상 위원회에 이체한다. 공제된 금액은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적립한다. 선고 법원은 지불 기록을 제공받는다.

(2) 이 소송의 발효일 또는 이후에 가석방 없이 무기 기간 동안 선고 받거나 다시 선고 받은 재소자가 1994년 9월 29일 이전에 발효된 정부 법 13967항의 (a)조, 복지 기관 법의 730.6항의 (b)조, 또는 1202.4항의 (b)조에 따라 부과된 벌금형을 받은 경우, 교정당국 총무는 연방 법에서 달리 금지되어 있지 않는 경우 재소자의 임금의 60%와 신탁 계정 예금의 최대 50%까지 그 벌금의 최소 20%나 잔액 중 더 적은 금액을 공제해야 하고, 그 금액을 국고의 배상 기금의 예금을 위해 California 보상 위원회에 이체한다. 공제된 금액은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적립한다. 선고 법원은 지불 기록을 제공받는다.

(b) (1) 재소자가 1170항 (h)조에 따라 카운티 감옥에 수감 처벌을 받았을 때, 재소자가 1994년 9월 29일 이전에 발효된 정부 법 13967항의 (a)조, 복지 기관 법의 730.6항의 (b)조, 또는 1202.4항의 (b)조에 따라 부과된 벌금형을 받은 경우, 재소자가 감금된 카운티 감독 위원회에서 지정한 기관은 연방 법에서 달리 금지되어 있지 않는 경우 재소자의 임금과 신탁 계정 예금에 해당하는 카운티 감옥으로부터 최대 50%까지 그 벌금의 최소 20%나 잔액 중 더 적은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국고의 배상 기금의 예금을 위해 California 보상 위원회에 이체한다. 공제된 금액은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적립한다. 선고 법원은 지불 기록을 제공받는다.

(2) 감독 위원회가 카운티 보안관을 징수 기관으로 지명할 경우, 감독 위원회는 먼저 카운티 보안관의 동의를 취득한다.

(c) (1) 재소자가 1994년 9월 29일 이전에 발효된 정부 법 13967항의 (c)조, 복지 기관 법의 730.6항의 (h)조, 또는 1202.4항의 (f)조에 따라 부과된 벌금형을 받은 경우, 교정당국 총무는 연방 법에서 달리 금지되어 있지 않는 경우 재소자의 임금과 신탁 계정 예금의 최대 50%까지 그 벌금의 최소 20%나 잔액 중 더 적은 금액을 공제한다. 총무는 그 금액을 희생자에 대한 직접 지불을 위해 California 희생자 보상 위원회에 이체해야 하거나 희생자가 이 프로그램에 따라 지원을 받을 만큼 배상 기금에 지불한다. 선고 법원은 희생자에 이뤄진 지불 기록과 이 하위 조항에 따라 배상 기금에 예금된 지불 기록을 받는다.

(2) 이 소송의 발효일 또는 이후에 가석방 없이 무기 기간으로 선고 받거나 다시 선고 받은 재소자가 1994년 9월 29일 이전에 발효된 정부 법 13967항의 (c)조, 복지 기관 법의 730.6항의 (h)조, 또는 1202.4항의 (f)조에 따라 부과된 배상 명령을 받은 경우, 교정당국 총무는 연방 법에서 달리 금지되어 있지 않는 경우 재소자의 임금에서 최대 60%까지 그리고 재소자의 신탁 계정 예금의 최대 50%까지 그 명령 금액의 최소 20%나 잔액 중 더 적은 금액을 공제한다. 총무는 그 금액을 희생자에 대한 직접 지불을 위해 California 희생자 보상 위원회에 이체해야 하거나 희생자가 이 프로그램에 따라 지원을 받을 만큼 배상 기금에 지불한다. 선고 법원은 희생자에 이뤄진 지불 기록과 이 하위 조항에 따라 배상 기금에 예금된 지불 기록을 받는다.

(d) 재소자가 1170항 (h)조에 따라 카운티 감옥에 수감 처벌을 받았을 때, 재소자가 1994년 9월 29일 이전에 발효된 정부 법 13967항의 (c)조, 복지 기관 법의 730.6항의 (h)조, 또는 1202.4항의 (b)조에 따라 부과된 배상 명령을 받은 경우, 재소자가 감금된 카운티 감독 위원회에서 지정한 기관은 연방 법에서 달리 금지되어 있지 않는 경우 재소자의 임금과 신탁 계정 예금에 해당하는 카운티 감옥으로부터 최대 50%까지 그 명령 금액의 최소 20%나 잔액 중 더 적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 기관은 그 금액을 희생자에 대한 직접 지불을 위해 California 희생자 보상 위원회에 이체해야 하거나, 희생자가 이 프로그램에 따라 지원을 받을 만큼 배상 기금에 지불해야 하거나, 희생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선고 법원은 희생자에 이뤄진 지불 기록과 이 하위 조항에 따라 배상 기금에 예금된 지불 기록을 받는다.

(e) 총무는 연방 법에서 달리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재소자의 임금과 신탁 계정에서 하위 조항 (a) 또는 (c)에 따라 California 희생자 보상 위원회에 이체된 금액에서 10%까지 행정 수수료를 공제하고 보유한다. 총무는 연방법에서 달리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하위 조항 (n)에 따라 미결 배상 명령이나 벌금을 충족시키기 위해 결제나 지급 판정을 통해 지불된 금액의 5%까지 행정 수수료를 재소자 결제나 공판 지급 판정에서 공제하고 보유한다. 총무는 교정당국의 배상 프로그램의 행정 및 지원 비용을 배상하기 위해 특별 예금 계정에 행정 수수료를 예금한다. 총무는 그의 재량으로 배상 프로그램을 위해 당국의 행정 및 지원 비용의 미래 배상을 위해 특별 예금 계정에 초과 기금을 보유하거나 배상 기금의 예금을 위해 초과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체할 수 있다.

(f) 재소자가 1170항의 (h)조에 따라 카운티 감옥에 감금되도록 처벌을 받을 때, 재소자가 감금된 카운티에서 감독 위원회가 지정한 기관은 연방법에서 달리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하위 조항 (b)나 (d)에 따라 California 희생자 보상 위원회에 이체된 금액의 10%까지 행정 수수료를 재소자의 임금 및 신탁 계정 예금에 해당하는 카운티 감옥에서 공제하고 보유할 권한을 갖는다. 이 기관은 연방법에서 달리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하위 조항 (n)에 따라 미결 배상 명령이나 벌금을 충족시키기 위해 결제나 지급 판정을 통해 지불된 금액의 5%까지 행정 수수료를 재소자 결제나 공판 지급 판정에서 공제하고 보유할 권한을 갖는다. 1170항의 (h)조에 따라, 이 기관은 징수한 총 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실제 징수 행정 비용을 배상하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할 권한을 갖는다. 기관은 당국의 배상 프로그램의 행정 및 지원 비용을 배상하기 위해 특별 예금 계정에 행정 수수료를 예금한다. 이 기관은 배상 프로그램을 위해 당국의 행정 및 지원 비용의 미래 배상을 위해 특별 예금 계정에 초과 기금을 보유할 권한을 갖거나 배상 기금의 예금을 위해 초과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체할 수 있다.

(g) 가석방자가 1994년 9월 29일 이전에 발효된 정부 법 13967항의 (a)조, 730.6항의 (b)조 또는 1202.4항의 (b)조에 따라 배상 벌금을 받은 경우, 총무 또는, 재소자가 1170항의 (h)조에 따라 카운티 감옥에 수감 처벌을 받았을 때 재소자가 수감된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지정한 기관은 연방법에서 달리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가석방자로부터, 또는 2085.6항에 따라 카운티 감옥에 이전에 수감된 사람으로부터 배상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총무나 기관은 그 금액을 국고의 배상 기금에 예금하기 위해 California 희생자 보상 위원회에 이체한다. 공제된 금액은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한다. 선고 법원은 지불 기록을 제공받는다.

(h) 가석방자가 1994년 9월 29일 이전에 발효된 정부 법 13967항의 (c)조, 730.6항의 (h)조 또는 1202.4항의 (a)조 (3)절에 따라 배상 벌금을 받은 경우, 총무 또는, 재소자가 1170항의 (h)조에 따라 직접 배상 명령을 받을 때 재소자가 수감된 카운티 감독 위원회나 지역 징수

프로그램에서 지정한 기관은 연방법에서 달리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가석방자로부터, 또는 2085.6항에 따라 카운티 감옥에 이전에 수감된 사람으로부터 배상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총무나 기관은 그 금액을 희생자에 대한 직접 지불을 위해 California 희생자 보상 위원회에 이체해야 하거나, 희생자가 이 프로그램에 따라 지원을 받을 만큼 배상 기금에 지불해야 하거나, 기관이 희생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선고 법원은 이 하위 조항에 따라 범죄자가 보낸 지불금의 기록을 제공 받는다.

(i) 총무 또는, 재소자가 1170항의 (h)조에 따라 카운티 감옥에 감금되도록 처벌을 받을 때, 재소자가 감금된 카운티에서 감독 위원회가 지정한 기관은 연방법에서 달리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하위 조항 (g)나 (h)에 따라 California 희생자 보상 위원회에 이체된 금액의 10%까지 행정 수수료를 가석방자나 카운티 감옥에 이전에 감금된 사람으로부터 징수한 금액에서 공제하거나 보유할 수 있다. 총무는 연방법에서 달리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하위 조항 (n)에 따라 미결 배상 명령이나 벌금을 충족시키기 위해 결제나 지급 판정을 통해 지불된 금액의 5%까지 행정 수수료를 가석방자 결제나 공판 지급 판정에서 공제하고 보유한다. 기관은 하위 조항 (n)에 따라 미결 배상 명령이나 벌금을 충족시키기 위해 결제나 지급 판정을 통해 지불된 금액의 5%까지 행정 수수료를 이전에 연방 감옥에 감금된 사람의 결제나 공판 지급 판정에서 공제하고 보유할 권한을 갖는다. 총무나 기관은 교정당국이나 기관(해당될 경우)의 배상 프로그램의 행정 및 지원 비용을 배상하기 위해 특별 예금 계정에 행정 수수료를 예금한다. 총무는 그의 재량에 따라 또는 기관은 배상 프로그램을 위해 당국이나 기관의 행정 및 지원 비용의 미래 배상을 위해 특별 예금 계정에 초과 기금을 보유하거나 배상 기금의 예금을 위해 초과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체할 수 있다.

(j) 재소자가 선고 법원으로부터 배상 벌금과 배상 명령을 받았을 때, 교정 당국은 하위 조항 (c)에 따라 우선 배상 명령을 징수한다.

(k) 재소자가 1170항의 하위조항 (h)에 따라 카운티 감옥에 감금 처벌을 받을 때 그리고 이 재소자가 선고 법원으로부터 배상 벌금과 배상 명령을 받았을 때, 재소자가 감금된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에서 지정한 기관이 벌금과 명령을 징수할 경우, 이 기관은 우선 하위조항 (d)에 따라 배상 명령을 징수한다.

(l) 가석방자가 선고 법원으로부터 배상 벌금과 배상 명령을 받았을 때, 교정 당국 또는, 재소자가 1170항의 하위조항 (h)에 따라 카운티 감옥에 감금 처벌을 받았을 때 재소자가 감금된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지정한 기관은 하위조항 (h)에 따라 우선 배상 명령을 징수할 수 있다.

(m) 수감자가 자유훈방에 대해 기관 구내매점에서 음식을 구입해야 할 기관에 감금되어 있을 경우 그리고 이 음식에 대한 구입비용을 수감자 봉급 이외의 기금에서 받을 경우, 이 금액은 배상 공제금에서 제외된다. 이 공제금은 수감자와 한 명의 방문자를 포함한 방문에 최대 50달러, 수감자와 2-3명의 방문자를 포함한 방문에 70달러 그리고

수감자와 4명 이상의 방문자를 포함한 방문에 80달러까지 방문에 대해 음식에 소비된 실제 금액에 적용된다.

(n) 수감자, 가석방자, 3451항에 따라 석방후 공동체 감시를 받은 사람, 또는 연방, 주나 지방 감옥, 교도소 또는 교정 시설 또는 그에 따른 공직자나 에이전트에 반한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1170항의 하위조항 (h), (5)절의 하위절 (B)에 따라 의무 감시를 받은 피고에게 재판이나 결제에 의해 주어지는 보상이나 처벌적 손해배상은 그 사람에 대한 미결 배상 명령이나 배상 벌금을 충족하기 위해 법원에서 승인한 합당한 변호사 수수료와 법률 비용을 지불한 후에 직접 지불 받는다. 지급판정의 잔액은 하위조항 (e)와 (i)에 따라 모든 미결 배상 명령과 배상 벌금을 전부 지불한 후에 수취인에 전달된다. 교정 당국은 유죄를 선고 받은 범죄의 희생자에게 보상이나 처벌적 손해 배상의 미결 지불에 관해 통고하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한다. 1170 항의 하위조항 (h)에 따라 카운티 감옥에 감금 처벌을 받은 재소자에 대해 기관은 유죄를 선고 받은 범죄의 희생자에게 보상이나 처벌적 손해 배상의 미결 지불에 관해 통고하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한다.

(o) (1) 배상의 직접 명령의 지불을 위해 California 희생자 보상 위원회에 이체된 금액은 배상금을 California 희생자 보상 위원회에서 받은 날짜부터 60일 이내에 희생자에게 지불한다. 희생자에 대한 배상 지불이 25달러 미만이면, 지불금이 25달러에 도달하거나 희생자가 더 적은 금액의 지불을 요청할 때 희생자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2) 희생자의 주소를 알 수 없을 경우, 희생자 대신에 California 희생자 보상 위원회가 받은 배상금은 기금이 예금되는 주 회계연도에 이어지는 그 다음 주 회계연도의 말까지 또는 희생자가 현 주소 정보를 제공할 때까지(먼저 일어나는 경우를 적용) 배상 기금에 보관한다. 지정된 기간의 말에 신탁에 남아 있는 금액은 배상 기금으로 전환된다.

(3) (A) 절 (2)에 지정된 기간 내에 현재 주소를 제공하지 못한 희생자는 그 금액을 희생자 대신에 징수되었음을 입증하는 교정 당국에 문서를 제공할 수 있다. 교정 당국으로부터 입증된 정보를 받자마자, California 희생자 보상 위원회는 하위조항 (c)나 (h)에 따라 희생자에게 배상 수입을 송금한다.

(B) 절 (2)에 지정된 기간 내에 현 주소를 제공하지 못한 희생자는 1170항의 하위조항 (h)에 따라 카운티 감옥에 감금 처벌을 받은 재소자가 감금되어 있는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지정한 기관에 문서를 제출할 수 있고 그 기관은 희생자 대신에 금액을 징수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 이 기관으로부터 입증된 정보를 받자마자, California 희생자 보상 위원회는 하위조항 (d)나 (h)에 따라 희생자에게 배상 수입을 송금한다.

제10항. 소급적용법

(a) 3항에 명시된 대로 이 법의 목적을 최선으로 달성하고 선고에서 공정성, 평등성 및 균일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법은 소급적으로 적용된다.

(b) 피고나 수감자가 본 법이 발효되기 전에 사형으로 선고 받았을 경우, 선고는 자동으로 본 법의 조항에 따라 가석방 가능성 없이 평생 동안 주 감옥에 수감되는 것으로 전환된다. California 주는 본 법의 유효일자 후에 어떤 사형도 실행하지 않는다.

(c) 본 법의 유효일자 후에 대법원은 대법원 앞에서 계류중인 모든 사형 상소와 인신보호 청원을 탄원서를 청구서모든 사형을 대법원의 재량에 따라 상소 법원이나 상급 법원 지역으로 이관할 수 있다.

제11항. 유효일자.

본 법은 California 헌법 II조 10항 (a)절에 따라 본 법을 승인 받은 선거 이후 날짜에 유효하게 된다.

제12항. 분리 가능 조항.

본 법의 조항은 분리가 가능하다. 10항을 포함한(이에 국한하지 않음) 본 법의 어느 조항이나 조항 적용이 무효로 간주될 경우, 무효 조항이나 조항 적용 없이도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다른 조항이나 조항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발의안 제 63호

California주 헌법 제II조 8항의 조항에 따라 본 발의안을 주민에게 제출한다.

본 발의법안은 형법에 조항들을 수정, 폐지, 추가한다; 따라서, 삭제될 기존 조항들은 취소선 유형으로 표기되며 추가될 새로운 조항들은 새로운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 *이탤릭체*로 표기된다.

발의 법안

The Safety for All Act of 2016

제1항. 제목.

본 법안은 "The Safety for All Act of 2016"으로 알려지거나 인용된다.

제2항. 주요 조사 결과 및 공표 사항.

California 주의 사람들은 다음을 조사하고 선언한다:

1. 총기 폭력이 삶, 가족, 공동체를 파괴한다. 2002년-2013년 동안, California는 총기 폭력으로 38,576명의 사람들을 잃게 되었다. 이는 Iraq와 Afghanistan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사망한 U.S. 군인 수의 7배에 달한다. 같은 기간 동안, California에서 총기 관련 부상으로 2,258 명의 아이들이 사망하였다. Sandy Hook 초등학교 대학살에서 살해된 아이들의 수는 이 주에서 39일간의 총기 사건으로 사망한 아이들의 수와 비슷하다.

2. 2013년, 총기로 인해 251명의 어린 아이 및 10대들을 포함하여 약 2,900명의 California 거주민들이 살해되었다. 그 해, 비 치명적 총기 부상으로 1,275명의 어린 아이 및 10대들을 포함하여 6,035명 이상의 사람들이 응급실로 이송되거나 치료를 받게 되었다.

3. 총기는 범죄에 자주 사용된다. California 법무부에 따르면, 2014년 California에서 1,169건의 총기 살해

사건, 13,546건의 총기 사용을 포함한 무장 강도, 15,801건의 총기 사용을 포함한 협박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4. 이러한 비참한 유형 사건들은 우리 사회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발생시킨다. 연구원들은 총기 폭력이 매년 229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경제적으로 부담시키며 이는 미국인 일인당 700달러씩 부담하는 것과 같은 금액임을 대략적으로 보여주었다. 2013년에만, California의 총기 관련 사망 및 부상으로 인해 8300만 달러의 병원 비용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42억 4천만 달러의 생산성 손실을 발생시켰다.

5. California는 더 좋아질 수 있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총기 관련 법은 총기 관련 사망 및 부상을 감소시키고 범죄에 총기가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며 불법적인 총기 밀매를 금하게 된다. 비록 California가 선진적인 총기 관련 법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법들은 일부 지역사회가 총기 폭력 및 총기난사에 취약하도록 하는 몇몇 허점들을 가지고 있다. 법을 준수하고 책임감 있는 California 거주민들만 정당방위, 사냥, 오락을 위해 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허점들을 줄일 수 있다.

6. 우리는 배경/경력 확인 작업에 관해 알고 있다. 연방의 배경/경력 확인은 이미 2.4만 건 이상의 미국 내 범죄적 혹은 불법적 구매자들에 대한 총기 판매를 방지하여 왔다. 2012년에만, 배경/경력 확인은 흉악범들에 의한 82,000 건의 구매 시도를 포함하여 192,043 건의 불법적 구매자들에 대한 총기 판매를 차단하였다. 이는 배경/경력 확인으로 인해 매일 총기 구매로 발생될 수 있는 대략 225명의 흉악범들을 막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California 법은 총기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만 배경/경력 확인을 요구하며 탄약 구매자들은 제외된다. 우리는 이러한 허점을 없애야만 한다.

7. 현재, California에서는 모든 흉악범이나 위험한 정신적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스포츠용품 매장이거나 총기 판매처에 입장이 가능하며 별다른 검사 없이 탄약의 구매가 가능하다. 이는 바뀌어야만 한다. 총기 판매와 같이 탄약 판매에서도 배경/경력 확인을 요구하고 위험한 인물들이 이러한 것들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해야만 한다.

8. 현행법에서, 탄약을 판매하는 곳들은 탄약이 분실되거나 도난당했을 때 법 집행을 위해 이를 보고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판매처들은 사건 발생 48시간 이내에 분실되거나 도난 당한 탄약들을 보고하여 법 집행을 통해 이러한 탄약들이 위험 인물들에게 불법적으로 밀매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9. 오늘 날 California 거주민들은 법 집행을 위해 분실되거나 도난 당한 탄약들을 보고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이는 도난 당한 총으로 발생한 범죄 조사를 통해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하고 총기 밀매 관련자들을 검거하며 총기가 적법한 소유자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한다. 총기 소유자가 법 집행을 위해 그들의 분실이나 도난 총기를 보고하도록 요구해야만 한다.

10. 현행법에서, 중죄 및 기타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은 총기 소지가 금지된다. 여전히 현행 법은 범죄로

인해 소지가 금지되었을 때 총기를 양도하도록 하는 어떠한 명확한 과정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2014년, 법무부는 1,400정 이상의 공격용 무기를 포함하여 34,000정 이상의 총기를 불법적으로 소지한 17,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파악하였다. 금지된 사람들이 그들의 총기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확실히 수행되도록 하여 이러한 위험한 허점들을 없애야만 한다.

11. 100발 이상이 장전되는 군대식 대용량 살상 무기는 단시간에 대규모 살상이 가능하도록 총기의 역량을 상당히 증가시킨다. 이로 인해 1993년 San Francisco의 101 California Street에서부터 1999년 Columbine 고등학교 그리고 2012년 Newtown, Connecticut의 Sandy Hook 초등학교 대학살에 이르기까지 미국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잔혹한 총기난사에 이러한 대용량 살상 무기가 사용되는 것이다.

12. 오늘날, California 법은 군대식 대용량 살상 무기의 제조, 수입, 판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일반인들에 대한 이들의 소유는 금지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허점을 없애야만 한다. 훈련된 법 집행자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위험한 살상 무기를 소지할 수 없도록 해야만 한다.

13. 비록 California 주가 California에 거주하는 총기 구매자들에 대한 배경/경력 확인을 수행하고는 있지만 다른 주의 이러한 제도 수행 및 FBI의 다른 지역 거주자들에 대한 배경/경력 확인 수행이 필요한 실정이다. 연방 배경/경력 확인 시스템에 총기 소지가 금지된 자들을 주에서 보고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California 외부 지역에서의 배경/경력 확인 수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14. 총기 절도는 심각한 것이며 잠재적으로는 강력 범죄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 같은 범죄들이 중죄로 판결되도록 하고 이러한 총기 소지로 범죄를 발생시킬 사람들을 예방하도록 해야만 한다.

제3항. 목적과 취지.

California 거주민들은 "The Safety for All Act of 2016" ("Act")의 제정에서 다음과 같이 그들의 목적과 취지를 선언한다:

1. California 거주민들에게 합리적인 모든 법 준수에 대한 헌법 수정 제 2조의 권리는 보존하면서 국가에서 가장 강력한 California의 총기 관련 안전 법에 대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개혁 수행을 위해

2. 흉악범, 위험한 정신질환 자 및 총기나 탄약 소지가 법으로 금지된 기타 사람들의 총기 및 탄약 소지를 막기 위해.

3. California에서 탄약이나 총기를 구매한 사람들이 배경/경력 확인을 받도록 하기 위해.

4. 탄약을 판매하는 모든 판매처가 사건 발생 48시간 이내에 모든 분실이나 도난 탄약을 보고하도록 요구하기 위해.

5. 주에서 총기 소지가 법으로 금지된 개인들을 연방 배경/경력 확인 시스템에 보고하도록 하는 지속적인 요구를

통해 California가 연방법 집행자와 중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6. 법 집행자가 분실이나 도난 된 총기의 보고를 요구하도록 하기 위해.

7. 사람들이 그들의 총기 소지가 금지되도록 하는 범죄를 지었을 경우 총기 양도를 요구하는 법률의 더 나은 수행을 위해.

8. California에서 Sandy Hook 초등학교; Aurora, Colorado 극장; Columbine 고등학교; San Francisco, California 101 California Street의 회사 건물 예서와 같은 대량 살상이 가능한 군대식 살상 무기의 소지가 금지되도록 하기 위해.

9. 총기 소지를 통한 총기 절도 자들을 예방하고 총기의 종류에 관계 없이 형법 제25400 및 1192.7항에 따라 총기 절도 자를 중죄 자로 분류하는 제안 47호의 취지를 발효시키도록 하기 위해.

제4항. 분실되거나 도난 당한 총기.

제4.1항. 4.5부(25250항으로 시작)는 형법 제 6편 4 조에 추가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5부. 분실 및 도난 된 총기

25250. (a) 2017년 7월 1일 이행,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유하거나 소유한 총기의 분실이나 도난을 사건 발생 확인 5일 이내에 관할 지역 법 집행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b) 하부 조항(a)에 따라 총기 분실이나 도난을 보고한 모든 사람은 사건 발생 확인 5일 이내에 관할 지역 법 집행 기관에 이를 알려야 한다.

(c) 하부 조항 (a)와 관련하여, 16170 항의 하부 조항 (c) 에 명시된 골동품 총기의 분실이나 도난에 대한 보고는 요구되지 않는다.

25255. 25250항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상급 기관에 분실이나 도난을 보고한 고용 내용 및 공식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법 집행 기관이나 치안관.

(b) 공식 업무를 수행중인 모든 미국 연방보안관, 미국 육해공군 또는 방위군.

(c) 미국 연방 법정 18조 44장(921항으로 시작하는) 및 이에 따라 발행된 규제에서 허가된 모든 사람과 미국 연방 법정 18조 923항(g)(6), 관련 조항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행된 규제에 따라 도난이나 분실을 보고한 사람.

(d) 2017년 7월 1일 이전에 자신의 총기가 분실 도난된 모든 사람.

25260. 11108항에 따라, 모든 보안관들은 법무부 자동화 총기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분실이나 도난이 보고된 각자의 총기에 대한 묘사 내용을 제출해야만 한다.

25265. (a) 25250항을 처음으로 위반한 모든 사람들은 법률 위반으로 일백 달러(100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 25250항을 두 번째 위반한 모든 사람들은 법률 위반으로 일천 달러(1,000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c) 25250항을 세 번째 위반한 모든 사람들은 경범죄 위반으로 자치주 교도소에서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이나 일천 달러(1,000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벌금과 징역 둘 다를 선고한다.

25270. 25250항에 따라 확인된 분실이나 도난을 보고하는 모든 사람들은 총기의 제조사, 모델, 일련 번호를 보고하고 지역 법 집행기관에서 요구하는 모든 관련 정보를 보고해야만 한다.

25275. (a) 총기의 분실이나 도난에 대해 지역 법 집행기관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이는 인정되지 않는다. 본 항의 위반은 법률 위반이며 첫 위반에 대해서는 이백오십 달러(250 달러) 이하의 벌금형을 또한 두 번째 또는 관련 법 위반에 대해서는 일천 달러(1,000 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b) 본 항은 모든 관련 법에 의한 기소를 제외하지는 않는다.

제4.2항. 형법의 26835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26835. 허가소지자는 허가 지역 내에 다음 경고문들을 검자 글씨로 높이가 1인치를 넘지 않도록 하여 확실하게 고지한다:

(a) "당신이 관리 및 통제하는 모든 지역에서 탄알이 장전된 총기를 소지하고 18세 이하의 당사자가 이를 소지하거나 사용하여 부상이나 사망 사고를 발생시킬 경우 또는 공공 장소에서 이를 소지할 경우, 잠금 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총기를 보관하거나 기능 작동 방지를 위해 총기에 일시적인 잠금 장치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범죄나 중죄에 해당될 수 있다."

(b) "당신이 관리 및 통제하는 모든 지역 내에서 숨길 수 있는 권총, 리볼버 및 기타 총기를 소지하고 18세 이하의 당사자가 이에 접근이 가능하며 이를 관련 지역 외로 가지고 갈 경우, 잠금 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총기를 보관하거나 기능 작동 방지를 위해 총기에 일시적인 잠금 장치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

(c) "당신이 관리 및 통제하는 지역 내에서 당신이 어떠한 총기라도 소지하고 18세 이하의 당사자가 이에 접근이 가능하며 관련 지역 외 학교나 학교 관련 행사에 이를 가지고 갈 경우, 잠금 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총기를 보관하거나 기능 작동 방지를 위해 총기에 일시적인 잠금 장치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천 달러(5,000 달러)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경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

(d) "당신이 관리하거나 통제하는 지역 내에 탄알이 장전된 총기를 부주의하게 보관하거나 방치하고 18세 이하의 당사자가 이에 접근이 가능할 경우, 잠금 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총기를 보관하거나 기능 작동 방지를 위해 일시적인 잠금 장치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천 달러 (1,000 달러)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경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

(e)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에서의 총기 발표, 총기 수입, 탄약 관리는 선천적 결손증, 생식 기능 손상 외 기타 신체적 위해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에 대한 노출을 야기할 수 있다. 항상 환기에 유의하도록 한다. 노출이 된 후에는 손을 잘 씻어준다."

(f) "연방 규정은 만약 초기 배경/경력 확인 과정을 완료하고 총기 소유권을 등록한 후 30일 이내에 총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총기의 사용을 위해 다시 배경/경력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보여준다."

(g) "어느 누구도 30일 이전에 은폐가 가능한 하나 이상의 권총, 리볼버 외 다른 총기의 구매 신청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30일 이전에 은폐가 가능한 하나 이상의 권총, 리볼버 외 다른 총기의 구매 신청을 한 자에게 어떠한 판매도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h) "소유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총기가 분실되거나 도난당하였을 경우, 사건 확인 5일 이내에 반드시 지역 법 집행기관에 이를 보고해야만 한다."

제5항. 국가의 즉각적 범죄 배경/경력 확인 시스템의 강화
제5.1항. 형법의 28220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28220. (a) 총기 구매자의 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법무부는 구매자가 27535항의 하부 조항 (a)에 명시되거나 주 또는 연방 법에 의해 총기의 보유, 수령, 소유, 구매가 금지된 자인지의 판단을 위해 복지기관법의 8104항에 따라 주 보건부에 의해 공인된 기록뿐만 아니라 모든 기록들을 확인한다.

(b) 자금 확보가 가능할 경우, 법무부는 아마도 미국 연방 법정 18조 922항의 하부 조항 (t)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가의 즉각적 범죄 배경/경력 확인 시스템 (NICS)에 참여할 것이며, 참여가 수행될 경우, 중개인, 시의 경찰서장,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와 자치주 그리고 거래가 경찰서의 관할 지역 외부에서 이뤄질 경우, 거래가 이루어지는 지역의 보안관에게 구매자가 연방 법에 의해 총기 소지가 금지된 자임을 알린다.

(c) 법무부가 구매자를 주나 연방 법에 의해 총기의 보유, 수령, 소유, 구매가 금지된 자로 판단하였을 경우 또는 당사자가 27535항의 하부 조항 (a)에 명시된 자일 경우, 해당 사실을 즉시 중개인, 시 경찰서장,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와 자치주 그리고 거래가 경찰서의 관할 지역 외부에서 이뤄질 경우, 해당 자치주의 보안관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d) 28210항의 하부 조항 (d)에 따라 제출된 등록부의 사본이 구매자의 개인 정보 및 권총이나 다른 총기류의 구매 내역을 숨기기 위해 공백이나 오류, 판독이 어려운, 불완전한 정보를 포함하거나, 등록부 사본의 제출과 함께 28225항에 따라 요구된 비용이 중개인에 의해 납부되지 않았을 경우, 법무부는 해당 사실을 중개인에게 알린다. 법무부의 공지에 따라, 중개인은 등록부의 수정된 사본, 28225항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비용 또는 이 둘 다를 법무부에 제출할 것이며 법무부의 공지가 총기 구매 전 중개인에게 수령되었을 경우, 중개인은 26815와 27540

항에 명시된 대기 기간이 결정될 때까지 총기의 전달을 보류한다.

(e) 28215항에 따라 제출된 정보가 구매자의 개인 정보 또는 권총이나 기타 총기류의 구매 내역 보호를 위해 오류, 불완전한 정보를 포함하거나 전자, 전화 기록 전송과 함께 28225항에 따른 비용이 중개인에 의해 납부되지 않았다고 법무부가 판단하였을 경우, 법무부는 해당 사실을 중개인에게 알린다. 법무부에 의한 공지에 따라, 중개인은 전자, 전화 전송 기록의 수정 내용이나 28225항에 따른 모든 비용 혹은 둘 다를 전달할 것이며 법무부에 의한 공지가 구매된 총기의 전달 전에 중개인에게 수령되었을 경우, 중개인은 26815와 27540항에 명시된 대기 기간이 결정날 때까지 전달을 보류한다.

(f) (1) (A) 법무부의 기록 혹은 국가의 즉각적 범죄 배경/경력 확인 시스템에서 법무부가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법무부는 중개인에게 구매자에 대한 총기 전달의 보류를 즉시 알린다:

(i) 구매자가 관리를 받고 있거나 정신 건강 치료 및 검진 시설에 위치하는 경우, 당사자가 복지기관법 8100이나 8103항에 명시된 자 일 경우, 구매자가 총기의 보유, 수령, 소유, 구매가 금지된 자인지를 법무부가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복지기관법 8100이나 8103항에 따라, 26815와 27540항에 명시된 대기 기간의 결정 전일 경우.

(ii) 죄가 있을 경우 주나 연방법에 의해 당사자의 총기 보유, 수령, 소유, 구매가 금지되도록 만드는 범죄로 인해 구매자가 구금되거나 벌금을 부과하였을 경우, 26815와 27540항에 명시된 대기 기간의 결정 전에 구매자가 죄가 있는지를 법무부가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iii) 구매자가 27535항의 하부 조항 (a)에 명시된 자일 경우, 구매자가 사실 26815와 27540항에 명시된 대기 기간 결정 전에 27535항의 하부 조항 (a)에 명시된 자인지를 법무부가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B) 중개인은 구매자가 하부 단락 (A)에 명시된 지연과 관련하여 법무부에 연락을 하였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2) 법무부는 구매자에게 지연에 대해 우편으로 알리고 법무부가 구매자를 위해 정리한 범죄 혹은 정신 건강 기록 자료를 구매자가 얻게 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해당 범죄 및 정신 건강 기록 자료의 수령 즉시, 구매자는 오류나 불완전한 내용을 법무부에 승인된 양식으로 보고한다.

(3) 법무부가 26815와 27540항에 명시된 대기 기간 후 단락 (1)에 명시된 내용과 같이 구금이나 벌금 부과 최종 내용, 정신 건강 치료 및 검사 결과, 구매자의 총기 구매 자격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중개인의 법무부에 대한 구매자 정보의 원 제출일 이후 30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법무부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하게 된다:

(A) 구매자가 27535항의 하부 조항 (a)에 명시되고 총기의 보유, 수령, 소유, 구매와 관련하여 복지기관법 8100이나 8103항을 포함하는 주나 연방법에 의해 금지된 자가 아닐 경우, 법무부는 즉시 중개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중개인은 해당 일의 등록부나 전자 전송 기록 상에 있는

중개인의 기록에 따라 즉시 총기를 구매자에게 전달한 후 중개인은 해당 구매자에 대한 총기의 전달을 나타내는 등록부나 전자 전송 기록에 서명하고 구매자는 해당일에 본인에게 전달된 총기의 수령을 인정하는 등록부나 전자 전송 기록에 서명한다.

(B) 구매자가 27535항의 하부 조항 (a)에 명시되거나 총기의 보유, 수령, 소유, 구매와 관련하여 복지기관법 8100이나 8103항을 포함하는 주나 연방 법에 의해 금지된 자일 경우, 법무부는 즉시 중개인, 시 경찰서장, 거래가 이루어진 시나 자치주 그리고 거래가 경찰서의 관할 지역 외에서 이루어졌을 경우, 거래가 이루어진 자치주 보안관에게 28220항의 하부조항 (c)에 따라 해당 사실을 알린다.

(4) 단락 (1)에 명시된 바와 같이 법무부가 구금이나 벌금형의 최종 결과, 정신 건강 치료 및 검사 결과, 구매자의 총기 구매 자격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본 항과 관련하여 법무부에 구매자 정보에 대한 중개인의 원 제출일 후 30일 이내에, 법무부는 즉시 이를 중개인에게 알리고 중개인은 총기가 전달된 해당 일의 등록부나 전자 전송 기록 상 중개인의 기록 내용에 따라 총기를 즉시 구매자에게 전달하며 중개인은 구매자에 대한 총기 전달을 나타내는 등록부나 전자 전송 기록에 서명하고 구매자는 해당일의 당사자에 대한 총기 수령을 인정하는 등록부나 전자 전송 기록에 서명한다.

(g) 2017년 7월 1일 이행, 연방이나 주 법에 따라 당사자의 총기 보유가 금지됨을 나타내는 정보 수령과 관련하여, 법무부는 국가의 즉각적 범죄 배경/경력 확인 시스템 색인, 거부자 파일에 성명, 생년월일, 당사자의 신체적 특징에 관한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제공된 정보는 권한이 지정되고 기밀로 유지되며 연방이나 주의 총기 관련 법 집행을 제외하고는 공개되지 않는다.

제6항. 대용량 탄창의 소유

제6.1항. 형법의 32310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32310. (a) 본 장의 제2조(32400항으로 시작) 및 제목 2 2000년 1월 1일 시작 제2부의 제1장(17700항으로 시작)에서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용량 탄창을 제조하거나 제조하도록 하거나 주에 들여오기하거나 판매를 위해 보유하거나 판매를 위해 제안하거나 노출하는 주 내 모든 자, 또는 이를 주거나 받거나 대여하거나 구입하는 모든 자는 일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교도소 수감 또는 1170항의 하부조항 (h)에 의거한 수감에 의해 처벌 가능합니다.

(b) 본 조항의 목적으로, "제조"란 완전하게 기능하는 대용량 탄창이 되도록 탄창을 제작하는 행위 및 본체, 스프링, 공이, 바닥판 또는 종판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하지 않는 부품들의 조합으로부터 탄창을 조립하는 행위 둘 다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c) 본 장의 제2조(32400항으로 시작) 및 2017년 7월 1일 시작하는 제목 2 제2부의 제1장(17700항으로 시작)에서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용량 탄창을 소지한 주 내 모든 사람은 탄창을 취득한 날짜와 무관하게, 대용량

탄창 하나당 백 달러(\$1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의해 처벌 가능한 위반 유죄이거나, 또는 대용량 탄창 하나당 백 달러(\$1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의해서나, 일 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교도소 수감에 의해서나, 그러한 벌금 및 수감 모두에 의해 처벌 가능한 경범죄 유죄입니다.

(d) 2017년 7월 1일부터 시작하여 대용량 탄창을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은 2017년 7월 1일 전에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1) 주 내에 해당 대용량 탄창이 존재하지 않도록 제거해야 하거나

(2) 대용량 탄창을 면허를 받은 총기상에게 판매하거나

(3) 대용량 탄창을 파기하도록 법 집행 기관에 인도해야 함

제6.2항. 형법의 32400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32400. 32310항은 임무 수행/비 수행 중인 여부에 관계없이, 및 그 이용이 기관에 의해 승인되어 임무의 과정 및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공식적 임무 수행 중인 기관 피고용인에 의한 사용을 목적으로, 법 집행 의무를 부여받은 모든 연방, 주, 카운티, 시 및 카운티, 또는 시 소속 기관으로 또는 그에 의한 대용량 탄창을 주거나, 대여하거나 소유하거나, 주 안으로 들여오기하거나, 구매하는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6.3항. 형법의 32405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32405. 파트 2 제목 3의 제4.5장(830항으로 시작)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또는 경찰관 임무의 과정 및 범위 내에서 총기를 지니도록 허용된 연방법 집행 경찰관이 선서한 바와 같이, 32310항은 대용량 탄창을 주에 판매하거나, 대여하거나, 양도하거나, 구매하거나, 수령하거나, 소유하거나, 들여오기하는 행위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6.4항. 32406항을 형법에 추가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2406. 32310항의 하부조항 (c)는 파트 2 제목 3의 제4.5장 (830항으로 시작)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또는 경찰관 임무의 과정 및 범위 내에서 총기를 지니도록 허용된 명예롭게 은퇴한 연방법 법집행관이 선서한 바와 같이, 명예롭게 은퇴한 보안관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명예롭게 은퇴"란 16690항에 명시된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제6.5항. 32410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32410. 32310항은 26700에서 26915항까지 조항에 의거하여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나 그에 의한 대용량 탄창의 판매, 또는 구매, 또는 소유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6.6항. 형법의 32420항은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32420. 32310 항은 2000년 1월 1일 전에 주에서 대용량 탄창을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합법적으로 주 밖으로 가지고 나갔으며 동일한 대용량 탄창을 가지고 돌아온 사람에 의한 대용량 탄창의 들여오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6.7항. 32425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32425. 32310항은 다음의 모든 항목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a) 26700항에서 26915항까지의 조항에 의거하여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또는 해당 대용량 탄창을 유지보수, 수리 또는 수정을 목적으로 총기 제작자에게 대여하거나 주는 행위

(b) 하부조항 (a)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하부 조항 (a)에 명시된 사람이 대용량 탄창을 소유하는 행위

(b) (c) 하부조항 (a)에 명시된 사람이 대용량 탄창을 그 소유주에게 반납하는 행위

제6.8항. 형법의 32435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32435. 32310항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a) 우리 주로 대용량 탄창을 판매, 주기, 대여, 소유, 들여오기하거나, 또는 우리 주 법률에 의거하여 장갑차량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주체에게나 그에 의해 구매하는 행위

(b) 그 주체의 장갑차량 사업과 관련한 목적을 위해 고용의 과정 및 범위 중에, 승인받은 피고용인들에게 하부조항 (a)에 명시된 주체가 대용량 탄창을 빌려주는 행위

(c) 그 주체의 장갑차량 사업과 관련한 목적을 위해 하부조항 (a)에 명시된 주체의 피고용인들이 대용량 탄창을 소유하는 행위

(e) (d) 하부조항 (b)에 명시된 해당 피고용인들에 의해 하부조항 (a)에 명시된 주체에게 해당 대용량 탄창을 반납하는 행위

제6.9항. 형법의 32450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32450. 32310항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31000항, 32650,이나 33300항에 의거, 또는 제5부 제2장의 제3조(18900항으로 시작), 또는 본 부의 제6장 제4조(32700항으로 시작)에 의거하여 발행된 특수 무기 허가증의 소지자에 의한 대용량 탄창의 구매 또는 소유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a) 영화, 텔레비전 또는 동영상 제작을 위한 소도구로서만 사용할 목적인 경우

(b) 연방 규정에 의거한 수출의 목적인 경우

(c) 적용 가능한 연방 규정에 의거한 법 집행 기관, 정부 기관 또는 군에 재판매 목적인 경우

제7항. 총기상

제7.1항. 형법의 26885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26885. (a) 26805항의 하부조항 (b) 및 (c)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를 받은 사람의 재고에 있는 모든 총기는 면허를 받은 장소 안에 보관해야 합니다.

(b) 면허를 받은 사람은 발견 즉시 48시간 이내에, 다음의 항목의 분실이나 도난 사실을 면허를 받은 사람의 부지가 위치한 시 또는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 내 적절한 법 집행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1) 면허를 받은 사람의 상품인 모든 총기 또는 탄약

(2) 제5장 (28050항으로 시작) 에 의거하거나, 또는 30312항에 의거하여 면허를 받은 사람이 소지하는 모든 총기 또는 탄약

(3) 면허를 받은 사람의 사업 장소에 보관된 모든 총기 또는 탄약

제7.2항. 형법의 26915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26915. (a) 2018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총기상은 26710항에 의거하여 총기를 다루거나 판매하거나 배송하는 모든 대리인 또는 피고용인은 법무부로부터 적격 증명서를 획득하여 딜러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의 신청 즉시, 대리인 또는 피고용인은 자신이 고용된 총기상 이름 및 California 총기상 번호를 기재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b) 적격 증명서를 소유한 대리인 또는 피고용인이 총기 소유가 금지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에서 총기상에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c) 만일 지역 관할에서 총기상의 대리인 또는 피고용인의 신원 조회를 요구하는 경우, 대리인 또는 피고용인은 하부조항 (a)에 의거한 적격 증명서를 획득해야 합니다.

(d) (1)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지역 관할이 11105항에 의거한 추가적인 신원 조회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건을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 관할은 추가적인 범죄 전과 기록 조회를 위한 비용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2)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지역 관할이 적격 증명서 획득의 일환으로 나타나지 않는 범죄 전과 기록을 근거로 고용을 금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건을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e) 면허를 받은 사람은 제2장 (29800항으로 시작) 또는 본 제목의 제9부 제3장 (29900항으로 시작) 또는 복지기관법 8100항 또는 8103항에 따라 총기 소지가 금지된 사람들의 클래스 안에 들어 있다고 면허를 받은 사람이 알거나 타당하게 알게 된 모든 대리인이 안전 처리되지 않은 어떠한 총기에도 접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어떠한 열쇠 조합 또는 하부조항 (g) 에 설명된 모든 잠금 장치를 열 수 있는 기타 수단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금지해야 합니다.

(f)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지방 정부가 대리인 또는 피고용인과 관련하여 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추가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g) 본 조항의 목적에 따라, "안전 처리된"이란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작동 불능하게 만든 총기를 의미합니다.

(1) 23655항의 하부조항 (d)에 의거하여 부서의 승인된 총기 안전 장치 목록에 올라 있는 총기 안전 장치에 의해 안전 처리되어 총기가 작동 불능함

(2) 23650항에 기재된 부서에서 승인한 총기 안전함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는 잠긴 총 안전함 또는 장총 안전함 내에 총기가 보관됨

(3) 열쇠, 조합 또는 유사 수단에 의해서만 잠금 해제할 수 있는, 총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자 이용되는 건물 내의 구별되는 잠긴 방 또는 구역에 총기가 보관됨

(4) 총기의 방아쇠 울을 통과하여 적어도 직경 팔분의 일인 강화된 강철봉 또는 케이블로 총기가 안전하게 잠김 강철봉 또는 케이블은 족쇄가 있는 강화된 강철 자물쇠로 안전 장치되어야 함 자물쇠 및 족쇄는 볼트 커터 사용으로부터 보호하거나 방지할 수 있어야 하며, 봉 또는 족쇄는 부지에서 총기를 빼내는 것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앵커 고정되어야 함

제8항. 탄약의 판매

제8.1항. 형법의 16150 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16150. (a) 30300항에서 사용된, "탄약"이란 ~~16650항에서 정의된 권총 탄약을 의미합니다.~~ 30305 항의 하부조항 (a) 및 30306항에서 제외하고는 이 부분에서 사용된, "탄약"이란 점화된 케이스, 추진제로 구성되고 하나 이상의 발사체가 있는 하나 이상의 장전된 카트리지를 의미합니다. "탄약"에는 공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b) 30305항의 하부조항 (a) 및 30306항에서 사용된, "탄약"에는 모든 탄환, 카트리지, 탄창, 클립, 속도 부하장치, 자동 부하장치, 또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총기로부터 발사할 수 있는 발사체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약"탄약"에는 공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8.2항. 16151항을 형법에 추가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6151. (a) 2018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본 부분에서 사용된 "탄약 판매상"이란 30385항에 의거하여 발급된 현행 탄약 판매상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 기업, 회사 또는 기타 대형 기업을 의미합니다.

(b) 2018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26700항에서 26915까지의 조항에 의거하여 면허를 받은 총기상은 면허를 받은 탄약상으로 자동 간주되되 단, 해당 딜러가 제2조 (30300항으로 시작) 및 제4, 제10부 제1장의 제3조 (30342항으로 시작)의 요구조건을 딜러가 준수해야 합니다.

제8.3항. 형법의 16662항은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16662. 이 부분에서 사용된, "권총 탄약상"이란 모든 권총 탄약의 소매 판매에 종사하거나, 권총 탄약 판매업에 종사하는 지위로 자신을 유지하는 모든 사람, 회사, 기업, 딜러 또는 기타 모든 대형 기업을 의미합니다.

제8.4항. 형법의 17315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17315. 제3조(30345항으로 시작) 제4, 제10부 제1장의 제2조에서 제5조까지에서 사용된 "판매자"란 권총 탄약 판매상을 의미합니다.

제8.5항. 형법의 30306 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30306. (a) 30305항의 하부조항 (a) 또는 (b)에 의거하여 어떠한 탄약이나 재장전된 탄약이든 소유하거나 소지하거나 보관 또는 통제하는 것이 금지되었다고 자신이 알고 있거나 타당한 주의를 기울여 알게 된 자에게 탄약을 공급하거나 전달하거나 판매하거나, 그 소지 또는 통제권을 부여하는 모든 사람, 기업 또는 회사, 또는 기타 대형 기업은 일 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에 의해서나, 천 달러(\$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의해서나, 해당 벌금 및 수감 둘 다에 의해 처벌 가능한 경범죄에 대하여 유죄입니다.

(b) 30305항의 하부조항 (a) 또는 (b)에 의거하여 어떠한 탄약이나 재장전된 탄약이든 소유하거나 소지하거나 보관 또는 통제하는 것이 금지된 자에게 결과적으로 탄약이 판매되거나 양도될 것이라는 것을 알거나 그렇게 믿을 이유가 있는 채로, 또 자신이 탄약의 실제 구매자나 양수자가 아니라고 알거나 그렇게 믿을 이유가 있는 채로 그러한 자에게 탄약을 공급하거나 전달하거나 판매하거나, 그 소지 또는 통제권을 부여하는 모든 사람, 기업, 회사 또는 기타 대형 기업은 일 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에 의해서나, 천 달러(\$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의해서나, 해당 벌금 및 수감 둘 다에 의해 처벌 가능한 경범죄에 대하여 유죄입니다.

(b) (c) 본 조항에 속하는 조항들은 누적적인 성격 가지며 기타 모든 법률의 적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단, 본 조항 및 다른 법률 조항에 의해 다른 방식으로 처벌 가능한 행위 또는 누락은 조항 한 개를 초과하여 처벌하지 못합니다.

제8.6항. 형법의 30312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30312. (a) 2011년 2월 1일부터 시작하여, (1) 2018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어떤 당사자에 의한 탄약 판매면허를 받은 탄약상에 의해서 수행되거나 그를 통해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2) 탄약 판매에 대한 어떤 당사자도 면허를 받은 탄약상이 아닌 경우, 판매자는 해당 거래 과정을 진행할 판매상에게 탄약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탄약 판매상은 그 판매가 금지되지 않은 경우, 마치 탄약이 판매상 자신의 상품인 것처럼 구매자에게 즉시 적절하게 탄약을 전달해야 합니다. 탄약상이 구매자에게 탄약을 합법적으로 전달할 수 없는 경우, 판매상은 즉시 탄약을 판매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탄약상은 본 제4에 속한 조항들에 의거하여 부과 가능한 모든 적용 가능한 비용료 외에도, 법무부가 정한 금액으로 거래 진행을 위한 행정 비용을 구매자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b) 2018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어떤 당사자에 의해서든 권총 탄약의 판매, 인도 또는 그 소유권의 양도는 판매자, 인도자, 또는 양도자와 면대면 거래에서만 발생할 수 있으며 구매자 또는 기타 양수자로부터의 선의의 증거가 있어야 하며, 단, 면허를 받은 탄약상이 최초에 탄약을 받고 본 조항 및 본 파트의 제4, 제10부 제1장의 제3조(30342항으로 시작)을 준수하여 거래를 진행한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원격 주문의 기타 수단을 통해 탄약을 구입하거나 취득할 수 있습니다.

(b) (c) 하부조항 하부조항 (a) 및 (b)는 다음과 같은 자에게 이루어지는 권총 탄약의 판매, 인도 또는 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거나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도시, 카운티, 도시와 카운티, 또는 주 정부나 연방 정부의 승인된 법 집행 대표자, 이 경우, 판매, 인도 또는 양도가 해당 정부 기관의 독점적 사용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권총 탄약의 판매, 인도 또는 양도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구매자 또는 양수자를 임명하는 기관장이 발급한 서면 승인이 있어야 하며 여기에는 해당 거래를 수행하도록 승인을 받은 개인으로서 피고용인을 정의하고 있어야 하며, 그 개인을 임명한 기관의 독점적 사용을 위해 거래가 승인된 사실이 명시되어야 함

(2) 파트 2 제목 3의 제4.5장(830항으로 시작)에서 정의된 선서한 보안관, 또는 경찰관의 직무와 범위에서 총기를 지니도록 승인받은 선서한 연방 법 집행관

(3) 권총 탄약 또는 총기의 수입자 또는 제조업자로서, United States 법률의 제목 18 제44장(921항으로 시작) 및 그에 따라 교부된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에 종사하도록 면허를 받은 자

(4) 본 제목의 제6부 제6장의 제6조(28450항으로 시작)에 의거하여 법무부가 유지하고 있는 면제되는 연방 총기 면허를 받은 사람의 집중적 목록에 올라 있는 자

(5) 자신의 면허를 받은 부지가 본 주 밖에 있고 United States 법 제목 18의 제44장 (921항으로 시작) 및 그에 따라 교부된 규정에 의거하여 총기상 또는 수집가로 면허를 받은 자

(6) United States 법의 제목 18의 제44장(921항으로 시작) 및 그에 따라 교부된 규정에 의거하여 총기 수집자로서 면허를 받은 자이면서, 자신의 면허를 받은 부지가 본 주 내에 있고 26710항에 의거하여 법무부가 발급한 현행 적격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자

(7) 권총 탄약 판매상

(8) 컨설턴트-평가자

(9) 비즈니스 또는 기타 규정적 면허를 보유하면서 대상 시설에서 탄약을 구매하거나 받는 자이되, 단, 탄약이 항상 그 시설의 부지 내에 보관되어야 함

(10) 16720항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배우자, 등록된 동거 파트너 또는 직계 가족으로부터 탄약을 구매하거나 받은 자

(e) (d) 본 조항의 위반은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제8.7항. 30314항을 형법에 추가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0314. (a) 2018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본 주의 주민은 자신이 구매한 탄약을 본 주 안으로 들여오거나 운반하거나, 본 주 밖에서 달리 획득해서는 안 되며, 단, 30312항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해당 주민에게 인도하기 위해 면허를 받은 탄약상에게 탄약을 먼저 전달하도록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b) 하부조항 (a)는 다음 중 어느 것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1) 탄약상

(2) 파트 2, 제목 3의 제4.5장(830항으로 시작)에 정의된 바와 같은 선서한 보안관, 또는 경찰관의 업무 과정 및 범위 안에서 총기를 지니도록 승인받은 선서한 연방 법 집행관

(3) United States 법 제목 18의 제44장(921항으로 시작) 및 그에 따라 교부된 규정에 의거하여 비즈니스에 종사하도록 승인받은 탄약이나 총기의 수입자 또는 제조업자

(4) 제6부 제6장 제6조(28450항으로 시작)에 의거하여 법무부에서 유지하는 면제되는 연방 총기 면허를 받은 사람의 집중적 목록에 올라 있는 자

(5) United States 법의 제목 18의 제44장(921항으로 시작) 및 그에 따라 교부된 규정에 의거하여 총기 수집자로서 면허를 받은 자이면서, 자신의 면허를 받은 부지가 본 주 내에 있고 26710항에 의거하여 법무부가 발급한 현행 적격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자

(6) 16720항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배우자, 등록된 동거 파트너 또는 직계 가족으로부터 탄약을 획득한 자

(c) 본 조항의 위반은 최초에 저질렀을 경우에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모든 결과적 범죄에 대하여 법률 위반 또는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제8.8항. 형법 파트 6의 제목 4 제 10부 제1장 제3조 (30342항으로 시작)의 표제는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제3조. 권총 탄약상

제8.9항. 30345항에 직접 선행하는 30342항을 형법에 추가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0342. (a) 2018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유효한 탄약상 면허는 30일 기간 내 500발을 초과한 탄약을 판매하는 모든 사람, 회사, 기업 또는 기타 대형 기업에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b) 이 조항의 위반은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제8.10항. 30347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30347. (a) 탄약상은 탄약을 다루거나 판매하거나 인도하거나 보관하거나 통제하는 모든 대리인 또는 피고용인에게 26710항에 의거하여 법무부가 발급한 적격 증명서를 획득하여 판매상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증명서의 신청서에, 대리인 또는 피고용인은 자신을 고용한 총기상의 이름 및 주소, 또는 적용 가능한 경우에는 탄약상의 이름 및 그의 California 총기상 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b) 적격 증명서를 소유한 대리인 또는 피고용인이 30305 항에 속한 하부조항 (a) 또는 연방법에 의거하여 총기 소유가 금지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에서 총기상에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c) 탄약상은 제2장(29800항으로 시작) 또는 본 제목의 제 9부 제3 장(29900항으로 시작) 또는 기관법 8100항 또는

8103항에서 설명된 자라고 알고 있거나 타당하게 알게 된 대리인 또는 피고용인이 고용관계의 과정 및 범위 내에서 어떠한 권총 탄약도 다루거나, 판매하거나, 인도하거나, 보관하거나 통제하도록 허가해서는 안 됩니다.

제8.11항. 30348항을 형법에 추가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0348. (a) 하부조항 (b)에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허를 받은 판매상에 의한 탄약 판매는 면허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b) 총기 박람회나 이벤트가 엔진이 달리거나 견인된 차량에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면 판매상은 총기 박람회 또는 이벤트에서 탄약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c) 본 조항의 목적에 따라, "총기 박람회 또는 이벤트"란 총기의 수집, 경쟁적 사용 또는 기타 스포츠 용도에 헌신하는 모든 국가, 주 또는 지방 조직이 후원하거나, 커뮤니티에서 총기의 수집, 경쟁적 사용 또는 기타 스포츠 용도에 헌신하는 후원자가 활동하는 조직이나 협회에서 후원하는 기능적 행사를 말합니다.

(d) 총기 박람회 또는 이벤트에서 탄약 판매를 할 경우 30347, 30350, 30352, 및 30360항을 포함하여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8.12항. 30350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30350. 탄약상은 판매상이나 판매상의 피고용인의 도움 없이는 구매자 또는 양수자가 탄약에 접근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권총 탄약을 판매하거나 달리 그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판매를 제안하거나 달리 그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제안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그 소유권의 양도를 목적으로 전시해서는 안 됩니다.

제8.13항. 30352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30352. (a) 2011년 2월 1일 2019년 7월 1일부터 시작하여, 탄약상은 인도 시점에 법무부가 지정할 양식에 다음의 정보를 읽기 쉽게 기록하지 않고는 권총 탄약을 판매하거나 그 소유권을 달리 양도하여서는 안 됩니다

- (1) 판매 또는 기타 거래 양도 날짜
- (2) 구매자 또는 양수자의 운전 면허증 또는 기타 신원 확인증 번호 및 그것이 발급된 주
- (3) 판매되거나 달리 양도된 탄약의 브랜드, 종류 및 양
- (4) 구매자 또는 양수자의 이름 전체 및 서명
- (5) 판매 또는 기타 거래를 진행한 판매원의 이름
- (6) 상기 양식에 구매자 또는 양수자의 오른손 엄지 지문
- (7) (6) 구매자 또는 양수자의 거주지 주소 전체 및 전화 번호.
- (8) (7) 구매자 또는 양수자의 생년월일

(b) 2019년 7월 1일부터 시작하여, 판매상은 탄약의 모든 판매 및 그 소유권의 양도에 대하여 하부조항 (a)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법무부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탄약 구매 기록 파일로 알려진 데이터베이스에 이러한 정보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기밀 유지해야 하며 11105항의 하부조항 (b) 또는 (c)에 명시되고 그에 따른 부서 및 해당 기관들이 법 집행 목적으로만 California 법 집행 통신 시스템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탄약상은 구매자 또는 양수자의 명시적 서면 동의 없이는 본 하부조항에서 요구하는 제출의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는 해당 정보를 이용하거나 판매하거나 공개하거나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c) 2019년 7월 1일 이행, 본 하부 조항에 명시된 사람들이나 하부 조항 (e)에 명시된 개인이나 법인만이 탄약 구매에 대한 권한을 부여 받는다. 모든 탄약의 전달에 앞서, 탄약 판매 업자는 탄약을 수령할 자가 하부 조항 (e)나 다음에 명시된 개인이나 법인 인지의 확인을 위해 진실된 증거를 요구한다:

- (1) 30370항에 의해 탄약 구매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
- (2) 허가받은 총기 중개인이며 탄약이 총기와 같은 거래를 통해 개인에게 전달되는 경우, 28220항에 따라 법무부에 의해 탄약 판매 업자로부터의 총기 수령이 승인된 개인.

(d) 2019년 7월 1일 이행, 탄약 판매 업자는 법무부와 함께 법무부에 의해 명시된 방법으로 개인의 탄약 구매 허가번호를 허가된 탄약 구매자들의 공식 명부와 비교하여 해당 개인이 탄약 구매에 허가되었음을 확인한다. 개인이 허가된 탄약 구매자로 명시되지 않을 경우, 판매 업자는 판매나 전달을 거절하게 된다.

(b) (e) 하부 조항 하부 조항 (a) 와 (d)는 다음과 관련하여 명확히 파악되더라도-권총 탄약 판매 업자에 의한 권총 탄약의 판매나 소유권의 기타 전달에 적용되거나 영향을 주지 않는다:

- (1) 26700에서 26915항에 따라 허가된 개인 포함.
- (2) (1) 권총 탄약 판매자.
- (3) (2) 본 장의 6부 6장 6조(28450항으로 시작)에 따라 법무부에 의해 관리되는 연방 총기 면허 소지자에서 제외되는 공식 명부에 속한 개인.-
- (4) (3) 항상 탄약을 시설의 관할 지역 내에 보유할 경우 사업이나 기타 규제 허가를 가진 해당 시설에서 탄약을 구매하거나 수령하는 사업이나 규제 허가를 가진 개인을 보유한 해당 시설.
- (5) (4) 총포 장인.
- (6) (5) 도매업자.
- (7) (6) 미국 연방 법정 18조 44장(921항으로 시작)과 이와 관련하여 발행된 규제에 따라 허가된 총기나 탄약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8) (7) 정부 기관에 의해 판매나 소유권의 기타 전달이 독점적인 사용이고 권총 탄약의 판매, 운송, 전달에 앞서, 구매, 운송, 거래를 수행하는 자를 통해 거래를 허가하는 기관장에 의한 서면 승인이 개인에게 제시될 경우 시, 자치주, 시와 자치주, 주, 연방 정부를 대표하여 허가된 법 집행자. 적합한 서면 승인은 구매자, 양수인, 개인 이외의

소유권 획득으로 적용되어 기관장에 의한 검증된 서면 승인으로 규정되고 직원을 거래의 수행이 허가된 개인으로 여기며 해당 직원의 채용을 통해 기관의 독점적 사용을 위한 거래를 허가한다.

(8) 2부 3조 4.5장(830항으로 시작)에 규정된 적합한 선서를 수행한 치안 관이나 업무 수행 중 충기를 소지하도록 허가된 적합한 선서를 수행한 연방법 집행관.

(f) (1) 구매자나 양수인이 채용됨으로써 적합한 증서는 기관장에 의한 검증된 서면 증서로 규정되고 구매자나 양수인을 임무 수행 중 충기 소지가 허가된 정직 치안관으로 여긴다.

(2) 증서는 구매나 전달 과정에서 판매 업자에게 전달되고 구매자나 양수인은 자신들이 증서 내에 허가된 자 임을 확인하기 위해 파악 내용에 대한 진실된 증거를 제공한다.

(3) 판매 업자는 판매 기록과 함께 증서를 보관하고 법무부에 이를 제출한다.

(g) 법무부는 본 항의 조항 수행을 위해 규제를 수용하도록 허가된다.

제8.14항. 30363항을 형법에 추가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30363. 48 시간의 증거개시 과정에서, 탄약 판매 업자는 판매 업자의 사업 지역이 속한 도시, 자치주 혹은 도시와 자치주 내 해당 법 집행 기관에 다음 품목들에 대한 분실이나 도난을 보고한다.

(1) 판매 업자가 판매하는 모든 탄약.

(2) 30312항에 따라 판매 업자가 보유한 모든 탄약.

(3) 모든 탄약은 판매 업자의 사업장 내에 보관한다.

제8.15항. 4조(30370항으로 시작)는 형법 6권 4조 10 부 1장에 추가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탄약 구매 허가

30370. (a) (1) 2019년 1월 1일 시행, 18세 이상의 모든 사람은 법무부에 탄약 구매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2) 탄약 구매 허가는 공인된 개인에 의해 16151항에 규정된 조건으로 탄약 판매 업자로부터의 구매나 기타 탄약 소유권 양도에 사용될 수 있으며 다른 영향력은 행사하지 않는다.

(3) 탄약 구매 허가는 하부 조항 (b)에 따라 법무부에 의해 무효화 되지 않는 이상 2019년 7월 1일 이후 발급일로부터 4년간 유효하다.

(b) 탄약 구매 허가는 본 항의 내용에 따라 탄약 구매 허가를 발급받은 소유자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상황에 따라 법무부에 의해 적합하게 무효화된다. 자격이 상실될 경우, 법무부는 소유자의 서면 요구에 따라 그 이유를 명시하고 상실 회복을 위해 소유자에게 상소 과정을 제공한다.

(c) 법무부는 탄약 구매가 허가된 모든 개인들에 대한 내부 공식 명부를 만들고 유지하며 명부에서 본 항의 내용에 따라 법무부에 의해 허가가 상실된 개인들을 적합하게

제거한다. 법무부는 탄약 판매나 양도의 목적으로 탄약 판매 업자들이 명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법 집행 목적을 위해 법 집행 기관들에 대한 확인도 허가한다.

(d) 법무부는 다음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키는 신청자들에게 탄약 구매 허가를 발급한다:

(1) 신청자가 18세 이상일 경우.

(2) 30305항의 하부 조항 (a)나 연방 법에 따라 신청자의 탄약 획득이나 보유가 금지되지 않을 경우.

(3) 신청자가 하부 조항 (g)에 명시된 비용을 지불할 경우.

(e) (1) 초기나 갱신 신청서의 수령 즉시, 법무부는 30305항의 하부 조항 (a)이나 연방 법에 따라 신청자의 탄약 보유나 획득이 금지되는지의 판단을 위해 관련 기록, 복지기관법 8104항에 따라 주 보건부로부터 요청에 허가된 기록, 그리고 허가가 되었을 경우, 미국 연방 법정 18조 922항(t)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가의 즉각적 범죄 배경/경력 확인 시스템을 확인한다.

(2) 신청자는 법무부에 대한 신청서 접수 30일 이내에 승인이나 거절을 받게 된다. 신청이 거절될 경우, 법무부는 그 근거를 명시하고 거절 내용의 해결을 위해 신청자에게 상소 과정을 제공한다.

(3) 법무부가 신청자의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신청의 최종 결과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법무부는 신청자에게 허가를 내려준다.

(4) 탄약 구매 허가 번호는 확인을 위한 진실된 증거로 개인에게 제시된 문서의 번호와 동일하다.

(f) 법무부는 30305항의 하부 조항 (a)나 연방 법에 따라 개인의 탄약 획득이나 보유가 금지되지 않음을 법무부가 판단하였다는 내용을 제공하고 신청자가 하부 조항 (g)에 명시된 기간별 비용을 납부하도록 하여 만기 전에 개인의 탄약 구매 허가를 갱신한다.

(g) 법무부는 탄약 구매 허가 발급이나 허가 갱신의 발급을 위해 개인 당 오십 달러(50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합당한 금액을 부과할 수도 있지만 법무부는 본 항에서 제공되는 탄약 허가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 조성에서 합리적으로 추정된 비용보다 더 높게 이 금액을 설정하지 않으며 30352 항에는 본 프로그램의 실행 및 본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 시스템의 유지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다.

(h) 탄약 안전 및 수행 특별 기금은 주 재무국장의 재량에 따라 이곳에서 조성된다. 본 항에 따라 수령된 모든 비용은 일반 기금의 탄약 안전 및 수행 특별 기금으로 예치되며 행정법전 / 정부법 13340항에도 불구하고 이 비용들은 본 항과 30352항에 제공된 탄약 허가 프로그램의 수행, 운영, 집행을 목적을 위해 그리고 30371항에 제공된 초기 대출금의 상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충당된다.

(i) 법무부는 매년 이를 검토하고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하부 조항 (g)에 명시된 모든 비용들은 조정하게 된다.

(j) 법무부는 본 항의 조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규제의 수용 권한을 갖는다.

30371. (a) 이로써 30352와 30370항을 위한 탄약 허가 프로그램 조항들을 수행, 운영, 집행하는 데 필요한 초기 자금의 대출금인 일반 기금을 통해 이천오백만 달러(25,000,000 달러)가 충당되었다.

(b) 대출금의 상환을 위해, 30352와 30370항을 위해 제공된 탄약 허가 프로그램의 수행, 운영, 집행에 필요한 금액을 지출한 후 회계감사관은 탄약 안전 및 수행 특별 기금을 통해 수령한 비용에서 일반 기금에 대한 공동 투자 자금률의 이자를 포함하여 본 항에서 제공된 최대 대출 금액까지 모든 이익금을 전달한다.

제8.16항. 5조(30385항으로 시작)에는 형법 6권 4조 10부 1장의 내용이 추가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 탄약 판매 업자 면허

30385. (a) 법무부는 본 항의 내용에 따라 탄약 판매 업자 허가에 필요한 발행 권한을 부여받는다. 법무부는 탄약 판매 업자 허가 신청을 받는 2017년 7월 1일 이행 내용을 수행하게 된다. 신청이 거절될 경우, 법무부는 신청자에게 거절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준다.

(b) 탄약 판매 업자 허가는 법무부에 의해 규정된 양식으로 발급되고 이는 1년간 유효하다. 법무부는 신청 및 본 조항 내용의 집행 관리를 위해 규제를 수용하게 된다. 허가는 허가 소지자가 30348항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허가증에 명시된 위치, 총기 박람회나 행사에서 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c) (1) 개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 법무부는 법인에게 허가를 발급하게 되지만 30395항에 따른 배경/경력 확인에 적합한 개인을 요구하게 된다.

(2) 본 조항의 내용과 관련하여, "책임자"는 탄약과 관련하여 법인의 관리, 정책, 관행을 직접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개인을 의미한다.

(d) 2018년 1월 1일 이행, 26700~26915에 따른 총기 중개인 자격에 속함은 2조(30300항으로 시작하는)와 3조(30342항으로 시작하는)의 요구사항과 함께 중개인 규정이 제공된 허가된 탄약 판매 업자로 자동적으로 여겨진다.

30390. (a) 법무부는 탄약 판매 업자 허가 신청자들에게 프로그램의 이행과 탄약 판매 업자 등록 내용의 유지를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추정된 허가 프로그램의 관리 비용을 위한 법무부의 보상에 충분한 합리적인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b) 본 항에 따라 법무부에 의해 수령된 비용은 이곳에서 만들어진 탄약 판매 업자 특별 계좌에 예치된다. 행정법전/정부법13340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금의 수입은 30352항에 따른 본 조항들의 수행, 관리, 집행과 제출된 정보의 수집 및 유지 목적으로 법무부에 의한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충당된다.

(c) 총기 안전 및 수행 특별 기금의 수입 역시 법무부의 상황에 따라 본 조항들의 수행과 집행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30395. (a) 법무부는 30305항의 하부 조항 (a)나 연방 법에 따라 개인이나 책임자로서 탄약의 보유, 수령, 소유가 금지되지 않는다고 법무부가 판단하고 모든 규제나 사업과 관련된 자격증이나 지방 정부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규제나 사업 자격증 사본, 주 평준화 위원회에서 발급한 유효 판매자 허가 그리고 개인이 연합으로 면허를 취득하였을 경우, 연방 총기 면허, 법무부에 의해 발급된 적격 증명서를 제공하는 신청자들에 대한 탄약 판매업자 허가증 발급 권한을 부여받는다.

(b) 법무부는 모든 허가된 탄약 판매 업자들의 등록 내용을 보존한다. 법 집행 기관들은 법 집행 목적으로 등록 내용에 관한 접근이 허가된다.

(c) 탄약 판매 업자 허가는 2조(30300항으로 시작)나 3조(30342항으로 시작)의 모든 금지 및 요구 사항의 위반에 대한 몰수 대상이다.

제9항. 본 법규의 어떠한 내용도 탄약의 판매나 전달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형벌이나 요구사항을 부여하는 지역 법령을 제외하거나 우선하지 않는다.

제10항. 금지된 자로부터의 총기 확보.

제10.1항. 형법의 1524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524. (a) 수색 영장은 다음과 관련하여 발급될 수 있다:

(1) 자산이 도난 당하거나 횡령되었을 때.

(2) 자산이나 사물이 중죄의 수행에 사용되었을 때.

(3) 자산이나 사물이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방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사람의 소유에 있거나 은폐 또는 발견되지 않음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할 때.

(4) 점유될 자산이나 사물이 중죄에 사용될 또는 특정 인물이 중죄를 범하고자 하는 품목으로 구성되거나 증거로 여겨질 때.

(5) 점유될 자산이나 사물이 311.3항을 위반하여 아이들의 성 착취를 보여주는 증거로 구성되거나 물질의 소유가 311.11항을 위반하여 18세 이하의 아이들에 대한 성적 수행을 보여주는 것이 발생되었거나 발생 중일 때.

(6) 개인의 체포 영장이 발급되었을 때.

(7) 전자 통신 서비스나 원거리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가 경범죄를 범하는 자산의 도난이나 횡령을 보여주는 1524.3항에 명시된 기록이나 증거를 가지거나 해당 자산이나 사물이 경범죄에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어느 개인의 소유에 있을 때 혹은 은폐하거나 발견되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다른 자의 소유에 있을 때.

(8) 점유될 자산이나 사물이 노동법 3700.5항의 위반을 보여주는 품목이나 증거를 포함하거나 특정 개인이 노동법 3700.5항을 위반함을 보여줄 때.

(9) 점유될 자산이나 사물이 현장이나 사용 중인 또는 18250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인간 생명의 위협이나 신체적 학대를 포함하는 가정 내 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체포된 개인의 통제를 받고 있는 관할 지역에서 총기나 기타 살상 무기를 포함할 때. 본 조항은 18250항과 관련 없이 무영장체포 압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0) 점유될 자산이나 사물이 복지기관법 8102항의 하부 조항 (a)에 명시된 개인에 의해 소유되거나 보유된 또는 관리되거나 통제된 총기나 기타 살상 무기를 포함할 때.

(11) 점유될 자산이나 사물이 가족법 6389항에 따라 총기 관련 금지 대상인 개인에 의해 소유되거나 보유된 또는 관리되거나 통제된 총기를 포함하고 금지된 총기가 가족법 6218항과 관련하여 보호 명령이 내려진 개인에 의해 보유, 소유, 관리, 통제 되면, 해당 인은 적법하게 해당 명령을 이행해야 하며 법에서 요구하는 데로 총기를 반환하여야 한다.

(12) 추적 장치의 사용으로 수령될 정보가 중죄, 어로 및 사냥 법의 경범죄 위반, 공공자원법의 경범죄 위반이 범해졌거나 범해지고 있음을, 특정 개인이 중죄, 어로 및 사냥 법의 경범죄, 공공자원법의 경범죄를 범함, 중죄, 어로 및 사냥 법의 경범죄 위반, 공공자원법의 경범죄 위반을 범했거나 범하고 있는 개인의 자리 선점에 도움을 주고자 함을 보여주는 증거로 여겨질 때. 본 단락의 내용과 관련하여 발급된 추적 장치 수색 영장이 1534항의 하부 조항 (b)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이행되었을 때.

(13) 개인의 혈액 샘플이 자동차 법규 23140, 23152, 23153항의 위반을 보여주는 증거로 여겨지고 샘플이 채취된 자가 제출에 대한 경찰관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이를 완료하지 못하며 자동차 법규 23612항에 의해 요구되는 혈액 검사와 샘플이 개인으로부터 합리적이고 의료적으로 승인된 방식으로 채취되었을 때. 본 단락은 사례별 수색 영장 발행의 적절성 판단을 위한 법원의 명령을 철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14) 만약 금지된 총기나 탄약 혹은 둘 다가 발행된 총기 폭력 행위금지가처분 대상인 개인에 의해 보유, 소유, 관리, 제어되고 해당 인이 합법적으로 해당 명령을 수행하며 총기를 법에서 요구한대로 양도하지 않았을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점유될 자산이나 사물은 6권 2조 3.2부(18100항으로 시작)에 따라 발행된 총기 폭력 행위금지가처분 대상인 개인에 의해 소유, 보유, 관리, 제어되는 총기나 탄약 혹은 둘 다이다.

(15) 2018년 1월 1일부터, 점유될 자산이나 사물은 29800나 29805항에 따라 총기에 관한 금지 대상인 개인에 의해 소유, 보유, 관리, 제어된 총기를 포함하고 법원은 개인이 법에서 요구한대로 총기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29810항 하부 조항 (c) 단락 (3)에 따라 수색을 진행한다.

(15) (16) 점유될 자산이나 사물이 건강과 안전 법규 11472항에 명시된 권한에 따른 불법적인 사용이나 관리를 위한 제어된 물질이나 장치, 도구, 기구, 용품일 경우.

(16) (17) (A) 다음 사항들이 적용될 경우:

(i) 개인의 혈액 샘플은 항만과 운항에 관한 법률 655항의 하부 조항 (b), (c), (d), (e), (f)의 위반을 보여주는 증거로 여겨질 경우.

(ii) 샘플이 채취된 자는 담당자의 제출 요구를 거절하거나 항만과 운항에 관한 법률 655.1항에 의해 요구되는 혈액 검사 완료에 실패할 경우.

(iii) 샘플은 개인으로부터 합리적이며 의학적으로 승인된 방식으로 채취될 경우.

(B) 본 단락은 사례별 수색 영장 발행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법원의 명령을 철폐 하고자 하지 않는다.

(b) 하부 조항 (a)에 명시된 자산, 사물, 개인, 또는 사람들은 자산이나 사물의 보유에 관해 모든 장소나 사람들로부터 영장을 송달받게 될 것이다.

(c) 하부 조항 (a)나 (b)에도 불구하고, 증거법전 950 항에 의해 규정된 변호사, 증거법전 990항에 의해 규정된 의사, 증거법전 1010항에 의해 규정된 심리 요법 의사, 증거법전 1030항에 의해 규정된 성직자 개인에 의해 보유되거나 제어되는 문서 증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수색 영장도 발급되지 않고 문서 증거와 관련된 범죄 활동에 대해 합리적으로 혐의를 받지 않는 자에게는 다음 과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

(1) 영장 발부 시, 법원은 하부 조항 (d)에 따라 영장발부를 함께하기 위한 특별 고문을 지정한다. 영장 송달과 관련하여, 특별 고문은 특정 품목을 가진 당사자를 알리고 당사자는 요청된 품목을 제공할 기회를 갖게 된다. 특별 고문의 판결에서, 당사자가 요청된 품목의 제공에 실패할 경우, 특별 고문은 수색 영장에 명시된 지역에서 해당 품목들에 대한 수색을 수행한다.

(2) (A) 품목들이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고 당사자가 진술을 하였을 경우, 이것들은 특별 고문에 의해 봉인되고 사실 조사를 위해 법원으로 가져오게 된다.

(B) 사실 조사에서, 수색된 당사자는 법에 명시된 대로 품목들에 대한 특권을 가진다는 청구뿐만 아니라 1538.5 항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을 제기 할 권리를 갖는다. 사실 조사는 상급 법원에서 진행된다. 법원은 당사자들에게 변호인을 선임하고 명령 신청이나 증거 제시에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다. 법원이 사실 조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기 전까지 사실 조사는 영장 송달 3일 이내로 열린다. 이 경우, 사건은 빠르게 마무리 될 수 있다.

(C) 사실 조사를 위해 법원에 물품들이 제출되면, 관련 영장이나 항소 과정을 포함하여 사실 조사의 최종 결론까지 2권 3조 2장(799항으로 시작)에 명시된 압수에 대한 어떠한 시간 제한 사항도 발생하지 않는다.

(3) 언제든지 실행 가능한 영장은 일반 영업 시간에 처리된다. 게다가, 영장은 발견된 품목을 소지하고 제어한 것으로 판명된 당사자에게 발부된다. 합리적인 노력 후, 영장을 송달한 당사자가 당사자를 출석시키지 못할 경우, 특별 고문은 법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간주된 모든 품목들을 법원에 의한 판단을 위해 봉인하고 법원으로 반환한다.

(d) (1) 본 항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특별 고문"은 California 주 법정의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며 본 항에 명시된 수색의 수행을 위해 주 법정에 의해 유지되는 자격을 갖춘 변호인 명부에서 선택된 변호인이다. 이러한 변호인들은 보상 없이 업무를 수행한다. 특별 고문은 공공단체 및 공무원에 대한 청구 및 소송과 관련된 행정법전 / 정부법 1조 3.6부(810항으로 시작하는)의 수행을 위한 공무원, 수색 영장을 처리하는 관영단체에 소속, 특별 고문의 고용자, 공공단체에 준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법원은 특별 고문의 선택에서, 선택된 자가 계류 중인 사건의 당사자와 관련이 없도록 보장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수행한다. 특별 고문에 의해 획득된 정보는 기밀 사항이며 법원에 의한 직접 명령을 제외하고는 공개되지 않는다.

(2) 특별심사관을 구하려는 합리적인 노력을 한 이후에도 특별심사관을 이용할 수 없고 합리적인 기간 안에 이용할 수 없다고 치안 판사가 판단하는 모든 경우, 해당 치안 판사는 이 절에 기술된 방식으로 특별심사관 대신 조사 수행 명령을 찾을 자를 임명할 수 있다.

(e) 특별심사관이 이 절에 따라 실시하는 모든 조사는 영장발부자 또는 그가 지명한 피지명자가 조사 수행 중 특별심사관과 동행하도록 허용하는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다. 단, 그 당사자 또는 피지명자는 영장이 발부된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심사관이 조사하는 항목 일체의 수색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f) 이 절에 사용된 바 "문서 증거"에는 글, 서류, 청사진, 그림, 사진, 컴퓨터 인쇄물, 마이크로필름, X레이, 파일, 도표, 장부, 책, 테이프, 오디오 녹음 및 비디오 녹화, 필름, 모든 종류의 종이 혹은 기술된 종이 등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g) 증거법 1070항에 기술된 모든 항목에는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

(h) 다른 여타의 법에도 불구하고 영장에 따라 압수되어 범죄 또는 사기를 저지르거나 저지를 계획을 가능하게 하거나 도울 목적으로 변호사 서비스를 구하거나 취할 수 없는 문서 증거 관련 공판에서 확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변호사가 영장이 청구된 문서 증거와 관련하여 범죄 행동에 연루되어 있거나 연루된 적이 있다고 생각되는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4편 4권 4장(2018.010 항으로 시작)에 기술된 변호사의 작업 결과물에 대한 권리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i) 이 절의 그 무엇도 검찰 대 항소법원에서 California 대법원의 판결(Laff) (2001) 25 Cal.4th 703에 따른 변호사의 비공개 공판 요청을 제한할 의도는 아니다.

(j) 치안 판사가 다른 카운티의 주민 또는 재산에 영장을 발부하도록 허용하는 다른 경우 외에도 해당 재산이나 압수 물건이 530.5항을 위반하는 경향이 있다는 증거를 구성하거나 그러한 항목으로 구성된 경우, 갈취 또는 사용한 신원 정보의 해당인이 영장 발부 법원과 동일한 카운티에 거주한다면 치안 판사는 다른 카운티에 위치한 사람이나 재산을 수색하도록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k) 이 절은 외국 법인이나 California 법인, 사무실, 직원, 대리인, 기타 장소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명시된 사람에 불리한 소송 사유를 구성하지 않는다.

제10.2항. 형법의 27930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27930. 27545항은 다음에 따라 제작한 화기의 배달, 이동, 반납에 적용하지 않는다.

(a) 18000 및 18005항.

(b) 2권 4부(18250항으로 시작).

(c) 11부 2장(33850항으로 시작).

(d) 34005 및 34010항.

(e) 29810항.

제10.3항. 형법의 29810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29810. (a) 29800항 또는 29805항의 대상이 되는 모든 자에 대하여 법원은 판결이 내려지는 시점에 이장에서 금한 피고에게 모든 화기의 소유, 구입, 취득, 소지, 관리 내지 통제를 금하는 통지를 법무부 제공 서식으로 제공한다. 이 통지는 피고에게 화기 관련 금지 사실을 알리며 화기 이전을 용이하게 하는 형태를 포함한다. 법원 명령에 명시된 날짜에 화기의 소유 또는 소지 금지령이 만료되면 이 양식은 피고가 29830항에 따라 판매 인가받은 화기 딜러에게 화기 이전을 선택할 수 있음을 피고에게 알린다.

(b) 하위절 (a)에 기술한 알림 제공을 실패했다고 해서 이 장의 위반에 대한 답변은 아니다.

(c) 본 항은 2018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폐기한다.

제10.4항. 29810항을 형법에 추가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29810. (a) (1) 29800항 또는 29805항에 해당되는 위반을 저지른 자에게 유죄 선고가 내려지면, 해당인은 자신이 소유, 소지, 관리 또는 통제하는 모든 화기를 이 항에서 제안하는 방식으로 양도한다.

(2) 하위절 (a)에 명시된 범죄에 대하여 피고에게 유죄 선고가 내려지면 법원은 피고가 모든 화기, 탄약, 탄창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탄약 공급장치의 소유, 구입, 취득, 소지, 관리 또는 통제로부터 금지됨을 피고에게 지시하며, 이 항에서 제안하는 방식으로 모든 화기를 양도할 것을 명령한다. 또한 법원은 법무부가 개발한 금지인 양도서를 피고에게 제공한다.

(3) 피고는 금지인 양도서를 이용해 피지명자를 지명하고 피지명자에게 모든 화기를 이전 또는 폐기할 목적의 대리 권한을 승인한다. 피지명자는 지방법 집행기관이거나 아니면 주법 또는 연방법에 의해 화기 처리가 금지되지 않은 인가받은 제삼자로 한다. 피지명자는 하위절 (d)와 (e)에 명시된 기간 이내에 29830항에 따라 화기를 지방법 집행기관의 관리로 양도하거나, 인가받은 화기 딜러에게 화기를 매각하거나, 화기 딜러에게 화기 보관을 이전한다.

(b) 금지인 양도서는 다음의 모든 역할을 수행한다.

(1) 피고가 모든 화기, 탄약, 탄창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탄약 공급장치의 소유, 구입, 취득, 소지, 관리 또는 통제로부터 금지되며, 하위절 (d) 또는 (e)에 정해진 기간 이내에 피지명자를 통해 모든 화기를 29830항에 따라 지방법 집행기관의 관리로 양도하거나, 인가받은 화기 딜러에게 매각하거나, 화기 딜러에게 보관을 이전해야 함을 알린다.

(2) 화기를 소유한 피고의 모든 동거인은 25135항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해당 화기를 보관해야 함을 피고에게 알린다.

(3) 유죄 선고 시점에 피고가 소유, 소지, 관리 또는 통제했던 모든 화기를 피고가 신고할 것을 요구하고, 화기를 기술하면서 피지명자나 법집행관이 화기를 찾을 수 있도록 해당 화기의 위치에 대해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4) 피고가 유죄 선고 시점에 본인이 소유, 소지, 관리 또는 통제하던 모든 화기를 신고한 경우, 피고가 피지명자를 지명하고 모든 화기를 이전 또는 폐기할 목적의 대리 권한을 피지명자에게 승인할 것을 요구한다.

(5) 피지명자가 법집행 기관인 경우를 제외하고 피지명자가 지명 동의를 표현할 것을 요구하고, 위증 형벌 하에 자신이 주법 또는 연방법에서 화기 소지가 금지된 자가 아님을 분명히 말할 것을 요구한다.

(6) 피지명자가 각 화기의 양도 날짜와 양도 대상의 이름을 지명하고, 양도 화기를 소지한 법집행관이나 인가받은 화기 딜러에게 받은 영수증을 첨부할 것을 요구한다.

(7) 피고와 피지명자에게 하위절 (d)와 (e)에 정한 기간 이내에 배정된 보호관찰관에게 금지인 양도서를 작성해 제출할 의무를 알린다.

(c) (1) 피고가 하위절 (a)에 명시된 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으면, 법원은 즉시 이 사안을 보호관찰관에게 배정하여 자동화기 시스템 또는 경찰 보고서 같이 믿을 만한 다른 정보에 피고가 일체의 화기를 소유, 소지, 관리 또는 통제 중임이 드러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한다. 배정된 보호관찰관은 피고로부터, 또는 피고의 피지명자가 있다면 해당인으로부터 금지인 양도서를 받아 피고가 그러한 화기를 양도했음을 표시하도록 자동화기 시스템을 적절하게 갱신한다.

(2) 배정된 보호관찰관은 사건의 최종 처분 또는 선고에 앞서 보호관찰관의 조사에 의해 드러났거나 피고가 금지인 양도서에 신고한 모든 화기를 피고가 양도하고 금지인 양도서를 작성해 기간 이내에 제출함으로써 본 항의 요건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여부를 법원에 보고한다. 또한 보호관찰관은 피고가 어떤 화기를 양도했는지 표시하도록 자동화기 시스템이 갱신되었는지 여부를 법무부가 개발한 양식으로 법무부에 보고한다.

(3) 법원은 사건의 최종 처분 또는 선고에 앞서 보호관찰관의 보고에 피고가 모든 화기를 요건대로 양도했음이 표시되어 있는지, 작성된 금지인 양도서와 더불어 (d)절 (1) 단락 또는 (e)절 (1) 단락에 명시된 영수증을 법원이 수령했는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린다.

법원은 이러한 결론을 반드시 판결요약문에 포함한다. 선고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원은 선고일 14일 이내에 이러한 결과를 작성해 입력할 수 있다.

(4) 법원이 피고가 어떤 화기를 요건대로 양도하지 않았다는 개연성 있는 원인을 발견하는 경우, 법원은 판사의 합당한 근거에 의해 피고의 화기가 위치할 것으로 생각되는 모든 장소에서 일체의 화기를 수색하여 제거하도록 명령한다. 법원은 명령으로 권한이 부여되는 수색 및 압수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5) 피고가 배정된 보호관찰관에게 금지인 양도서를 작성하여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일백 달러(\$1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위반을 구성한다.

(d) (a)절 (1) 단락의 의미 내에서 선고 후 닷새 이내 언제라도 구류되지 않은 금지인에 해당하는 모든 피고에게 다음 절차를 적용한다.

(1) 피지명자는 피고가 소유, 소지, 관리 또는 통제하는 모든 화기를 선고 닷새 이내에 29830항에 따라 법집행기관의 관리로 양도하거나, 인가받은 화기 딜러에게 매각하거나, 화기 딜러에게 보관을 이전함으로써 피고가 원하는 대로 처분한다. 화기 매각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피고의 재산이 된다. 이 하위절에 따라 일체의 화기 소지를 담당하게 되는 법집행관 또는 인가받은 딜러는 양도 시점에 화기에 대해 기술하고 화기의 일련 번호 또는 다른 식별자를 나열한 영수증을 피지명자에게 발급한다.

(2) 피고가 양도할 화기를 소유, 소지, 관리 또는 통제하는 경우, 피고의 피지명자는 (d)절 (1) 단락에 명시된 바 피고의 화기가 지방법 집행기관에 양도되었거나 인가받은 화기 딜러에게 매각 또는 이전되었음을 보여주는 영수증과 함께 금지인 양도서를 작성해 선고 닷새 이내에 배정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한다.

(3) 양도할 화기를 피고가 소유, 소지, 관리 또는 통제하지 않은 경우, 피고는 자신이 양도할 화기가 없음을 단언하는 확인서와 더불어 금지인 양도서를 작성해 선고 닷새 이내에 배정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한다.

(e) (a)절 (1) 단락의 의미 내에서 선고 후 닷새 이내 어느 시점에 구류된 금지인에 해당하는 모든 피고에게 다음 절차를 적용한다.

(1) 피지명자는 피고가 소유, 소지, 관리 또는 통제하는 모든 화기를 선고 14일 이내에 29830항에 따라 법집행기관의 관리로 양도하거나, 인가받은 화기 딜러에게 매각하거나, 화기 딜러에게 보관을 이전함으로써 피고가 원하는 대로 처분한다. 화기 매각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피고의 재산이 된다. 이 하위절에 따라 일체의 화기 소지를 담당하게 되는 법집행관 또는 인가받은 딜러는 양도 시점에 화기에 대해 기술하고 화기의 일련 번호 또는 다른 식별자를 나열한 영수증을 피지명자에게 발급한다.

(2) 피고가 양도할 화기를 소유, 소지, 관리 또는 통제하는 경우, 피고의 피지명자는 (e)절 (1) 단락에 명시된 바 피고의 화기가 지방법 집행기관에 양도되었거나 인가받은 화기 딜러에게 매각 또는 이전되었음을 보여주는 영수증과

함께 금지인 양도서를 작성해 선고 14일 이내에 배정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한다.

(3) 양도할 화기를 피고가 소유, 소지, 관리 또는 통제하지 않은 경우, 피고는 자신이 양도할 화기가 없음을 단언하는 확인서와 더불어 금지인 양도서를 작성해 선고 14일 이내에 배정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한다.

(4) 피고가 선고 후 14일 이내에 구류에서 풀려났는데 위 설명대로 양도해야 하는 각 화기가 아직 피지명자의 임시 소지 상태가 아닌 경우, 피고는 풀려난 지 닷새 이내에 양도해야 할 각 화기를 (d)절 (1) 단락에 따라 양도한다.

(f) 법원은 선의에 따라 하위절 (d)와 (e)에 명시된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c)절 (3) 단락에 명시된 기간을 연장하거나, 대체 양도 방법을 허용할 수 있다.

(g) 요구대로 화기를 양도했다면 피고는 금지인 양도서에 신고한 화기 일체의 불법 소지에 대하여 기소되지 않는다.

(h) 본 항에 따라 피고가 달리 양도해야 하나 피고의 동거인이 불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화기는 동거인이 25135항에 따라 보관해야 함을 피고에게 통지한 경우 양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i) 법집행 기관은 본 조항에 따라 양도된 모든 화기를 자동화기 시스템에 반영하여 갱신해야 한다. 법집행 기관은 본 조항에 따라 화기 양도일로부터 30일 동안 해당 기관에 양도한 화기를 보유한다. 30일 기간 만료 후 해당 기관은 정의 구현을 위해 화기 보유가 필요하거나 합당하다는 기록 법원 판사 혹은 해당 카운티 지방검사의 증명서가 있는 경우, 또는 피고가 하위절 (a)에 설명한 범죄의 유죄 선고에 항소할 의도로 서면 통지를 제공한 경우, 또는 합법적인 소유자가 해당 화기를 분실 혹은 도난당했다고 자동화기 시스템에 표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화기를 파괴, 보유, 매각, 또는 달리 이전한다. 화기가 분실 혹은 도난 신고된 경우 해당 화기는 법집행 기관이 4권 11부 2장(33850항으로 시작)을 준수한 후 합법적 소유자의 화기 식별 및 소유권 증명이 이루어지면 증거로서의 사용이 종료되는 즉시 합법적 소유자가 복구한다. 해당 기관은 34010항에 따라 양도된 화기의 배치를 법무부에 통지한다.

(j) 시, 카운티, 또는 시와 카운티, 주 기관은 33880항에 따라 화기 압수, 몰수, 보관, 방출 관련 행정 비용과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는 규제, 조례, 결의를 채택할 수 있다.

(k) 본 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1항. 화기 절도

제11.1항. 형법의 490.2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a) 487항 또는 중절도에 관한 기타 법률 조항에 관계없이, 재산을 절도한 경우, 금전, 노동, 부동산 또는 개인 자산의 가치가 구백오십 달러(\$95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줌도둑으로 간주하고 경범죄로 처벌하되, 해당 범죄자가 667항 (e)목 (2)항 (C)호 (iv)에 규정된 범행 또는 290항 (c)에 따라 신고를 요하는 범행에서 일범 이상의 전과가 있는 경우, 1170항 (h)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b) 본 항은 기타 법률 조항에 따라 법규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는 절도에는 적용할 수 없다.

(c) 본 항은 화기 절도에 적용하지 않는다.

제11.2항. 형법의 29805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29805. 29855항 또는 29800항 (a)절의 경우를 제외하고 조항 71, 76, 136.1, 136.5, 140, 148항 (d) 절, 171b, 171c항의 (a)절 (1) 단락, 171d, 186.28, 240, 241, 242, 243, 243.4, 244.5, 245, 245.5, 246.3, 247, 273.5, 273.6, 417, 417.6, 422, 626.9, 646.9, 830.95, 1988년 헌법 1386장 3항에 의해 제정되어 1994년 헌법 23장 18절에 의해 폐지된 구 12100항 (a)절의 효력이 미치던 어느 시점, 조항17500, 17510, 25300, 25800, 30315, 32625, 26100항 (b) 또는 (d) 절, 27510항, 또는 복지기관법 조항 8100, 8101, 8103의 경범죄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복지기관법 조항 871.5 및 1001.5에 따른 화기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몰수 재산이 화기인 경우 490.2항, 또는 27590항, (c)절에서 처벌받는 행위를 위반한 경우, 그리고 판결 10년 이내인 자에 대하여 화기 일체를 소유, 구입, 취득, 소유, 관리 또는 통제하는 것은 공공 범죄인 바, 일 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카운티 감옥 혹은 주 감옥에 구금하거나, 일천 달러(\$1,000)를 넘지 않는 벌금에 처하거나, 구금과 벌금 두 가지 방식 모두로 처벌할 수 있다. 법원은 본 조항의 대상이 되는 인명 부서에 법무부에서 규정한 서식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이 조항의 금지는 조항 29855 또는 29860에서 정한 대로 경감, 완화, 조정할 수 있다.

제12항. 잠정 기준

행정절차법(APA)에도 불구하고 공공안전법 2016의 즉시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California 법무부는 APA에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잠정 기준을 채택할 수 있다. 잠정 기준은 2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효력을 유지하며 APA에 따라 채택한 규제 조기에 대체할 수 있다. "잠정 기준"이란 행정절차법 "비상 규제"정부법 2권 3부 1편 (3.5장(11340항으로 시작))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임시 기준으로, 영구 규제에 대한 폭넓은 공공 의견 수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잠정 기준은 180일 대신 2년 동안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제13항. 법안 수정

본 법안은 목적의 이행을 위하여 넓게 해석되어야 한다. 본 법안의 조항은 주의회 각 하원 의원의 투표 55퍼센트로 수정하고 그 수정안이 본 법안의 취지를 발전시키기 위한 목표에 부합하는 한 주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14항. 상충 법안

(a) 화기나 탄창의 판매나 소지 규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동일 문제에 대하여 이 법안과 다른 법안이 동일한 주 전역 투표에 나타나면 다른 법안의 조항이나 그 법안은 본 법안과 상충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본 법안이 상충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법안보다 더 많은 찬성표를 얻을 경우 본 법안의 전체 조항이 우선권을 가지며 다른 법안의 조항들은 무효가 된다.

(b) 본 법안이 유권자에 의해 승인되었지만 법에 따라 동일 선거 투표에서 유권자의 승인을 받은 다른 상충 법안으로 대체되었고 향후 그 상충 투표 법안이 무효화될 경우, 본 법안이 즉시 시행되며 완전한 효력을 발휘한다.

제15항. 분리 가능 조항

본 법안의 조항 또는 본 법안의 일부, 또는 조항이나 일부를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적용 시 어떠한 사유로 무효 상태나 헌법에 위배되는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 나머지 조항, 또는 조항의 적용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완전한 효력을 유지하고 이를 위하여 본 법안의 조항을 분할할 수 있다.

제16항. 지지자 입장

다른 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주나 정부 기관 또는 그 공무원이 이 법의 합헌성 변호에 실패할 경우, 이 법의 합헌성에 도전하는 일체의 법원 조치에 대하여 그 조치가 사실심이든 항소든 California 대법원 혹은 미국 대법원에 의한 재량 심사이든 유권자 승인에 따라 다른 공무원, 지지자, 혹은 이들이 부재할 경우 어느 주민이든 합헌성 변호를 목적으로 개입할 권한이 있다. 해당 조치의 변호에 드는 합리적인 수수료와 비용은 법무부 책정 기금에서 부담하며 즉각 지급한다.

발의안 제 64호

California주 헌법 제II조 8항의 조항에 따라 본 발의안을 주민에게 제출한다.

본 발의안은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식품 및 농업 법(Food and Agricultural Code), 보건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노동법(Labor Code), 수익 및 조세법(Revenue and Taxation Code), 용수법(Water Code)을 수정, 폐지 및 이에 새 조항을 추가한다. 따라서, 삭제될 기존 조항은 취소선 유형으로 인쇄되고 추가될 새 조항은 신설 규정임을 나타내기 위해 *이탤릭체*로 인쇄된다.

제안 법

제1항. 제목.

본 법안은 마리화나 성인 사용의 통제, 규제 및 세금 법(Control, Regulate and Tax Adult Use of Marijuana Act) ("마리화나 성인 사용 법(Adult Use of Marijuana Act)")으로 알려지고 사용될 수 있다.

제2항. 주요 조사 결과 및 공표 사항.

A. 현재 California에서 비의료 마리화나 사용은 규제 없고 세금이 없으며 어떤 소비자 또는 환경 보호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마리화나 성인 사용의 통제, 규제 및 세금 법(Control, Regulate and Tax Adult Use of Marijuana Act)은 21세 이상을 위해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고, 어린이를 보호하며, 마리화나 재배, 유통, 판매 및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법을 확립하고, 캘리포니아 주민들과 환경을 위험 가능성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다. 이 법은 소비자 문제 보호국(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내에 마리화나 통제국

(Bureau of Marijuana Control)을 확립하여 마리화나 산업을 규제하고 면허를 제공한다.

B. 마리화나는 현재 우리 주 내에서 의학적 용도로는 합법적이며 비의학적 용도로는 불법적이다. California에서 의료 마리화나 시스템의 잘못된 사용이 오랫동안 널리 확산되었지만 주지사 Jerry Brown이 서명한 최근의 초당적 법안은 의료 마리화나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확립하고 있다. 마리화나 성인 사용의 통제, 규제 및 세금 법(Control, Regulate and Tax Adult Use of Marijuana Act)(이하 마리화나 성인 사용 법(Adult Use of Marijuana Act))은 비의료적 및 의료적 마리화나에 대한 규제와 과세를 통합 및 간결화하게 된다.

C. 현재, 마리화나 재배 및 판매는 California 주에서 과세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우리 주가 매년 가능한 세수에서 수억 달러를 놓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마리화나 성인 사용 법(Adult Use of Marijuana Act)은 마리화나 재배와 판매에 과세하여 매년 수억 달러를 창출하게 된다. 수익은 새로운 법의 시행 비용에 사용되며 젊은이들의 심각한 약물 남용을 예방 및 치료하도록 교육하는 공중 보건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지역 법 집행기관에서 DUI 집행에 집중하는 새로운 법을 시행하도록 교육하고, 지역사회에서 불법 시장을 줄이고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는데 투자하고, 불법 마리화나 재배로 손상된 공공 부지의 복원과 환경 정화를 위해 제공되는 자금을 제공할 것이다.

D. 현재 18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성인과 같이 암시장에서 마리화나를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마리화나를 합법화함으로써 마리화나 성인 사용 법(Adult Use of Marijuana Act)은 암시장을 무력화하고. 마리화나 구입을 법적 구조로 옮겨 아이들의 접근을 엄격히 금지하게 된다. 마리화나 성인 사용 법(Adult Use of Marijuana Act)은 21세 미만을 대상으로 비의료 마리화나의 판매를 금지하고, 젊은이들의 약물 남용 방지를 교육하고 지방 법 집행기관이 새 법을 시행하도록 교육하도록 새로운 자원을 제공한다. 이것은 마리화나 업체가 학교 및 아이들이 모이는 기타 지역의 반경 600피트 내에 위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것은 마리화나 및 마리화나 제품에 대한 필수적이고 엄격한 포장 및 라벨 표기 요건을 확립한다. 그리고 마리화나 및 마리화나 제품을 어린이 대상으로 광고 또는 마케팅 할 수 없도록 한다.

E. 현재 성인용 마리화나 업체가 기존 California 법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법이 없는 실정이다. 마리화나 성인 사용은 규제가 없는 불법 시장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다. 마리화나 성인 사용 법(Adult Use of Marijuana Act)은 주 수준에서 마리화나 업체를 관리하는 포괄적인 시스템을 세움으로써 지방 정부에서 마리화나 관련 활동을 규제하고 마리화나 업체에 지구 설정 및 허가 요건을 적용하며 마리화나 업체를 인근 주민의 투표로 금지시킬 수 있도록 한다.

F. 현재, 불법 마리화나 재배자들은 수백만 갤론의 물을 아무런 책임도 없이 흠치거나 전용한다. 마리화나 성인 사용 법(Adult Use of Marijuana Act)은 마리화나가 효율적, 합법적으로 재배되도록 하고, 살충제의 사용을

규제하고, 폐수를 방지하며, 물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엄격한 환경 규정을 세우게 된다. 마리화나 성인 사용 법(Adult Use of Marijuana Act)은 불법 물 사용을 단속하고 상습범을 처벌하면서 불법 마리화나 재배로 인해 손상된 대지를 복구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한다. 업체에서 해당 물 사용 및 환경 법을 충분히 준수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면허가 취소될 것이다.

G. 현재, 법원은 비폭력적 약물 범죄 사례로 업무가 마비되어 있다. 마리화나를 합법화함으로써 마리화나 성인 사용 법(Adult Use of Marijuana Act)은 법원에 미치는 압력을 완화하되 검사들이 계속 가장 심각한 마리화나 관련 범죄에 중죄로 벌금을 부과하면서 마리화나 관련 경범죄에 대한 처벌은 법령에 설명한 대로 줄일 수 있도록 한다.

H. 마리화나를 규제된 합법적 시장으로 끌어들이기으로써 마리화나 성인 사용 법(Adult Use of Marijuana Act)은 투명하고 책임 있는 시스템을 구성한다. 이에 따라 현재 폭력적 약물 카르텔과 다국적 갱단의 이익이 되어 마리화나 밀매로 수십억 달러를 벌고 공공 안전을 위협에 빠뜨리는 지하 암시장을 경찰이 진압하는데 도움이 된다.

I. 마리화나 성인 사용 법(Adult Use of Marijuana Act)은 모든 마리화나 업체를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 기관에서 감독하는 포괄적인 규제 구조를 구성한다. 소비자 문제 보호국(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내에 마리화나 통제국(Bureau of Marijuana Control)은 전체 시스템을 감독하고 2018년부터 발행될 라이선스를 이용하여 합법적 시장으로의 매끄러운 전환을 보장한다. 소비자 문제 보호국(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은 마리화나 소매업자, 배급업자 및 소형 업체에 면허 발급 및 감독도 담당하게 된다. 식량농업부는 마리화나 재배에 면허 발급 및 감독을 하여 환경적인 안전을 보증한다. 주 공중 보건부(State Department of Public Health)는 제조와 시험에 면허를 주고 감독하여 소비자가 안전한 제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 된다. 주 조세형평위원회/조세형평국(State Board of Equalization)은 특별 마리화나 세금을 징수하고, 회계감사관은 수익을 할당하여 새로운 법을 시행하고 중요한 투자에 자금을 제공한다.

J. 마리화나 성인 사용 법(Adult Use of Marijuana Act)은 California의 비의료 마리화나 산업에 처음 5년 간 대규모 재배 면허를 금지함으로써 중소기업체를 중심으로 구축되도록 한다. 또한 마리화나 성인 사용 법(Adult Use of Marijuana Act)은 비의료 마리화나 산업에 참여하는 업체에 엄격한 반독점 규제를 부과함으로써 소비자 및 소기업을 보호한다.

제3항. 목적과 취지.

마리화나 성인 사용 법(Adult Use of Marijuana Act)의 목적은 21세 이상 성인이 사용하도록 마리화나 제품을 포함한 비의료 마리화나의 재배, 가공, 제조, 유통, 시험 및 판매를 합법화, 통제 및 규제하는 포괄적인 시스템을 확립하고, 마리화나의 판매용 재배 및 소매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 법령을 시행하는 사람들의 의도는 다음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a) 비의료 마리화나 생산과 판매를 불법 시장에서 이끌어내서 미성년자의 접근을 방지하고 공공 안전, 공중 보건 및 환경을 보호하는 규제 구조로 가져온다.

(b) 주 면허 교부, 규제 및 법 집행 시스템을 통해 비의료 마리화나의 재배, 가공, 제조, 유통, 시험 및 판매를 엄격히 통제한다.

(c) 지방 정부에서 비의료 마리화나 업체에 대한 주 법과 규정을 시행하고 비의료 마리화나 업체에 대한 별도의 지역 요건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되, 비의료 마리화나 업체에서 주 면허를 발급받아 주 법에 따라 합법화되도록 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d) 지방 정부에서 이 법에 설명한 대로 비의료 마리화나 업체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e) 추적 관리 절차로 비의료 마리화나를 재배부터 판매까지 추적하도록 한다.

(f) 비의료 마리화나를 독립적 시험 서비스로 포괄적으로 시험하여 곰팡이와 살충제 등 오염물이 있는지 검사한 후에 면허 있는 업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g) 면허 있는 업체에서 판매한 비의료 마리화나를 어린이 보호 용기에 포장 및 라벨 표기하도록 요구하여 소비자들이 비의료 마리화나의 흡입에 따른 영향과 효과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h) 면허 받은 비의료 마리화나 업체들이 면허 유지 요건으로서 엄격한 환경 및 제품 안전 표준을 따를 수 있도록 요구한다.

(i) 술이나 담배도 판매하는 업체에서의 비의료 마리화나 판매를 금지한다.

(j) 21세 미만에게 또는 어린이들이 있는 다른 장소에서 비의료 마리화나의 마케팅 및 광고를 금지한다.

(k) 2018년 1월 1일까지 환자들이 2015년 주지사가 법에 서명한 엄격한 표준에 부합하는 의사의 새로운 권고를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이 법에 설명한 대로 의료용 마리화나 ID 카드를 받은 환자를 위한 새로운 프라이버시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주의 기존 의료 마리화나 시스템을 강화한다.

(l) 21세 이상 성인이 비의료 마리화나를 사용, 소유, 구입하고 이 법에 설명한 대로 21세 이상 성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한계 내에서 재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m) 지방 정부가 지구 설정 및 기타 지역 법을 통해 21세 이상 성인의 개인적 사용을 위해 비의료 마리화나의 재배를 정당하게 규제하고 이 법에 설명한 대로 야외 재배만 금지하도록 한다.

(n) 의료 마리화나 환자가 아닌 21세 미만에게는 마리화나 이용을 금지한다.

(o) K-12 학교 근처 및 어린이들이 있는 기타 구역 등 사용 면허가 없는 공공 장소에서 그러한 용도의 마리화나 소비를 금지한다.

(p) 기존 법을 유지하여 마리화나로 손상된 상태에서 운송용 자동차 또는 기타 차량의 운영을 불법으로 한다.

(q) 공공 부지에서 마리화나의 재배 또는 사유지 침입을 금지한다.

(r) 공공 또는 민간 고용주들이 마리화나에 관련된 작업장 방침을 제정 및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s) 마리화나 불법 시장을 퇴출하고 미성년자의 사용 및 성인의 남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마리화나의 재배와 판매에 과세한다.

(t) 환경 복원 및 정화, 청소년 치료 및 예방, 지역사회 투자 및 법 집행을 위해 매년 새로운 주 수익에서 수익 달러를 배정한다.

(u) 마리화나의 불법 생산 또는 유통을 방지한다.

(v) California에서 다른 주 또는 국가 또는 불법 시장으로의 마리화나 불법 전용을 방지한다.

(w) 폭력 범죄를 방지 및 기소할 수 있도록 부족한 법 집행 자원을 보존한다.

(x) 규제된 법적 시장으로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

(y) 마리화나 관련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들이 약물 예방 교육 또는 상담 및 커뮤니티 서비스를 받도록 한다.

(z) 현재 개인이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한 법에 의해 형벌을 줄이기 위해 현재 범죄에 대한 선고를 받는 사람을 재선고하고, 이 법에서 설명한 대로 형량을 마친 사람의 형사 기록에서 그러한 범죄를 재지정하거나 삭제하도록 법원에 권한을 부여한다.

(aa) 산업용 대마를 농업 제품으로, 그리고 농업 또는 학업 연구를 위해 재배시키고 더 높은 델타-9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농도로 카나비스 줄기와 별도로 규제하여 재배할 수 있다.

제4항. 개인적 용도.

제4.1항. 보건안전법의 11018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1018. 마리화나.

"마리화나"는 성장 여부에 관계없이, 대마의 모든 부분과 씨앗, 본 식물의 일부로부터 추출된 수지, 모든 화합물, 제조, 소금, 파생물, 혼합물, 또는 본 식물, 식물의 씨앗이나 수지의 준비를 의미한다. 식물의 성숙한 줄기, 줄기에서 생성된 섬유, 식물의 씨에서 만들어진 덩어리, 성숙한 줄기의 기타화합물, 제조물, 소금, 파생물, 혼합물, 준비물 (추출된 수지 제외), 발아 불가능한 식물의 섬유, 오일, 덩어리 또는 살균 씨앗을 포함하지 않는다:

(a) 제11018.5항에서 정의한 산업용 대마; 또는

(b) 국소 또는 경구 투여, 식품, 음료 또는 기타 제품을 준비하기 위해 마리화나와 결합된 기타 성분의 중량.

제4.2항. 11018.1항을 보건안전법에 추가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018.1. 마리화나 제품.

"마리화나 제품"은 농축된 대마초 또는 마리화나나 농축된 대마초 및 기타 성분을 포함한 식용 또는 국소 제품 등(이에 국한되지는 않음)의 농축액으로 식물 재료가 변환된 과정을 거친 마리화나를 의미한다.

제4.3항, 11018.2항을 보건안전법에 추가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018.2. 마리화나 부대용품.

"마리화나 부대용품"은 마리화나를 심거나, 번식시키거나, 경작하거나, 재배하거나, 수확하거나, 제조하거나, 배합하거나, 변환하거나, 생산하거나, 가공하거나, 준비하거나, 시험하거나, 분석하거나, 포장하거나, 재포장하거나, 저장하거나, 흡연하거나, 증기를 피우거나 포함하거나, 마리화나 또는 마리화나 제품을 섭취, 흡입 또는 인체에 도입하는데 사용되거나 그 용도로 설계된 모든 종류의 장비, 제품 또는 재료를 의미한다.

제=4.4항. 11362.1항을 보건안전법에 추가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362.1. (a) 다른 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제11362.2, 11362.3, 11362.4, 및 11362.45항을 조건으로 하여 주와 지방 법에 따라 합법적이어야 하며, 21세 이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함으로써 주 또는 지방 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1) 농축된 대마초의 형태가 아닌 28.5g 이하의 마리화나를 어떤 보상도 없이 소유, 가공, 운송, 구입, 확보 또는 21세 이상자에게 제공한다.

(2) 마리화나 제품에 포함된 것 등 농축된 대마초 형태로 8g 이하의 마리화나를 어떤 보상도 없이 소유, 가공, 운송, 구입, 확보 또는 21세 이상자에게 제공한다.

(3) 6개 이하의 살아있는 마리화나 식물을 소유하거나 심거나, 재배, 수확, 건조 또는 가공하고 식물에서 생산된 마리화나를 소유한다.

(4) 마리화나 또는 마리화나 제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다.

(5) 마리화나 부대용품을 어떤 형태든 보상 없이 소유, 운반, 구입, 확보, 사용, 제조 또는 21세 이상자에게 제공한다.

(b) 하위 분류 (a)의 (5)항은 주 법에 따라 본 조항을 준수하여 마리화나 부대용품을 제조, 소유 또는 유통하는 모든 사람을 승인하여 United States Code (21 U.S.C. 863(f) 항의 제21조 863항 의 부속조항(f)의 요건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c) 이 조항에 의해 어떻게든 행동이 합법적으로 간주되는 마리화나와 마리화나 제품은 밀수품이 아니고 압수되지 않으며 이 조항에 의해 합법적으로 간주되는 어떤 행위도 구금, 수색 또는 체포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제4.5항. 11362.2항을 보건안전법에 추가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362.2. (a) 11362.1항의 하위 분류 (a)의 (3)항에 따라 마리화나의 개인적 재배는 다음과 같은 제약을 따른다.

(1) 하위 조항 (b)에 따라 채택된 지방 조례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식물을 심고 경작하며 수확, 건조 또는 가공해야 한다.

(2) 살아있는 식물과 28.5g이 넘는 식물에서 생산된 모든 마리화나는 개인 주택 내에 두거나 이 개인 주택의 대지(예: 옥외 정원)에 잠가둔 장소에 두며 공공 장소에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도록 한다.

(3) 살아있는 식물은 6개 이하만 한 곳의 개인 주택 또는 개인 주택의 대지에 한번만 심고 재배, 수확, 건조 또는 가공할 수 있다.

(b) (1) 도시, 카운티, 또는 도시와 카운티는 11362.1항의 하위 분류 (a)의 (3)항에서 행동과 행위를 정당하게 규제하기 위해 합리적인 규제를 제정 및 집행할 수 있다.

(2) (1)항에도 불구하고 어떤 도시, 카운티, 또는 도시 및 카운티도 개인이 주택 또는 완전히 밀폐되어 안전한 개인 주택의 부지에 위치한 개인 주택의 부대 구조물 내에서 11362.1항의 하위 분류 (a)의 (3)항에 따라 행동 및 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

(3) 11362.1항의 하위 분류 (a)의 (3)항에도 불구하고, 도시, 카운티 또는 도시 및 카운티에서는 개인 주택의 대지에서 야외에 11362.1항의 하위 분류 (a)의 (3)항에 따라 행동 및 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완전히 금지할 수 있다.

(4) California 주 검찰총장이 마리화나의 비의료 사용은 연방법 하에서 California 주에 합법적이라고 판단하면 (3)항은 무효로 간주되며, (3)항에서 도시, 카운티, 또는 도시 및 카운티에서 취하는 조치는 검찰총장의 판단일로부터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5) 이 조항의 목적에 따라 "개인 주택"은 집, 아파트, 이동식 주택 또는 기타 유사한 주거를 의미한다.

제4.6항. 11362.3항을 보건안전법에 추가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362.3. (a) 11362.1항의 어떤 것도 누구든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1)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의 26200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공공 장소에서도 마리화나 또는 마리화나 제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다.

(2) 담배 흡연이 금지된 곳에서 마리화나 또는 마리화나 제품을 흡연한다.

(3) 학교, 데이케어 센터 또는 청소년 센터 반경 1,000 ft 내에서 어린이들이 이곳에 있는 동안 마리화나 또는 마리화나 제품을 흡연한다. 하지만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의 26200항 또는 분류 8의 (19300항으로 시작하는) 3.5장에 따라 개인 주택인 경우에 그러한 흡연이 학교, 데이케어 센터 또는 청소년 센터에서 아이들이 있는 동안 타인이 감지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4) 자동차, 보트, 배, 항공기 또는 운송에 사용되는 기타 차량을 운전, 작동 또는 좌석에 탄 상태로 마리화나 또는 마리화나 제품의 열린 용기나 뜯어진 포장물 소유한다.

(5) 학교, 데이케어 센터 또는 청소년 센터 부지에서 아이들이 있는 동안 마리화나 또는 마리화나 제품을 소유하거나 흡연하거나 섭취한다.

(6)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의 분류 8의 (19300항으로 시작하는) 3.5장 또는 분류 10의 면허에 따르지 않고 휘발성 용제를 이용하여 농축된 대마초를 제조한다.

(7) 자동차, 보트, 배, 항공기 또는 운송에 사용되는 기타 차량을 운전, 작동 또는 좌석에 탄 상태로 마리화나 또는 마리화나 제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다.

(8)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의 26200항에 따라 21세 미만인 자가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 보트, 배, 항공기 또는 운송에 사용되는 기타 차량에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차, 보트, 배, 항공기 또는 운송에 사용되는 기타 차량을 운전, 작동 또는 탑승한 상태로 마리화나 또는 마리화나 제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다.

(b) 이 항의 목적에 따라 "데이케어 센터"는 1596.76항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c) 이 항의 목적에 따라 "흡연"은 천연 또는 합성인든 어떤 방식 또는 어떤 형태로든 불을 붙이거나 가열된 기기 또는 파이프, 혹은 불을 붙이거나 가열된 마리화나 또는 흡입용 마리화나 제품을 들이마시거나 내뿜거나 연소시키거나 운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흡연"은 어떤 형태 또는 형식으로든 에어로졸 또는 증기를 생성하는 전자 흡연 기기의 사용, 또는 어떤 장소에서 금연을 피하기 위한 목적의 경구 흡연 기기의 사용을 포함한다.

(d) 이 조항의 목적에 따라 "휘발성 용제"는 다음을 포함한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의미한다. 부탄, 프로판, 크실렌, 스티렌, 가솔린, 등유, O₂ 또는 H₂ 등의 (1) 폭발성 가스 및 메탄올, 이소프로필 알코올, 염화 메틸렌, 아세톤, 벤젠, 톨루엔, 및 트리클로로에틸렌 등의 (2) 위험한 독, 독소, 또는 발암물질.

(e) 이 조항의 목적에 따라 "청소년 센터"는 11353.1항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f) 이 조항의 어떤 것도 1996년 Compassionate Use Act에 관련된 법을 수정, 취소, 영향, 제한 또는 선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제4.7항. 11362.4항을 보건안전법에 추가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362.4. (a) 11362.3항의 하위 분류(a)의 (1)항에 설명한 행위에 참여한 사람은 1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위반 죄가 되지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그 대신 4시간의 약물 교육 프로그램 또는 상담을 받고 일단 약물 교육 프로그램 또는 상담 및 커뮤니티 서비스 기회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60일 이하의 기간 동안 최대 10시간의 봉사를 해야 한다.

(b) 11362.3항의 하위 분류(a)의 (2)-(4)항에 설명한 행위에 참여한 사람은 25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위반 죄가 되지만 그러한 활동이 주 또는 지방 법에서 허용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다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그 대신 4시간의 약물 교육 프로그램 또는 상담을 받고 일단 약물 교육 프로그램 또는 상담 및 커뮤니티 서비스 기회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최대 20시간의 봉사를 해야 한다.

(c) 11362.3항의 하위 분류(a)의 (5)항에 설명한 행위에 참여한 사람은 11357항의 하위 분류(c) 또는 (d)에서 설명한 대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d) 11362.3항의 하위 분류(a)의 (6)항에 설명한 행위에 참여한 사람은 11379.6항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

(e) 11362.2항의 하위 분류(a) 제약을 위반한 사람은 25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위반 죄가 된다.

(f) 하위 분류 (e)에도 불구하고 11362.2항의 하위 분류 (a)에서의 제약을 위반한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11358항의 하위 분류 (a)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

(g) (1) 이 조항에서 요구하는 약물 교육 프로그램 또는 상담 시간은 법원에서 그러한 프로그램 또는 상담이 이 사람에게 불필요하다거나 약물 교육 프로그램 또는 상담을 이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지 않는 한 필수적이어야 한다.

(2)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하여 이 조항에서 요구하는 약물 교육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하며 마리화나 및 기타 통제된 약물의 사용 또는 남용에 대한 과학 및 증거 기반 원칙 및 기준을 바탕으로 4시간 이상의 그룹 토론 또는 교습을 제공해야 한다.

(h) 법원에서는 원인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해당자가 약물 교육 또는 상담, 그리고 이 조항에서 요구하는 지역사회 봉사를 이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8항. 11362.45항을 보건안전법에 추가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362.45. 11362.1항의 어떤 것도 다음을 수정, 취소, 영향, 제한 또는 선제하도록 해석할 수 없다.

(a) 자동차 규약(Vehicle Code) 23152항의 하위분류 (e)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는 마리화나 또는 마리화나 제품 흡연, 섭취 또는 이로 인한 악화 상태에서 자동차, 보트, 배 또는 항공기를 운전하거나 작동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 또는 이 법의 위반 시 처하는 벌금.

(b) 마리화나, 마리화나 제품 또는 마리화나 부대용품의 판매, 투여, 비치, 또는 제공, 혹은 21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마리화나, 마리화나 제품 또는 마리화나 부대용품의 판매, 투여, 비치, 또는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c) 11362.1항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행동이나 행위에 21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d) 교정 및 재활부(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Rehabilitation) 또는 Division of Juvenile Justice의 관할

하에서 어떤 시설 또는 기관의 부지 또는 내부에서든, 또는 처벌 규약(Penal Code) 4573항에 참조된 다른 모든 시설 또는 기관의 부지 또는 내부에서든 마리화나 또는 마리화나 제품의 흡연 또는 섭취에 관련된 법.

(e) 마리화나 또는 마리화나 제품의 흡연 또는 섭취로 손상된 상태에서 어떤 작업이든 행하는 태만 또는 직업적 배임행위를 구성하는 법.

(f) 공공 및 민간 고용주들이 약물 및 알코올이 없는 작업장을 유지하거나 고용주가 작업장에서 마리화나의 사용, 소비, 소유, 전달, 전시, 운송, 판매 또는 재배를 허가 또는 수용하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주가 직원 및 예비 직원의 마리화나 사용을 금지하는 방침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영향을 미치거나 고용주가 주 또는 연방 법을 준수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

(g)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에서 11362.1항에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에서 소유, 임대 또는 점유한 건물 내에서 특정 행동 또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약하는 능력.

(h) 개인 또는 민간 실체가 11362.1항에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 또는 실체의 민간 소유 부동산에서 특정 행동 또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약하는 능력.

(i) 1996년 동정적 사용 법안(Compassionate Use Act)에 관련된 법.

제5절. 의료용 대마초 사용.

제5.1절. 11362.712절을 보건안전법에 추가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362.712. (a) 2018년 1월 1일부로, 유자격 환자는 사업 및 직업법 제2부의 제5장 제25조항(제2525절 위시)에 따라 의사의 추천서를 소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제11362.5절에 따라 환자 또는 환자의 주 간병인에게 제공되는 모든 보호 조치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b) 카운티 보건부 또는 카운티가 지정한 부서는 2018년 1월 1일부로 제11362.71절에 따라 모든 신분 확인 카드가 사업 및 직업법 제2부 제5장 제25조항(제2525절 위시)을 준수하는 의사의 추천서를 통해 지원되도록 해야 한다.

제5.2절. 11362.713절을 보건안전법에 추가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362.713. (a) 주 공중 보건부의 기록에, 그리고 모든 카운티 공중 보건부에 의해 인정돼 포함된 환자의 이름, 주소 또는 사회보장번호, 환자의 의료 상태 또는 환자의 주 간병인 이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의료 정보 기밀법(민법 제1부 제2.6편(제56절 위시))의 의미 내에서 "의료 정보"로 간주하며 의료 정보 기밀법에 따라 개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공개에 대한 규제 사항을 준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서 또는 어떤 카운티 보건부도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b) 주 공중 보건부 또는 카운티 공중 보건 기관은 환자의 이름, 주소 또는 사회보장번호, 환자의 의료 상태 또는 환자의 주 간병인 이름 공개를 요청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환자에게 연락해 요청 사실을 알리고 요청이 서면으로 이루어진 경우 요청서 사본을 환자에게 제공한다.

(c) 민법 제56.10절에도 불구하고 주 공중 보건부든 카운티 공중 보건 기관이든 기록 공개 요청을 받은 환자와 연락한 후 10일 이내에 환자의 이름, 주소 또는 사회보장번호, 환자의 의료 상태 또는 환자의 주 간병인 이름 공개를 요청할 수 없으며 기관 또는 법원은 해당 부서에 이 정보 공개를 명령할 수 없다.

(d) 제11362.71절에 규정된 바와 같이 주 공중 보건부 또는 카운티 공중 보건부 또는 카운티가 지정한 부서가 사용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신분증 신청 또는 데이터베이스에는 유자격 환자의 개인 정보가 포함될 수 없다. 이 정보에는 환자의 이름, 주소, 사회보장번호, 의료 상태 또는 환자의 주 간병인 이름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러한 신청 시스템 또는 데이터베이스에는 사용자 고유 식별 번호만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번호 입력 시 제공되는 유일한 정보는 카드 유효성 여부이다.

제5.3절. 보건안전법의 제11362.755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1362.755. (a) 부서는 신분증을 획득 또는 갱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 개시 비용, 세부 항목 (b)에 따라 Medi-Cal 수익자를 위해 경감된 수수료 비용, 비용 효율적인 인터넷 웹 기반 시스템 확인 및 개발 비용 및 24시간 무료 전화번호 유지 비용 등 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신청 및 갱신 비용을 설정한다. 각 카운티 공중 보건부 또는 카운티가 지정한 부서는 본 조항에 따라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해 카운티 또는 카운티가 지정한 부서에서 발생하는 모든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b) 카운티 공중 보건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청 또는 갱신 한 건에 대해 백달러(\$100)를 초과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b) (c) Medi-Cal 프로그램 수익자는 참여 및 유자격을 증명하는 증거 제출 시 본 절에 따라 설정된 수수료 비용 중 50퍼센트를 경감받는다.

(d) 의료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궁핍한 유자격 환자 또는 18세 미만 유자격 환자의 법적 후견인이 카운티 의료 서비스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경우 본 절에 따라 설정된 수수료가 면제된다.

(e) 카운티 공중 보건부가 부과하여 수집한 수수료가 의무 신원 확인 카드 시스템에 대한 카운티 보건부의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발생한 관리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입법부는 카운티 공중 보건부가 부과하여 수집한 비용에서 초과된 합당한 관리 비용을 카운티 보건부에 변제한다.

제5.4절. 제11362.84절을 보건안전법에 추가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362.84. 온정적 사용법에 따라 행동하는 유자격 환자의 상태 또는 행동은 그 자체로 가정 또는 소년 법원 관할에 의거하여 그 어떤 조치나 소송에서도 미성년자에 대한 양육권 또는 친권을 제한하거나 축소하지 않는다.

제5.5절. 제11362.85절을 보건안전법에 추가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362.85. 연방 규제 약물 리스트에서 대마초를 재분류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California 주 검찰총장의 결정에 따라 의회는 보건안전법의 해당 조항을 수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주법을 연방법 내 해당 변경 사항에 맞게 수정할 수 있다.

제6절. 대마초 규제 및 안전.

제6.1절. 제10부(제26000절 위시)가 사업 및 직업법에 추가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부. 대마초

제1장. 일반 조항 및 정의

26000. (a) 본 부의 목적 및 의도는 21세 이상 성인에 대한 비의료용 대마초 및 대마초 제품의 재배, 유통, 운송, 보관, 제조 및 절차를 관리하고 규제하는 종합 시스템을 설정하는 것이다.

(b) 세부 항목 (a)를 촉진하기 위해, 본 부는 제8부 제3.5장 (제19300절 위시)에 따라 의료용 대마초 산업을 관리 및 규제에 책임이 있는 기존 주 당국의 권한 및 의무를 상업용 비의료 대마초 산업을 관리 및 규제하는 권한과 의무를 포함하는 범위로 확장한다.

(c) 의회는 그러한 법이 대마초 성인 사용 관리, 규제 및 과세법의 목적 및 의도에 부합하는 경우 다수표에 따라 본 부를 시행하는 법을 제정한다.

26001. 본 부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 "지원자"는 다음을 뜻한다.

(1) 제안된 면허를 받은 사람의 소유주(들). "소유자"는 (A) 자본 총계(담보권, 선취 특권 또는 저당권 제외)가 면허를 받은 사람의 20퍼센트 이상이며 (B) 면허를 관리 또는 통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지시를 받을 권한을 지닌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2) 지원자가 주식공개회사인 경우 "소유자"는 최고 경영자 및 이사회의 모든 회원 및 회사 자본 총계의 20 퍼센트를 소유한 개인 또는 실체를 포함한다. 지원자가 비영리 실체인 경우 "소유자"는 최고 경영자 및 이사회의 모든 회원을 모두 뜻한다.

(b) "사무국"은 소비자 문제 부서 내 대마초 통제국을 뜻한다.

(c) "어린이에게 안전함"은 설계 및 구조가 다섯 살 이하의 어린이가 여는 것은 매우 어렵고 일반 성인이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을 뜻한다.

(d) "상업적인 대마초 행위"에는 본 부에 규정된 바와 같이 대마초 및 대마초 제품을 재배, 소유, 제조, 유통, 처리,

보관, 실험실 테스트, 라벨 부착, 운송, 유통, 배달 또는 판매하는 것이 포함된다.

(e) "재배"는 대마초 식재, 재배, 수확, 건조, 양생, 등급화, 다듬기를 포함하는 모든 행위를 뜻한다.

(f) "고객"은 21세 이상의 자연인을 뜻한다.

(g) "어린이집"은 보건안전법 제1596.76절에 규정된 의미와 동일하다.

(h) "배달"은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을 소비자에게 상업적으로 운송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소매상 또는 본 부에 따라 독립적으로 면허를 받은 사람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기술 플랫폼을 소매상이 사용하여, 고객이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을 취급하는 면허를 받은 소매상을 통해 상업적으로 운송하도록 준비하거나 이를 쉽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i) "국장"은 소비자 문제 부서의 국장을 뜻한다.

(j) "유통"은 본 부에 의거 면허를 받은 실체 간에 이루어지는 대마초 및 대마초 제품의 조달, 판매 및 운송을 뜻한다.

(k) "기금"은 제26210절에 따라 설립된 대마초 관리 기금을 뜻한다.

(l) "종류"는 특정 대마초 변종 또는 대마초 제품 유형에 관한 해당 유형 또는 명칭을 뜻하며 여기에는 계통 이름 또는 기타 재배자 상표 또는 재배 지역 명칭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m) "면허"는 본 부에 따라 발행된 주의 면허를 뜻한다.

(n) "면허를 받은 사람"은 본 부에 따라 면허를 소지한 개인 또는 실체를 뜻한다.

(o) "허가 당국"은 면허 발행, 갱신 또는 회복을 맡고 있는 주 기관 또는 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받은 주 기관을 뜻한다.

(p) "지방 관할"은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를 뜻한다.

(q) "제조"는 대마초 제품을 합성, 혼합, 추출, 주입 또는 기타 제작 또는 준비하는 행위를 뜻한다.

(r) "제조자"는 본 부에 따라 주 허가를 보유한 자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또는 추출 방법으로 또는 화학적 합성으로만 또는 추출 및 화학적 합성 수단을 조합하여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을 생산, 준비, 번식 또는 합성하고 정해진 장소에서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을 포장 또는 재포장하거나 제품 용기에 라벨 부착 또는 재부착 하는 사람을 뜻한다.

(s) "대마초"는 보건안전법 제11018절에서와 같은 의미를 지니지만 제8부 제3.5장(제19300절 위시)에 따라 의학적 목적으로 재배, 가공, 운송, 유통 또는 판매되는 대마초는 제외한다.

(t) "대마초 부속품"은 보건안전법 제11018.2절의 의미와 같다.

(u) "대마초 제품"은 보건안전법 제11018.1절에서와 같은 의미를 지니지만 제8부 제3.5장(제19300절 위시)에 따라

의학적 목적으로 제조, 가공, 운송, 유통 또는 판매되는 대마초 제품은 제외한다.

(v) "재배장"은 대마초 식재, 번식 및 재배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복제 식물, 미성숙 식물, 씨앗 및 기타 농업 제품을 생산하도록 허가 받은 곳을 뜻한다.

(w) "운영"은 본 부의 조항에 따라 면허 교부가 필요한 모든 행위 또는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을 상업적으로 운송하는 모든 행위를 뜻한다.

(x) "포장"은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을 담는 데 사용하는 모든 용기 또는 통을 뜻한다.

(y) "사람"에는 모든 개인, 회사, 조합, 합작회사, 협회, 법인, 유한책임회사, 재산, 신탁, 사업 신탁, 취득인, 신디케이트 또는 단체 및 개인 또는 복수로 활동하는 모든 그룹 또는 조합이 포함된다.

(z) "구매자"는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 획득을 목적으로 면허를 받은 사람과 거래에 참여하는 고객을 뜻한다.

(aa) "판매하다", "판매" 및 "판매하는"에는 이것에 의한 모든 거래, 즉 어떠한 보수로든 대마초의 법적 소유권이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 이동하는 것이 포함되며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 구매를 위해 이루어진 주문 또는 이 제품을 위한 주문 요청 또는 수락에 따라 해당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을 배달하는 것이 포함되지만 면허를 받은 사람이 그러한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을 구매한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반환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bb) "테스트 서비스"는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에 대한 테스트를 제공하거나 수행하는 주 내 연구소, 시설 또는 실체를 뜻하며 여기에는 이러한 연구소, 시설 또는 실체가 제공하는 장비가 포함되고 다음 둘에 모두 해당하는 곳을 뜻한다.

(1) 주 내 상업적 대마초 활동과 관련된 기타 모든 사람과 독립된 승인 주체에 의해 승인된 곳.

(2) 주 공중보건부에 등록된 곳.

(cc) "고유 식별자"는 면허를 받은 부지 내 특정 식물을 참조하는 데 사용되는 글자 및 숫자로 이루어진 코드 또는 명칭을 뜻한다.

(dd) "비합리적으로 실행 불가능함"은 규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에 매우 높은 투자 위험, 금전, 시간 또는 기타 자원 또는 자산이 들고 합리적이고 신중한 사업인이 대마초 설립 운영을 실제로 수행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상태를 뜻한다.

(ee) "청년 센터"는 보건안전법 제11353.1절의 의미와 같다.

제2장. 행정

26010. (a) 제19302절에서 확립한 의료 대마초 규제국은 여기서 대마초 통제국으로 다시 명명한다. 국장은 제8부 제3.5장(제19300절 위시)의 조항 외에 본 부의 조항을 관리하고 집행한다. 국장은 본 부의 목적을

위해 제19302.1절의 세부 항목 (b) 및 (c)에서 규정한 바와 동일한 권한 및 권위를 갖는다.

(b) 국 및 국장은 제8부 제3.5장(제19300절 위시)에 따라 의로 대마초 규제국에 부여된 모든 의무, 권한, 목적, 책임 및 관할을 계승하며 이 사항이 부여된다.

(c) 세부 항목 (b)에서 언급된 권한, 의무, 목적, 책임 및 관할 외에 국은 지금까지 본 부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상업용 대마초 활동을 규제하는 의무, 목적, 책임 및 관할을 보유한다.

(d) 본 절 발효일자 이후 "의료 대마초 규제국"이 법령, 규제 또는 계약 또는 기타 모든 규약에 표시되는 경우 이는 언제나 해당 국을 언급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26011. 제26040절에 따라 설립된 대마초 통제 항소 패널 국장 또는 회원 누구도 다음과 같은 일을 하지 않는다.

(a) 본 부 또는 제8부 제3.5장(제19300절 위시)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신청하거나 받는 사람에게서 직접적으로는 간접적으로는 어떠한 수수료나 이익을 받지 않는다.

(b) 판매 또는 면허를 받은 사람의 사업 또는 부지를 보상하는 보험에 관여하거나 이해 관계를 갖지 않는다.

(c) 상업용 대마초 활동에 연관되어 있는 면허를 받은 사람의 부지에서 사용을 위한 장비 판매에 관여하거나 이해 관계를 갖지 않는다.

(d) 이익을 위한 표 판매 또는 이익을 위한 기부금을 목적으로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고의로 청탁하지 않는다.

(e)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든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금전 또는 가치가 있는 어떠한 것도 기부하거나 받도록 고의로 요청하지 않는다.

26012. (a) 이는 다음과 같이 본 부에서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 전역의 관심사이다.

(1) 소비자 문제 부서는 면허를 작성, 발행, 갱신하고 주 내 대마초 제조 활동, 유통 및 판매와 관련이 없는 운송, 보관에 대해 면허를 징계, 일시 정지 또는 취소할 독점 권한을 갖는다.

(2) 식량농업부는 대마초 재배와 관련되고 이와 연결된 본 부의 조항을 관리한다. 식량농업부는 재배 면허를 작성, 발행하고 본 부 위반 시 이를 일시 정지 또는 취소할 권한을 갖는다.

(3) 주 공중보건부는 대마초 제조 및 테스트와 관련되고 이와 연결된 본 부의 조항을 관리한다. 주 공중보건부는 제조 및 테스트 면허를 작성, 발행하고 본 부 위반 시 이를 일시 정지 또는 취소할 권한을 갖는다.

(b) 허가 당국 및 국은 대마초 관련 규제 활동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할 권한을 갖는다. 국은 본 부에 따라 국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간주하는 본 부에서 파악된 면허 외에 면허를 추가로 작성할 수 있다.

(c) 허가 당국은 본 부에 따라 2018년 1월 1일까지 면허 발행을 시작한다.

26013. (a) 허가 당국은 정부법 제2조 제3부제1편제3.5장(제11340절 위시)에 의거 본 부에 따라 각 의무를 이행, 관리 및 실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합리적인 규칙 및 규정을 만들고 작성한다. 그러한 규칙 및 규정은 대마초 성인 사용 관리, 규제 및 과세법의 목적 및 의도에 부합하도록 한다.

(b) 허가 당국은 본 부에 따라 각 의무를 이행, 관리 및 실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비상 규정을 작성, 채택 및 실행할 수 있다. 본 부에 따라 작성, 채택 또는 실행된 비상 규정은 정부법 제2조 제3부 제1편 제3.5장(제11340절 위시)에 따라 채택되며 정부법 제11349.6절 포함 해당 장의 목적을 위해 공공 평화, 건강 및 안전 및 공공 복지를 즉시 보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규정 채택은 비상이며 행정법 사무소에 의해 비상으로 간주한다.

(c) 본 부에 따라 발행된 규정은 이용 가능한 최상의 증거를 근거로 본 부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며 상업적으로 실현 가능한 절차, 기술 또는 기타 요건에 한해 권한을 부여하고 동일한 실질적 요건을 달성하기 위한 대체 절차 또는 기술 개발을 비합리적으로 억제하거나 금지하지 않고 그러한 규정으로 인해 규정을 준수하는 일이 비합리적으로 실현 불가능해지지 않는다.

26014. (a) 국은 공중 보건 및 안전을 보호하는 모범 사례 지침 등 본 부에 따른 기준 및 규정 개발에 대해 국 및 허가 당국에 자문을 주는 자문 위원회를 소집해 그러한 비합리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장애물을 부과하지 않는 상업용 대마초 활동을 위한 규제된 환경이 불법 대마초 시장을 감소 및 제거하는 것을 넘어 영속되도록 한다.

(b) 자문 위원회 회원은 대마초 업계 대표, 노동 기구 대표, 적절한 주 및 지방 기관, 공중 보건 전문가 및 알코올성 물질 성인 사용을 위한 상업 활동 규제를 전문으로 하는 알코올 음료 통제부 대표 등 기타 다른 주제 전문가를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자문 위원회 위원은 국장이 정한다.

(c) 2019년 1월 1일부터 자문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례 공공 보고서를 발행한다. 보고서 내용에는 직전 역년 동안 자문 위원회가 국 및 허가 당국에 제공한 권고 사항 및 국 또는 허가 당국의 해당 권고 사항 이행 여부가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6015. 허가 당국은 본 부에 따라 의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그러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26016. 제4장(제26040절 위시)에 따라 열리는 청문회를 제외한 본 부에 따라 열리는 모든 청문회에서 허가 당국은 행정법 판사의 판결을 듣고 결정할 권한이 있는 대표단을 뽑을 수 있다. 행정법 판사 앞에서 열리는 모든 청문회는 정부법 제2조 제3부 제1편 제5장(제11500절 위시)에 설명된 절차, 규칙 및 제한 사항을 따른다.

26017. 본 부에 따라 허가 당국 앞에서 열리는 모든 청문회에서 허가 당국은 소환장에 따라 허가 당국의 요청으로 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에게 증인의 실제적이고 필수적이며 합리적인 여비, 식비 및 숙박비를 주 직원이 허가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지불할 수 있다.

26018. 허가 당국은 형량 사정이 시행되기 전 언제라도, 그리고 향후 소송 없이 직접 발의로 형량을 검토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검토는 형량의 경감에만 국한된다.

제3장. 집행

26030. 징계 조치의 사유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본 부의 조항 또는 본 부에 따라 채택된 규칙 또는 규정 미준수.

(b) 제1.5부 제3장(제490절 위시)에 따라 면허 교부 거부의 사유를 구성하는 행위.

(c) 본 부에 따라 허가 당국이 채택한 규정에 포함되는 기타 모든 사유.

(d) 본 부 또는 기타 California 법에 규정된 조항을 제외한 수익 및 과세법에서 요구하는 세금 납부를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 주 법 미준수.

(e) 면허를 받은 사람의 직원에게 근로자 보호 또는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모든 법, 조례 또는 규제를 고의로 위반하는 행위.

(f) 상업적 대마초 활동을 규제하는 지방 조례 요건 미준수.

(g) 면허를 받은 사람이 법적 연령 미만의 사람에게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을 구매 또는 소지하도록 이를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판매하는 행위.

26031. 각 허가 당국은 면허를 받은 사람이 징계 조치 사유를 구성하는 행위 또는 부작위를 행했다고 판명된 경우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적절한 공지를 주고 청문회를 연 후 면허를 일시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본 장에 따라 징계 소송은 정부법 제2조 제3부 제1편 제5장(제11500절 위시)에 따라 이루어지며 각 허가 당국의 국장은 조항 내 부여된 모든 권한을 갖는다.

26032. 각 허가 당국은 면허를 받은 사람의 대리인 또는 직원이 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신해 또는 상업적 대마초 활동에 참여하는 중에 본 부를 위반한 경우 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해 징계 조치를 내릴 수 있다.

26033.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시 허가 당국은 이를 국에 알린다. 국은 이를 모든 허가 당국에 알린다.

26034. 본 부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기소는 제19314절에 명시된 대로 또는 법에 규정된 대로 동일한 시한 내에 이루어진다.

26035. 국장은 본 부의 관리 및 집행 목적을 위해 소비자 문제 부서에서 고용한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국장은 본 부의 집행 목적을 위해 직원 중 충분한 수가 유자격 보안관이 되도록 한다.

26036. 본 부의 어떠한 것도 주 기관이 기존 집행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대체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기존 집행 권한에는 어로 및 사냥법, 식량농업법, 정부법, 보건안전법, 공공자원법, 수자원법 또는 해당 법의 적용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6037. (a) (1) 본 부 및 기타 해당 지방 조례에 따라 발행된 면허에서 허가하고 (2) 본 부 및 본 부에 따라 채택된 규제에 따라 이루어진 면허를 받은 사람, 그 직원 및 그 대리인의 행동은 주 법에 의거 불법이 아니며 체포, 기소 또는 기타 주 법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 또는 민사 벌금 또는 주 법에 따른 자산의 압수 또는 몰수의 대상이 아니다.

(b) 어떤 사람이 면허를 받은 사람, 그 직원 및 그 대리인이 주 허가 및 기타 해당 지방 조례에 따라 허가된 대로 자신의 재산을 사용하도록 선의로 허가한 행동은 주 법에 의거 불법이 아니며 체포, 기소 또는 기타 주 법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 또는 민사 벌금 또는 주 법에 따른 자산의 압수 또는 몰수의 대상이 아니다.

26038. (a) 어떤 사람이 본 부에서 요구하는 면허 없이 상업적 대마초 활동에 참여한 경우 위반 시마다 면허 수수료 금액의 최대 세 배에 해당하는 민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법원은 보건안전법 제11479절에 따라 해당 위반과 관련된 대마초를 파기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운영을 한 날마다 본 절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본 절에 따라 허가 당국이 부과하고 징수하는 모든 민사 벌금은 세부 항목 (b)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기금에 예치한다.

(b) 본 부에 따라 검찰총장이 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해 사람들을 대표해 민사 벌금 조치를 취한 경우 징수된 벌금은 일반 기금으로 예치된다. 지방검사 또는 카운티 변호사가 해당 조치를 취한 경우 벌금은 먼저 민사 벌금 조치를 취한 비용에 대해 지방검사 또는 카운티 변호사에게 변제하는 데 사용되고 남은 벌금이 있는 경우 일반 기금으로 예치한다. 시 법무관 또는 시 검사가 해당 조치를 취한 경우 벌금은 먼저 민사 벌금 조치를 취한 비용에 대해 시 법무관 또는 시 검사에게 변제하는 데 사용되고 남은 벌금이 있는 경우 일반 기금으로 예치한다.

(c) 세부 항목 (a)에도 불구하고 형사 벌금은 본 부를 위반한 상업적 대마초 활동에 연루된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계속 적용된다.

제4장. 항소

26040. (a) 주지사가 임명하고 선출된 모든 상원의원이 다수결 투표로 확정된 3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진 주 정부 대마초 관리 항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각 위원은 처음 임명 시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위원회 위원은 행정법전의 제2조 제3부의 제1편 제6장(11550 항을 위시하여)에 의거하여 연봉을 지급받는다.

(b) 직무를 유기하거나, 부정을 저지르거나,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위원회 위원은 주지사 사무실에서 해고될 수 있으며, 주의회는 모든 상하원 의원의 다수결 투표를 통해 그러한 위원을 사무실에서 내보낼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c) 위원회 위원 해고에 대한 병행 결의는 5명의 상원 의원 또는 10명의 하원 의원이 입안자로 참여할 경우에만 주의회에서 채택할 수 있다.

26041. 모든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가 주 공무원 요건에 따라 임명, 고용, 지시 및 관리한다. 의장은 허가된 위원회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장비, 소모품 및 숙소를 제공하고, 위원회와 합의한 방법대로 행정을 수행한다.

26042. 위원회는 사업 및 전문직업 법의 제9부 제1.5 장 제3조(23075항을 위시하여) 및 제4조(23080항을 위시하여)에 명시된 절차와 유사한 항소 절차를 채택한다. 그러한 절차는 행정절차법(행정법전 제2조 제3부 제1편의 제6장(11340항을 위시하여))에 따라 채택해야 한다.

26043. (a) 누군가 사무국 또는 면허국이 내린 벌금 사정, 이 법안에 따라 부여된 면허의 발급, 거부, 이전, 조정, 유예 또는 취소 명령 결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그러한 결정에 항소할 경우, 위원회는 주의회에서 도입한 제한에 따라 그러한 결정을 심사해야 한다. 그러한 경우 위원회는 사무국 또는 면허국에서 고려하는 증거뿐 아니라 그 외의 증거도 받지 않는다.

(b) 사무국 또는 면허국의 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사안으로만 제한된다.

(1) 사무국 또는 면허국이 관할권 없이 또는 관할권을 넘어서 절차를 진행했는지 여부

(2) 사무국 또는 면허국이 법률에 규정된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했는지 여부

(3) 조사 결과에 입각해 결정을 내렸는지 여부

(4) 전체 기록을 고려하여 그러한 조사 결과를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증거를 확보했는지 여부

26044. (a) 항소 시 위원회가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 사무국 또는 면허국 앞에서 진행된 심리에서 제시하지 못했거나 부당하게 배제된 관련 증거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사안을 사무국 또는 면허국에 돌려보내 그러한 증거를 고려하여 재심사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b) 위원회는 부조항 (a),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항소에서 사무국 또는 면허국의 결정을 확정하거나 뒤집을 것을 명령한다. 사무국 또는 면허국의 결정을 뒤집으라는 명령을 내린 경우 위원회는 그러한 명령에 따라 사안을 재심사하도록 지시하고 사무국 또는 면허국에 법에서 특별히 명령한 추가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수 있지만 그러한 명령이 어떤 식으로든 법에서 사무국 또는 면허국에 부여한 재량권을 제한하거나 통제해서는 안 된다.

26045. 사무국, 면허국 또는 그러한 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청원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명령은 민사소송절차법 1094.5항에 따라 사법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5장. 면허

26050. (a) 이 법안에 의거한 면허 분류는 최소한 다음과 같다.

(1) 유형 1 - 전문 재배, 실외, 소규모

(2) 유형 1A - 전문 재배, 실내, 소규모

(3) 유형 1B - 전문 재배, 혼합광, 소규모

(4) 유형 2 - 재배, 실외, 소규모

(5) 유형 2A - 재배, 실내, 소규모

(6) 유형 2B - 재배, 혼합광, 소규모

(7) 유형 3 - 재배, 실외, 중간 규모

(8) 유형 3A - 재배, 실내, 중간 규모

(9) 유형 3B - 재배, 혼합광, 중간 규모

(10) 유형 4 - 재배, 묘목장

(11) 유형 5 - 재배, 실외, 대규모

(12) 유형 5A - 재배, 실내, 대규모

(13) 유형 5B - 재배, 혼합광, 대규모

(14) 유형 6 - 제조업자 1

(15) 유형 7 - 제조업자 2

(16) 유형 8 - 테스트

(17) 유형 10 - 소매점

(18) 유형 11 - 판매 대리점

(19) 유형 12 - 소상공인

(b) 이 법안에 따라 발급된 모든 면허에는 해당 면허가 제 8부의 제3.5장(19300항을 위시하여)에 의거하여 허가된 상업적인 의료용 대마초 활동과 다른 상업적 대마초 활동을 위한 것임을 나타내는 분명한 표시가 있어야 한다. 그러한 표시에는 "유형 1 - 비의료용" 또는 "유형 1NM"(단, 이에 국한되지 않음) 등이 포함된다.

(c) 이 법안에 의거하여 발급된 면허는 발급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유효하다. 면허는 매년 갱신할 수 있다.

(d) 각 면허국은 면허 발급 및 갱신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e) 부조항 (c)에도 불구하고 면허국은 12개월 미만의 임시 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이 부조항은 2019년 1월 1일에 효력이 중단된다.

26051. (a) 면허국은 이 법안에 의거하여 부여된 면허를 승인, 거부 또는 갱신할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 면허의 발급, 거부 또는 갱신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포함해(단, 이에 국한되지 않음) 그러한 결정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요인을 고려한다.

(1) 불법적인 독점력을 창출하거나 유지하여 비합리적인 경쟁 제한을 허용함

(2) 주 안 또는 밖에서 불법적인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 시장의 존재를 영속화함

(3) 미성년자 또는 성인의 대마초 사용 또는 주 밖에서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의 불법적인 전환을 권장함

(4) 면허를 받은 사람들이 지정된 시, 카운티 또는 둘 다에 과도하게 집중됨

(5) 미성년자들이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에 지나치게 노출될 위험이 있음

(6) 환경보호법 위반을 야기함

(b) 면허국은 부조항 (a)에 따라 면허 또는 면허의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c) 이 조항에서 "과도한 집중"은 소매 면허, 소상공인 면허 또는 26070.5항에 의거해 발급된 면허의 지역이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위치한 경우를 의미한다.

(1) 인구 조사 표준 지역의 인구 또는 신청자 거주 지역에 위치한 인구조사국에 등록된 인구 대비 면허를 받은 사람의 비율이 신청자 거주 지역에 위치한 카운티의 인구 대비 면허를 받은 사람의 비율을 초과한다. 단, 그러한 신청의 거부가 합법적인 시장의 발전을 지나치게 제한해 불법적인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 시장을 영속화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2) 인구 조사 표준 지역, 인구조사국 또는 관할권의 인구 대비 소매 면허, 소상공인 면허 또는 26070.5항에 의거한 면허의 비율이 26200항에 따라 채택된 지역 조례에서 허용하는 수준을 초과한다.

26052. (a) 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거나 면허를 받은 사람의 직원, 대리인 또는 계약자가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1) 16600항을 위반하여 거래를 제한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2) 16720항을 위반하여 거래를 제한하는 트러스트 또는 기타 금지된 조직을 결성한다.

(3)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격을 담합하거나, 소비자 또는 구매자가 경쟁업체 또는 판매자의 경쟁업체의 상품, 제품, 기계, 소모품, 물자 또는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거래하지 않는다는 조건, 합의 또는 양해를 기반으로 가격을 할인하거나 리베이트를 제공하며, 그러한 판매, 계약, 조건, 합의 또는 양해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효과가 있거나 업종 또는 거래 분야에서 독점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4) 경쟁업체에게 타격을 주거나, 경쟁을 저해하거나, 구매자 또는 잠재적인 구매자를 오도 또는 현혹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가 이하로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을 판매한다.

(5) 경쟁업체에 타격을 주거나 경쟁을 저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구역, 커뮤니티, 시 또는 시 일부 지역 또는 그러한 구역, 커뮤니티, 시 또는 시 일부 지역의 한 위치에서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을 다른 지역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 또는 공급하여 구역, 커뮤니티, 시 또는 시 일부 지역 또는 이 주의 그러한 구역, 커뮤니티, 시 또는 시 일부 지역의 여러 위치를 차별한다.

(6) 경쟁업체에 타격을 주거나 경쟁을 저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한 공급업체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을 판매하거나 물품 또는 제품을 할값으로 제공한다.

(b) 회사 또는 기업의 이사, 임원 또는 대리인 또는 특정인의 대리인으로서 이 장의 조항을 위반하거나, 그러한 위반을

직간접적으로 보조 또는 지원하는 개인은 그러한 개인이 대리하는 개인, 회사 또는 기업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c) 면허국은 해당 규정에 따라 이 조항을 집행할 수 있다.

(d) 개인 또는 무역협회는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이 조항의 위반을 금지 및 제한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6053. (a) 사무국 및 면허국은 제8부의 제3.5장 (19300항을 위시하여)에 의거하여 면허를 소지한 개인 또는 실체에게 이 법안에 따른 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b) 부조항 (a)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 또는 제8부의 제 3.5장(19300항을 위시하여)에 의거하여 주 시험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실체는 이 법안에서 권한을 부여한 시험을 제외하고 다른 활동을 위해 면허를 교부받을 수 없다.

(c) 부조항 (b)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 또는 하나의 실체가 이 법안에 따라 둘 이상의 면허를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26054. (a) 면허를 받은 사람이 또한 제9부(23000항을 위시하여)에 명시된 알코올성 음료 또는 담배 제품의 소매업자로 면허를 받을 수 없다.

(b) 면허국 또는 지역 관할권에서 달리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안에 명시된 면허를 받은 사람이 면허가 발급된 당시에 존재하는 유치원생 또는 1~12학년생을 가르치는 학교, 어린이집 또는 청소년회관에서 반경 600피트 이내에 위치하지 않는다. 이 조항에 지정된 거리는 법에서 달리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건안전법 11362.768항의 부조항 (c)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측정한다.

(c) 대마초 액세서리 제조업체와 관련된 기업이 그러한 대마초 액세서리와 관련된 조사 및 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소량의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을 소지, 운반, 구매 또는 입수하는 것은 이 법안 또는 제8부의 제3.5항 (19300항을 위시하여)에 의거해 그러한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을 제공 또는 공급하도록 허가된 개인 또는 실체로부터 그러한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을 입수한 경우 주 및 지방 법률에 따라 합법적이며 주 또는 지방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

26054.1. (a) 면허국은 2015년 1월 1일 이전 또는 이후부터 California에 계속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면허를 발급하거나 그러한 사람의 면허를 갱신해서는 안 된다. 신청자 또는 면허를 받은 사람이 실체인 경우 실체를 관리하는 개인이 2015년 1월 1일 이전 및 이후부터 California에 계속 거주했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해당 실체는 거주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b) 부조항 (a)는 2019년 12월 31일에 효력이 중지됩니다 (단, 주의회에서 이 날짜 이전에 다시 제정한 경우는 제외).

26054.2. (a) 면허국은 면허국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2016년 9월 1일 이전에 특별사용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사업을 운영했거나 현재 제8부의 제3.5장(19300항을 위시하여)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신청자에게 이 법안에 의거한 면허를 우선적으로 발급한다.

(b) 사무국이 지역 관할권에 이전에 지역 관할권에서 특별사용법과 그 시행령을 포함한 주 법률 및 적용 가능한 지방 법률을 준수하여 사업을 운영한 잠재적인 면허 교부 신청자를 파악해 달라고 요청한다. 사무국이 요청받은 정보를 면허 당국에 제공한다.

(c) 신청자는 부조항 (b)에 설명된 정보 외에 또는 그러한 정보 대신에 특별사용법 또는 제8부의 제3.5장(19300 항을 위시하여)에 따라 사업을 운영했음을 입증하는 기타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사무국과 면허국은 부조항 (a)에 명시된 우선권을 적용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러한 정보를 수락할 수 있다.

(d) 이 조항은 법률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2019년 12월 31일에 효력이 정지된다.

26055. (a) 면허국은 유자격 신청자에게만 주 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b) 이 법안에 의거하여 발급된 주 면허를 취소할 경우 면허를 받은 사람은 면허국에서 주 면허를 복권 또는 재발급할 때까지 California 내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c) 면허를 받은 사람이 둘 이상의 위치에서 거주할 경우 법률 또는 규정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각의 지역에 대해 별도의 면허가 발급된다.

(d) 면허가 발급 또는 이전된 후에는 면허를 받은 사람은 면허국 또는 사무국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 지역의 용도, 해당 지역에서 수행하는 사업 운영의 특성 또는 방식이 신청 파일의 도표에 포함된 계획과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방식으로 지역을 변경하거나 번복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에서 의미하는 지역 또는 지역의 용도의 실질적인 물리적 변경에는 이전에 도표로 작성한 면허 지역 총 면적의 실질적인 증가 또는 감소나 사업 운영 방식 또는 특성의 실질적인 변경으로 이어지는 기타 물리적인 수정이 포함된다(단, 이에 국한되지 않음).

(e) 면허국은 주 면허의 승인이 지방 조례 또는 26200항에 의거하여 채택된 규정의 조항에 위배될 경우 이 법안에 따른 주 면허의 신청을 승인하지 않는다.

26056. 이 법안에 의거하여 발급되는 모든 유형의 주 면허에 대한 신청은 법률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지문 이미지 전자 제출을 포함해(단, 이에 국한되지 않음) 19322항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요건과 법률 또는 면허국에서 지정한 기타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a) 19322항의 부조항 (a) (2)절에도 불구하고 신청자는 사업을 운영하려는 지방 관할권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면허,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다는 증빙 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b) 이 법안에 따른 면허를 신청하려면 제안된 지역이 26054항의 부조항 (b)의 제한을 충족한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c) 비의료용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을 재배, 유통 또는 제조할 수 있는 면허를 교부받으려는 신청자는 신청 시 면허국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음의 모든 항목에 대한 신청자의 운영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제출해야 한다.

(1) 재배

(2) 추출 및 침출 방법

(3) 운송 절차

(4) 재고 관리 절차

(5) 품질 관리 절차

(6) 신청자가 면허를 받은 활동에 사용할 급수원(신청자가 주 법률에 따라 그러한 급수원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인증 포함)

(d) 신청자는 면허 특권을 행사할 제안된 지역에 대해 특히 해당 지역의 범위를 파악하기에 '충분'하며 모든 경계, 치수, 입구 및 출구, 내부 칸막이, 벽, 방, 공동 또는 공유 입구를 보여주는 자세하고 완전한 도표와 그러한 장소에서 수행할 주요 활동에 대한 간략한 진술 또는 설명을 제출한다. 재배를 허용하는 면허의 경우 별도의 재배지의 총 제곱피트 및 개별 제곱피트를 포함한 계획된 캐노피의 치수를 제출해야 한다.

26056.5. 사무국은 주 환경의 질에 관한 법(공공자원법의 제13부(21000항을 위시하여)), California 주 멸종위기종 보호법(어로 및 사냥법의 제3부 제1.5장(2050항을 위시하여)), 호수 또는 하상 변경 협정(어로 및 사냥법의 제2부 제6 장(1600항을 위시하여)), 청정수 조처 (33 U.S.C. 1251항 이하 참조), Porter-Cologne 수질관리법(수도법의 제7부(13000 항을 위시하여)), 목재 생산 구역, 폐수 배출 요건, 유수 전환에 필요한 허가 또는 권한을 포함하여(단, 이에 국한되지 않음) 환경 영향, 자연 자원 보호, 수질, 급수, 유해 물질과 관련된 주 법률 및 규정 준수와 규정에 따른 살충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각 면허국이 시행할 규약을 제정한다.

26057. (a) 면허국은 신청자 또는 주 면허가 적용될 지역이 이 법안에 따른 면허 교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신청을 거부한다.

(b) 면허국은 다음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 주 면허의 교부 또는 갱신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이 법안의 조항 또는 이 법안에 의거하여 채택된 규칙이나 규정 또는 하천 흐름 또는 수질 보호를 포함한(단, 이에 국한되지 않음) 자연 자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 이 조항과 26059항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1.5부의 제2장(480항을 위시하여)에 따른 면허 교부의 거부 사유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면허국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4) 신청자 또는 면허를 받은 사람이 신청 대상 사업 또는 전문직업의 자격, 기능 또는 의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경우. 단, 면허국에서 그러한

신청자 또는 면허를 받은 사람이 면허를 발급받기에 적합하며 면허 부여가 공공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범죄, 선고, 상황, 신청자의 재할 증거를 철저히 심사하고 심사를 통해 알아낸 증거를 기반으로 신청자 또는 면허를 받은 사람의 면허 발급 적합성을 평가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면허국은 범죄가 신청 대상 사업 또는 전문직업의 자격, 기능 또는 의무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다음(단,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포함해야 한다.

(A) 형법 667.5항의 부조항 (c)에 명시된 폭력적 중죄 선고
(B) 형법 1192.7항의 부조항 (c)에 명시된 중대한 중죄 선고

(C) 사기, 기만 또는 횡령을 포함한 중죄 선고

(D) 규제 약물 운송, 운반, 판매, 경품 증정, 판매 준비에 미성년자를 채용, 고용 또는 이용하거나, 미성년자에게 규제 약물을 팔러 다니거나, 미성년자에게 규제 약물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하거나, 공급하거나, 공급을 제안하거나, 투여하거나, 제공한 범죄에 대한 중죄 선고

(E) 11370.4항 또는 11379.8항에 의거한 처벌 강화에 따른 마약 밀매 중죄 선고

(5) 부조항 (D)와 (4)절의 (E)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또한 제1.5부의 제2장(480항을 위시하여)에도 불구하고 규제 약물의 소지, 판매를 위한 소지, 제조, 운송 또는 재배로 인해 보호관찰 처분 징역 또는 감독조건부 석방을 포함해 선고를 받은 전과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간주되지 않으며 면허 거부의 유일한 근거가 아닌 경우. 면허 교부 이후에 받은 규제 약물에 대한 중죄 선고는 면허 취소 또는 면허 갱신 거부의 근거가 된다.

(6)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임원, 이사 또는 소유자가 공유지 또는 사유지에서 규제 약물을 재배 또는 생산하여 어로 및 사냥법의 12025항 또는 12025.1항에 의거해 벌금 또는 처벌을 받은 경우

(7)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임원, 이사 또는 소유자가 허가받지 않은 상업적 대마초 활동 또는 상업적 의료 대마초 활동으로 인해 면허국 또는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의 제재를 받았거나,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로부터 직전 삼년 내에 이 법안 또는 제8부의 제3.5장(19300항을 위시하여)에 의거해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어로 및 사냥법의 12025항 또는 12025.1항에 의거해 제재를 받은 경우

(8) 수익 및 과세법의 제2부 제1편(6001항을 위시하여)에서 요구하는 유효한 판매자 허가를 획득하고 유지하지 못한 경우

(9) 법률에 규정된 기타 조건

26058. 면허 신청이 거부된 경우 면허국에서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

26059. 거부의 유일한 사유가 다음 중 하나일 경우 신청자의 주 면허가 거부되지 않는다.

(a) 형법의 제3편 제6조 제3.5장(4852.01항을 위시하여)에 의거하여 신청자 또는 면허를 받은 사람이 재할 증거를 받은 신청 대상 사업 또는 전문직업의 자격, 기능 또는 의무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선고 또는 양형

(b) 형법의 1203.4항, 1203.4a 또는 1203.41에 의거하여 이후에 기각된 선고

제6장. 면허를 받은 재배지

26060. (a) 실내, 실외 및 혼합광 재배지를 관할하는 식량농업부에서 공포한 규정이 이 법안에 의거해 면허를 받은 재배자에게 적용된다.

(b) 살충제 규제부에서 식량농업부와 협의하여 개발한 재배 시 살충제 사용에 대한 표준과 수확한 대마초에 남아 있는 살충제 및 기타 이물질에 대한 최대 허용 기준이 이 법안에 의거해 면허를 받은 재배자에게 적용된다.

(c) 식량농업부는 어류 및 야생동물관리국과 주 수도자원 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각 면허에 재배와 관련된 유수 전환 및 배출의 개별 및 누적 효과가 어류 산란, 이동 및 양식과 자연적인 유량 변동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유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어류, 야생자원, 어류 및 야생자원 서식지, 수질을 보호해야 한다는 조건을 포함한다.

(d) 식량농업부에서 이 법안에 의거하여 공포한 규정에 적어도 상업적 대마초 활동과 관련해서 19332항의 부조항 (e)에 설명된 것과 동일한 사안이 명시되어야 한다.

(e) 살충제 규제부는 주 수도자원 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대마초 실내, 실외 또는 혼합광 재배와 관련된 살충제 적용 기타 해충 구제가 식량농업법의 제6부(11401항을 위시하여)와 그 시행 규정에 상응하는 표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규정을 공포한다.

26061. (a) 식량농업부에서 이 법안에 의거하여발급하는 주 재배자 면허 유형에는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유형 1, 유형 1A, 유형 1B, 유형 2, 유형 2A, 유형 2B, 유형 3, 유형 3A, 유형 3B, 유형 4, 유형 5, 유형 5A, 유형 5B가 포함된다.

(b)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유형 1, 유형 1A, 유형 1B, 유형 2, 유형 2A, 유형 2B, 유형 3, 유형 3A, 유형 3B 및 유형 4 면허는 19332항의 부조항 (g)에 지정된 의료용 대마초 재배에 상응하는 면허 유형과 동일한 양의 대마초 재배에 발급된다.

(c)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 유형 5 또는 "실외"는 한 지역의 총 캐노피 크기를 포함해 일 에이커가 넘는 면적에서 인공 조명을 사용하지 않는 실외 재배를 의미한다.

(2) 유형 5A 또는 "실내"는 한 지역의 총 캐노피 크기를 포함해 22,000평방 피트가 넘는 면적에서 인공 조명만 사용하는 실내 재배를 의미한다.

(3) 유형 5B 또는 "혼합광"은 한 지역의 총 캐노피 크기를 포함해 22,000평방 피트가 넘는 면적에서 면허국에서

지정한 최대 임계값 범위 내에서 자연광과 인공 보조광 조합을 사용하는 재배를 의미한다.

(d) 유형 5, 유형 5A 또는 유형 5B 재배 면허는 2023년 1월 1일 이전에는 발급되지 않을 수 있다.

(e) 2023년 1월 1일부터 유형 5, 유형 5A 또는 유형 5B 면허를 받은 사람은 유형 6 또는 유형 7 면허를 신청해서 보유하고 유형 10 면허를 신청해서 보유할 수 있다. 유형 5, 유형 5A 또는 유형 5B 면허를 받은 사람은 유형 8, 유형 11 또는 유형 12 면허를 신청하거나 보유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26062. 식량농업부는 사무국과 협의하여 19332.5항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대마초 및 대마초 제품에 대한 공인된 유기농 인증 및 유기농 인증 프로그램을 확립한다.

26063. (a) 사무국은 California의 특정 지역에서 재배된 대마초에 적용될 수 있는 특정 원산지 명칭 인정에 대한 표준을 수립한다.

(b) California 카운티에서 재배되지 않은 대마초는 California 카운티에서 재배된 대마초로 홍보하거나, 라벨을 부착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

(c) 제품에 포함된 대마초가 California 카운티에서 재배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마초 제품의 라벨, 마케팅 또는 포장에 California 카운티라는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6064. 면허를 받은 각 재배자는 면허를 받은 지역에 지나친 화재 또는 연소 위험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각 재배자는 재산 등에 대한 지나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조명, 배선, 전기 및 기계 장치 또는 기타 관련 재산이 세심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26065. 이 법안에 의거한 대마초 재배에 관여하는 직원은 산업복지위원회의 임금 명령 4-2001의 적용을 받는다.

26066. 이 법안에 의거해 면허를 받은 개인 및 실체의 실내 및 실외 대마초 재배는 개간, 땅 고르기, 전기 사용, 물 사용, 수질, 삼림지대 및 수변 서식지 보호, 농업 배출 및 유사한 사안과 관련된 주 및 지방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주정부 산림소방국, 어류 및 야생동물관리국, 주 수도자원 관리위원회, California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 주 법 집행 기관을 포함한 주 당국(단, 이에 국한되지 않음)은 대마초 재배의 환경 영향을 해결하고 필요한 경우 시 및 카운티 및 해당 법 집행 기관과 시행 노력을 조정한다.

26067. (a) 식량농업부는 식량농업부 장관이 운영하는 대마초 재배 프로그램을 확립한다. 장관은 이 조항이 대마초 재배와 관련이 있으므로 이 조항을 집행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대마초는 농산물에 해당된다.

(b) 개인 또는 실체는 이 조항에 의거해 부서에서 발급하는 주 면허를 먼저 획득하지 않으면 대마초를 재배할 수 없다.

(c) (1) 부서는 사무국, 주 수도자원 관리위원회, 어류 및 야생동물관리국(단, 이에 국한되지 않음)과 협의하여 대마초에 대한 고유 식별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이

프로그램 시행 시 부서는 물 사용 및 환경 영향(단,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포함한 쟁점을 고려해야 한다. 프로그램 시행 시 부서는 다음을 확인해야 한다.

(A) 재배와 관련된 우수 전환 및 배출의 개별 및 누적 효과가 어류 산란, 이동 및 양식에 필요한 하천 흐름과 자연적인 유량 변동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우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유역이 추가 재배를 지원하지 못할 경우 해당 유역에 새로운 식물 식별자가 발급되지 않는다.

(B) 재배가 샘물, 수변 습지 및 수생 서식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부서는 재배 기간 동안 재배지에서 허가된 대마과 식물 식별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립한다. 각 대마과 식물에 고유 식별자가 발급된다. 부서는 이 법안의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고유 식별자를 발급한다. 각 식물의 밑에 또는 법률 또는 규정에서 요구하는 대로 고유 식별자를 부착한다.

(A) 고유 식별자는 이 조항에 의거해 적절하게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만 발급된다.

(B) 지정된 고유 식별자 및 면허를 받은 사람과 관련된 정보가 26170항에 지정된 추적 프로그램에 포함된다.

(C) 부서는 고유 식별자를 발급하고 각 대마과 식물을 모니터링, 추적 및 검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합당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D) 부서는 이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공포할 수 있다.

(3) 부서는 위조된 고유 식별자를 방지하고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고유 식별자를 불법으로 발급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d) 지방 관할권에서 관리하는 고유 식별자 및 관련 식별 정보는 부서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고 부서에서 관리하는 고유 식별자와 같아야 한다.

(e) (1) 이 조항은 보건안전법의 11362.1항 또는 동정적 사용법안에 따른 대마초 재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부조항 (b)는 26070항의 부조항 (a) (3)절 또는 26070.5항의 부조항 (b)에 따라 면허를 받은 개인 또는 실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f) 이 조항의 "부서"는 식량농업부를 의미한다.

제7장. 소매업자 및 유통업자

26070. 소매업자 및 유통업자

(a) 소비자 문제부에서 발행할 주 면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비자에게 마리화나 또는 마리화나 제품의 소매 판매 및 인도를 위한 "소매업체"

(2) 마리화나 및 마리화나 제품의 유통을 위한 "유통업체" 유통업체 면허를 받은 사람은 면허를 주는 당국에서 설정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계속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3) 10,000 스퀘어 피트 미만의 구역에서 마리화나 재배 목적이면서, 본 부에 의거한 면허를 받은 유통업체, 레벨 1 제조업자, 및 소매업체로서 활동하는 "영세기업"이되, 단, 해당 활동에 면허를 받은이 종사하는 한도까지 면허를 받은 재배자, 유통업체, 레벨 1 제조업자, 및 소매업체에게 본 부에 의해 부과된 모든 요건을 해당 면허를 받은 사람이 준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마리화나의 재배를 승인하는 영세기업 면허에는 California 어류 및 동물 관리국 및 수자원 관리 위원회에서 요청한 조건들이 포함되어 있어, 재배와 관련된 물 전환 및 배수의 개별적이고 누적적인 효과들이 어류 산란, 이동 및 사육에 필요한 유지 흐름, 흐름 가변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흐름, 어류, 야생동물, 어유와 야생동물 서식지 및 수질을 달리 보호하는 데 필요한 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b) 담당국은 마리화나 및 마리화나 제품의 상업적 유통 및 인도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 및 운반 안전 요건을 설정해야 합니다. 담당국에서 설정한 운반 안전 기준에는 마리화나 및 마리화나 제품을 유통하고 인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를 관할하는 최소한의 기준 및 해당 차량을 운영할 자격이 있는 사람의 최소한의 자격사항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c) 26070.5항에 의거한 면허를 받은 소매업체 및 영세기업, 면허를 받은 비영리 단체는, 마리화나 또는 마리화나 제품이 들어 있는 구역으로 승인되지 않은 출입은 물론 해당 부지에서 마리화나 또는 마리화나 제품이 도난을 방지하도록 타당하게 설계된 보안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들 보안 조치에는 다음의 모든 항목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1) 조제실의 운영과 명시적으로 관련된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개인들을 면허를 받은 사람의 부지에 남아 있지 않도록 방지할 것

(2) 승인받은 직원만 접근 가능한 제한된 접근 구역을 설정할 것

(3) 전시 목적, 샘플 또는 즉시 판매를 위해 사용되는 마리화나의 제한된 양 외에도, 안전 장치가 되고 잠긴 방이나 안전함이나 금고 안에, 우회, 도난 및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타당하게 설계된 방식으로 모든 마리화나 완제품 및 마리화나 제품을 보관할 것

26070.5. (a) 담당국은 2018년 1월 1일까지, 본 조항에 의거한 비영리 면허의 분류 하나 이상을 생성할 타당성을 조사해야 합니다. 하부조항 (b)에 의거하여 임시 면허를 발급하는 지역 관할의 대표자 및 관련 면허 부여 기관과 상의하여 그러한 타당성 의사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담당국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하지 않는 요인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모든 주에서 부과하는 세금, 면허 부여 수수료 및 본 부의 다른 면허에 적용 가능한 조항들로부터 비영리 면허를 받은 사람을 면제해야 하는가?

(2) 비영리 면허를 받은 사람에 절감된 비용 또는 비용 없이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 부에 의거하여 면허를

받은 다른 이들을 고무하기 위하여 자금 조성 인센티브를 생성해야 하는가?

(3) 주로 마리화나 전초와 마리화나 제품 및 다양한 마리화나 품종 및 씨앗 종자를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면서, 이전에 비영리 기준으로 운영하는 주체들로 비영리 면허를 받은 사람들을 제한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들을 우선순위화해야 하는가?

(b) 지역 관할이 다음에 해당하는 한, 지역 관할은 주로 마리화나 전초와 마리화나 제품 및 다양한 마리화나 품종 및 씨앗 종자를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비영리 주체들에게 임시 지역 면허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California 검찰 총장의 자선 신탁 등기소에 등록된 비영리 주체로서 면허 신청자의 지위를 확인하고, 신청자가 비영리 주체를 관할하는 모든 주의 요건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경우

(2) 본 부의 모든 환경적 요건 준수를 요구하기 위해, 공공 보건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해당 주체에 면허를 부여하고 규제하는 경우

(3) 해당 면허를 받은 주체의 이름 및 장소, 그리고 면허를 받은 사람 주체의 운영을 관할하는 모든 지역 규정을 포함하여, 발급된 해당 지역 면허의 담당국에 통지하는 경우, 및

(4) 모든 해당 면허를 받은 주체가 이전 만 달러 (\$2,000,000)를 초과하는 연간 총 수익을 창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담당국에 증명하는 경우.

(c) 지역 관할에서 갱신하지 않는 한, 하부조항 (b)에 의거하여 승인된 임시 지역 면허는 12개월 후 만료됩니다.

(d) 담당국은 하부조항 (b)에 의거하여 승인된 지역 면허에 대한 타당한 추가 요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 (1) 본 부에 따른 비영리 면허의 생성이 타당성이 없다고 결정한 날 이후에는 본 부에 의거하여 새로운 임시 지역 면허를 발급해서는 안 되며, 또는 담당국이 해당 면허가 타당성이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면허 부여 기관이 주 비영리 면허 발급을 개시한 날 이후에는 새로운 임시 지역 면허를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2) 담당국이 해당 면허가 타당성이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하부조항 (b)항에 의거하여 발급된 임시 면허는 면허 부여 기관이 주 비영리 면허 발급을 개시한 날짜 이후 갱신되거나 연장되어서는 안 됩니다.

(3) 담당국이 본 부에 의거하여 비영리 면허 생성이 타당성이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 담당국은 하부조항 (b)항에 의거하여 임시 면허를 발급했던 모든 지역 관할에 이러한 결정을 통지해야 합니다. 담당국은 자신의 재량에 따라, 해당 지역 관할이 하부조항 (b)항에 따라 이전에 발급된 모든 임시 면허를 연례 기준으로 갱신하거나 연장하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

제8장. 유통 및 운반

26080. (a) 연방법에 의해 승인되지 않는 한, 본 부는 면허를 받은 사람이 주 밖으로 마리화나 또는 마리화나

제품을 운반하거나 배포, 또는 운반하거나 배포하도록 하도록 승인하거나 허용하는 내용을 구성하지 않는다.

(b) 지역 관할은 본 부를 준수하여 마리화나 또는 마리화나 제품을 운반하는 면허를 받은 사람이 공공 도로상에서 마리화나 또는 마리화나 제품을 운반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제9장. 인도

26090. (a) 본 부에서 정의되어 있는 바와 같이, 26070.5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소매업체나 영세기업, 또는 면허를 받은 비영리에 의해서만 인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b) 인도를 요청하는 고객은 인도 요청서의 물리적 또는 전자적 복사본을 유지해야 하며, 면허 부여 당국 및 법 집행관이 요청하는 즉시 제공 가능한 상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c) 지역 관할은 26200항에 의거하여 채택된 본 부 및 지역법을 준수하여 활동하는 면허를 받은 사람에 의한 공공 도로상의 마리화나 또는 마리화나 제품의 인도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제10장. 제조업체 및 제조업체 및 시험 실험소

26100. California 공공보건부는 마리화나 제조업체 및 시험 실험소의 면허 부여를 관할하는 규정을 공포해야 합니다. 발급될 면허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비휘발성 용제 또는 용제 없이 사용하는 마리화나 제품을 제조하는 현장을 위한 "제조 레벨 1" 면허

(b) 비휘발성 용제를 사용하는 마리화나 제품을 제조하는 현장을 위한 "제조 레벨 2" 면허

(c) 마리화나 및 마리화나 제품의 시험을 위한 "시험" 면허
시험 면허를 받은 사람은 해당 부서에서 명시한 규정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신의 시설 또는 장치를 보유해야 합니다. 시험 면허를 받은 사람은 본 부의 다른 면허 범주에 속하는 면허를 보유해서는 안 되며, 본 부에 따라 면허를 받은 비시험 시설을 소유하거나 그러한 시설에 소유권 지분을 보유해서는 안 됩니다.

(d) 법 또는 규정에서 달리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조항의 목적에 따라, "휘발성 용제"란 보건 안전법 11362.3의 하부조항 (d)항에 있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26101. (a) 법에서 달리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부에 의거한 면허에 따라 마리화나 또는 마리화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단, 해당 마리화나 또는 마리화나 제품의 대표 샘플을 인증된 시험 서비스 기관이 시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샘플의 화학적 프로필이 다음 모두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하지 않는 레이블 처리된 화합물의 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

(A)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THC)

(B)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산 (THCA)

(C) 칸나비디올 (CBD)

(D) 칸나비디올산 (CBDA)

(E) 미국 약초 약전 기구(AHP)에서 발표한 대마초 개화 논문의 가장 최근 버전에서 설명되어 있는 테르펜

(F) 칸나비제롤 (CBG)

(G) 칸나비놀 (CBN)

(2) 오염물의 존재는 미국 약초 약전 기구(AHP) 논문의 가장 최근 버전에 설명된 수준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이 단락의 목적에 따라, 오염물에는 다음의 모두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A) 부탄, 프로판, O₂ 또는 H₂, 및 독, 독소, 등 폭발 가스 또는 메타놀, 이소프로필 알코올, 염화 메틸렌, 아세톤, 톨루엔,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발암물질을 포함하는 잔류 용제 또는 공정처리 화학약품

(B) 모발, 곤충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또는 관련 불순물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하지 않는 이물질

(C) 총 호기성 미생물 수, 총 호모 곰팡이 수, 녹농균, 아스페르길루스 속, 구균, 아플라톡신 B1, B2, G1 또는 G2, 또는 오크라톡신 A을 포함하는 미생물 불순물

(b) 휘발성 유기 화합물의 잔여 수준은 United States 약전 (U.S.P.)에서 설정한 대마초 개화 논문 속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제467장).

(c) 단락 (a)에서 요구하는 시험은 국제시험기관인증협력체 (ILAC) 상호인정협약 서명기관인 인증 기관이 승인한 마리화나 및 마리화나 제품을 시험하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설정한 표준 방식, 구체적으로 ISO/IEC 17020 및 ISO/IEC 17025을 적용하는 샘플링을 포함하여, 시험 및 교정 활동을 위한 일반적 요구조건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d) 본 조항에 의거한 마리화나 제품의 모든 판매 전 조사, 시험 이전 또는 운송은 지정된 일련의 보관 프로토콜 및 본 부에 의거하여 부과되는 기타 요구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26102. 면허를 받은 시험 서비스는 면허를 받은 시험기관이 19343항의 요구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달리 법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마리화나 또는 마리화나 제품을 다루거나 시험하거나 분석해서는 안 됩니다.

26103. 법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면허를 받은 시험 서비스는 19344항에서 요구하는 동일한 정보를 보고하기 위해, 뒷받침하는 데이터를 포함하여, 각 로트에 대한 분석 인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26104. (a) 면허를 받은 시험 서비스는 마리화나 및 마리화나 제품과 관련한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정에서 명시한 요구조건 및 제약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b) California 공공보건부는 다음을 위한 절차들을 진행해야 합니다.

(1) 26070.5항에 의거하여 면허를 받은 소매업체, 영세기업 또는 비영리 단체에 배포하기 전에 마리화나 및 마리화나 제품의 시험을 완수하도록 함

(2) 면허를 받은 사람이 마리화나 및 마리화나 제품 시험을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지 지정하고, 마리화나 시험 비용을 면허를 받은 재배자가 부담해야 하고, 마리화나 제품 시험 비용을 면허를 받은 제조업체가 부담해야 하고, 마리화나 및 마리화나 제품 비용을 26070.5항에 의거하여 면허를 받은 비영리 단체가 부담해야 하는지 지정함 및

(3) 구제 조치가 마리화나 또는 마리화나 제품을 California 공공보건부가 공포한 품질 보증 기준을 준수하게 할 수 없는 경우, California 공공보건부가 공포한 보건 및 안전 기준의 비준수를 나타내는 샘플 시험이 이루어진 수확된 배치들을 파기할 것을 요구함

26105. 제조 레벨 2 면허를 받은 사람은 폭발, 연소의 위험이나 휘발성 용제에 의해 발생하는 공공 안전에 가하는 기타 모든 타당하지 않은 위험성 있는 리스크를 포착하거나 달리 제한하기 위한 충분한 방법들이나 절차들을 제정해야 합니다. California 공공보건부는 레벨 2 면허를 받은 사람을 위한 해당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26106. California 공공보건부에서 달리 지정하지 않는 한, California 공공보건부에서 개발한 모든 마리화나 제품의 생산 기준 및 라벨작업은 면허를 받은 제조업체와 영세기업, 그리고 26070.5항에 의거하여 면허를 받은 비영리 기구에 적용해야 합니다.

제11장. 품질 보증, 검사 및 시험

26110. (a) 모든 마리화나 및 마리화나 제품은 품질 보증, 검사 및 시험 대상에 해당합니다.

(b) 본 부 및 법률에서 달리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마리화나 및 마리화나 제품은 19326항에 기재된 동일한 방식으로 품질 보증, 검사 및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제12장. 포장 및 라벨작업

26120. (a) 소매업체 수준에서 인도 또는 판매가 이루어지기 전, 마리화나 및 마리화나 제품은 라벨을 붙여 다시 봉인 가능하게 어린이에게 안전한 포장으로 넣어야 합니다.

(b) 포장 및 라벨은 어린이가 관심을 가지도록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c) 모든 마리화나 및 마리화나 제품 라벨 및 삽입물에는 California 공공보건부 또는 담당국이 지정한 글꼴 크기를 포함하여, 요구조건에 따른 명료하고 읽기 쉬운 방식으로 눈에 띄게 표시된 다음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1) 제조일자 및 출처

(2) 굵은 글씨로 인쇄된 다음의 문언

(A) 마리화나 경우: "정부 경고문: 이 포장 안에는 스케줄 I의 통제를 받는 물질인 마리화나가 들어 있습니다. 어린이 및 동물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마리화나는

자격을 갖춘 환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21세 이상인 사람만이 소지하거나 소비할 수 있습니다. 임신 또는 수유 중에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행위는 해롭습니다. 마리화나 소비는 운전 및 기계 운전 능력에 손상을 가져옵니다. 극도로 조심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B) 마리화나 제품 경우: "정부 경고문: 이 제품 안에는 스케줄 I의 통제를 받는 물질인 마리화나가 들어 있습니다. 어린이 및 동물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마리화나 제품은 자격을 갖춘 환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21세 이상인 사람만이 소지하거나 소비할 수 있습니다. 마리화나 제품의 취하는 효능은 최대 2시간까지 지연될 있습니다. 임신 또는 수유 중에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행위는 해롭습니다. 마리화나 제품 소비는 운전 및 기계 운전 능력에 손상을 가져옵니다. 극도로 조심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 말린 꽃만 들어 있는 포장의 경우, 포장 속 마리화나의 순중량

(4) 출처 확인, 재배일자 및 마리화나 또는 마리화나 제품의 종류, 제조일자 및 포장일자

(5) 있는 경우 원산지 명칭

(6) 1개 포장당 1회 제공량당 밀리그램 속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칸나비디올(CBD) 및 기타 칸나비노이드 함유물, THC 및 기타 칸나비노이드 양 및 전체 포장에 대한 밀리그램 속 THC 및 기타 칸나비노이드 양, 각 1회 제공량 속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및 칸나비디올의 양에 대한 언급에 의한 마리화나 또는 마리화나 제품의 효능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하지 않는 약학적으로 활성인 성분 목록

(7) 마리화나 제품의 경우, 연방규정법의 제목 21 101.9 항의 연방 영양물 라벨작업 요구조건과 동일한 방식으로 영양물 정보의 공개 및 모든 성분의 목록.

(8) 해당 마리화나 또는 마리화나 제품의 재배, 생산 및 제조에 사용된 모든 용제, 무기물 살충제, 제초제 및 비료 목록.

(9) 견과류 또는 기타 알려진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사용된 경우 경고문

(10) 식량농업부에서 발급한 고유 식별자와 관련된 정보

(11) California 공공보건부 또는 담당국에서 설정한 기타 요구조건

(d) 시용 가능한 마리화나 제품을 설명하는 데에는 일반적 식품 이름만을 사용할 있습니다.

(e) 담당국이 마리화나가 더 이상 연방법에 의거한 스케줄 I 통제 물질이 아니라고 결정한 경우, 하부조항 (c)항에서 지정된 라벨은 마리화나가 스케줄 I 통제 물질이라는 문언 표시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13장. 마리화나 제품

26130. (a) 마리화나 제품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1) 마리화나를 어린이에게 호소력을 가지도록 디자인되거나 마리화나를 포함하지 않는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사탕 또는 음식과 쉽게 혼동되도록 디자인되어서는 안 됨

(2) 1회제공량당 십(10)밀리그램의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을 초과하지 않는 표준화된 칸나비노이드 복용량 단위로 생산 및 판매해야 함

(3) 마리화나 제품에 1회 제공량을 초과하는 양이 들어 있고 고체 형태로 식용 가능한 마리화나 제품인 경우, 표준화된 제공량 크기로 잘라야 함

(4) 제품 전체를 통해 칸나비노이드의 균일한 분산을 위해 균질화해야 함

(5) 식품 제품의 조리, 보관, 취급 및 판매 목적으로, 담당국과 상의하여, California 공공보건부가 설정한 위생 기준에 따라 제조 및 판매해야 함

(6) 필요하다면 마리화나 제품 소비 방법에 관한 지시 및 마리화나 제품의 잠재적 효능을 포함하여, 해당 제품을 잘 알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함

(b) 법을 준수하여 제조된 마리화나 제품에 포함된 마리화나는 농축된 칸나비스를 포함하여, 주법에 따른 불순물로 간주되지 아니함

제14장. 미성년자 보호

26140. (a) 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21세 미만인 자에게 마리화나 또는 마리화나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2) 21세 미만인 자가 자신의 부지에 들어오도록 허용하는 행위

(3) 21세 미만인 자를 고용 또는 보유하는 행위

(4) 구매하는 사람이 21세 이상임을 표시한 유효한 정부 발급 ID 카드로 보이는 문서를 먼저 제시하지 않고 마리화나 또는 마리화나 제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행위

(b) 본 부의 법 집행에 있어 보안관은 21세 미만인 자를 이용하여, 마리화나를 미성년자에게 팔거나 공급하는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면허를 받은 사람의 피고용인이나 대리인, 또는 기타 사람을 체포할 있습니다. 법률의 모든 조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의 지시 하에 있는 동안이었다면 구매 또는 구매 시도하는 21세 미만인 모든 자는 마리화나 구매 또는 구매 시도에 대해 기소 면제입니다. 21세 미만인 자를 유인용 미끼로 이용하는 것과 관련한 지침은 행정절차법(정부법 제목 2 제3부 파트 1 제3.5장(11340 항으로 시작))의 규정 제정 부분에 따라 담당국에 의해 채택 및 공표되어야 합니다.

(c) 하부조항 (a)항에도 불구하고, 제8부 제3.5장(19300 항으로 시작)에 의거하여 면허를 받은 조제소이기도 한 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이 수행할 있습니다.

(1) 보건안전법 11362.71항에 따라 유효한 ID 카드 및 유효한 정부 발급 ID 카드를 소지한 18세 이상인 자를 부지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

(2) 보건안전법 11362.71항에 따라 유효한 ID 카드 및 유효한 정부 발급 ID 카드를 소지한 18세 이상인 자에게 마리화나, 마리화나 제품 및 마리화나 부속품을 판매

제15장. 광고 및 마케팅 제한사항

26150. 본 장의 목적에 따라,

(a) "광고"란 광고의 게시 또는 유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b) "광고물"에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 또는 기타 매체에서 모든 서면, 인쇄, 그래픽 또는 기타 자료, 게시판, 간판 또는 기타 옥외 디스플레이, 공공 교통 카드, 기타 정기 발행 문헌, 출판물 등을 포함하여, 마리화나 또는 마리화나 제품의 판매를 유발하기 위해 계산된 모든 서면 또는 구두 문언, 일러스트 또는 표현을 의미합니다. 단, 해당 용어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1) 마리화나 또는 마리화나 제품에 부착된 모든 라벨, 본 부 조항에 의거한 라벨작업의 일부를 구성하는 해당 용기의 모든 개별 커버, 카논 또는 기타 포장지

(2) 면허를 받은 사람에 의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돈이나 금전적 대가가 지불되거나 약속되지 않으면서 면허를 받은 사람에 의해서나 그의 지시에 의해 쓰여지지 않는 출판을 위한 모든 정기물이나 출판물이나 신문 내의 모든 사설 또는 기타 읽기 자료(예: 뉴스 자료 등)

(c) "광고 간판"이란 같은 롯트에서 재배, 제조, 유통 또는 판매되지 않은 마리화나 또는 마리화나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는 모든 간판, 포스터, 디스플레이, 게시판 또는 기타 모든 정지 또는 영구적 부착된 광고물을 의미합니다.

(d) "건강 관련 문구"이란 건강에 관련된 문구를 의미하며, 마리화나 또는 마리화나 제품의 소비와 건강 이점 또는 건강에 미치는 영향 간의 관계를 시사하는 암묵적으로나 명시적으로 치료 성격 또는 테라피적 성격을 설명한 문구 등이 포함됩니다.

(e) "시장" 또는 "마케팅"이란 스포츠 행사 후원, 매장 광고 및 특정 인구집단에 호소력을 지니도록 특별히 디자인된 제품 개발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하지 않는 마리화나 또는 마리화나 제품의 판촉 또는 판매의 모든 행위 또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26151. (a) 모든 광고 및 마케팅은 그 콘텐츠에 대한 책임이 있는 면허를 받은 사람을 정확하고 알기 쉽게 명시해야 합니다.

(b) 방송, 케이블, 라디오, 프린트 및 디지털 통신에 배치된 모든 광고 또는 마케팅은 믿을 만한 가장 최근 시청자 구성 데이터에 의해 결정된 바와 같이, 시청자의 적어도 71.6 퍼센트가 21세 이상인 것으로 타당하게 예상할 수 있는 장소에만 게시해야 합니다.

(c) 면허를 받은 사람이 통제하는 개인화된 직접 커뮤니케이션 또는 대화와 관여되는 모든 광고 또는 마케팅은 연령 확인 방법을 활용하여, 면허를 받은 사람이

통제하는 해당 커뮤니케이션 또는 대화에 관여하기 전에 수용자가 21세 이상인지 검증해야 합니다. 본 조항의 목적에 따라, 그러한 연령 확인 방법에는 사용자 확인, 생년월일 공개 또는 기타 유사한 등록 방법이 포함될 있습니다.

(d) 모든 광고는 사실이어야 하며 적절하게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26152. 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a) 모든 자료에서 거짓 또는 사실이 아닌 방식. 거짓 여부와는 무관하게 애매모호함이나 누락 또는 방해 또는 무관하거나 과학적 또는 기술적 사안의 추가, 인상을 오도하기 위해 창출되는 경향이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광고 또는 마케팅하는 행위

(b) 라벨에 적힌 모든 문구와 일관성이 없는 제품 또는 브랜드에 관한 문구를 포함하는 광고물 또는 마케팅을 게시 또는 유포하는 행위

(c) 광고 대상 제품의 라벨에 원산지 명칭을 적혀 있지 않은 경우 및 해당 원산지 명칭이 광고에 없는 경우, 특정한 장소 또는 지역이 마리화나인 원산지라는 인상을 주기 위한 경향을 띠고 있는 모든 문구, 디자인, 장치 또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 광고물 또는 마케팅을 게시 또는 유포하는 행위

(d) 다른 모든 주의 경계선을 넘는 주간 고속도로 또는 주 고속도로에 위치한 게시판 또는 유사 광고 장치에 광고 또는 마케팅하는 행위

(e) 21세 미만인 자가 마리화나 또는 마리화나 제품을 소비하도록 고무하기 위한 의도가 들어 있는 방식으로 마리화나 또는 마리화나 제품을 광고 또는 마케팅하는 행위

(f) 소비의 법적 연령 미만인 자에게 주로 호소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심볼, 언어, 음악, 몸짓, 만화 캐릭터 또는 기타 콘텐츠 요소가 들어 있는 광고물 또는 마케팅을 게시 또는 유포하는 행위

(g) 어린이집, 유치원이나 1학년부터 12학년까지에 지침을 제공하는 학교, 운동장 또는 청소년 센터에서 1,000 피트 이내에 광고 간판에 있는 마리화나 또는 마리화나 제품을 광고 또는 마케팅하는 행위

26153. 면허를 받은 사람은 비즈니스 판촉 또는 기타 상업적 활동의 일환으로 마리화나 또는 마리화나 제품 또는 마리화나 무속품을 조금이라도 나누어 주어서는 안 됩니다.

26154. 면허를 받은 사람은 특정한 방식으로 사실이 아닌 모든 건강 관련 문구 또는 마리화나 소비 시 건강에 미치는 효능에 관한 정보를 오도하기 위해 생성된 경향의 모든 건강 관련 문구가 포함된 광고물 또는 마케팅을 게시 또는 유포해서는 안 됩니다.

26155. (a) 26152의 하부조항 (g) 조항은 공공 장소에서 일반적 도움 없이 보이지 않는 면허를 받은 부지 내부에 있는 광고 간판의 위치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단, 해당 광고

간판은 21세 미만인 자가 마리화나 또는 마리화나 제품을 소비하도록 고무하기 위해 의도된 방식으로 마리화나 또는 마리화나 제품을 광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b) 본 장은 비상업적 스피치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6장. 기록

26160. (a) 면허는 판매용 마리화나 활동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b) 면허 당국에서 정의하는 대로 판매용 마리화나 활동에 관련된 모든 기록은 7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c) 당국은 이러한 분류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간주하여 면허를 받은 사람의 장부와 기록을 조사하고 면허 당국, 또는 주나 지방 기관으로서 면허를 받은 사람의 구내를 조사할 수 있다. 면허를 받은 시설의 표준 업무 시간 중에 또는 다른 모든 정당한 시간 중에 모든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d) 면허를 받은 사람은 면허를 받은 장소의 구내에서 면허 당국에서 식별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면허 당국은 면허 소지자의 기록을 모두 조사할 수 있다. 면허 소지자는 면허 당국의 요청 시 문서의 사본을 제공 및 전달해야 한다.

(e) 본 조항에 따라 면허 소지자의 구내 또는 기록의 검사를 거절, 방해, 차단 또는 간섭하는 면허 소지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나 직원은 본 분류의 위반에 참여한 것이다.

(f)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대리인이나 직원이 본 조항에 따라 필요한 기록을 유지하거나 제공하지 못하면 면허 소지자에게 소환장이 발부되며 각 위반 별로 최대 30,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26161. (a) 한 면허 소지자가 또 다른 면허 소지자에게 마리화나 또는 마리화나 제품을 판매 또는 운송할 때마다 판매 송장 또는 영수증에 기록해야 한다. 판매 송장 및 영수증은 전자 상태로 유지될 수 있으며 당국 또는 조세형평위원회/조세형평국의 직원이 조사를 위해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제출되어야 하며 다른 커뮤니티를 포함하는 송장과 섞이지 않아야 한다.

(b) 하위 분류 (a)에서 요구하는 각 판매 송장은 판매자의 이름과 주소를 포함해야 하며 다음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1) 구매자의 이름과 주소.

(2) 판매일과 송장 번호.

(3) 판매된 마리화나 또는 마리화나 제품의 종류, 수량, 크기 및 포장 용량.

(4) 송장에 표시된 가격에 적용되는 할인율과 함께 구매자에게 판매된 가격.

(5) 면허 소지자의 구내에서 운송하지 않은 경우 마리화나 또는 마리화나 제품의 운송이 이루어진 장소.

(6) 국(bureau) 또는 면허 당국이 명시한 다른 모든 정보.

제17장. 추적 시스템

26170. (a) 식량농업부는 당국 및 주 조세형평위원회/조세형평국과 협의하여 분류 8, 3.5장의 (19335항으로 시작하는) 7.5조에 대하여 제공되는 추적 시스템을 확장함으로써 공급망에 걸쳐 마리화나 및 마리화나 제품의 이동 보고, 최소한 의료 대마초 및 의료 대마초 제품에 보고를 요구하는 대로 마리화나 및 마리화나 제품에 대해 같은 수준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외에 수익 및 조세 규약(Revenue and Taxation Code) 분류 2의 (34010항으로 시작하는) 14.5부에 따른 경작세를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확장된 추적 프로그램은 경작, 수확, 가공, 유통, 재고 및 판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상업 활동의 여러 단계에 대하여 데이터 지점이 있는 판매 소프트웨어 추적 시스템에 대한 전자 씨앗을 포함해야 한다.

(b) 부서는 당국과 협의하여 이 분류에 따른 면허 소지자가 제3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및 정보 기술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위 분류 (a)에 설명한 확장된 추적 프로그램의 요건을 준수하여 유통망에 걸친 마리화나 및 마리화나 제품의 이동을 보고하고 그러한 정보를 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면허 기관에게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

(c) 부서에서 확장된 추적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이용하는 모든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또는 기타 정보 기술 시스템은 제3의 대마초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과의 상호 운용성을 지원해야 하며 모든 면허 소지자의 시스템 활동을 안전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또는 양방향으로 잘 기록되고 검증되어 적절한 크리덴셜이 있는 제3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액세스 가능한 비슷한 기술을 통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API 또는 비슷한 기술은 버전 통제를 해야 하며 제3의 애플리케이션에 충분한 업데이트 알리를 제공해야 한다. 시스템은 제3의 애플리케이션이 액세스할 수 있는 시험 환경을 제공하여 생산 환경을 반영해야 한다.

제18장. 면허 수수료

26180. 각 면허 당국은 다음과 같이 이 분류의 시행 비용을 기준으로 애플리케이션, 면허 발급, 및 갱신 수수료 단계를 확립해야 한다.

(a) 각 면허 당국은 각 면허 소지자에게 해당되는 경우 면허 교부 및 갱신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면허 교부 및 갱신 수수료는 이 분류의 관리 비용을 포함하도록 계산해야 한다. 면허 교부 수수료는 26170항에 따라 필요한 추적 프로그램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여러 면허 교부 활동의 특성과 범위에 관련되기 때문에 이 분류의 다양한 규제 요건 관리에 관련된 다양한 비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면허 발급 당국의 정당한 규정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b) 이 분류에 따라 평가되는 총 수수료는 이 분류의 총 관리 비용을 완전히 포함하기 위해 충분한 총 수익을 공정하게 비례하여 창출할 금액으로 설정해야 한다.

(c) 모든 면허 수수료는 비즈니스의 규모에 따라 면허 당국에서 단계별로 설정해야 한다.

(d) 면허 당국은 마리화나 통제 기금(Marijuana Control Fund)에서 확립될 면허 당국 별로 구체적인 수수료

계정에서 징수되는 모든 수수료를 예치해야 한다. 면허 당국 수수료 계정의 자금은 의회에서, 지정된 면허 당국에서 이 분류의 관리를 위해 책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26181. 주 수도자원 관리위원회, 어류 및 야생동물 보호국(Department of Fish and Wildlife), 및 기타 당국에서는 마리화나 규제 프로그램의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수수료를 확립할 수 있다.

제19장. 연례 보고; 실적 감사

26190. 2020년 3월 1일부터, 이후 매년 3월 1일 까지 각 면허 당국은 의회에 판매용 마리화나 활동에 관련된 당국의 활동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 보고서를 당국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19353항에 명시된 유형의 정보, 그리고 이 분류에서 규칙 시행의 수정을 요청하는 면허 소지자에게서 받은 규제 완화 또는 규칙 제정 변경사항에 대한 청원의 자세한 목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아야 한다.

26191. (a) 2019년 1월 1일부터 이후 매년 1월 1일까지 California State Auditor's Office는 이 분류에 속한 국(bureau)의 활동에 대한 실적 감사를 수행해야 하며 그 결과를 국과 의회에 같은 해 7월 1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1) 프로그램의 실제 비용.

(2) 시행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유효성.

(3) 이 조항에 따라 제출되는 모든 보고서는 정부법의 9795항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b) 의회는 이 조항에서 요구하는 연간 감사를 시행하기 위해 California State Auditor's Office에 충분한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

제20장. 지역 관리

26200. (a) 이 분류의 어떤 것도 지역 관할에서 이 부에 따라 허가된 업체를 규제하도록 지역 관할 및 부지 사용 요건, 영업 허가 요건, 및 2차 흡연 노출 감소에 관련된 요건 등 지방 조례를 채택 및 시행하는 권한을 대체 또는 제한하거나, 지방 관할 내에서 이 부에 따라 허가된 한 가지 이상 유형의 비즈니스에 대한 설립 또는 운영을 완전히 금지하도록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

(b) 이 분류의 어떤 것도 면허 당국에서 지방 법 시행 책임을 맡거나, 지방 지구 설정 요건을 시행하거나, 지방 면허 요건을 시행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c) 지방 관할에서는 면허 소지자가 지방 관할 내에서 판매용 마리화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지방 면허,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시에 당국에 이를 알려야 한다. 통보 10일 이내에 당국에서는 관련 면허 당국에 알려야 한다. 당국에서 이를 통보받은 지 10일 이내에 관련 면허 당국은 3장에서(26030항부터 시작하여) 면허 소지자에게 발급된 면허를 유예 또는 취소해야 하는지 판별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d) 보건안전법 11362.3항 하위 분류 (a)의 (1)절에도 불구하고 지방 관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 분류에 따라

면허를 받은 소매업자 또는 영세업자의 구내에서 마리화나 또는 마리화나 제품의 흡연, 증기 흡입, 및 섭취를 허용할 수 있다.

(1) 마리화나 소비가 허용되는 지역에 대한 접근을 21세 이상인 자로 제한하는 경우

(2) 마리화나 소비가 모든 공공 장소 또는 연령 제한이 없는 구역에서 보이지 않는 경우

(3) 술이나 담배의 판매 또는 소비가 구내에서 허용되지 않는 경우

26201. 주에서 확립한 건강 및 안전, 환경 보호, 시험, 보안, 식품 안전 및 근로자 보호에 관련된 모든 표준, 요건 및 규정은 주 전체에서 이 분류에 따른 모든 면허 소지자에게 최소 표준이 되어야 한다. 지방 관할은 별도의 표준, 요건 및 규정을 확립할 수 있다.

26202. (a) 지방 관할은 국 또는 면허 당국에서 권한을 위임한 경우 국 또는 면허 당국에서 공포한 규정과 이 분류를 시행할 수 있다.

(b) 국 또는 모든 면허 당국은 국 또는 면허 당국과 시행 권한을 위임할 지방 관할 간의 양해 각서를 통해 하위 분류 (a)에서 시행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

제21장. 자금 지원

26210. (a) 19351항에서 확립된 의료 대마초 규제 및 안전법 기금(Medical Cannabis Regulation and Safety Act Fund)은 이하 마리화나 통제 기금(Marijuana Control Fund)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b) 이 조항의 발효일자에 "의료 대마초 규제 및 안전법 기금(Medical Cannabis Regulation and Safety Act Fund)" 이 어떤 법령, 규정 또는 계약, 또는 기타 모든 법에 나타날 때마다 마리화나 통제 기금(Marijuana Control Fund)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26211. (a) 하위 분류 (c)에서 설명하는 공공 정보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이 분류의 규제 활동, 그리고 2017년 7월 1일까지, 또는 2017년 예산법이 시행될 때까지 중에 더 늦게 발생하는 일을 기준으로 수익 및 세금법 분류 2의 (34010항으로 시작하는) 14.5부의 조세형평국 활동의 초기 확립 및 지원을 위한 기금은 일반 기금에서 진행해야 하며 이 분류, 이 분류에 따라 채택된 모든 규칙 또는 규정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 혹은 수익 및 세금법의 34011 및 34012항에서 2025년 1월 1일까지 부과한 세금에서 징수한 수익에서 초기 진행하여 상환해야 한다.

(1) 이 하위 분류에 따라 진행된 기금은 국에 배정되어 이 분류의 조항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만큼 적절한 면허 당국에, 그리고 수익 및 세금법 2부의 (34010항에서 시작하는) 14.5부의 조항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조세형평국에 자금을 분류해야 한다.

(2) 이 조항이 유효해지기 전 45일 이내에:

(A) Director of Finance는 일반 기금에서 마리화나 통제 기금(Marijuana Control Fund)으로 전달되는 초기 진행 금액을 30,000,000달러 이내로 정해야 한다.

(B) 하위 분류 (c)에서 설명한 공공 정보 프로그램에 대비하여 일반 기금에서 주 의료 서비스부(State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로 총 5,000,000달러를 진행해야 한다.

(b) 하위 분류 (a)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마리화나 통제 기금에 충분한 자금을 제공하여 국, 이 부에 따른 주 면허 당국, 및 조세형평국의 수익 및 세금 법 분류 2 (34010항부터 시작하여) 14.5부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본 자금 지원은 2017년 7월 1일부터 매년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c) 주 의료 서비스부(State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는 2017년 9월 1일부터 공공 정보 프로그램을 확립 및 시행해야 한다. 이 공공 정보 프로그램은 최소한 21세 미만자에 대한 마리화나 및 마리화나 제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과학적 근거가 되는 2016년 마리화나 성인 사용법 통제, 규제 및 세금 조항을 설명하고, 21세 미만자에게 마리화나 및 마리화나 제품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의 처벌을 설명하고, 마리화나 사용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자동차, 보트, 배, 항공기 또는 기타 운송에 사용되는 차량을 운전하는 위험성, 임신 중 또는 수유 중 마리화나 사용의 위험 가능성, 마리화나 또는 마리화나 제품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위험 가능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제6.2항. 147.6항은 노동법에 추가되었으며 다음과 같다.

147.6. (a) 2018년 3월 1일까지 직업 안전 및 보건부(Divisio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는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의 (26000항으로 시작되는) 분류 10에 따라 면허 소지자의 활동에 관련된 산업별 규정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의 (26200항으로 시작되는) 하위 분류 (d)에 따라 마리화나 현장 소비가 허용되는 시설에서 직원들이 2차 마리화나 흡연에 대한 노출을 다루는데 특정한 요건이 필요한지, 그리고 연소, 흡입, 무장 강도 또는 반복성 긴장 장애의 위험 가능성을 다루기 위해 특정한 요건이 필요한지 평가하도록 자문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b) 2018년 10월 1일까지 자문 위원회는 위원회에 그 결과와 권고를 위원회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 2018년 10월 1일까지 위원회는 이 조항에 따라 산업별 규정의 채택에 관련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6.3항. 수도법의 13276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3276. (a) 다기관 특별위원회, 어류 및 야생동물 보호국(Department of Fish and Wildlife), 및 주 수도자원 관리위원회는 California의 공공 및 민간 부지에서 마리화나 재배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도록 배정된 대마초 재배의 환경 영향(Environmental Impacts of Cannabis Cultivation)을 다루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험하고, 영구적으로 시행 노력을 지속하고 이를 주 전체 수준으로 확장하여 주 전체에 걸쳐 수질과 어류 및 야생동물에 대한 마리화나 재배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b) 각 지역위원회, 그리고 주 수도자원 관리위원회는 사업 및 직업법의 분류 10에 따라 의료 마리화나 재배 및 판매용 마리화나 재배로 인한 폐기물 처리, 그리고 일반 허가를 채택하거나, 폐기물 처리 요건을 확립하거나, 13269항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등 관련 활동을 다룰 수 있다. 이러한 폐기를 다루면서 각 지역위원회는 다음 모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품목을 다루기 위한 조건을 포함해야 한다.

- (1) 부지 개발 및 유지관리, 부식 제어, 및 배수 특징.
- (2) 개울 다리 설치 및 유지보수.
- (3) 하안지 및 습지대 보호 및 관리.
- (4) 토양 처리.
- (5) 용수 저장 및 이용.
- (6) 관개 유출.
- (7) 비료 및 토양.
- (8) 살충제 및 제초제.
- (9) 석유 제품 및 기타 화학물질.
- (10) 재배 관련 폐기물.
- (11) 쓰레기 및 인체 배설물.
- (12) 청소, 복원 및 최소화.

제7항. 마리화나 세금.

제7.1항. 14.5부(34010항으로 시작)를 수익 및 과세법 분류 2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14.5부. 마리화나 세금

34010. 이 부의 목적 상:

- (a) "위원회"는 조세형평국 또는 해당 승계 기관을 의미한다.
- (b) "국"은 소비자 문제부(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내 마리화나 통제국을 의미한다.
- (c) "조세 기금"은 34018항에 의해 구성된 California 마리화나 조세 기금을 의미한다.
- (d) "마리화나"는 보건안전법의 11018항에 설명한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며 의료 대마초를 의미한다.
- (e) "마리화나 제품"은 보건안전법의 11018.1항에 설명한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며 의료 농축액 및 의료 대마초 제품을 의미한다.
- (f) "마리화나 꽃"은 위원회에서 정의한 대로 마리화나 식물의 말린 꽃을 의미한다.
- (g) "마리화나 잎"은 판매 또는 소비되는 마리화나 꽃 이외의 마리화나 식물의 모든 부분을 의미한다.
- (h) "총수입액"은 6012항에 설명한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 (i) "소매"는 6007항에 설명한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j) "사람"은 6005항에 설명한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k) "소규모 업체"는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의 26070항 하위 분류 (a)의 (3)절 에 설명한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l) "비영리"는 사업 및 직업법 26070.5항에 설명한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34011항 (a) 2018년 1월 1일부터 이 주에서 판매되는 마리화나 또는 마리화나 제품의 구입자에게 조제실이나 직업 및 사업법 분류 8의 3.5장(19300항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는데 필요한 다른 사람 또는 직업 및 사업법의 분류 10 (26000항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아야 하는 소매업자, 소규모 업체, 비영리단체 또는 다른 사람이 구입자에게 마리화나와 마리화나 제품을 직접 판매하려면 마리화나 특별소비세를 소매가격의 15%로 부과해야 한다.

(b) 규정에 별도로 제공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에 따라 부과된 세금은 마리화나 또는 마리화나 제품과 다른 모든 뚜렷하고 식별 가능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 관련된 모든 거래에 대하여 비항목화된 경우 전체 가격에 적용되어야 하며 마리화나 또는 마리화나 제품의 가격 할인이 이러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구입에 따르는 경우 모든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에 적용되어야 한다.

(c) 사업 및 직업법 분류 8의 3.5장(19300항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아야 하는 조제실이나 다른 사람 또는 사업 및 직업법 분류 10 (26000항으로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아야 하는 소매업자, 소규모 업체, 비영리단체 또는 다른 사람은 이 세금을 징수하여 위원회에서 채택한 법과 모든 규정을 통해 확립된 규칙과 절차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d) 이 조항에서 부과한 특별소비세는 주와 지방 정부에서 부과하는 판매 및 이용세와 별도로야 한다.

(e) 이 부의 1부에서 판매 및 이용세를 평가하기 위해 마리화나 또는 마리화나 제품 판매의 총수익은 이 조항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을 포함해야 한다.

(f) 법에서 요구하는 특별소비세를 구매자가 판매 시 지불하지 않는다면 마리화나 또는 마리화나 제품을 구매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g) 1부(6001항으로 시작)에서 부과하는 판매 및 이용세는 의료용 대마초, 의료용 대마초 농축액, 식용 의료 대마초 제품 또는 국소용 대마초의 소매 판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이것은 보건 안전법의 11362.71항에 따라 발행된 카드와 유효한 정부 발행 ID 카드를 자격을 갖춘 환자 또는 자격을 갖춘 환자의 일차 의료제공자가 제공하는 경우 사업 및 직업법 분류 8의 3.5장(19300항으로 시작)에 이러한 조항이 정의되어 있기 때문이다.

34012. (a) 2018년 1월 1일부터 사업 및 직업법 분류 8의 3.5장(19300항으로 시작) 또는 사업 및 직업법 분류 10 (26000항으로 시작)에 따라 마리화나 재배 면허를 받으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판매 시장에 진입하는 모든

수확된 마리화나에 대한 경작세를 부과한다. 세금은 마리화나를 수확한 후에 부과된다.

(1) 마리화나 꽃에 대한 세금은 건조 중량 온스 당 9달러 25센트이다.

(2) 마리화나 잎에 대한 세금은 건조 중량 온스 당 2달러 75센트이다.

(b) 위원회는 마리화나 잎에 대한 마리화나 꽃의 상대적 가격 변동을 매년 반영하여 마리화나 잎에 대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

(c) 위원회는 수확된 마리화나의 다른 범주, 가공되지 않거나 열린 마리화나, 성숙하지 않은 식물 또는 직접 제조업체에 배송되는 마리화나에 대한 범주를 가끔 확립할 수 있다. 이러한 범주의 경우 마리화나 꽃과 비교하여 그 상대적 가치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d) 위원회는 납세 증지가 첨부된 또는 마리화나가 포장된 제품에 모든 필수 세금을 납부하였음을 나타내는 주 발행 제품 백 또는 납세 증지를 이용하여 경작세의 지불 방법 또는 방식을 규제 별로 규정할 수 있다.

(e) 납세 인지 및 제품 백은 위원회에서 규정하는 디자인, 명세, 및 단위여야 하며 사업 및 직업법 분류 8 3.5장 (19300항부터 시작) 또는 사업 및 직업법 분류 10 (26000항부터 시작)에 따라 모든 면허 소지자가 구입할 수 있다.

(f) 납세 증지 프로그램의 확립에 따라 위원회는 규정에 의거하여 적절한 명칭의 납세 증지가 있는 주 발행 제품 백이 아니면 면허를 받은 경작 시설에서 마리화나를 제거해야 하며 공공 도로에서 운송할 수 없다.

(g) 납세 증지와 제품 백은 스캔 또는 비슷한 기기로 읽을 수 있어야 하며 사업 및 직업법 26170항에 따라 추적 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h) 사업 및 직업법 분류 8 3.5장(19300항부터 시작)에 따라 또는 사업 및 직업법 분류 10 (26000항부터 시작)에 따라 마리화나 재배 면허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위원회에서 채택한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다. 이 부분에서 설명한 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마리화나를 판매할 수 없다.

(i) 식물 폐기물 이외에 경작자의 구내에서 제거된 모든 마리화나는 판매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 항에 따라 세금이 적용된다.

(j) 이 조항에서 부과하는 세금은 위원회에서 반포한 규칙과 규정에 따라 주에서 재배된 모든 마리화나에 부과되어야 하지만, 보건 안전법의 11362.1항에 따라 개인용으로 경작되거나 동정적 사용 법(Compassionate Use Act)에 따라 자격 있는 환자 또는 1차 의료제공자가 경작하는 마리화나에는 적용할 수 없다.

(k) 2020년 1월 1일부터 하위 분류 (a), (b), 및 (c)에서 설명하는 요율은 물가 상승에 따라 매년 위원회에서 조정한다.

34013. (a) 위원회는 수수료 징수 절차법(Fee Collection Procedures Law) (30부 (분류 2의 55001항으로 시작))에

따라 이 부분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관리 및 징수해야 한다. 이 부분의 목적에 따라 수수료 징수 절차법에서 "수수료" 기준은 이 부분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포함하며, "납세자" 기준은 이 부분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지불하거나 징수해야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b) 위원회는 징수, 보고, 환불 및 항소 등 이 부분의 행정 및 시행에 관련된 규정을 정하고, 채택하고, 시행할 수 있다.

(c) 위원회는 이 부분에서 세금을 집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그러한 규칙 및 규정은 마리화나 또는 마리화나 제품, 또는 그 포장의 꼬리표를 붙여 사전 세금 납부가 되었음을 표시하는 방법 또는 절차를 포함할 수 있다.

(d) 위원회는 이 분류에서 의무를 이행, 집행 및 시행하는데 필요한 만큼 모든 긴급 규정을 정하고, 채택하고 시행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규정, 채택 또는 시행된 긴급 규정은 정부법 제목 2의 분류 3의 1부의 3.5장(11340항으로 시작)에 따라 채택해야 하며, 정부법의 11349.6항을 포함한 이 장의 목적에 따라 규정의 채택은 긴급하고 행정법 사무소(Office of Administrative Law)에서 공공 평화, 보건 및 안전, 일반 복지의 즉각적인 보존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간주해야 한다. 다른 모든 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채택하는 긴급 규정은 채택 시부터 2년 간 유효하게 유지될 수 있다.

(e) 이 부분에 따라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납부하지 못한 세금 이외에 미납 세금액의 1/2 이상의 벌금에 처하며 사업 및 직업법의 26031항에 따라 또는 사업 및 직업법의 분류 8의 3.5장(19300항으로 시작)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다.

(f) 위원회는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서 미납액을 모두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검찰 총장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

34014. (a) 마리화나 또는 마리화나 제품의 재배 및 소매에 관련하여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모든 개인은 위원회가 채택한 규정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별도 허가를 구비해야 한다. 허가 발급 시 어떠한 개인에게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사업직업규약(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8부의 3.5장 (섹션 19300부터 시작) 또는 10부 (섹션 26000부터 시작)에 따라 경작자, 진료소, 소매점, 영세기업, 비영리기구로서 사업에 종사하기 위한 허가를 구비해야 하는 모든 개인은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가 취소, 정지, 철회된 상태에서 사업에 종사할 경우 경범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

(b) 위원회는 면허를 소지한 모든 진료소, 경작자, 영세기업, 비영리기구, 기타 개인이 생산한 마리화나 제품 또는 경작자, 영세기업, 비영리기구, 기타 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면허를 소지해야 하는 자가 수령한 마리화나 제품에 대하여 주법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 납부를 보장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본문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위원회가 인정한 정당한 사유에 따라 담보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는

서비스 제공자가 없거나 서비스 제공자가 마리화나 사업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정책을 둠으로써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경작자, 영세기업, 비영리기구 또는 기타 개인이 담보를 구할 수 없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개인은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업 또는 운영에 관한 담보를 올바르게 준비, 이행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마리화나 경작에 관련된 사업이나 운영을 시작하거나 계속할 수 없다.

(c) 위원회는 특정 담보의 금액을 정할 때 담보 제공자의 부족으로 인하여 면허 취득에 발생하는 금전적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

34015. (a) 본 규정에 의해 부과되는 마리화나 소비세와 경작세는 위원회에 분기별로 납부하거나 3개월의 분기 기간이 끝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전에 납부해야 한다. 사업직업규약(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8부의 3.5 장 (섹션 19300부터 시작) 또는 10부 (섹션 26000부터 시작)에 따라 경작이나 소매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자는 각 분기 기간이 끝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이전에 전자 매체를 이용하여 위원회에 전 분기 수익을 제출해야 한다. 수익은 위원회에서 정한 형식이나 방법에 따라 증명해야 한다. 섹션 34012 의 하위조항 (d)에 따라 스탬프로 경작세를 납부하는 경우, 위원회는 규정을 통해 세금의 납부 시기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

(b) 위원회는 사업직업규약(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8부의 3.5장 (섹션 19300부터 시작) 또는 10부 (섹션 26000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마리화나와 마리화나 제품의 경작, 유통, 소매에 종사하는 자에게 매월 25일 이전에 전자 매체를 이용하여 전월 재고, 구매, 매출 및 기타 본 규정의 목적에 따라 위원회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정한 형식이나 방법에 따라 증명되어야 한다.

34016. (a) 치안관 또는 형법 섹션 830.11의 하위조항 (a) (6)항에 따라 제한적으로 치안관 지위를 부여받은 위원회 직원은 (3)항에 따라 어떠한 장소에나 진입하여 다음 조항에 따른 포괄적인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1) 조사는 상황에 적절한 시기에 합당한 방법으로 진입 장소의 일반 영업시간을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2) 조사는 마리화나나 마리화나 제품을 구매자에게 판매하거나 경작, 저장하는 장소, 기타 탈세 활동의 증거가 밝혀진 장소에서 수행할 수 있다.

(3) 조사는 24시간의 기간 이내로 요청하거나 수행해야 한다.

(b) 조사를 허용하지 않거나 거부한 자는 경범죄로 간주된다. 각 위반 행위는 \$5,000 이하의 벌금 또는 카운티 교도소 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과 징역으로 함께 처벌을 받게 된다. 카운티 교도소는 부과된 벌금을 California 마리화나세 기금(California Marijuana Tax Fund)에 예치한다.

(c) 위원회나 법률 집행 기관에서 면허소지자나 기타 개인이 납세 증빙자료 없이, 또는 안전하게 포장하지 않고

마리화나나 마리화나 제품을 처리, 저장, 소지, 소매점 판매를 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위원회나 법률 집행기관은 마리화나 또는 마리화나 제품을 압류할 권한을 갖는다. 법률 집행기관이나 위원회에서 압류한 마리화나 또는 마리화나 제품은 7일 이내에 몰수된 것으로 간주되며 섹션 30436에서 30449까지의 절차를 포괄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d) 허위 신고를 한 자는 경범죄로 각 건당 \$1,00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 본 규정 조항의 위반은 별도로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 경범죄로서 처벌한다.

(f) 본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납부된 금액은 전부 California 마리화나세 기금(California Marijuana Tax Fund)에 입금한다.

34017. 입법분석관실(Legislative Analyst's Office)은 2020년 1월 1일까지 섹션 34019의 프로그램 수익 생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불법 시장 가격 약화 및 21세 미만 마리화나 사용 억제를 위한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34018. (a) California 마리화나세 기금(California Marijuana Tax Fund)은 주 재무부(State Treasury)에 설치한다. 마리화나세 기금은 모든 세금과 이자, 벌금, 기타 본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징수한 금액에서 환불 금액을 제한 금액으로 구성된다.

(b)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California 마리화나세 기금(California Marijuana Tax Fund)은 성인 마리화나 이용에 대한 관리, 규제, 조세법(Control, Regulate and Tax Adult Use of Marijuana Act)의 목적을 위해서만 마련된 특수 신탁 기금에 해당하며 기금에 적립된 모든 수익은 기금을 통해 벌어들인 이자 및 배당금과 함께 회계 연도에 관계 없이 본 규정 조항과 그 목적에 따라 성인 마리화나 이용법의 관리, 규제, 조세를 위해 이용한다.

(c)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본 규정에서 부과한 세금과 세금을 통해 생성된 수익은 투자 이익과 함께 행정법전 4 부 파트 2 1장 (섹션 16300부터)에 규정된 일반 기금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California주 헌법 XVI조 섹션 8의 목적에 따른 일반 기금 수익이나 California 헌법 XVI조 섹션 8 하위조항 (a) 및 (b)와 그 이행 법령의 목적에 따른 "자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34019. (a) 2017-2018 회계연도 초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는 섹션 34011 및 34012에 따라 생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을 추정하여 회계감사관에게 매년 6월 15 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회계감사관은 본 섹션에 따라 자금을 지출할 때 이 추정치를 이용해야 한다. 본 섹션의 하위 조항 (b), (c), (d), (e)에 따라 자금을 지출하기 전에, 회계감사관은 회계 연도에 관계 없이 기금으로부터 적절한 계정에 자금을 분배해야 한다.

(1) 위원회의 행정 및 본 규정에서 부과된 세금의 징수에 합당하게 발생하는 비용, 단 해당 비용은 수령한 세수의 4 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2) 부서와 소비자보호위원회(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식품농업부(Department of Food and Agriculture), 공공보건부(State Department of Public Health)가 사업직업규약(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8부의 3.5장 (섹션 19300부터 시작) 또는 10부(섹션 26000부터 시작)의 이행, 관리, 집행을 위해 부담하고 사업직업규약의 섹션 26180 또는 8부 3.5장 (섹션 19300부터 시작)에 따라 상환을 받지 못한 정당한 비용. 이 항은 회계연도 2022-2023까지 유지된다.

(3) 야생동물보호부(Department of Fish and Wildlife), 주 수도자원 관리위원회(State Water Resources Control Board), 살충제규제부(Department of Pesticide Regulation)가 사업직업규약(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8부의 3.5장 (섹션 19300부터 시작) 또는 10부 (섹션 26000부터 시작)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는데 발생하고 다른 방법으로 상환되지 않은 정당한 비용.

(4) 회계감사관이 섹션 34020에 규정된 감사를 포함하여 성인 마리화나 이용에 대한 관리, 규제, 조세법(Control, Regulate and Tax Adult Use of Marijuana Act)에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는데 발생하는 정당한 비용.

(5) 주 감사관이 사업직업규약 섹션 26191에 따른 실적 감사를 수행하는데 발생하는 정당한 비용.

(6) 입법분석관실에서 섹션 34017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데 발생하는 정당한 비용.

(7) 노사관계부(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와 고용개발부(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에서 근로표준집행국(Division of Labor Standards Enforcement)과 산업안전보건국(Divisio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이 사업직업규약(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8부의 3.5장 (섹션 19300부터 시작) 또는 10부 (섹션 26000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소지자에게 주법을 적용하는데 발생한 비용의 충분한 상환.

(b) 회계감사관은 총액 \$10,000,000를 California 공립대학교나 대학교에 2018-2019 회계연도부터 2028-2029 회계연도까지 매년 지급하여 성인 마리화나 이용에 대한 관리, 규제, 조세법(Control, Regulate and Tax Adult Use of Marijuana Act) 이행 및 효과를 연구 평가하도록 하고 적절한 경우 주의회와 주지사에게 성인 마리화나 이용에 대한 관리, 규제, 조세법 개정에 대한 권고를 제출하도록 한다. 이 기금을 수령한 자는 2년에 한 번 이상 연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를 공공에 공개해야 한다. 본 부서는 기금을 받을 대학을 선정한다. 본 하위조항에 따라 기금을 받는 연구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마리화나 이용과 관련된 보건 비용, 마리화나 이용과 알코올 또는 기타 약물의 이용 증가 감소의 상관 관계 등 공공 보건에 미치는 영향.

(2) 부적응성 마리화나 이용 치료의 영향과 여러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3) 미성년자의 마리화나 및 마리화나 제품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법률에 포함된 포장 및 라벨 부착 요건의 효과에 대한 연구, 광고 및 마케팅 제한에 대한 연구,

사용자마다 다양한 마리화나 및 마리화나 제품의 효능 등 마리화나 이용에 관련된 공공 안전 문제.

(4) 성인과 청소년의 마리화나 이용율, 부적응 이용율, 마리화나 관련 약물 사용 장애 진단율.

(5) 효능을 기준으로 한 최선의 마리화나 조세 방법, 마리화나 사업 면허의 구조 및 기능 등 마리화나 시판 가격, 불법 판매 가격, 조세 구조 및 세율.

(6) 비의료 마리화나 산업의 불법 독점이나 반경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보호조치의 필요성 판단.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에 대한 제언.

(7) 일자리 창출, 직장 안전, 수익, 주 및 지방 예산을 위한 세수 등 민간 및 공공부문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법률 집행과 공공 자원에 미치는 영향, 형사사법제도 참여로 인한 장단기적 결과, 지방 정부와 주 정부의 행정 비용 및 수익 등 형사사법적 영향.

(8) 성인 마리화나 이용에 대한 관리, 규제, 조세법(Control, Regulate and Tax Adult Use of Marijuana Act) 이행과 집행을 담당하는 규제 기관의 법률 목적에 따른 일관성 준수 여부, 다른 기관이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9) 마리화나 제품과 관련된 환경적 영향과 마리화나 제품의 형사적 금지.

(10) 마리화나 사업 면허 소지 기업의 지리적 위치와 구조 및 기능, 면허소지자의 인종, 민족, 성별 등 인구통계 데이터.

(11) 성인 마리화나 이용에 대한 관리, 규제, 조세법(Control, Regulate and Tax Adult Use of Marijuana Act)에 따른 마리화나 관련 범죄의 형사적 처벌 변화를 통한 성과, 특히 집행유예를 통한 청소년 사법 제도의 성과, 마리화나 또는 마리화나 제품의 불법 소지에 대한 처벌 강화 빈도.

(c) 회계감사관은 마리화나 또는 마리화나 제품을 이용한 경우와 같이 운전자의 기능 저하 상태 운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만들어 채택하고 법률 집행 기관의 모범 사례를 규정하는 프로토콜을 만들어 채택할 수 있도록 2018-2019 회계연도부터 2022-2023 회계연도까지 California주 고속도로순찰대(Department of the California Highway Patrol)에 매년 총액 \$3,000,000를 지불한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본 하위조항에 명시된 프로토콜을 만들기 위해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또한 공공 및 민간 연구 기관에 마리화나 또는 마리화나 제품 이용으로 인한 기능 장애를 포함한 운전자의 운전 중 기능 저하 상태를 판단하기 위한 기술 개발 목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d) 회계감사관은 주지사 기업경제개발실(Governor's Office of Business and Economic Development)에 2018-2019 회계연도 초에 \$10,000,000를 지급하고 이후 2022-2023 회계연도까지 매년 \$10,000,000를 지급한 다음 이후에는 매년 \$50,000,000를 지급하여 노동인력개발청(Labor and Workforce Development Agency) 및 주 사회복지부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와 협의를 통해 지역사회 재투자 보조금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50 퍼센트 이상은 자격을 갖춘 지역사회 비영리기관에 투입하여 일자리 찾기 지원, 정신건강 치료, 약물 장애 치료, 제도 안내 서비스, 재진입 장벽 해결을 위한 법률 서비스, 연방 및 주 약물 단속으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은 지역사회의 치료 연결을 지원해야 한다. 기업경제개발실은 전문성을 갖춘 커뮤니티 기반 직업 기술과 일자리 찾기, 법률 서비스 제공자가 보조금 프로그램 관리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업경제개발실은 주기적으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고 프로그램의 이행, 평가, 감독과 관련하여 관리비의 4 퍼센트를 초과하여 지출해서는 안되며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매년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e) 회계감사관은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의료용 대마초 연구센터(Center for Medicinal Cannabis Research)에 매년 총 \$2,000,000를 지원하여 약제로서의 마리화나가 가진 효능과 부작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연구 등 센터의 연구 목적을 추진하도록 지원한다.

(f) 2018-2019 회계연도부터 매년 7월 15일 까지 회계감사관은 하위조항 (a), (b), (c), (d), (e)에 따라 기금을 지급한 후 이전 회계연도에 적립된 세금 기금을 다음과 같이 신탁 계정에 입금한다.

(1) 60 퍼센트는 청소년 교육, 예방, 조기 개입 및 치료 계정(Youth Education, Prevention, Early Intervention and Treatment Account)에 적립하고 회계감사관이 약물 남용 방지 및 위험 이용 방지를 위한 주 건강관리부(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청소년 프로그램에 지급한다. 주 건강관리부는 공공보건부 및 교육부와 협정을 체결하여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관리한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과 가정, 복지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올바른 교육과 효과적인 예방, 조기 개입, 학교 재적, 적시 치료 서비스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를 포함한다.

(A) 복지활동, 위험성 조사, 청소년과 가정, 복지서비스 제공자, 학교, 주요 건강관리 전문업체, 행동 보건 및 약물 이용 장애 서비스 제공자, 커뮤니티 및 신앙 조직, 양육 제공자, 청소년 및 가정 법원 등에 약물 이용 위험 인식 및 억제, 문제 이용 및 약물 이용 장애 조기 징후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예방 및 조기 개입 서비스.

(B) 약물 이용을 개선하고 억제하기 위한 학생 보조 프로그램이나 기타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지원하고 낙제 위험 학생을 지원하여 재적률과 성적을 개선하며 정학이나 퇴학을 대신하여 학교 재적과 구제, 전문 지원에 초점을 둔 대안을 제공하도록 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자퇴율이 평균보다 높은 학교는 보조금 우선 수령 권한을 갖는다.

(C) 약물 이용 장애가 있는 노숙자 청소년,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의 복지, 교육 및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보조금.

(D) 약물 이용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약물 이용 장애 위험이 있는 청소년과 가정, 복지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카운티 행동 보건 프로그램 접근 및 연결.

(E) 문화적, 성적 기능과 정신적 외상 기반, 증거 기반 청소년 중심 약물 이용 장애 프로그램 및 선별과 평가 (약물 이용 장애 및 정신 건강), 조기 개입, 적극적 치료, 가족 참여, 사례 관리, 과다 투여 방지, 약물 이용에 따른 전염성 질환 방지, 약물 이용 재발 관리, 기타 동시 발생 행동 건강 장애, 문자해독 서비스, 부모 역할 교실, 가족 치료, 카운셀링 서비스, 약물 지원 치료, 정신과 약물치료 및 심리치료 등 지속적인 관리 제공. 위탁이 필요한 경우 다른 서비스 제공자에게 위탁한다.

(F)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 개입 조치에 2 세대 접근방식을 활용하여 청소년과 성인이 함께 약물 이용 장애 치료를 받는다. 여기에는 부모와 양육자, 모든 자녀를 포함한 가정 내 약물 이용 장애와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가정 기반 개입 조치의 개발 지원이 포함된다.

(G) 약물 사용 청소년 개인과 가족, 친구를 지원하여 약물 이용 장애 진단, 약물 이용 장애 서비스 이용 등 약물 이용에 따른 낙인 효과를 줄이는 프로그램. 여기에는 또래의 복지 서비스 제공, 낙인 효과를 줄이는 교육, 낙인 제거 캠페인, 커뮤니티 회복 네트워크가 포함된다.

(H) 약물 이용 장애 예방 및 치료 전문성을 가진 행동 보건 인력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인력 교육 및 급여 구조. 약물 이용 치료 제공자의 핵심 역량을 높이고 증거 기반 치료 훈련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코칭 제공.

(I) 커뮤니티 기반 청소년 치료 시설 건설.

(J) 건강관리부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 카운티 행동 보건 프로그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K) 기금은 카운티 청소년 수, 성인 중 약물 이용 장애 발생도 등을 통계 자료와 검증된 평가나 해당 카운티가 제출한 보고서 등을 통해 입증된 필요성에 따라 카운티에 배정해야 한다.

(L) 건강관리부는 주기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효과를 평가한다.

(M) 건강관리부는 프로그램의 이행, 평가, 감독에 관련된 관리비로 청소년 교육, 예방, 조기 개입, 치료 계정에 할당하는 자금의 최대 4 퍼센트를 이용할 수 있다.

(N) 재무부에서 마리화나 조사에 따른 자금 지원이 주 내 청소년 예방과 치료 서비스 수요를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 건강관리부는 재무부에 이러한 기금을 이용하는 성인 및 청소년 치료 서비스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O) 건강관리부는 전문성을 갖춘 자원봉사 보건 조직과 중독을 치료하는 의사, 치료 연구원, 가정 치료 및 카운셀링 제공자, 전문 교육 협회에 본 항에 따른 보조금 관리에 대한 의견을 구해야 한다.

(2) 환경 복구 및 보호 계정에 20 퍼센트를 적립하고 회계감사관이 다음을 위해 지급하도록 한다.

(A) 야생동물보호부(Department of Fish and Wildlife), 공원 및 유원지부(Department of Parks and Recreation)가 실시하는 본 법률의 재정 전 피해 복구 및 지역 파트너십 지원을 포함한 마리화나 재배 및 관련 활동으로 인한 환경

피해 청소, 구제, 복구. 야생동물보호부(Department of Fish and Wildlife), 공원 및 유원지부(Department of Parks and Recreation)는 환경 복구 및 보호 계정에서 수령한 기금의 일부를 본 항에서 정한 목적을 위한 보조금을 통해 분배할 수 있다.

(B) 마리화나와 마리화나 제품의 불법 경작과 제조, 판매, 이용을 방지하고 공공 토지에서의 마리화나 및 마리화나 제품 불법 경작, 제조, 판매, 이용에 대한 조사와 집행, 기소를 촉진하기 위한 야생동물보호부(Department of Fish and Wildlife), 공원 및 유원지부(Department of Parks and Recreation)의 주 소유 야생 서식지와 주 공원 단위 관리 운영.

(C) 야생동물보호부의 유역 단속 프로그램 및 어로 및 사냥법(Fish and Game Code) 섹션 12029 하위조항 (b) 및 (c)에 따른 여러 기관의 태스크포스 지원, 이러한 범죄행위의 조사, 집행, 기소 촉진 지원, 주 전역의 마리화나 경작, 제조, 판매, 이용이 야생 서식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 억제 지원.

(D) 본 항의 목적에 따라 천연자원국(Natural Resources Agency) 차관은 부서 간 수익금의 배분을 결정해야 한다. 이행 후 5년 동안 하위조항 (A)에서 정한 기금 투입 목적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E) 본 조항에 따라 배정되는 기금은 하위조항 (A), (B), (C)에 지정된 활동을 강화하는데 이용되어야 하며 이 목적을 위한 다른 기금의 할당을 대체하지 않는다. 따라서 야생동물보호부, 공원 및 유원지부에 제공되는 연간 일반 기금은 2014년 예산법(Budget Act of 2014) (챕터 25) 에서 정한 수준 아래로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3) 20 퍼센트는 주 및 지방 정부 법률 집행 계정에 적립하고 회계감사관이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A) 알코올이나 마리화나를 포함한 기타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운전자의 감지, 검사, 법률 집행을 하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California 주 고속도로 순찰대(Department of the California Highway Patrol) 에 지급한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본 절에 명시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B) 알코올이나 마리화나를 포함한 기타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운전자에 관련된 교육, 예방, 법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California 주 고속도로 순찰대의 California 고속도로 순찰 내부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고 자격을 갖춘 비영리기구와 지방 정부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교통법 집행 지원 프로그램과 공공교통 안전 교육 프로그램, 교통사고 사망사고 및 상해사고, 경제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 제공, 알코올이나 마리화나를 포함한 기타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운전자의 단속에 관련된 장비 구입을 위해 자금을 지원한다.

(C) 주 및 커뮤니티 교정 위원회(Board of State and Community Corrections)에서 지역 정부에 성인 마리화나 이용에 대한 관리, 규제, 조세법 등 법률 집행 지원이나 소방, 기타 공공보건안전을 다루는 지방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한다. 위원회는 보건안전법

섹션 11362.2 하위조항 (b)에 (3)절에도 따라 개인 경작을 포함한 경작을 금지하거나 사업직업규약 섹션 26200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마리화나나 마리화나 제품 소매 판매를 금지한 주정부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

(D) 본 조항의 목적에 따라 재무부는 기관 간의 수익금 할당을 결정한다. 단, 2022-2023 회계연도 초에 하위조항 (A)에 따라 할당되는 금액은 매년 \$10,000,000 이상이어야 하며 하위조항 (B)에 따라 할당되는 금액은 매년 \$40,000,000 이상이어야 한다. 회계연도 2022-2023 회계연도 이전에 할당되는 금액을 결정할 때 재무부는 하위조항 (A)를 우선 고려한다.

(g) 하위조항 (f)에 따라 할당되는 자금은 프로그램 자금 지원 강화와 프로그램 목적에 따라 이용되어야 하며 다른 자금 지원을 대체하도록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h) 2028년 7월 1일부터 주 의회는 성인 마리화나 이용에 대한 관리, 규제, 조세법(Control, Regulate and Tax Adult Use of Marijuana Act)의 목적을 위해 다수결로 하위조항 (d) 및 (f)를 제외한 다른 기금 배정을 변경할 수 있다. 본 하위 조항에 따른 개정을 통해 하위 조항 (d) 및 (f)에 따른 계정 자금 지원이 2027-2028 회계 연도에 각 계정에 할당된 금액 이하로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2028년 7월 1일 전 주 의회는 하위조항 (d) 및 (f)에 지정된 프로그램 할당을 변경할 수 없다.

34020. 회계감사관은 주기적으로 세금 기금을 감사하여 본 규정 및 다른 법률에 맞게 이용되고 계정에 할당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34021. 본 규정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은 시, 카운티 또는 시와 카운티가 부과하는 다른 세금에 추가된다.

34021.5 (a) (1) 카운티는 사업 및 전문직업법 제8부 제3.5장 (제19300절 이하), 또는 제10부 (제26000절 이하)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이 마리화나 또는 마리화나 제품을 재배, 제조, 생산, 처리, 조제, 저장, 제공, 기부, 판매, 유통할 수 있는 특별 허가에 대해 조세를 부과할 수 있다.

(2) 감독 위원회는 조세를 규정하는 규칙에서, 조세, 세율, 배분 수단, 조세의 징수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조세는 일적인 행정 목적이나 감독 위원회가 정한 규칙에서 명시하는 목적을 위해 부과할 수 있다.

(3) 법률상 승인된 징수 방법에 추가하여, 감독 위원회는 본 절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 징수에 대해 카운티가 확정, 징수하는 기타 부과금 및 조세와 동일한 방식, 벌칙, 우선 특권을 규정할 수 있다. 본 절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는 수수료나 특별과세가 아니라 조세이다. 감독 위원회는 전체 카운티에 적용할지 또는 카운티의 비자치지역 내에 적용할지를 정해야 한다.

(4) 본절에 따라 승인된 조세는 감독 위원회가 결정하는 규칙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모든 활동에 부과하며, 해당 활동의 주체가 개인, 집단, 기업인지 여부, 행위가 유상인지 무상인지의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

(b) 본 절에 의해 부과되는 조세는 법률이 규정하는 유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c) 본 절은 기존의 법을 선언하는 것이며, (a)목에 명시한 활동과 관련해 법이 달리 규정하고 있는 기타 수수료, 부과금, 조세의 징수, 면허나 서비스 비용, 부과금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본 절을 법이 규정하는 카운티 과세 당국에 대한 제한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d) 본 절은 카운티에게 소득세법 제7202절 및 7203절 규정에 따르는 규칙에 의거해 부과되는 판매세 및 사용세에 추가하여 판매세, 사용세 부과권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제8절. 범죄 행위, 기록, 재선고

제8.1. 보건안전법의 11357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1357. 소지. (a) 법이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농축 대마를 소지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카운티 교도소 징역 또는 오백 달러(\$500)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과 벌금을 병과한다. 단, 형법 제667절 (e)목 2항 (C)호 제(iv)문에서 정한 범죄 행위, 또는 형법 제290절 (c)목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이미 한 번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 형법 제1170절 (h)목에 따라 처벌되는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b) (a) 법이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4g 이하의 농축 대마를 제외하고 또는 28.5g 이하의 마리화나를 소지하는 자는 소지하거나 양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일백 달러(\$100)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처벌 또는 판결한다:

(1) 18세 미만의 자는 규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A) 초범의 경우, 4시간의 약물 교육이나 상담을 이수하고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최고 10시간의 커뮤니티 봉사활동을 마쳐야 한다.

(B) 재범 이상인 경우, 6시간의 약물 교육이나 상담을 이수하고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최고 20시간의 커뮤니티 봉사활동을 마쳐야 한다.

(2) 18세 이상 21세 미만의 자는 규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일백 달러(\$100)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c) (b) 법이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농축 대마 이외에 4g 이상의 농축 대마 또는 28.5g 이상의 마리화나를 소지하는 자는 소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 또는 판결한다:

(1) 18세 미만으로, 28.5g 이상의 마리화나 또는 4g 이상의 농축 대마를 소지하거나, 양자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A) 초범의 경우, 8시간의 약물 교육이나 상담을 이수하고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최고 40시간의 커뮤니티 봉사활동을 마쳐야 한다.

(B) 재범 이상인 경우, 10시간의 약물 교육이나 상담을 이수하고 12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최고 60시간의 커뮤니티 봉사활동을 마쳐야 한다.

(2) 18세 이상의 자가 28.5g 이상의 마리화나 또는 4g 이상의 농축 대마를 소지하거나, 양자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카운티 교도소 징역 또는 오백 달러(\$500)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벌금과 징역을 병과한다.

(d) (c) 법률상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18세 이상의 자가 유치원 또는 1학년 ~ 12학년 과정을 제공하는 학교에서 수업이나 학교 관련 프로그램으로 학교 수업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농축 대마 이외에 4g 이하의 농축 대마 또는 28.5그램 이하의 마리화나를 소지하는 경우, 경범죄의 유죄를 선고하고 다음 처벌을 한다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1) 초범인 경우, 이백 오십 달러(\$250) 이하의 벌금

(2) 재범 이상인 경우, 오백 달러(\$500) 이하의 벌금 또는 10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거나, 또는 양자를 병과한다.

(e) (d) 법이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18세 미만의 자가 농축 대마 이외에 28.5g 이하의 마리화나 또는 4g 이하의 농축 대마를 유치원 또는 1학년 ~ 12학년 과정을 제공하는 학교에서 수업이나 학교 관련 프로그램으로 학교 수업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소지하는 경우 규칙 위반에 대해 경범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b)목 제(1)항의 규정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 다음 처분을 한다.

(1) 초범인 경우, 이백 오십 달러(\$250) 이하의 벌금

(2) 재범 이상인 경우, 오백 달러(\$500) 이하의 벌금 또는 소년원, 목장, 캠프, 산림 캠프 또는 안전한 청소년 주택에서 10일 이내의 구류에 처하거나 또는 양자를 병과한다

제8.2절. 보건안전법 제11358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1358. 식재, 수확, 처리

법이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체의 마리화나 모종, 또는 그 일부를 식재, 재배, 수확, 건조, 처리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a) 18세 미만의 자가 마리화나 모종을 식재, 재배, 수확, 건조, 처리하는 경우 제11357절 (b)목 (1)항의 규정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b) 18세 이상 21세 미만의 자가 살아 있는 6개 이하의 마리화나 모종을 식재, 재배, 수확, 건조, 처리하는 경우, 규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일백 달러(\$10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c) 18세 이상의 자가 살아 있는 6개 이상의 마리화나 모종을 식재, 재배, 수확, 건조, 처리하는 경우, 육개월 이하의 카운티 교도소 징역 또는 오백 달러(\$500)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벌금과 징역을 병과한다.

(d) (c)목에도 불구하고, 18세 이상의 자가 살아 있는 6개 이상의 마리화나 또는 그 일부를 식재, 재배, 수확, 건조, 처리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이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형법 제1170절 (h)목 에 따라 징역에 처해야 한다 처할 수 있다:

(1) 형법 제667절 (e)목 (2)항 (C)호 (iv)문에서 정한 범죄 행위, 또는 형법 제290절 (c)목에 따라 등록을 요하는 범죄 행위로 1회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자;

(2) (c)목에 의해 이미 2회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자;

(3) 범죄 행위의 결과가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A) 불법적인 물의 우회에 관한 물법 제1052절 위반;

(B) 쓰레기 배출에 관한 물법 제13260절, 13264절, 13272절, 또는 13387절 위반;

(C) 주의 물과 관련한 어획 및 수렵법 제5650절 또는 제 5652절 위반;

(D) 강, 개천, 호수와 관련한 어획 및 수렵법 제1602절 위반;

(E) 유해 물질에 관한 형법 제374.8절 또는 유해 폐기물에 관한 보건안전법 제25189.5절, 25189.6절 또는 25189.7절 위반;

(F) 멸종 위기종에 관한 어획 및 수렵법 제2080조 또는 철새 조약과 관련한 어획 및 수렵법 제3513절 위반;

(G)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공의 토지 또는 공공의 재산에 대해 상당한 환경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

제8.3절. 보건안전법의 11359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1359. 판매 목적의 소지.

법이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마리화나를 소지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a) 18세 미만의 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마리화나를 소지하는 경우, 제11357절 (b)목 (1)항의 규정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b) 18세 이상의 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마리화나를 소지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카운티 교도소 징역 또는 오백 달러(\$500)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벌금과 징역을 병과한다.

(c) (b)목에도 불구하고, 18세 이상의 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마리화나를 소지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형법 제1170절 (h)목 에 따라 징역에 처할 수 있다:

(1) 형법 제667절 (e)목 (2)항 (C)호 (iv)문에서 정한 범죄 행위, 또는 형법 제290절 (c)목에 따라 등록을 요하는 범죄 행위로 1회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자;

(2) (b)목에 따라 2회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자;

(3) 18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마리화나의 고의적 판매 또는 그 시도와 관련한 범죄 행위.

(d) (b)목에도 불구하고, 21세 이상의 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마리화나를 소지하는 경우, 20세 이하의 사람을 고의적으로 고용·이용하여 마리화나를 불법적으로 재배,

수송, 운반, 판매, 판매 제안, 증여, 판매 준비, 행사할 때에는 형법 제1170절 제(h)목에 따라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제8.4절. 보건안전법의 11360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1360. 불법 운송, 수입, 판매, 증여.

(a) 본 절에서 달리 규정하거나 법이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마리화나를 운송, 본 주로 수입, 판매, 공급, 관리, 증여하거나, 수입, 판매, 공급, 관리, 증여를 제안하거나, 본 주로 수입하거나 운송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1) 18세 미만의 자는 제11357절 (b)목 (1)항의 규정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2) 18세 이상의 자는 6개월 이하의 카운티 교도소 징역 또는 오백 달러(\$500)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벌금과 징역을 병과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8세 이상의 자는 형법 제1170절 (h)목에 따라 이년, 삼년 또는 사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A) 형법 제667절 (e)목 (2)항 (C)호 (iv)문에서 정한 범죄 행위, 또는 형법 제290절 (c)목에 따라 등록을 요하는 범죄 행위로 1회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자;

(B) (2)항에 따라 2회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자;

(C) 18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마리화나의 고의적인 판매, 판매 기도 또는 고의적인 판매, 공급, 관리, 증여의 제안과 관련된 범죄 행위;

(D) 28.5g을 초과하는 마리화나 또는 4g을 초과하는 농축 대마의 본 주로의 수입, 수입의 제안, 또는 수입 기도, 또는 본 주 외부로의 판매를 위한 운송, 판매를 위한 운송 제안, 또는 판매를 위한 운송 기도와 관련된 범죄 행위.

(b) 법률상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농축 대마를 제외한 28.5그램 이하의 마리화나를 증여, 증여 제안, 운송, 운송 제안, 또는 운송을 기도한 자는 규정 위반 경범죄 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백 달러 이하(\$100)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형법 제853.6절에 따라, 본 목 위반으로 체포된 사람이 치안 판사 앞에 출두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해당 당사자가 신분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고 자신이 법원에 출두할 것을 서면으로 약속한 때에는 체포한 경찰관이 해당 당사자를 석방해야 하며, 조서를 작성하지 않아야 한다.

(c) 본 절을 적용함에 있어서 "운송"이라 함은 판매를 위한 운송을 의미한다.

(d) 본 절은 범죄 행위의 방조 또는 공모를 이유로 한 기소를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 8.5절. 보건안전법에 제11361.1절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11361.1. (a) 제11357절, 11358절, 11359절 및 11360절의 약물 교육 및 상담 요건은:

(1) 의무적이다. 단, 해당 약물 교육 또는 상담이 당사자에게 불필요하다고 법원이 인정하거나 약물 교육 또는 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2) 참가자들에게 무료이며, 약물 교육은 마리화나 및 기타 통제 물질의 사용 및 남용에 특화된 최소 4시간의 그룹 토론 또는 과학에 기초한 교육, 또는 증거에 기초한 원칙 및 관행을 제공한다.

(b)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삼십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1357절, 11358절, 11359절, 11360절에서 요구하는 약물 교육 및 상담을 위한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제8.6절. 보건안전법의 11361.5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1361.5. 체포 및 유죄 기록의 파기; 절차; 예외.

(a) 본 주, 형법 제1000.2절에 따라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또는 민간, 또는 제11357호 (b), (c), (d), (e)목 또는 제11360호 (b)목 위반으로 인한 체포 또는 유죄 판결과 관련 있는 일체의 주 기관, 또는 제11357.5절을 제외한 본 절 규정을 위반한 18세 미만의 자의 체포 또는 유죄 판결과 관련 있는 일체의 주 기관의 기록은 유죄 판결일 또는 체포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보존할 수 없다. 단, 제11357절 (e) (d)목 위반의 경우, 또는 18세 미만의 자가 유치원 또는 1학년 ~ 12학년 과정을 제공하는 학교에서 수업이나 학교 관련 프로그램으로 학교 수업이 끝나지 않은 상황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기록은 범죄자가 18세가 될 때까지 보존해야 하며, 18세가 되는 때에 본 절의 규정에 따라 파기해야 한다. 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이나 기관은 (c)목에 따라 주 전체의 범죄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해당 기록을 시기에 맞게 파기하기 위해 대비해야 하며, 해당 기록은 주 전체 범죄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제거되어야 한다. 본 목에서 사용된 "체포 또는 유죄 판결과 관계 있는 기록"에는 형사 소송으로 이어진 체포 기록, 공소장에 기재된 기타 범죄와 관련 있는 체포 기록으로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거나 공소가 각하된 경우의 기록이 포함된다. 본 목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록을 보관할 수 없다는 규정은 본 목이 기록 파기를 요구하는 당시 본 목에 따른 범죄 행위로 인해 구금되어 있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람에 대해 이 년의 기간은 당사자가 구금에서 풀려난 때로부터 기산한다. 본 목의 요건은 1976년 1월 1일 이전의 유죄 판결 기록, 앞의 날짜 이전에 체포되고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체포 기록, 또는 형법 제1192.7절 (c)목 또는 제667.5절 (c)목에 규정한 범죄 행위로 인한 체포 기록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b) 본 목은 피고인의 다음과 같은 범죄 행위로 인해 1976년 1월 1일 이전에 내려진 유죄 판결 및 체포되었으나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체포 기록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제11357절 또는 해당 규정의 이전 규정 위반 행위.

(2) 1976년 1월 1일 이전의 제11364절 또는 그 이전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적인 마리화나 흡연에 사용되는 장치, 기구, 도구, 용품을 불법 소지한 경우.

(3) 1976년 1월 1일 이전의 제11365절 또는 그 이전 규정에 위반하여 마리화나를 불법적으로 흡연하거나 사용하는 방실이나 장소를 불법적으로 방문하거나 그 장소에 있었던 경우.

(4) 1976년 1월 1일 이전의 제11550절 또는 그 이전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마리화나를 사용하거나 마리화나에 취해 있었던 경우.

위의 범죄 행위로 인한 체포 또는 유죄 판결의 기록이 있는 사람은 유죄 판결일 또는 체포되었으나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 그 체포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 법무부에 체포 또는 유죄 판결과 관련 있는 기록의 파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법무부가 제공하는 양식에 의해야 하며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수수료는 본 목의 관리 비용 및 (c)목에 따라 주가 부담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법무부가 정한다. 단, 삼십칠 달러 오십 센트(\$37.50)를 초과할 수 없다. 신청서 양식은 법무부가 제공하며 모든 지역 경찰 및 보안관 부서에 비치할 수 있으며, 신분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해당 부서가 판단하는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해당 부서는 신청자에게 자기가 관리하는 지문을 신청서에 포함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으나 요구할 수는 없다. 이러한 지문 또는 추가적인 지문 없이는 본 목의 적용을 위해 해당 부서가 신청인의 신분을 충분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신청인에게 고지하고 신분 확인에 필요한 전체 지문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또는 본 절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포기하고 신청과 함께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불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청인이 해당 부서가 정한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당 부서의 신청에 따른 지문 제출을 하지 않거나 이를 거절하는 경우, 또는 신청인이 수수료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 또는 신청인이 기재한 기타 주소로 신청인에게 환불금을 송부해야 한다. 그러나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 수수료의 일부인 일정한 금액이 압수된다는 사실을 신청인에게 고지한 경우, 해당 부서는 신청서 처리를 위한 실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결정한 수수료의 일부를 보유할 수 있다. 단, 해당 부서가 보유하는 금액은 십 달러(\$10)를 초과할 수 없다.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서를 수령하는 즉시, 법무부는 (c)목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체포 또는 유죄 판결과 관계 있는 해당 부서의 기록을 파기해야 하며, 연방 수사국, 신청인을 체포했던 법 집행 기관, 그리고 신청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경우에는 신청인을 조사했던 가석방 부서, 차량 관리국에 신청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c) (a)목 또는 (b)목에 따른 체포 또는 유죄 판결 기록의 파기는 체포 또는 유죄 판결과 관계 있는 기록 상의 모든 사항 또는 주석의 영구적 말소이어야 하며, 체포나 유죄 판결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모양을 갖추어 기록을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1) 기록의 유일한 내용이 체포 또는 유죄 판결과 관계된 것일 경우 그리고 (2) 다른 기록의 파기에 필연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기록을 파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록에 해당하는 문서를 물리적으로 파기해야 한다.

(d) (a)목 or (b)목에도 불구하고, 법원 소송에서 행한 구두 증언의 필사본 및 공고된 항소 판례집에는 본 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또는 공동 피고인이 체포하거나 공소를 제기한 경찰관 또는 법 집행 관할권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기록을 보관하는 기관이 민사 소송의 인증 소장 부존을 수령한 경우 해당 민사 소송이 최종적으로 종료할 때까지 (a)목 상의 어떠한 기록도 파기해서는 안 된다. 유죄 판결 또는 체포되었으나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의 체포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 민사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즉시 (a)목의 기록을 (c)목에 따라 파기해야 한다.

제8.7항. 11361.8항을 보건안전법에 추가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361.8. (a) 본 법안이 범행 당시 시행되었다면, 본 항에 추가된 성인의 대마초 사용 관리, 규제 및 세금에 관한 법안에 따라 범죄 혐의 없음 또는 경범죄로 처리되었을 수 있는 자가 재판이나 공개 탄원, 유죄인정교섭에 관계없이, 현재 중죄 혐의로 복역 중인 경우, 자신의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던 재판소에서 형의 철회 또는 기각을 청원하여 해당법 11357, 11358, 11359, 11360, 11362.1, 11362.2, 11362.3 및 11362.4에 따라 재심 또는 기각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항은 본 법안에 따라 수정 또는 추가된 사항에 따른다.

(b) (a)에 따라 청원을 받을 경우 법원은 청원에 반대하는 당사자가 청원자가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명확하고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청원자가 (a)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추정한다. 청원자가 (a)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법원은 법원에서 청원 인가가 공공 안전에 과도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판결을 철회 또는 기각하기 위해 청원을 인가한다.

(1) 법원은 재량에 따라 형법 1170.18항의 (b)에 대해 제공된 증거를 고려하되, 그에 국한되지 않아야 한다.

(2) 본 조항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공공 안전에 과도한 위험"은 형법 1170.18항의 (c)에 제공된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c) 복역 중이며, (b)에 따라 재선고를 받은 사람은 이미 복역한 기간을 인정 받아야 한다. 또한 법원에서 재량에 따라 재선고의 일부로 보호관찰을 취소하지 않는 한 구금 기간이 끝난 후 일 년간 또는 출소 후 보호관찰 기간 중 더 짧은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해당 당사자는 범죄자가 출소하거나 거주하는 국가 또는 보호관찰 위반이 발생한 국가의 담당 기관 및 관할법원에 의해 보호관찰을 파기하고 구금 시행을 위한 청원을 심의하기 위해 형법 3000.08항 하에서 가석방 보호관찰 또는 형법 3451항의 (a) 하에서 출소 후 지역 보호관찰의 대상이 된다.

(d) 어떠한 상황에서도, 본 항에 따른 재심으로 원래 형량 또는 유죄인정교섭에 따라 기각된 재형량보다 긴 형량을 판결할 수는 없다.

(e) 본 법안이 범행 당시 시행되었다면, 본 항에 추가된 성인의 대마초 사용 관리, 규제 및 세금에 관한 법안에 따라

범죄 혐의 없음 또는 경범죄로 처리되었을 수 있는 자가 재판이나 공개 탄원, 유죄인정교섭에 관계없이, 11357항, 11358항, 11359항 및 11360항 하에서 현재 중죄 혐의로 복역을 마친 경우, 기존 형량이 현재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거나 11357항, 11358항, 11359항, 11360항, 11362.1항, 11362.2항, 11362.3항 및 11362.4항에 따라 경범죄 또는 침해로 재지정되었으므로 자신의 사건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소에서 유죄 판결을 기각 및 확정하기 전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 항은 본 법안에 따라 수정 또는 추가된 사항에 따른다.

(f) (e)에 따라 청원을 받을 경우 법원은 신청에 반대하는 당사자가 청원자가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명확하고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청원자가 (e)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추정한다. 신청자가 (e)의 기준을 충족하면 법원은 성인의 대마초 사용 관리, 규제 및 세금에 관한 법안에 따라 현재 제정된 바와 같이 유죄 판결을 경범죄 또는 침해로 재지정하거나 법률적으로 유효하지 않는 유죄 판결로 기각 및 확정해야 한다.

(g) 신청자의 요청이 없는 한, (e)에 따른 신청을 허가 또는 거부하기 위한 심의는 불필요하다.

(h) (b) 하에서 철회 및 재선고되거나 (f) 하에서 경범죄 또는 침해로 지정된 모든 중죄 유죄 판결은 모든 측면에서 경범죄 또는 침해로 간주되어야 한다. (b) 하에서 철회 및 재선고되거나 (f) 하에서 침해로 지정된 모든 경범죄 유죄 판결은 모든 측면에서 침해로 간주되어야 한다.

(i) 원래 청원자에게 구형한 법정이 없는 경우, 주재 판사가 청원 또는 신청에 대한 또 다른 규칙의 판결을 지정해야 한다.

(j) 본 항의 어떠한 부분도 청원자나 신청자에게 부여된 권리나 구제책을 축소하거나 무효화하지 않는다.

(k) 본 법안 및 관련 항의 어떠한 부분도 성인의 대마초 사용 관리, 규제 및 세금에 관한 법안의 이해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최종 판결을 축소하거나 무효화하지 않는다.

(l) 성인의 대마초 사용 관리, 규제 및 세금에 관한 법안에 따라 명령한 재심의는 California 주 헌법(Marsy의 법) 제1조 28항의 (b)(7)에 따라 "유죄판결 후 석방 진행"을 구성한다.

(m) 본 법안의 항은 청소년이 성인의 대마초 사용 관리, 규제 및 세금에 관한 법안에 따라 범죄 혐의 없음 또는 경범죄로 처리되었을 경우 복지기관법의 602항에 따라 청소년 비행 판결 및 처결에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n) 사법위원회는 본 항에 제공된 청원 및 신청을 기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필수 양식을 공표하고 사용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제9항. 산업적 대마

제9.1항. 보건안전법의 11018.5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1018.5. 산업적 대마

(a) "산업적 대마"는 ~~향정신성이 없는 대마 종류로 제한되는~~ 섬유 작물 또는 유지 작물 또는 둘 모두를 나타내며, ~~그로부터 생산된 종자는 성장 여부와 상관없이 건조 꽃에 함유된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이 1퍼센트의 십분의 삼을 초과하지 않고 성숙한 식물 환경, 줄기에서 생산된 섬유, 식물의 종자로 만든 오일 또는 덩어리, 모든 식물 부위에서 추출한 송진 및 식물, 식물의 종자 또는 성숙한 환경의 기타 모든 화합물, 상품, 분말, 파생물, 혼합물 또는 조제용 물질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독점 경작 및 가공 처리된 작물이다. 그로부터 추출 생산된 송진 또는 꽃, 섬유, 오일 또는 덩어리 또는 멸균 종자, 또는 발아 불가능한 종자, 식물의 모든 화합물은 제외된다.~~

(b) ~~산업적 대마의 소유, 사용, 구매, 판매, 경작, 가공 처리, 제작, 포장, 라벨 제작, 운송, 보관, 배포, 사용 및 배송은 본 항의 규정 또는 사업 및 직업법의 10항(26000항을 위시)이 적용되지 않는 대신 식품 및 농산물법 24항(81000항을 위시)의 조항에 따라 농림식품부에서 규제한다.~~

제9.2항. 식품 및 농산물법의 81000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81000. 용어정의.

본 항의 목적에 따라, 다음의 용어는 다음의 의미를 지닌다.

(a) "위원회"는 산업적 대마 자문 위원회를 의미한다.

(b) "감독관"은 국가 농업 감독관을 의미한다.

(c) "승인 받은 농업 연구기관"은 ~~전문 대학, 대학교, 농업 연구 센터 및 보존 연구 센터를 비롯한 농업 연구를 위해 토양을 유지하는 공공 또는 민간 협회 또는 조직을 의미한다. 모든 협회는 다음 중 하나에 속한다.~~

(1) ~~전문 대학, 대학교, 농업 연구 센터 및 보존 연구 센터를 비롯한 농업 연구를 위해 토양 또는 시설을 유지하는 공공 또는 민간 협회 또는 조직~~

(2) ~~농업 시범 프로그램 또는 학술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 목적으로 산업적 대마를 재배, 경작 또는 제조하는 고등교육 기관(1965 고등교육법 1001항에 정의됨(20 U.S.C. 1001)).~~

(d) "산업적 대마"는 보건안전법 11018.5항에 정의된 용어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e) "장관"은 농림식품부 장관을 의미한다.

(f) "품종 육성기관"은 판매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종자 품종을 개발하는, 위원회에 등록된 개인 또는 공공 또는 민간 협회 또는 조직을 의미한다.

(g) "종자 품종"은 다양한 산업적 대마를 의미한다.

(h) "종자 개발 계획"은 품종 육성기관 또는 신청 품종 육성기관에서 산업적 대마의 새로운 종자 품종 재배 및 개발에 대해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 창안한 전략을 의미한다.

제9.3항. 식품 및 농산물법의 81006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81006. ~~산업적 대마 재배 제한, 금지, 수입, 실험실 테스트.~~

(a) (1) 승인 받은 농업 연구기관 또는 등록된 품종 육성기관에서 재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산업적 대마는 동시에 ~~오 에이커 및 십분의 일 에이커~~ 이상의 면적에서 밀집 작황 작물 또는 유지식물 또는 두 가지의 형태로만 재배해야 하며, ~~산업적 대마의 재배 면적에 일 에이커 이상의 인접 면적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2) 채종을 목적으로 하는 등록된 품종 육성기관은 동시에 ~~아 에이커의 십분의 일 에이커~~ 이상 면적에서 밀집 작황 작물로만 산업적 대마를 재배해야 하며, ~~산업적 대마의 재배 면적에 일 에이커 이상의 인접 면적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3) 새로운 캘리포니아 채종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등록된 품종 육성기관은 종자 개발 계획에 따라 ~~십분의 일 에이커~~ 이상의 전용 면적에서 가능한 한 밀집하게 산업적 대마를 재배해야 한다. 특정 종자 품종 경작에 전체 전용 면적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b) 산업적 대마를 관상 재배 및 비밀 재배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모든 구역에 작물이 산업적 대마임을 밝히는 적절한 기호를 표시해야 한다.

(c) 승인 받은 농업 연구기관에서 재배하거나 본 조항에서 설명되어 있는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해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개인적인 산업적 대마 전지 및 재배는 금지된다.

(d) 승인 받은 농업 연구기관에서 재배하거나 본 조항에서 설명되어 있는 THC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해 조치가 필요한 경우 또는 등록된 품종 육성기관에서 채종 및 개발 목적으로 재배할 경우를 제외한 산업적 대마의 도태는 금지된다.

(e) 산업적 대마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미국 세번 관세율표(2013) 하에서 수입되는 제품을 포함하며, 이에 1207.99.03항에 따른 대마 종자, 1515.90.80항에 따른 대마유, 2306.90.01항에 따른 깻묵, 5302항에 따른 삼, 5308.20.00항에 따른 삼베사 및 5311.00.40항에 따른 삼베를 포함하되, 그에 국한되지 않는다.

(f) 승인 받은 농업 연구기관에서 재배할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항 하에서 산업적 대마를 재배하는 등록자는 각 작물을 재배하기 전 아래에 명시된 바에 따라 재배하려는 산업적 대마의 무작위 건조 꽃 건본의 THC 수치를 나타내는 실험실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1) 건본 채취는 씨앗을 둘러싼 잎사귀의 THC 함유가 최고치에 도달할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실행해야 하며, 식물 50 퍼센트 정도의 첫 씨앗이 압축에 저항력이 생기는, 씨앗이 성숙기에 접어드는 즉시 시작해야 한다.

(2) 종자를 비롯한 전체 결과부를 건본으로 사용해야 한다. 식물 상위 삼분의 일에서 개화기 진행되면 건본을 채취한다.

(3) THC 테스트를 위해 채집한 건본에 대하여 다음 문서를 동봉한다.

- (A) 등록자의 등록 증거.
- (B) 사용된 종자 품종에 대한 종자 검사 문서.
- (C) 사용된 각각의 승인 종자 품종에 대한 THC 테스트 보고서.
- (4) 실험실 테스트 보고서는 미연방 마약단속국에 등록된 실험실에서 발행해야 하며, THC 함유 수준, 건본 채취 날짜 및 위치, GPS 좌표 및 총 경작 면적이 명시되어야 한다. 실험실 테스트 보고서에 THC 함유 비율이 1퍼센트의 십분의 삼 이하일 경우 실험실 테스트 보고서 상단 또는 그에 준하는 공간에 "PASSED AS CALIFORNIA INDUSTRIAL HEMP (CALIFORNIA 산업적 대마로 통과됨)" 문구를 기입해야 한다. 실험실 테스트 보고서에 THC 함유 비율이 1퍼센트의 십분의 삼을 초과할 경우 실험실 테스트 보고서 상단 또는 그에 준하는 공간에 "FAILED AS CALIFORNIA INDUSTRIAL HEMP (CALIFORNIA 산업적 대마로 통과되지 못함)" 문구를 기입해야 한다.
- (5) 실험실 테스트 보고서에 THC 함유 비율이 1퍼센트의 십분의 삼 미만일 경우, 실험실은 테스트를 의뢰한 사람에게 실험실에서 승인한 직원이 서명한 원본을 10부 이상 제공해야 하며, 건본 추출 날짜로부터 최소 이 년간 실험실 테스트 보고서 원본을 한 부 이상 보관해야 한다.
- (6) 실험실 테스트 보고서에 THC 함유 비율이 1퍼센트의 십분의 삼을 초과하지만 1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산업적 대마를 재배하는 등록자는 재배하는 산업적 대마의 테스트를 위한 추가 건본을 제출해야 한다.
- (7) 산업적 대마를 재배하는 등록자는 THC 함유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한다고 나타난 첫 실험실 테스트 보고서를 받은 경우 또는 (6)항에 따라 THC 함유 비율이 1퍼센트의 십분의 삼을 초과하지만 1퍼센트를 넘지 않는다고 나타난 두 번째 실험실 테스트 보고서를 받은 경우, 재배한 산업적 대마를 폐기해야 한다. THC 함유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실험실 테스트 보고서를 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폐기 작업을 해야 한다. 두 번째 실험실 테스트 보고서에서 THC 함유 비율이 1퍼센트의 십분의 삼을 초과하지만 1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두 번째 테스트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전에 최대한 빨리 폐기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 (8) 산업적 대마를 재배할 의도가 있으며, 본 조항을 준수하는 등록자는 실험실 테스트 보고서에 THC 함유 비율이 1퍼센트의 십분의 삼을 초과하지만 1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명시된 대마초를 재배 또는 소유한 것으로 기소되어서는 안 된다.
- (9) 승인 받은 농업 연구기관은 본 법령에 제정된 THC 1퍼센트의 십분의 삼 제한을 준수하는 산업적 대마 품종의 개발에 기여할 경우, 실험실 테스트 보고서에 THC 함유 비율이 1퍼센트의 십분의 삼을 초과하는 것으로 명시된 산업적 대마에 대한 재배 또는 소유가 허가된다.
- (10) 승인 받은 농업 연구기관을 제외한 산업적 대마를 재배하는 등록자는 건본 추출 날짜로부터 최소 이 년간 실험실 테스트 보고서의 서명이 기재된 원본을 보관하여 정부 부처, 위원회 또는 법률 집행인 또는 그 피지명자가

요청할 경우 서명이 적힌 실험실 테스트 보고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산업적 대마를 재배하는 등록자에게 섬유, 오일, 덩어리 또는 씨앗 또는 식물의 씨앗 일부를 구매, 운송 또는 습득하는 각 당사자에게 실험실 테스트 보고서 원본을 제공해야 한다.

(g) 본 조항에 추가되는 법령의 8항에 따라 공표된 검찰총장의 의견에서 본 조항의 규정이 연방법을 준수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결정될 경우, 부처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본 조항에 대하여 연방법 요건을 충족하는 절차를 제정해야 한다.

제9.4항. 식품 및 농산물법의 81007항은 다음과 같이 철회한다.

81007. ~~(a) (b)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또는 81006항의 (f)에 따른 테스트 수행에 필요할 경우를 제외하고 대마에서 제거된 송진, 꽃 또는 나뭇잎을 합법적인 재배 영역 외에서 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b) 산업적 대마의 일반적인 및 적절한 과정에 따라 대마에 대마 잎사귀 또는 꽃이 최소 허용치 또는 극소량 포함되어 있는 경우 대마초 소지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9.5항. 식품 및 농산물법의 81008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81008. *검찰총장 보고서, 요건.*

(a) 2019년 1월 1일 이전 또는 연방법에 따라 본 조항의 규정이 정식 인가된지 오 년 중 더 늦은 기간 이내에 검찰총장은 다음에 속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모든 보고된 사고를 농업 부문 하원 및 상원, 그리고 공공안전 하원 및 상원에 보고해야 한다.

(1) 대마초 경작을 숨기기 위하여 산업적 대마 경작지가 사용된 경우.

(2) 81006항의 (f)에 따라 대마초가 산업적 대마로 면제된 자 외의 사람이 법정 심의 청구

(b) (a)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는 정부법안의 9795항을 준수하여 제출해야 한다.

(c) 정부법안의 10231.5항에 따라 본 항은 2023년 1월 1일 또는 보고서 제출 날짜로부터 사년 중 더 늦은 날짜에 폐지된다.

제9.6항. 식품 및 농산물법의 81010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81010. *조항 운영.*

(a) 본 조항 및 221항은 연방법에 따라 공식 승인되지 않는 한 2017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지 않는다.

(b) 산업적 대마의 소유, 사용, 구매, 판매, 생산, 제작, 포장, 라벨 제작, 운송, 보관, 배포, 사용 및 배송은 본 조항에 따라 규제되어야 한다. 대마초 단속국은 식물 및 제품이 산업적 대마의 정의를 충족하도록, 그리고 사업 및 직업법의 10항(26000항을 위시)에 따라 발급된 라이선스를 바탕으로 생산, 가공 처리, 제작, 테스트, 배송 또는 처리되도록 규제 및 통제할 권한을 가진다.

제10항. 수정안.

본 법안은 3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목적 및 의향의 이행을 위하여 넓게 해석되어야 한다. 의회는 과반수 투표에 의해 5항에서 5.5항까지 포괄적으로, 그리고 6항에서 6.3항까지 포괄적으로 수정하여 개정안이 3항에 진술된 바와 일치하고 본 법안의 목적 및 의향을 확장하도록 해당 조항의 실질적인 내용을 이행할 수 있다. 6항에서 6.3항까지 포괄적인 조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의 직원 및 기타 근로자에 대한 보호법을 제정하는, 본 법안에서 제공하는 보호법에 추가되거나 6항에서 6.3항까지 포괄적인 조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의 여하한 직원 또는 근로자의 법적 권한을 확장하는 본 법안에 대한 개정안은 본 법안과 일치하며, 목적 및 의향을 확장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의회는 본 법안에 기술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경감하고자 할 경우 다수결로 모든 조항을 수정, 추가 또는 철회할 수 있다.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법안의 조항은 의회의 삼분의 이 투표에 따라 법안의 목적 및 의향을 확장하도록 수정할 수 있다.

제11항. 해석 및 해설.

본 법안의 조항은 성인의 대마초 사용 관리, 규제 및 세금에 관한 법안의 목적 및 의향을 시행하는 것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법안의 어떠한 조항도 미국 약물관리법을 비롯한 연방법에 대한 적극적 대립을 형성한다고 해석 또는 설명되어서는 안 되며, 본 법안의 조항 및 연방법은 일관적으로 일치할 수 없다.

제12항. 분리 가능 조항.

본 법안의 조항 또는 본 법안의 일부, 또는 조항이나 일부를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적용 시 어떠한 이유로든 무효 또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결이 날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 및 부분은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며 이를 위해 본 법안의 조항을 분리할 수 있다.

제13항. 상충 발의안.

본 법안과 대마초, 의료용 대마초 또는 산업적 대마의 통제, 규제 및 과세 관련 기타 법안이 동일한 주선거 투표용지에 수록될 경우 다른 법안과 본 법안이 상충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본 법안이 더 많은 찬성표를 얻을 경우 본 법안의 전체 조항이 우선권을 가지며 다른 법안의 조항들은 무효가 된다.

발의안 제 65호

California 주 헌법 제II조 8절의 조항에 따라 본 발의안을 주민에게 제출한다.

본 발의안은 공공자원법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새롭게 추가될 제안된 조항들은 신설 규정임을 나타내기 위해 *이탤릭체*로 인쇄한다.

제안된 법안

제1절. 제목.

본 법의 명칭은 환경부담금보호법이라 하고, 인용 시 이 명칭을 사용한다.

제2절. 조사 결과 및 공표 사항.

California 주민들은 다음과 같이 조사하여 공표하였다.

(a) 2014년 California 주 의회는 California 식료품 상인 협회를 포함한 특수 이익단체들의 로비가 있는 후 비닐 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b) 동 법률은 또한 상점들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모든 종이 봉지 및 재사용 봉지를 최소 10센트에 판매하도록 규정하였다. 상점은 원하는 경우 더 높은 금액을 부과할 수 있으며, 법은 강제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특별히 식료품 상점 및 소매점이 추가 수입으로 보유하도록 했다.

(c) 주법이 요구하는 봉지 판매 요금은 환경 용도에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 의회는 이러한 판매 요금을 식료품 상점 및 소매상들의 추가 수입으로 삼도록 하기 위해 특별히 법률을 작성했다.

(d) 이 특별이익 단체의 거래는 식료품 상점 및 소매상들에게 사익 달러 이상의 추가 수입을 매년 안겨 주었다. 이는 모두 California 소비자들이 희생한 대가이지만, 환경에는 거의 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e) California 주민들은 주법에 따라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 모든 봉지 판매 요금이 기업을 부유하게 만들기보다는 환경을 보호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요구할 충분한 권리가 있다.

제3절. 목적 진술.

환경부담금보호법의 목적은 비닐 봉지 사용 금지를 위해 소비자가 지불한 일체의 봉지 요금을 가뭄 완화, 재활용, 깨끗한 음용수 공급, 공원, 해변 청소, 쓰레기 제거,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 등과 같은 적절하고 가치 있는 환경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요구함으로써 California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제4절. 공공자원법 제30부 파트3에 제5.2장 (제42270 절 이하)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제5.2장. 봉투 요금: 환경 보호 및 개선

42270. 본 장의 명칭은 환경부담금보호법이라 하고, 인용 시 이 명칭을 사용한다.

42271. (a) 일체의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 종류의 봉지의 무료 배포를 금지하고 기타 종류의 봉지를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주법에 따라 상점이 벌어들인 징수하는 모든 돈은 제42272절에 따라 재무부가 설치하고 야생자원 보존위원회가 관리하는 환경보호 및 개선 기금에 예치해야 한다.

(b) 본 장을 적용함에 있어

(1) "상점"이란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매점을 의미한다.

(A) 건조 식품류, 캔 제품, 비식품류, 부패성 상품을 판매하며, 연간 총 매출액이 2백만 달러(2,000,000 달러) 이상인 풀 라인 셀프 서비스 소매 상점.

(B) Bradley-Burns 균일 지방 판매세 및 사용세법(조세및세입법 제2부 파트 1.5 (제7200절 이하))에 따라 판매세 또는 사용세를 발생시키는 최소 일만 평방피트의 소매 공간을 갖추고 사업 및 직업법 제2부 제9장 (제4000절 이하)에 따라 허가받은 약국을 갖춘 경우.

(C) 식품 편의점, 푸드마트, 또는 일반적으로 우유, 빵, 탄산 음료, 스낵을 포함해 제한된 상품군의 소매에 종사하며 주류통제국이 발행한 20유형 또는 21유형 면허를 보유하는 회사.

(D) 식품 편의점 또는 매장을 벗어나서 소비되는 상품의 소매에 종사하며 주류통제국이 발행한 20유형 또는 21유형 면허를 보유하는 회사.

(2) "주법"이란 모든 법령 법률, 규정, 기타 본 절의 효력발생일 이전·이후에 California 주 또는 그 기관이나 부서가 채택, 제정, 이행하는 법적 권능을 의미한다.

(3) "봉지"란 일회용 봉지, 종이 봉지, 재활용 종이 봉지, 비닐 봉지, 재활용 비닐 봉지, 재사용 비닐 봉지, 생분해성 봉지, 재사용 식료품 봉지, 기타 구매한 상품을 상점으로부터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일체의 봉지를 의미한다.

(c) (1) 야생자원 보존위원회는 본 절 (a) 항, 제42272절 및 제42273절의 관리 및 이행을 증진하기 위해 규정을 채택하고, 다른 주 또는 지방 기관과 협력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기타 일체의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절 (a) 항, 제42272절 및 제42273절의 관리 및 이행을 위한 규정을 채택하기 위해, 2006년 안전한 음료수, 수질 및 물 공급, 홍수 조절, 하천 및 연안 보호 기금(제75009절)으로부터 야생자원 보존위원회에 대해 50만 달러(500,000 달러)의 용자를 시행한다. 만약 2006년 안전한 음료수, 수질 및 물 공급, 홍수 조절, 하천 및 연안 보호 기금의 자금이 본 항이 요구하는 용자를 실행하기에 부족한 경우, 2014년 수질, 물 공급 및 기반 시설 향상 기금(물법 제79715절)으로부터 용자를 실행한다. 환경보호 및 개선 기금에 예치된 모든 자금은 모든 용자를 상환할 때까지 용자금 상황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관리자 및 책임 있는 모든 주 관리는 본 항이 요구하는 용자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42272. (a) 환경보호 및 개선 기금을 재무부 내에 설치한다.

(b) 기타 일체의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보호 및 개선 기금은 오로지 본 항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신탁 기금으로만 수립된다. 정부법 제13340절에도 불구하고, 기금에 예치된 모든 자금과 그 자금으로부터 벌어들인 이자는 이에 지속적으로 회계연도와 상관 없이 오로지 (c)항에 명시한 목적만을 위해 야생자원 보존위원회에 책정된다.

(c) 야생자원 보존위원회는 해당 자금을 환경보호 및 개선 보조금 조달을 위한 환경보호 및 개선 기금에 사용해야 한다. 보조금의 대상이 되는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1) 가뭄에 시달리는 산림 개선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고 가뭄 완화 프로젝트 및 습지, 물고기 서식지, 물새 서식지를 확장·회복하는 프로젝트.

(2) 재활용.

(3) 깨끗한 음료수 공급.

(4) 주, 지역, 지방의 공원.

(5) 해변 정화.

(6) 쓰레기 제거.

(7) 야생동물 서식지 복구.

(d) 야생자원 보존위원회는 행정 비용으로 환경보호 및 개선 기금 자금의 2퍼센트 이하를 사용해야 한다. 보조금 수령 주체는 행정 비용으로 수령한 자금의 5퍼센트 이하를 사용해야 한다.

(e) 본 장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하기에 앞서서, 야생자원 보존위원회는 프로젝트 권유 및 평가 준칙을 수립해야 한다. 준칙에는 수령하는 보조금 총액의 한도를 포함시킬 수 있다. 준칙을 마무리하기에 앞서, 야생자원 보존위원회는 준칙 초안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대중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세 차례회의의 공중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한 번의 공중 청문회는 북부 California에서 개최하고, 한 번은 Central Valley, 또 한 번은 서부 California에서 개최해야 한다.

(f) (1) 당파를 초월한 California 주 회계 감사관은 본 장에 따라 기금을 수령하는 프로그램의 독립적인 재무 감사를 격년으로 수행해야 한다. California 주 회계 감사관은 그 결과를 주지사와 양원에 보고하고, 자신의 인터넷 웹사이트 상에서 대중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2) (A) California 주 회계 감사관은 본 항이 요구하는 격년 회계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매 감사 별로 사십만 달러(400,000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호 및 개선 기금 자금으로부터 변상받는다.

(B) 매 감사 당 사십만 달러(400,000 달러)의 최대 한도는 모든 도시 소비자들의 소비자 물가지수(CPI-U)에 근거해 산정하는 물가 상승률의 등락을 반영하여 2년마다 조정한다. 재무 관리는 본 항이 요구하는 조정을 계산하여 공표해야 한다.

42273. (a) 기타 일체의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 정부는 특정 종류의 봉지의 무료 배포를 금지하고 기타 종류의 봉지를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지방 법에 따라 벌거나 징수하는 금전을 환경보호 및 개선 기금에 예치하고 제42272절에 기재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b) 본 절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방 법"이란 일체의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현장 도시, 현장 카운티, 특별 구역, 학군, 지방 칼리지, 기타 지방 또는 지역 정부 기구가 채택, 제정, 이행하는 조례, 결의, 법률, 규칙, 법적 권능을 의미한다.

제5절. 자유로운 해석.

본 법은 목적 달성을 위해 자유롭게 해석해야 한다.

제6절. 법안의 충돌.

(a) 특정 또는 모든 유형의 봉지의 무료 배포를 금지하고 판매를 강제하는 법률에 따라 상점이 벌어들이거나 징수한 금전의 사용과 관련한 다른 법안이 본 법안과 동일한 주 투표용지에 표시되는 경우, 그 다른 법안은 본 법안과 충돌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본 법안이 더 많은 찬성표를 얻을 경우 본 법안의 전체 조항이 우선되며 다른 법안의 조항들은 무효가 된다.

(b) 유권자들이 본 법안을 승인하였으나, 충돌하는 다른 안이 동일 선거에서 유권자의 승인을 얻어 본 법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하였다가 그 상충안이 후에 무효화될 경우, 본 법안은 즉시 시행되며 완전한 효력을 발휘한다.

제7절. 분리 가능성.

본 법의 규정들은 분리가 가능하다. 만일 본 법의 일부, 절, 항, 부조항, 문장, 구절, 문구, 단어 또는 그 적용이 어떠한 이유로든지, 관할 법원의 판정에 의해 무효로 선언되어도, 동 판정은 본 법의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California 주민은 본 법의 어느 부분 또는 그 적용이 이후에 무효로 선언되는 것과 상관 없이, 무효 또는 위헌으로 선언되지 않은 본 법 및 각각의 모든 부분, 절, 항, 부조항, 문장, 구절, 문구, 단어 및 그 적용을 채택함을 선언한다.

제8절. 법의 방어.

만약 본 법이 California 유권자들에 의해 승인된 후 연방법에 위반되었다는 법적 이의가 제기되고, 주지사와 검찰총장이 모두 본 법의 방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정부법 제2편 제3부 파트2의 제6장 (제12500절 이하) 및 기타 법률에 포함된 일체의 반대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은 California 주를 대신해 본 법을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독립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b) 독립 변호사의 선임 또는 이후의 개임에 앞서, 검찰총장은 독립 변호사의 자격을 판단함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독립 변호사로부터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본 법을 방어하겠다는 서면 확약을 받아야 한다. 서면 확약은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 열람에 제공해야 한다.

(c) California 주를 대신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본 법을 방어하도록 독립 변호사가 고용하는 비용을 총당하는데 필요한 금액은 회계연도와 상관 없이 일반 기금으로부터 관리자에게 지속적으로 지출한다

발의안 제 66호

California주 헌법 제II조 8항의 조항에 따라 본 발의안을 주민에게 제출한다.

본 발의안은 정부법과 형법의 조항을 수정 및 추가한다. 삭제하도록 제안된 기존 조항은 취소선으로 인쇄되었고, 새로 추가된 조항은 *이탤릭체*로 인쇄되어 새로운 조항임을 명시하였다.

제안 법

제1항. 약제

이 법은 2016년 사형 개혁 및 절약법(Death Penalty Reform and Savings Act)으로 알려지고 이와 같이 인용될 수 있다.

제2항. 주요 조사 결과 및 공표 사항.

1. California의 사형 시스템은 낭비, 지연 및 비효율성으로 인해 비효율적이다. 이를 수정하면 California 납세자들은 매년 수백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이 낭비된 세금액은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범죄 예방, 교육 및 서비스에 사용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2. 살인의 희생자와 그 가족들은 재판과 정당한 법의 절차를 받을 자격이 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살인자들은 229명의 아이들과 43명의 경찰관을 포함하여 1,000명 이상을 살인하였는데, 그 중 235명은 성폭행을 당했고 90명은 고문을 당했다.

3. 살인 희생자의 가족들은 수십 년 동안 재판을 기다리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지연은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을 더욱 힘들게 한다. 예를 들어 8세인 Michael Lyons를 납치, 강간, 고문, 및 살인하고 Bay Area 고등학교 학생인 Julie Connell도 강간, 살인한 연쇄 살인자 Robert Rhoades는 사형 선고를 받고 16년 이상 기다리고 있다. 수백 명의 살인자들이 사형 선고를 받고 20년 이상 대기 중이다.

4. 2012년에 입법 분석가의 사무소(Legislative Analyst's Office)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살인자들을 위한 특별 주택 공급을 없애면 매년 수천만 달러를 절약하게 될 것으로 파악했다. 이러한 저축액은 우리의 학교, 법 집행, 및 커뮤니티에서 우리를 더 안전하게 하는 데 투자될 수 있다.

5. 사형 선고를 받은 살인자들은 감옥에서 일하고 희생자의 권리 장전(Marsy's Law)에 따라 희생자의 가족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일을 하여 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을 거절하면 특권을 없애야 한다.

6. 사형 선고 사례에 대한 기존의 비효율적인 항소 절차의 개혁으로 피고와 희생자들에게 모두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 바로 지금, 사형 선고를 받은 피고들은 항소 변호사의 임명을 위해 오 년 이상을 기다리고 있다. 즉시 변호사를 임명함으로써 피고의 클레임을 더 빨리 들을 수 있게 된다.

7. 피고인이 실제로 무죄임을 주장하는 것은 제한할 수 없지만 하찮고 불필요한 클레임은 제한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은 수십 년간 납세자의 세금을 낭비하고 재판을 지연시켜 왔다.

8. 사형 사례의 이차 검토를 촉진하도록 되어 있는 주 기관은 효율적인 감독 없이 운영되고 있어 장기적인 지연을 야기하고 납세자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 California 대법원이 이러한 주 기관을 감독해야만 책임이 보장된다.

9. 관료적 규제는 불필요하게 사형 선고의 집행을 지연시켜 왔다. 이러한 규제에 대한 반복적인 문제에 낭비되는

지출을 없애면 공정하고 효과적인 재판의 이행이 가능해진다.

10. California 주 헌법은 범죄 희생자들에게 시의 적절한 재판권을 부여한다. 사형 선고는 십 년 내에 주와 연방 법원에서 충분히 공정하게 검토를 할 수 있다. 주의 규칙과 절차를 채택함으로써 희생자들은 시의 적절한 재판을 받고 납세자들은 수억 달러를 절약하게 된다.

11. California의 사형수 수감 건물에는 연쇄 살인자, 경찰 살인자, 어린이 살인자, 대량 학살자, 및 증오 범죄 살인자 등이 있다. 사형 시스템은 무너졌지만 고칠 수 있으며 고쳐야 한다. 이 발의안은 희생자와 피고를 위한 재판을 보장하며, 수억 달러의 세금을 절약하게 될 것이다.

제3항. 형법의 190.6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90.6. (a) 의회에서는 모든 사형 선고를 신속하게 내려야 함을 확인했다.

(b) 그러므로 1997년 1월 1일 이후 사형 선고를 내린 모든 경우에 190.8항 하위 분류 (d)에 따라 완결을 위한 기록 인증 후 7개월 내에 또는 항소자가 완결된 기록을 상담 받은 후 중 선의의 경우를 제외하고 더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주 대법원 항소에서 공개 항소 브리핑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재판 기록이 10,000페이지를 넘는 경우 시한 내에 사법 위원회(Judicial Council)가 채택한 법원 판결에 설정한 절차에 따라 브리핑을 완료해야 한다.

(c) 사형 선고를 1997년 1월 1일 이후 내린 모든 경우에 브리핑 완료 210일 내에 항소를 결정하고 본 안에 도달하는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의회의 목표이다. 그러나, 인신 보호 영장에 대한 항소와 청원이 동시에 심리되는 경우, 청원에 대한 브리핑 완료 후 210일 이내에 청원을 결정하고 본 안에 도달하는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d) California 주 헌법 1조 28항 하위 분류 (b) (9)절에 제공한 대로 범죄 희생자의 즉각적이고 최종적인 판결의 권리는 정당한 시간 내에 사형 판결의 수행 권리를 포함한다. 이 발의안의 발효일 18개월 내에 사법 위원회(Judicial Council)는 사형 항소 및 주 인신 보호 영장 검토의 처리를 촉진하도록 설계된 초기 행정 규칙 및 표준을 채택해야 한다. 처음 규칙을 채택하거나 판결에 들어간 후 더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5년 내에 주 법원은 사형 선고에 대하여 주 항소 및 초기 주 인신 보호 영장 검토를 완료해야 한다. 사법 위원회(Judicial Council)는 사형 선고 검토의 시의 적절성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이 하위 분류에서 제공된 5년의 기간 내에 주 항소와 초기 주 인신 보호 영장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규칙과 표준을 수정해야 한다.

(e) 당사자 또는 대법원이 이 조항에서 제공하는 시한에 부합하거나 준수하지 못하더라도 유죄 판결이 완결될 수 없으며 하위 분류 (b)에서 시한을 준수하기 위한 법원의 사형 선고는 판결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항소 또는 인신 보호 영장 청원의 거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법원이 지연을 정당화하는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이유 없이 준수하지 않는다면 양측 또는 범죄의 어떤 희생자든 명령의 영장에 대한 청원으로 경감을 모색할 수 있다. 청원을 제출한 법원은 제출한지 60일 이내에 행동을 취해야 한다.

피해자의 권리를 시행하기 위한 대기에 관련된 California 주 헌법 1조 28항 하위 분류 (c)의 (1)절은 이 하위 조항과 하위 조항 (d)에 적용된다.

제4항. 형법의 1227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227. (a) 이 법의 1239항 하위 분류 (b)에 따른 항소의 계류 이외의 이유로 사형 판결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 유죄판결을 내렸던 법원은 지역 변호사를 신청하거나 자체적으로 판결을 이행해야 하는 날짜를 지정하는 10일을 지정하는 명령을 하며 이는 그러한 명령을 내린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하여야 하고, 그 이후 즉시. 명령을 한 후 30일 이후에 10일 기간이 시작되고 명령을 한 후 60일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명령을 한 직후에, 법원의 직인에 서기가 증명한 그러한 명령의 인증된 사본은 실행을 위해 등록된 우편물로 피고가 수감된 주 감옥에 전송되어야 한다; 피고가 아직 체포되지 않은 경우 체포 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며 체포되면 법원으로 압송되어 여기에서 법원은 주 감옥으로 안내하는 명령을 내리며 그러한 명령을 내린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의 10일 동안 지정된 시기에 보안관은 피고에게 판결의 이행을 전달하도록 교육을 받는다.

(b) 시간을 정하고 여기에 제공되는 대로 그러한 판결의 실행을 안내하는 명령에는 항소가 있을 수 없다.

제5항. 1239.1항을 형법에 추가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9.1. (a) 사형 선고에서 대법원은 선고의 검토를 촉진할 의무가 있다. 법원은 극빈한 항소자의 경우 가능한 빨리 변호인을 배정해야 한다. 법원은 어쩔 수 없거나 특별한 이유로만 브리핑을 위한 시간의 연장을 허용해야 한다.

(b) 사형 선고에 대한 변호인의 배정에서 실질적 잔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법원은 가장 심각한 비 사형 선고에 배정될 자격이 있고 법원의 배정 목록에 남는 조건으로 사형 선고의 배정을 수용하는 사형 항소의 자격 사항에 부합하는 변호사를 요구해야 한다. 일심 법정에서 판결 시작부터 항소를 위한 변호인 배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연속 12개월 동안 6개월을 초과하면 이 목적에 따라 "실질적 잔무"가 존재한다.

제6항. 1509항을 형법에 추가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509. (a) 이 조항은 사형 선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이 제출하는 인신 보호 영장에 대한 모든 청원에 적용된다. 이 조항에 따른 인신 보호 영장은 사형 선고에 대한 이차적 공격을 위한 독점적 절차이다. 선고를 내린 법원 이외의 어떤 법원에서든 제출된 청원은 이 청원을 또 다른 법원에서 들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면 즉시 해당 법원으로 전달해야 한다. 선고를 내린 법원에서 제출 또는 이곳으로 전달된 청원은 판사를 이용할 수 없거나 다른 판사에게 이 사례를 할당할만한 다른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원래 재판 판사에게 할당되어야 한다.

(b) 일심 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내린 후 이 법원은 정부법의 68662항에 제시한 대로 수감자에게 변호인을 제공해야 한다.

(c) 하위 분류 (d) 및 (g)에서 제공된 경우를 제외하고 최초 청원은 정부법 68662항에 따라 명령을 내린 후 1년 내에 제출해야 한다.

(d) 하위 분류 (c)에 따라 시의 적절하지 않은 초기 청원 또는 이후 청원은 법원에서 재판 시에 허용되든 그렇지 않은 모든 가능한 증거를 놓고 피고가 실제로 기소된 범죄에 대하여 무죄인지 또는 선고가 부적절한지를 판단하지 않는 한 제출할 때마다 기각되어야 한다. 법원에서 청원자가 실제 무죄 또는 부적격성을 크게 주장함을 확인하지 않은 한 이후 또는 시의 적절하지 않은 청원을 고려할 목적으로 형의 집행 정지를 허가할 수는 없다. "사형 선고 부적격"은 선고자의 재량 범위를 벗어나는 선고 환경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부적격성 클레임은 190.2항의 하위 분류 (a)에서 어떤 특별 경우도 사실이 아니라는 클레임, 피고가 범죄 당시 18세 미만이었다는 클레임, 또는 1376항에 정의한 대로 피고가 지적 장애가 있다는 클레임을 포함한다. 190.3항에서 선고 결정에 관련된 클레임은 이 조항의 목적에 따라 실제 무죄 또는 부적격성의 클레임이 아니다.

(e) 하위 분류 (d)에서 무죄 또는 부적격성을 주장하는 청원자는 청원자나 청원자의 현재 또는 이전 변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죄 또는 적합성에 관련된 모든 자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청원자가 의도적으로 이 하위 분류에서 요구하는 공개를 하거나 변호인의 공개를 허가하지 않는 경우 청원은 기각될 수 있다.

(f) 이 조항에 따른 소송은 공정한 판결과 일치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상급 법원은 법원이 실제 무죄의 실질적 클레임을 해결하기 위해 지연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기한지 1년 내에 최초 청원을 해결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법원은 이 청원을 해결하는데 2년 이상 걸려서는 안 된다. 최초 청원의 판결 시 법원은 판결의 실제 법적 근거를 설명하는 판결 설명서를 발행해야 한다.

(g) 인신 보호 영장 청원이 이 조항의 유효일에 미결 상태인 경우 법원은 선고를 내린 법원으로 이 청원을 전달할 수 있다. 이 조항의 유효일 이전에 사형 판결을 내렸으나 이 조항의 유효일 전에 인신 보호 영장 청원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 하위 분류 (c)에서 금지할 수 있는 청원이 이 조항의 유효일 1년 내 또는 이전 법에서 허용되는 시간 내 중에 더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제출될 수 있다.

제7항. 1509.1항을 형법에 추가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509.1. (a) 1509항에 따른 최초 청원에서 양측은 상급 법원의 판결을 항소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인신 보호 영장을 허가 또는 거절한 법원의 결정 후 30일 내에 상급 법원에 항소 통지를 제출하여 항소를 한다. 이후 청원은 인신 보호 구제의 거절을 검토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b) 하위 분류 (a)에 따라 항소로 간주되는 사안은 상급 법원에서 제기되는 클레임으로 제한되지만, 인신 보호 변호인이 상급 법원에 그 클레임을 제출하지 못하여 유효하지 않은 지원으로 간주되는 경우 항소 법원은 재판

변호인의 유효하지 않은 지원에 대한 클레임을 고려할 수도 있다. 별도의 사실 확정이 필요한 경우 항소 법원은 이 클레임을 고려하기 위해 상급 법원에 제한된 재유치를 할 수 있다.

(c) 사람들은 이후 청원에서 완화를 허가하는 상급 법원의 결정에 항소할 수 있다. 상급 법원 또는 항소 법원에서 항소 인증서(certificate of appealability)를 허용하는 경우에만 청원자는 이후 청원에서 완화를 거절하는 상급 법원의 결정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 인증서는 청원자가 완화를 위한 실질적 클레임(인증서에 표시됨)과 1509항의 하위 분류 (d) 요건에 부합한 실질적 클레임을 모두 보여준 경우에만 이 하위 분류에 따라 발행할 수 있다. 법원의 결정 후 30일 내에 상급 법원에 항소 통지를 제출하여 이 하위 분류에 따라 항소를 한다. 상급 법원은 청원에서 경감을 거절하는 결정과 동시에 항소 인증서를 허가 또는 거절해야 한다. 항소 법원은 인증서 신청 10일 내에 항소 인증서 요청을 허가 또는 거절한다. 항소 법원의 관할은 인증서에 확인된 클레임과 항소 통지 60일 내에 항소 법원에서 추가한 별도의 클레임으로 제한된다. 이 하위 분류에 따른 항소는 다른 모든 문제보다 우선 순위가 높으며 최대한 신속히 판결해야 한다.

제8항. 2700.1항을 형법에 추가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2700.1. 2700항은 본 조항에서 별도로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재소자에게 적용된다.

살인죄가 적용되어 사형 선고를 받고 3600~3602항에 따라 교정 및 재활부(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Rehabilitation)에 수감 중인 모든 사람들은 이 부서의 규칙과 규정에 명기한 대로 수감되어 있는 시간 동안 매일 정당한 노동을 해야 한다.

체육 및 체력 프로그램은 이 조항의 목적에 따른 일로 적합하지 않다. 교정 및 재활부는 본 조항에서 요구하는 노동을 거절하는 사형수 재소자의 특권을 철회할 수 있다.

사형수 재소자에게 손해배상 벌금 또는 손해배상 명령이 있는 모든 경우에 교정 및 재활부 장관은 사형수 재소자의 임금과 수입의 출처에 관계 없이 신탁 계정 예치금 중 더 적은 쪽에서 상환할 금액의 70%를 공제하여 2085.5 및 2717.8항에 준하여 교정 및 재활부의 규칙 및 규정에 따라 California Victim Compensation and Government Claims Board에 그 기금을 전달해야 한다.

제9항. 형법의 3600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3600. (a) 모든 남성은 사형 선고를 받으면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 부에서 지정하는 California 주 교도소장에게 이전되어야 하며, 하위 분류 (b)의 경우를 제외하고 판결의 집행 시까지 그곳에 있어야 한다. 재소자는 판결의 집행 시까지 California 교도소에 있어야 한다. 이 부는 재소자들이 재소자에게 충분한 보안 수준을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또 다른 교도소로 이전시킬 수 있다. 재소자는 집행일이 결정된 후 사형 집행을 위해 지정된 교도소로 되돌아와야 한다.

(b) 법의 다른 모든 조항에도 불구하고;

(1) 사형 선고 받은 재소자가 교도소에 있는 동안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갇힌 또는 파괴적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도록 명령하면 교정부에서 확립한 규정에 준하여 San Quentin 주 교도소에서의 징벌적 제재 및 분류 행동에 따라 Sacramento의 California 주 교도소에서 교정 책임자(Director of Corrections)가 지정하는 사형 선고자용 독방에 수감된다.

(A) 살인.

(B) 중상 또는 치명적 부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무기나 물리적 힘을 이용한 폭행.

(C) 힘을 이용한 탈출 또는 그 시도.

(D) 안전성 또는 보안을 크게 위협하는 중대한 규칙의 반복적인 위반.

(2) Sacramento의 California 주 교도소에서의 사형 선고자 수감 프로그램은 사형 선고 재소자를 이전하기 전에 완벽히 운영되어야 한다.

(3) 사형 선고 재소자를 감독하기 위한 전문 교육 프로토콜은 사형 선고 재소자를 감독하는 Sacramento의 California 주 교도소 라인 스태프와 감독관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4) 의료 또는 정신 건강 상의 필요가 재소자 또는 다른 이를 위험에 빠뜨릴 만큼 중대한 재소자는 교정부에 확립된 규정에 준하여 의료 또는 정신 건강 치료를 위해 California Medical Facility 또는 기타 적절한 기관에 수용될 수 있다. 재소자는 상태가 충분히 치료되거나 완화된 경우 이전 기관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c) 하위 분류 (b)에 따라 수감된 경우 다음을 적용해야 한다:

(1) San Quentin 주 교도소의 B급 사형수 재소자에게 제공되는 특권에 관련된 이 지방 절차와 분류 절차는 3600 항 하위 분류 (b) (1)절에 준하여 수감된 사형수 재소자에 대하여 Sacramento의 California 주 교도소에서 비슷하게 도입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류 절차는 90일 이상마다 분류 검토의 권리와 San Quentin 주 교도소로 되돌아가기 위한 청원 기회를 포함해야 한다.

(2) San Quentin 주 교도소에 수감된 사형수 재소자가 이용할 수 있는 비슷한 변호사 클라이언트 이용 절차는 Sacramento의 California 주 교도소에서 교정 책임자(Director of Corrections)가 지정한 안전한 사형수 수감장소에 수용된 사형수 재소자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의료 또는 정신 건강 치료를 위한 기관에 수용된 사형수 재소자에 대한 변호사 클라이언트 이용은 기관의 방문 절차 및 적절한 치료 프로토콜에 상응해야 한다.

(3) 하위 분류 (b)에 따라 사형수 독방에 수감된 사형수 재소자는 예정된 집행일로부터 60 일 이전에 San Quentin 주 교도소로 되돌아가야 한다.

(4) 하위 분류 (b)의 (1)절에 따라 사형수 재소자는 15명을 초과하여 재수용할 수 없다.

(d) San Quentin 주 교도소에서 사형 선고자의 재배치 이전에 법안 또는 다른 어떤 수단을 통해 제안하는 전기 울타리를 포함한 최대 보안 수준 IV, 180도 수용 단위 시설에 대하여 교정부에서 사형수 재소자의 안전한 수용 및 집행에 적합한지 평가해야 한다.

제10항. 형법의 3604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3604. (a) 사형은 교정교화부 지침에 따라 확립된 기준에 의거, 유독 가스를 집행하거나 치사량의 약물을 정맥 주사하여 집행한다.

(b) 본 하위절 효력일 이전 또는 이후에 사형 선고를 받은 자는 유독 가스 또는 약물 주사 중에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교정교화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교도소장에게 제출한다. 이 하위절의 효력발생일 후 집행장이 교부되어 교도소장이 안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형수가 유독 가스 또는 약물 주사 중에서 선택하지 않으면 약물 주사로 사형을 집행한다.

(c) 집행일로 정해진 날짜에 형을 집행하지 않고 이후 새로운 집행 날짜가 정해진 사형수는 (b)항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다시 한 번 유독 가스 아니면 약물 주사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d) (b)절에도 불구하고 (a)절에 기술된 집행 방식 중 어느 쪽도 유효하지 않을 경우 (a)절에 기술된 대체 방식으로 사형을 집행한다.

(e) 교정교화부 또는 사형 판결 집행 의무가 있는 후임 기관은 늘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

제11항. 3604.1항을 형법에 추가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3604.1. (a) 행정절차법은 3604항에 따라 공포한 기준, 절차, 규제에 적용하지 않는다. 교정교화부는 해당 조항 (a)절 하에서 채택한 기준을 공개하고 사형수에게 적용해야 한다. 교정교화부는 수감자의 형집행 날짜가 정해지는 경우, 또는 기준 수정이나 채택으로 인해 집행일 지정 신청이 보류되는 경우 법무장관, 주의 국선 변호인, 변호인에게 즉시 알린다. 본 하위절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해서 집행 정지 또는 집행 정치 가처분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기준에 의문을 제기할 수감자 능력에 대한 편견으로 준수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이며 이 경우 정지는 최대 10일로 제한한다.

(b) 3604항 (a)절에도 불구하고 약물 주사 집행 실행 시 수감자 상태가 정맥 주사가 불가능하다고 교도소장이 판단하는 경우 정맥 외 다른 방식으로 주사할 수 있다.

(c) 집행 방식이 헌법에 위배되거나 달리 유효하지 않다는 수감자의 주장을 공판하는 배타적 사법권은 사형 판결을 내린 법원이 갖는다. 그러한 주장은 선의가 아닌 상태로 주장의 표명이 지연된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기각된다. 방식이 유효하지 않음이 발견될 경우 법원은 유효한 집행 방식을 이용하라고 명령해야 한다. 집행 방식의 이용이

연방 법원의 명령인 경우 교정교화부는 90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서 발견한 바대로 연방 요건에 합치하는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교정교화부가 판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일체의 의무 수행에 실패할 경우 사형 판결을 내린 법원은 자체 신청, 지방검사나 법무장관의 신청, California 헌법 1조 28항 (e)절에 정의한 범죄 희생자의 신청으로 해당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한다.

제12항. 3604.3항을 형법에 추가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3604.3. (a) 사망 선고 목적으로 의사가 형장에 참석할 수 있으며 수감자의 고통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형집행 방법을 개발할 목적으로 교정교화부에 조언할 수 있다.

(b) 형집행 실행에 필요한 약물과 의약품 및 의료 장비의 구입은 사업 및 전문법 2부 9장(4000항으로 시작) 조항의 대상이 아니며, 이 장의 조항을 실행할 때는 약사 또는 약물의 공급자, 조제자, 제조자가 처방 없이 약물과 의약품을 조제해서 서기관이나 서기관의 피지명자에게 제공할 권한이 있다.

(c) 의료 전문가의 의료 행위, 증명, 면허 발급을 감독 또는 규제하는 면허이사회, 부서, 위원회, 인가기관은 면허를 소지한 채 본 조항에서 공인된 행위를 실시한 의료 전문가의 면허나 인증을 거부 또는 철회하거나, 징계, 문책, 정지, 박탈할 수 없다.

제13항. 68660.5항을 정부법에 추가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68660.5. 이 장의 목적은 미국 연방법 28권 154장 하에서 California주에 연방 인신보호 청원 처리 자격을 부여하고, 사형 사건에서 주의 인신보호 절차 완수를 신속히 처리하며, 주의 사형수 인신보호 자질에 대한 진술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본 장은 그러한 목적과 일치되도록 해석하고 관리한다.

제14항. 정부법의 68661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68661. 이로써 주 정부 사법분과에 California Habeas Corpus Resource Center를 설립하고 다음과 같은 일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수행한다.

(a) 68661.1항의 제한을 조건으로 해당인에게 내려진 판결 또는 선고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사면 청원을 준비하며 주와 연방 법원에서 유죄-선고 후 조차 인신보호 청원을 시작하고 추진할 목적으로 68662항에 의해 대법원이 임명할 수 있는 최대 34인의 변호인을 이용해 본 주에서 변호인 없이 유죄 선고를 받고 사형 선고를 받은 자, 적법한 관할 법원에서 무자력자로 판정된 자를 대변하기 위하여. 그러한 임명은 주의 국선 변호인 또는 California 주 헌법 VI조 11항 직접 항소 목적의 다른 변호인 임명과 병행할 수 있다.

(b) 연방 법원에서 무자력자에 대변인을 제공하고 연방 신탁기금을 통해 지불을 처리할 때 미국 연방법 18권 3006A항에 따른 대리 및 비용 변제를 구하기 위하여.

(c) 대법원 법정과 협의하여 사형 인신보호 사건 임명에 민간 변호직 구성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d) 변호인의 등록부 포함 여부의 최종 결정을 대법원에서 결정하고 센터에 위임할 수 없다는 조건 하에, 사형 사건에서 유죄-선고 후 인신보호 절차에 자격이 있는 변호인 명단에 포함시킬 변호사를 대법원에 확립하고 정기적으로 갱신하길 추천하기 위하여.

(e) 사형 사건에서 유죄-선고 후 인신보호 절차를 지원할 수 있는 경험 많은 적임 조사자와 전문가 명단을 확립하고 정기적으로 갱신하길 위하여.

(f) 서비스 제공 대상이 대법원에서 임명한 사설 변호인이고 임명된 변호인과 센터 간 계약에 의거한 서비스라는 조건 하에, 임명된 변호인의 요청 시 변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조사자와 전문가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g)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적절한 유죄-선고 후 인신 보호 처리에서 임명된 변호인에게 법적 조언이나 기타 조언을 혹은 달리 이용할 수 없는 기타 자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h) 사형 사건에서 유죄-선고 후 인신 보호 처리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반복적 문제에 대하여 간단한 변론을 전개하고 이를 임명된 변호인이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i) 사건을 평가하고 법원에 의한 타당한 변호인 배치를 추천하기 위하여.

(j) 업무를 지원하고 필요하면 사건 진행 모니터링을 제공하기 위하여.

(k) 사건 청구서 발송을 제 때 검토하고 민간 변호직 구성원의 보상을 법원에 권고하기 위하여.

(l) 센터는 유죄-선고 후 인신 보호 사형 사건에서 무자력자에게 임명된 변호인의 상태와 센터 운영에 대하여 주민, 입법부, 주지사, 대법원에 매년 보고해야 한다. 2000년 1월 1일 당일이나 이전에 입법 분석관실은 읽여볼 수 있는 보고서를 평가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센터가 대변인을 제공 중인 모든 사건 명단이 명기되어야 한다. 어느 법원이든 일 년 이상 보류 중인 각 사건에 대하여, 이 보고서는 지연 사유와 사건 종결을 위해 센터가 기울이고 있는 조치를 서술해야 한다.

제15항. 68661.1항을 정부법에 추가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68661.1. (a) 센터가 연방 인신 보호 청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을 대리할 수 있는 경우는 (1) 센터가 연방 인신 보호에서 그 사람을 대변하도록 임명되고, (2) 연방 법원이 해당 목적으로 센터를 임명하고, (3) 연방 법원에서 나온 보상으로 변호 비용을 모두 감당할 수 있다는 상임이사의 판단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미국 연방법 28권 1257항에 따른 대법원 심사 외에, 센터나 기타 주 기금을 받는 사람이나 주체는 연방 법원에서 사형 사건에 대한 California 법원 판결을 공격하는 데 주 기금을 지출할 수 없다.

(b) 센터는 인신 보호 외에 판결의 부수적 공격을 구성하거나 판결 집행을 지연 또는 방지를 추구하는 행동에 참여하는 자 누구도 변호하도록 승인되지 않는다. 센터는 본 조항 또는 68661항의 명시적 승인 외에 다른 형태의

변호에 기금을 지출하거나 다른 소송에 연루되어서는 안 된다.

제16항. 정부법의 68662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68662. 대법원 선고를 내린 상급 법원은 사형 선고를 받은 모든 한 명의 주 죄수들 죄수를 주의 유죄 선고 후 법적 절차를 목적으로 변호할 변호인을 임명하고 다음 중 한 가지를 포함하도록 명령한다.

(a) 해당인이 무자력자임을 알고 변호인 임명을 수락한 즉시 혹은 해당 제안을 수락할지 거부할지 여부를 충분히 결정할 수 없음을 아는 즉시 형법 1509항에 따른 유죄 선고 후 상태 법적 절차에서 죄수를 변호할 변호인을 한 명 이상 임명.

(b) 필요하다면 심리를 거친 후 죄수가 변호인 임명 제안을 거부하고 이 결정의 법적 결과를 완전히 이해한 상태로 결정했다는 결론.

(c) 무자력자가 아니라는 결론으로 변호인 임명을 거부.

제 17항. 정부법의 68664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68664. (a) 센터는 센터의 일상 운영에 책임을 지는 상임이사가 관리한다.

(b) 상임이사 선정은 다섯 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상원의 확인을 받는다 각 항소 계획에서 이사회 구성원 중 한 명을 임명해야 하며, 이사회 전원은 변호사로 구성한다. 단, 판사, 검사, 법집행 기능을 가진 자로 채용된 변호인은 이사회에 선임될 수 없다 대법원에서 결정한다. 상임이사는 이사회 대법원의 의지대로 복무한다.

(c) 이사회의 각 구성원은 사 년 임기로 임명되며, 공석이나 발생하면 원래 임명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충한다. 이사회 구성원에게는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나 의무 수행 시 합리적이고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변상된다. 이사회의 첫 구성원은 늦어도 1998년 2월 1일까지 임명한다. 상임이사는 센터가 제공하는 모든 변호 업무가 효과적인 대변 업무와 일관된 방식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종료되도록 한다.

(d) 상임이사는 15400항에 명시한 주의 국선 변호사 임명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e) 상임이사는 2권 3부 1편 6장(11550항으로 시작) 상임이사 주의 국선 변호사에 명시된 급여를 받는다. 그 외 센터에 채용된 모든 변호인은 주의 국선 변호사실 동일 지위에 준하는 보상을 받는다.

제18항. 정부법의 68665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68665. (a) 사법위원회와 대법원은 법원 규칙에 따라 사형 직접 항소와 인신 보호 절차의 보호인 임명에 있어서 구속력 있는 필수 역량 기준을 채택하고, 필요하다면 재평가를 통해 해당 기준이 (b)절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b) 기준을 정하고 재평가할 때 사법위원회와 대법원은 효과적으로 변호하는 데 필요한 자격, 변호인 이용 가능 인력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일을 피해 적시에 임명할

필요성, 미국 연방법 28권 154장 자격을 충족하는 기준을 고려한다. 경력 요건은 변호 경험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제19항. 유효일자. 이 법에서 더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의 모든 조항은 제정 즉시 효력을 발휘하고 효력일 당일 또는 이후에 실시되는 모든 법적 절차에 적용한다.

제20항. 수정. 이 법의 법조항은 상하원 각각 일지에 기록한 호명표결로 통과된 법령, 상하원 각각 의원 사분의 삼이 동의한 법령, 유권자가 승인할 때에만 효력을 발휘하는 법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법부에 의해 개정되지 않는다.

제21항. 분리 가능 조항/상충 법안/입장.

이 법의 어느 조항, 어떤 조항의 일부,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적용이 어떤 이유로든 유효하지 않거나 헌법에 위배된다고 간주될 경우, 그러한 무효 혹은 헌법 위배성 조항 없이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나머지 조항과 적용에는 영향이 없고 여전히 전면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며 이를 위해 이 법의 조항은 분리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종합적 법안이 될 의도로 작성하였다. 사형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이 법안과 다른 법안들이 동일한 주 전역 선거 투표지에 수록될 경우 이는 사람의 의도이며 다른 법안(들)의 조항과 본 법안이 상충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본 법안이 더 많은 찬성표를 얻을 경우 본 법안의 전체 조항이 우선권을 가지며 다른 법안(들)의 조항들은 모두 무효가 된다.

California 주민은 이 법의 지지자가 이 법을 변호하는 데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노력을 가지고 있음을 선언하며, 일체의 법적 절차에서 그러한 법적 절차에 개입하든 아니면 주에서 이 법의 변호를 포기하거나 이 법에 반하는 부정적 판결 항고를 거부할 경우 주민과 주를 대신해 이 법을 변호하든, 지지자에게 이 법을 변호할 공식 권한을 부여한다. 주에서 변호를 거절하거나 이 법에 반하는 부정적 판결에 대한 항고를 거절했기 때문에 지지자가 법적 절차에서 이 법을 변호하는 경우, 해당 지지자는 주민과 주의 대리인으로서 행동하고, 그러한 법적 절차에서 그러한 당사자에 대한 모든 윤리적, 법적, 수탁 의무의 대상이 되며, 그러한 법적 절차에서 주민과 주를 대신해서 행동할 제한적인 목적으로 California주 헌법 20조 3항에 규정된 복무 선서를 수용하고 선서하며, 합리적인 법적 수수료와 관련 비용을 주에서 회수할 권리가 있다.

발의안 제 67호

2013-2014 정기 회기의 주 상원 법안 270에 의해 발의된 본 법안(2014년 제정법, 850장)은 California 주 헌법 II 조의 9항에 따라 California 주민에게 주민 투표로 제안된 것이다.

본 발의안에서는 공공자원법 (Public Resources Code) 에 절 (section) 을 추가한다. 따라서, 새로 추가하도록 제안된 조항이 신규 조항임을 나타내기 위해 *이탤릭체*로 인쇄한다.

제안 법

제1절. 챕터 5.3 (섹션 42280부터 시작) 가 공공자원법 30부 파트 3에 추가되며 다음과 같다:

제5.3장. 일회용 봉지

제1조. 정의

42280. (a) "부"는 자원재활용회복부 (Department of Resources Recycling and Recovery) 를 뜻한다.

(b) "소비 후 재활용 재료"는 제품의 목적과 수명 주기를 마치고 고체 폐기물이 될 수 있었던 재료를 뜻한다. 소비 후 재활용 재료는 제조 및 조립 단계에서 생성되어 일반적으로 재사용되는 재료와 부산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c) "재활용 종이 봉지"는 상점에서 고객에게 판매 시 제공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종이 봉지를 뜻한다:

(1) (A) (B) 항에서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 소비 후 재활용 재료를 40 퍼센트 이상 포함함

(B) 8 파운드 이하의 재활용 종이 봉지는 20 퍼센트 이상의 소비 후 재활용 재료를 포함해야 한다.

(2) 주에서 도로 가 재활용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가정 대부분의 도로 가 재활용품으로 수거됨

(3) 봉지에 제조사명과 제조국, 소비 후 재료의 최소 비율을 표기함

(d) "재사용 식료품 봉지"는 상점에서 고객에게 판매 시 제공하며 섹션 42281의 조건을 충족하는 봉지를 뜻한다.

(e) (1) "재사용 식료품 봉지 제조자"는 다음을 수행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뜻한다:

(A) 상점에서 판매하거나 배포할 재사용 식료품 봉지를 제조하는 개인이나 법인

(B) 상점에서 판매하거나 배포할 재사용 식료품 봉지를 수입하는 개인이나 법인

(C) 재사용 봉지를 상점에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개인이나 법인

(2) "재사용 식료품 봉지 제조사"는 (1)항의 (A)나 (B)에 지정된 제조사나 수입자가 있는 경우 상점을 포함하지 않는다.

(f) (1) "일회용 봉지"는 플라스틱이나 종이, 기타 재료로 만들어 상점에서 고객에게 판매 시 제공하며 섹션 42281의 조건을 충족하는 재활용 종이 봉지나 재사용 식료품 봉지에 해당하지 않는 봉지를 뜻한다.

(2) 일회용 봉지는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다:

(A) 사업직업규약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2부의 챕터 9 (섹션 4000부터 시작) 에 따라 약국에서 처방약을 구입하는 손님에게 제공하는 봉지

(B) 재활용 봉지나 재사용 식료품 봉지, 분해성 플라스틱 봉지에 물건을 담을 때 다른 물건으로 인해 손상이나 오염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손잡이가 없는 봉지

(C) 랩으로 감싸지 않은 식품을 담기 위해 제공하는 봉지

(D) 옷걸이에 건 의류 위에 덮도록 만든 손잡이가 없는 봉지

(g) "상점"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소매 업체를 뜻한다:

(1) 연매출이 이백만 달러 (\$2,000,000) 이상이며 건조 식품, 통조림, 비식품 제품, 음식물 등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는 셀프서비스 소매점

(2) Bradley-Burns 균일지역 매출세 및 이용세법(Bradley-Burns Uniform Local Sales and Use Tax Law) (수익 및 과세법 2부 파트 1.5 (섹션 7200부터 시작))에 따라 매출세나 이용세가 발생하는 공간 면적이 10,000 평방피트 이상이며 사업직업규약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2부 챕터 9 (섹션 4000부터 시작) 에 따른 약국 면허를 소지하고 있음.

(3) 일반적으로 우유, 빵, 음료수, 스낵 등 한정된 상품을 판매하며 주류음료관리부 (Department of Alcoholic Beverage Control) 에서 발급한 Type 20 또는 Type 21 면허를 소지한 편의점이나 식료품점, 기타 법인

(4) 구내에서 소비하는 제품의 소매업에 종사하며 주류음료관리부 (Department of Alcoholic Beverage Control) 에서 발급한 Type 20 이나 Type 21 면허를 소지한 편의점, 식품점 또는 기타 법인

(5) (1), (2), (3), (4) 항에 속하지 않으나 본 장에 따라 상점에 적용되는 조건을 자발적으로 준수할 것에 동의한 소매 업체는 본 장에 따라 상점에 부과되는 조건을 준수할 것을 취소 불능 조건으로 통지하며 섹션 42284에 따라 마련된 조건을 준수한다.

제2조. 재사용 식료품 봉지

42281. (a) 2015년 7월 1일 이후 섹션 42280 하위조항 (g)의 (1) 또는 (2)항에 정의된 상점은 판매 시 고객에게 제조사가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 인증한 재사용 식료품 봉지만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

(1) 손잡이가 있으며 본 조의 규정에 따라 125회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됨.

(2) 15 리터 이상의 용량을 가짐.

(3) 세탁기로 세탁이 가능하거나 청소와 살균이 가능한 재료로 제조함

(4) 다음과 같은 정보를 고객이 볼 수 있도록 봉지에 인쇄하거나 봉지에 부착하여 제거하지 않는 태그에 명시함:

(A) 제조사 이름

(B) 봉지의 제조국

(C) 봉지를 125회 이상 재사용 가능함을 표시한 문구

(D) 주 내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봉지인 경우 봉지를 상점이나 기타 적절한 재활용 장소에 반환할 것에 대한 안내 주 내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봉지는 재활용 화살표 기호나 연방거래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 지침에 맞게 "재활용(recyclable)"이라는 단어를 포함해야 한다.

(5) 공중 보건에 위협이 되는 납이나 카드뮴, 기타 독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음. 재사용 봉지 제조사는 연방 식품의약품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으로부터 승낙서를 받아 본 조건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다. 본 조건은 보건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20부의 챕터 6.5 14조 (섹션 25251부터 시작)에 따른 독성물질관리부 (Department of Toxic Substances Control)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건안전법의 섹션 25257.1 하위조항 (c)에도 불구하고 재사용 식료품 봉지는 이미 규제를 받는 제품 카테고리나 규제가 적용되는 카테고리로 분류되지 않는다.

(6) 재사용 식료품 봉지 제조사가 재활용이 가능함을 청구한 경우, 재활용 청구와 관련하여 연방규정집 (Code of Federal Regulations) 제16조 파트 260 섹션 260.12 를 준수함

(b) (1) 하위조항 (a) 에 추가하여 플라스틱 필름으로 제조한 재사용 식료품 봉지는 다음의 모든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A) 2016년 1월 1일 이후 소비 후 재활용 재료를 20 퍼센트 이상 넣어 제조해야 한다.

(B) 2020년 1월 1일 이후 소비 후 재활용 재료를 40 퍼센트 이상 넣어 제조해야 한다.

(C) 본 주에서 재활용이 가능해야 하며 상점 재활용 프로그램에 따라 상점에서 반납을 수락해야 한다 (챕터 5.1 (섹션 42250부터 시작)).

(D) 여기에는 하위조항 (a) (4)항에 따라 봉지나 태그에 명시해야 하는 정보에 추가하여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봉지의 일부나 전체를 소비 후 재활용 재료로 만들었다는 문구와 소비 후 재료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E) 봉지는 22 파운드의 무게를 담고 175 피트의 거리를 125회 이상 이동할 수 있어야 하며 두께는 미국재료시험학회(American Society of Testing and Materials (ASTM)) 표준 D6988-13에 따른 측정 시 2.25 mils 이상이어야 한다.

(2) 미국재료시험학회(American Society of Testing and Materials (ASTM)) 국제 분해성 플라스틱 표준 사양 D6400을 충족하는 플라스틱 필름은 (1)항의 (A)나 (B)를 충족할 필요는 없으나 분해성 플라스틱에 관한 주 법률에 따른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c) 하위조항 (a) 에 추가하여 플라스틱 필름이 아닌 나일론,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타이벡 등 다른 천연 소재나 합성 직물로 만든 재사용 식료품 봉지는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1) 재봉을 해야 한다.

(2) 22 파운드의 무게를 담고 175 피트의 거리를 125회 이상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3) 최소 직물 무게는 평방미터 당 80 그램 이상이어야 한다.

(d) 2016년 7월 1일 이후 섹션 42280, 하위조항 (g) (3), (4), (5)항에 정의된 상점은 본 섹션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42281.5. 2015년 7월 1일 이후 플라스틱 필름으로 만든 재사용 식료품 봉지 제조사는 섹션 42282에 따라 제삼자 인증 법인으로 부터 인증을 받지 않은 한 본 주 내에서 재사용 식료품 봉지를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없다. 제조사는 제조사가 만든 재사용 식료품 봉지가 본 조의 조항을 준수함을 증명하는 인증 근거를 제출해야 한다. 인증 근거는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a) 모든 소비 후 재활용 재료의 출처 및 소비 후 재활용 재료 공급자에 관한 이름, 위치, 연락처 정보

(b) 재사용 식료품 봉지 제조사의 소비 후 재활용 재료 구매 수량 및 구매일자

(c) 소비 후 재활용 재료 입수 방법

(d) 소비 후 재활용 재료를 적절한 세척 장비로 세척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

42282. (a) 2015년 7월 1일 이전부터 자원재활용회복부는 본 조의 해당 조건을 모두 준수하여 주 내에서 제조, 수입, 판매, 배포되며 상점에 판매나 배포를 위해 제공되는 각 유형의 재사용 식료품 봉지에 대해 제삼자 인증 법인이 작성하고 위증 처벌 조건으로 제출한 재사용 식료품 봉지 인증을 접수한다. 인증 근거는 섹션 42282.1에서 정한 인증 수수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b) 재사용 식료품 봉지 제조사는 자원재활용회복부에 2 년에 한 번씩 하위조항 (a)에 명시된 인증 근거를 제출한다. 재사용 식료품 봉지 제조사는 이전에 인증된 재사용 봉지에 미관 상 변경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다른 변경을 적용한 경우, 자원재활용회복부에 제삼자 인증 기관이 수행한 갱신된 인증 근거를 제출해야 한다. 본 하위조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삼자 인증 법인이 수행한 인증 근거 갱신을 하지 않은 재사용 봉지에 대하여 하위조항 (e)의 (1), (2)항에 따라 자원재활용회복부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제거한다.

(c) 제삼자 인증 법인은 인가를 받은 (ISO/IEC 17025) 독립 연구소에 해당해야 한다. 제삼자 인증 법인은 제조사의 재사용 식료품 봉지가 섹션 44281의 조건을 충족함을 인증해야 한다.

(d) 자원재활용회복부는 온라인으로 인증 근거를 수령하는 시스템을 제공해야 한다.

(e) 2015년 7월 1일 이후 자원재활용회복부는 다음을 포함한 목록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시해야 한다:

(1) 인증된 식료품 봉지 제조사의 이름, 위치, 연락처 정보

(2) 필수 인증을 제출한 재사용 식료품 봉지 제조사

(f) 재사용 식료품 봉지 제조사는 주 내에서 제조, 수입, 판매, 배포되며 상점에서 판매, 배포하도록 제공되는 재사용 식료품 봉지가 본 조의 조건을 충족함을 확인하는 적합한 인증 테스트 결과를 자원재활용회복부에 제출해야 한다.

(1) 개인은 재사용 식료품 봉지 제조사를 관할하는 카운티의 고등 법원에 본 섹션에 따라 인증 검토 신청을 제출함으로써 재사용 식료품 봉지 제조사의 인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재사용 식료품 봉지 제조사가 본 조의 조건을 준수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2) (1)항에 따라 이의 제기를 받은 재사용 식료품 봉지 제조사는 법원 판결이 미정 상태인 동안에는 본 조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3) 법원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원재활용회복부에 하위항목 (e)에 따라 게시된 목록에서 재사용 식료품 봉지 제조사를 제거하거나 유지하도록 지시한다.

(4) 법원이 자원재활용회복부에 재사용 식료품 봉지 제조사를 목록에서 제거하도록 지시한 경우, 재사용 식료품 봉지 제조사는 법원 판결일로부터 1년 동안 게시 목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2282.1. (a) 재사용 식료품 봉지 제조사는 하위조항 (b)에 따른 수수료를 섹션 42281.5 및 42282에 따른 인증이나 재인증 근거 제출 시 자원재활용회복부에 납부해야 한다.

(b) 자원재활용회복부는 본 조를 이행하는데 발생하는 합당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지만 초과하지는 않도록 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정 인증 수수료 표를 마련해야 한다. 자원재활용회복부는 본 섹션에 따라 납부된 모든 자금을 주 재무국장이 마련한 재사용 식료품 봉지 기금에 적립한다. 행정법전 섹션 11340에도 불구하고 이 기금의 자금은 회계연도에 관계 없이 지속적으로 본 조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 지출될 수 있다.

제3조. 일회용 봉지

42283. (a) 하위조항 (e)에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 2015년 7월 1일부터 섹션 42280 하위조항 (g) (1) 또는 (2) 항에 정의된 상점은 판매 시 고객에게 일회용 봉지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b) (1) 2015년 7월 1일 이후 섹션 42280 하위조항 (g) (1) 또는 (2)항에 정의된 상점은 본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판매 시 재사용 식료품 봉지를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없다.

(2) 2015년 7월 1일 이후 섹션 42280 하위조항 (g) (1) 또는 (2) 항에 정의된 상점은 섹션 42281의 조건을 충족하는 식료품 봉지를 제품 판매 시 구매하도록 할 수 있다.

(3) 2015년 7월 1일 이후 섹션 42280 하위조항 (g) (1) 또는 (2) 항에 정의되어 있으며 (2)항에 따라 재사용 식료품 봉지를 구매 시에 제공하는 상점은 봉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고객으로부터 재사용 식료품 봉지 값을 받지

않도록 재사용 식료품 봉지를 10 센트(\$0.10) 이상으로 판매해야 한다.

(c) (1) 2015년 7월 1일 이후 섹션 42280 하위조항 (g) (1) 또는 (2) 항에 정의된 상점은 본 하위조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재활용 봉지를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없다.

(2) 섹션 42280 하위조항 (g) (1) 또는 (2) 항에 정의된 상점은 재활용 봉지를 판매할 수 있다. 2015년 7월 1일 이후 상점은 봉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고객으로부터 재사용 식료품 봉지 값을 받지 않도록 재사용 식료품 봉지를 10 센트(\$0.10) 이상으로 판매해야 한다.

(d)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5년 7월 1일 이후 섹션 42280 하위조항 (g) (1) 또는 (2) 항에 정의되어 있으며 제품 판매 시 재사용 식료품 봉지나 재활용 봉지를 제공하는 상점은 캘리포니아주 여성, 유아, 아동을 위한 특수 식품보조 프로그램 (California Special Supplemental Food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에서 보건안전법 106부 파트 2 챕터 1 2조 (섹션 123275에서 시작)에 따라 발급한 직불 카드나 바우처, 복지기관법 섹션 10072에 따라 발급한 전자 이체 카드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재활용 봉지나 재사용 식료품 봉지를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e) 2015년 7월 1일 이후 섹션 42280 하위조항 (g) (1) 또는 (2) 항에 정의된 상점은 제품 판매 시 (2)항에서 정한 가격을 준수하여 분해성 봉지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 분해성 봉지는 최소한 미국재료시험학회 (American Society of Testing and Materials (ASTM)) 국제 분해성 플라스틱 표준 사양 D6400을 준수해야 하며 분해성 봉지를 판매하는 관할지와 상점이 위치한 관할지에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관할지 주민의 다수가 음식물 쓰레기를 도로 가 수거시설을 통해 버릴 수 있어야 함

(2) 관할지의 당국이 투표를 통해 지역 내 상점에서 고객에게 제품 판매 시 실제 봉지 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분해성 봉지를 판매하도록 결정함. 주 의회에서는 봉지 가격을 10 센트 (\$0.10) 이상으로 결정하였음.

(f) 섹션 42280 하위조항 (g) (1) 또는 (2) 항에 정의된 상점은 제품 판매 조건으로 고객에게 일회용 봉지나 재활용 봉지, 분해성 봉지 또는 재사용 식료품 봉지를 이용하거나 구매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42283.5. 2016년 7월 1일 이후 섹션 42280 하위조항 (g) (3), (4), (5) 항에 정의된 상점은 섹션 42280 하위조항 (g) (1) 또는 (2)에 정의된 상점과 같이 섹션 42283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42283.6. (a) 섹션 42280 하위조항 (g) (1) 또는 (2) 항에 정의된 상점 운영자는 판매 시 재활용 봉지나 재사용 식료품 봉지를 제공하는 경우 점포 재활용 프로그램 (챕터 5.1 (섹션 42250부터 시작))의 조항이 적용된다.

(b) 섹션 42280 하위조항 (g)에 따라 본 조의 조항을 자발적으로 준수하기로 동의한 상점 역시 점포 재활용

프로그램 (챕터 5.1 (섹션 42250부터 시작))의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42283.7. 본 조에 따라 징수한 모든 자금은 점포에서 보유하며 다음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할 수 있다:

(a) 본 조의 조건을 준수하기 위한 비용

(b) 재활용 종이 봉지나 재사용 식료품 봉지의 실제 비용

(c) 재사용 식료품 봉지 이용을 장려하는 상점의 교육 자료나 교육 캠페인 관련 비용

42284. (a) 본 챕터의 조건을 준수하도록 지정되지 않은 소매점은 일회용 플라스틱 봉지의 배포를 줄일 것을 권장한다.

(b) 섹션 42280 하위조항 (g)의 조항에 따라 모든 "상점"에 해당하지 않으며 하위조항 (c)에 지정된 취소불능 통지서를 자원재활용회복부에 제출한 모든 소매 업체는 본 챕터의 목적 상 "상점"으로 간주한다.

(c) 취소불능 통지서는 소매 업체의 공식 대표자가 일자와 서명을 기재해야 하며 통지서 내용이 적용되는 모든 소매 점포의 이름과 실제 주소를 포함해야 한다. 자원재활용회복부는 서면으로 통지서 수령을 확인하고 소매점에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소매 업체에 "상점"으로서의 규정 적용 일자를 명시해야 한다. 자원재활용회복부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상점"으로서 규정이 적용되는 각 소매 업체의 이름과 위치를 게시해야 한다.

제4조. 집행

42285. (a) 시나 카운티, 시와 카운티, 주는 고의적으로 본 챕터를 위반하거나 충분히 위반을 인식할 수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 최초 위반 시 하루 \$1,000, 두 번째 위반 시 하루 \$2,000, 세 번 이후 위반 시 하루 \$5,000의 민사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b) 하위조항 (a)에 따라 징수된 벌금은 조치를 취한 시 법무관, 시 검사, 지방 검사, 검찰총장에게 지급된다. 본 섹션에 따라 검찰총장이 징수한 벌금은 의회의 지출에 따라 본 챕터의 집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선점

42287. (a) 하위조항 (c)에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 본 챕터는 주 전체의 이익 및 사안에 해당하며 주 전역에 균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본 챕터는 본 챕터에서 정의한 상점에서 제공하는 재사용 식료품 봉지, 일회용 봉지, 재활용 종이 봉지의 규제 영역을 점유한다.

(b) 2015년 1월 1일 이후 시, 카운티, 기타 지역 공공 기관은 본 챕터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한 2014년 9월 1일 이후에 본 챕터에서 정의한 상점의 재사용 식료품 봉지, 일회용 봉지, 재활용 종이 봉지와 관련하여 채택한 모든 법령, 결의, 규정, 규칙을 집행하거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c) (1) 2014년 9월 1일 전에 재사용 식료품 봉지, 일회용 봉지, 재활용 종이 봉지와 관련하여 모든 법령, 결의, 규정, 규칙을 채택한 시나 카운티, 기타 공공 기관은 해당 일자 전에 효력을 갖는 법령, 결의, 규정, 규칙을 계속 집행하거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 2015년 1월 1일 이후 해당 법령, 결의, 규정, 규칙의 변경은 상점에 섹션 42283 에서 정한 가격 이상으로 재활용 종이 봉지, 분해성 봉지, 재사용 식료품 봉지 가격을 인상하도록 한 법령, 결의, 규정, 규칙을 채택하거나 개정할 시, 카운티, 기타 공공 기관을 제외하고 하위조항 (b)를 준수해야 한다.

(2) 2014년 9월 1일 전에 일회용 봉지 사용을 제한하는 법령이나 결의를 통과시키고 2015년 1월 1일 전에 일회용 봉지 사용을 제한하는 법령을 채택하여 (1)항이 적용되지 않는 시, 카운티, 기타 공공 기관은 2015년 1월 1일 전에 효력을 가진 법령을 계속 집행하고 이행할 수 있다.

제6조. 재무 조항

42288.

[본 섹션의 (a)항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님]

(b) 자원재활용회복부는 재활용시장개발 리볼빙 대출 하위계정 (Recycling Market Development Revolving Loan Subaccount) 자금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신청인이 있는 경우, 다음을 위해 본 섹션에 따라 징수한 자금을 지출할 수 있다:

(1) 일회용 플라스틱 봉지 제조 장비와 시설을 최소한 섹션 42281의 조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식료품 봉지 제조 장비 및 시설로 개발 및 전환.

(2) 최소한 섹션 42281의 조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식료품 봉지 제조 장비의 개발.

(c) 본 섹션에 따라 대출을 승인받은 수령인은 대출 수령 조건으로서 최소한 섹션 42281을 준수하는 재사용 식료품 봉지의 제조를 위해 기존 인력을 유지할 것에 동의해야 한다.

(d) 2015-16 회계 연도 말까지 지출할 수 없는 본 섹션에 따라 징수한 자금은 챕터 1 3조(섹션 42010부터 시작)에 따라 재활용시장개발 리볼빙 대출 하위계정(Recycling Market Development Revolving Loan Subaccount)으로 전환해야 한다.

(e) 본 섹션에 따른 자금 지원 신청인은 또한 다음과 같이 본인이 신청 자격을 가진 다른 경제 개발 프로그램 자금 지원이나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1) 수익 및 과세법 섹션 17059.2 및 23689에 명시된 소득세 혜택

(2) 수익 및 과세법 섹션 6377.1 에 따른 면세

제2조. 2018년 3월 1일 이전에 자원재활용회복부는 공공자원법 (Public Resources Code) 섹션 40507에 따른 보고 규정으로서 공공자원법 30부 파트 3 챕터 5.3 (섹션 42280부터 시작)의 이행 상태를 보고해야 한다.